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업무참고자료

2008. 4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차 례

I. 일반현황	3
1. 설립 및 연혁	7
2. 위원회 구성·기능 및 회의운영	10
가. 위원회	10
나. 기획운영실	13
다. 예산	21
3. 업무 프로세스	22
가. 위원장 및 위원 위촉	23
나. 본위원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회 운영	26
다. 직원 파견/채용	27
라. 의사결정 프로세스	41
마. 중장기계획 검토	43
바. 연구용역사업 추진	47
II. 지속위 주요업무 추진성과	51
1. 주요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57
2.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구축	121
3. 갈등관리 및 현안조정	157
4. 중장기 행정계획 검토	181
5.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187

Ⅲ. 참고자료 217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령(법/시행령)	221
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시행령/조례(안)	254
3.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305
4.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세칙	313
5.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윤리규범	321
6.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임전결규정	323
7. 용역평가단 운영규정	328
8.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현황	334
9. 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 현황	340
10. 기획운영실 직원 명단	358
11. 회의록 목록	362
12. 용역보고서 목록	467
13. 홍보책자 목록	469
14. 언론보도자료 목록	470
15.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목록	477
16. 3·4기 위원회 국정과제로드맵 추진현황	492
17. 3·4기 위원회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현황	494

I . 일 반 현 황

1. 설립 및 연혁
2. 위원회 구성·기능 및 회의운영
3. 업무 프로세스

1. 설립 및 연혁

□ 설립 일 : 2000. 9. 20

□ 근거법령 :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대통령령)/지속가능발전
기본법('07.8.3 제정)

□ 설립목적 :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관한 대통령 자문

□ 주요기능(위원회규정 제2조)

- 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자문
- ②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해결 자문
- ③ 국가중장기계획 검토·자문을 통한 정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 ④ 지방의제21 실천계획 및 국제환경협약의 국내이행대책 수립·시행
- ⑤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 이행계획 수립 및 시행 등

□ 연 혁

○ 제1기 위원회(강문규 위원장) : '00.9.20

- 당연직 위원 13명, 위촉위원 20명 등 33명

○ 제2기 위원회(박영숙 위원장) : '02.10.4

- 당연직 위원 13명, 위촉위원 21명 등 34명

○ 제3기 위원회(고철환 위원장) : '03.12.15

- 시도 대표 48명, 위촉위원 28명 등 76명

○ 제4기 위원회<김상희 위원장('07.7.30 해촉), 윤서성 위원장('07.8.31 위촉)> : '06.5.2

- 당연직 위원 12명, 위촉위원 21명 등 32명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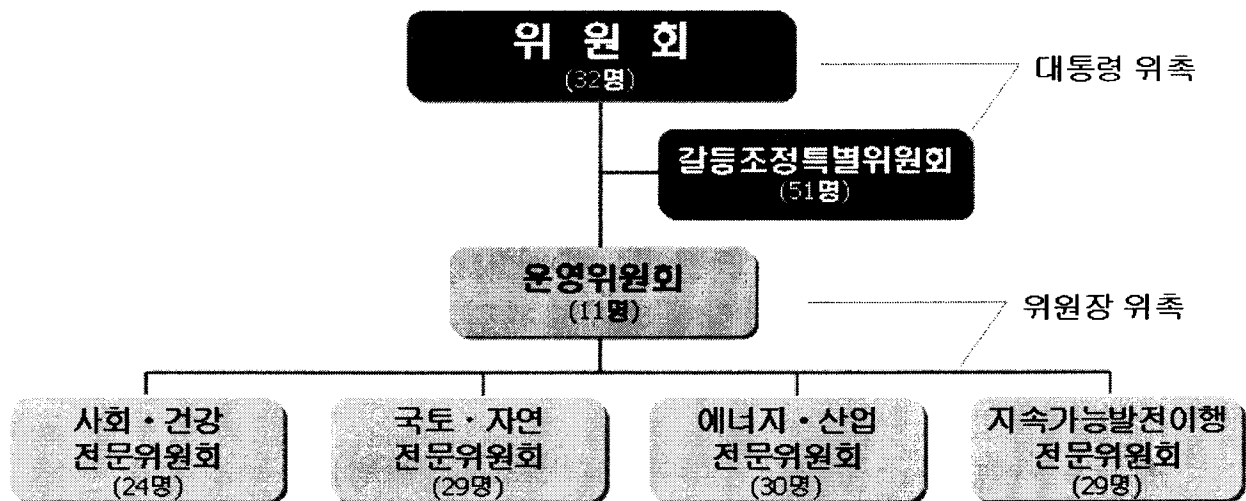
일 자	주 요 골 자
제정 (2000.8.5)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35인 이내, 임기 2년, 장관 13명) -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방향 설정 및 계획 수립,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대응전략 등에 대한 자문 수행
1차 일부개정 (2002.6.3)	○ 정부의 중장기 기본계획(40개) 등에 대해 계획수립 단계에서 지속 가능성을 사전검토하도록 법제화
2차 전문개정 (2003.6.25)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 확대 - 물·에너지 대책 등 주요정책의 수립·시행,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이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직 개편(25인 이내 위촉위원) -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제 폐지, 필요시 관계부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을 위원으로 지명하여 회의 참석 가능 -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종전 분과위원회) 설치 ○ 중앙행정기관에 '지속가능발전팀' 설치근거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근거 신설
3차 일부개정 (2003.6.30)	○ 별표 '주요 중장기계획'중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계획명 개정(제8호)
4차 일부개정 (2003.11.11)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 확대 -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관한 사항 추가 ○ 기능 강화에 따른 조직 개편 - 위원수를 80인 이내로 확대(시·도별 3명 추천, 직능대표는 대통령이 위촉) ○ 위원윤리규범 근거 마련
5차 일부개정 (2006.4.21)	○ 본위원회 위원 35명으로 축소 ○ 갈등조정특별위원회 설치 - 기존 본위원회에서 분리하여 본위원회와 지방추천인사로 70인 이내로 구성 ○ 정부 중장기계획 사전검토 조정(43개 대상)

□ 조직 변천

- 제1기 위원회('00.9, 3개팀)
 - 기획총괄팀, 지속발전팀, 국제환경팀
 - ※ 전문위원회 6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내(불광동) 위원회 사무실 개소
- 제2기 위원회('02.10, 5개팀)
 - 기획총괄팀, 국토환경팀, 경제사회팀, 홍보협력팀, 정책개발팀
 - ※ 전문위원회 4개
- 제3기 위원회('03.12, 8개팀)
 - 기획총괄팀, 사회환경건강팀, 에너지산업팀, 국토정책팀, 자연정책팀, 물관리정책팀, 갈등관리정책팀, 대외협력교육팀
 - ※ 전문위원회 5개
- 제3기 위원회 조직확대 및 변경('05.2.7, 5개팀)
 - 국정과제국장 신설
 - 총괄팀, 대외협력팀, 국토환경팀, 에너지산업팀, 갈등관리정책팀
 - ※ 전문위원회 6개, 위원회 사무실 중앙청사(6층)로 이전('05.4.7)
- 제4기 위원회('06.1, 6개팀)
 - 기획총괄팀, 대외협력교육팀, 사회건강팀, 물국토자연팀, 에너지산업팀, 갈등관리정책팀
 - ※ 전문위원회 6개 및 갈등조정특별위원회 1개
- 제4기 위원회 조직 변경('06.5, 8개팀)
 - 대외협력교육팀 → 대외협력홍보팀, 지속가능발전이행팀
 - 물국토자연팀 → 물자연팀, 국토팀
- 제4기 위원회 조직 변경('07.8, 9개팀)
 - 지방지원팀 신설
 - 대외협력홍보팀, 지속가능발전이행팀 → 지속가능발전이행①팀, 지속가능발전이행②팀
 - ※ 기획홍보팀, 지속가능발전이행①팀, 지속가능발전이행②팀, 지방지원팀, 사회건강팀, 물자연팀, 국토팀, 에너지산업팀, 갈등관리정책팀
 - ※ 위원회 사무실 광화문 교보생명빌딩(17층)으로 이전('08.3.8)

2. 위원회 구성·기능 및 회의운영

가. 위원회



구 분	주 요 기 능	구 성
본위원회	○ 주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심의 의결	민·산·학 등 민간위원 12개 부처장관
갈등조정특위	○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심의·의결	시도 대표성을 고려한 각계 전문가
운영위원회	○ 본위원회 상정안에 대한 사전검토 및 조정	전문위원회 간사 및 총무 1명
전문위원회(4)	○ 국토·자연, 에너지산업, 사회건강, 이행 등 4개전문위 ○ 과제발굴 및 연구·검토, 소위원회 구성·운영	분야별 전문가
연구팀	○ 전문위내에서 과제별 연구·검토	필요시 수시

□ 본위원회

- 개최주기 : 정기회의는 연 2회이상,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운영위 개최 요구시 수시 개최
 - ※ 제3기에서는 분기 1회 개최
- 개최통지 : 회의 소집시에는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E-mail, 통신 등)
- 기능 : 다음사항을 심의(위원회규정 제2조)
 - 경제·사회·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고려하여야 할 주요정책방향의 설정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물·에너지 대책 등 주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관한 사항
 -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의 실천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협약 등 주요 국제환경협약의 국내이행대책·대응전략에 관한 사항
 -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이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 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개회),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의결)

□ 갈등조정특별위원회 : '06. 12. 1 구성

- 위원수 : 위원장(갈등조정특위 위원장 겸임), 본위원(위촉)과 광역 지자체장, 시·도별 시민단체·학계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등 52명
- 기능 :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운영위원회

- 위원수 : 위원장(운영위 의장 겸임), 지속가능발전비서관, 각 전문위원회 간사 및 총무 등 12명으로 구성

※ 제3기 운영위는 19명으로 구성

- 운영위 의장은 위원중에서 총무위원을 지명하며, 총무위원은 운영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의장의 부재시 역할 대행
- 개최시기 :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전문위 간사가 소집
- 기능 :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 검토·조정 및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 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개회),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의결)

□ 전문위원회

- 위원수 : 간사 및 총무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
 - 간사는 본위원(위촉)중 위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총무를 지명
- 개최시기 : 간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
- 기능 : 과제발굴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
- 간사 및 총무의 역할
 - 간사는 소관 팀장과 협의하여 전문위원회 회의 소집 및 운영, 소관 연구팀의 구성과 운영 감독, 전문위에서 논의된 사항의 위원회 보고 등 전문위 업무를 총괄
 - 총무는 간사 부재시 업무의 대행 및 전문위 회의소집 등 운영 사항에 대해 간사와 협의

□ 연구팀

- 핵심연구자 중심으로 연구팀을 구성(5명 내외)
 - 연구용역과 연계되지 않고 연구팀 회의를 통해 정책자문안을 도출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10~15명 내외로 구성
- 정책연구의 질적 향상과 다양한 전문가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자문회의를 통해 보완

나. 기획운영실

□ 기획운영실 : 총원 26명중 현재 16명 근무중

계	공무원						기능 (비정규)	민간기관
	비서관	고위 공무원	4급	5급	6급	계약직		
총원 26명	청와대 (1)	환경 (1)	환경(2), 행자(1), 건교(1), 산자(1), 해수(1)	환경(1)	환경(1)	가급(2), 나급(2), 다급(1), 라급(1)	5	KEI(1), 수자공(1), 예관공(1),한자공(1) 철도공(1)
현원 16명		환경 (1)	환경(2), 산자(1),	환경(1)	환경(1)	가급(2),다급(1)	5	수자공(1),한자공(1)

□ 기획운영실 업무 분장표('07.9)

○ 기획·총괄

팀 명	업 무 분 장	비 고
기획홍보팀	- 본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지속위 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총괄 - 대통령지시사항, 국정과제업무 추진사항 총괄 -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총괄 - 국가 중장기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총괄 - 위원회 혁신업무에 관한 사항 -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 및 팀장·전직원회의 주관 - 홍보 및 정보화업무에 관한 사항 - 인사, 예산, 용도, 경리, 서무 등 행정 업무 총괄	
지속가능 발전이행 1팀	- WSSD, NCSD,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과의 국내·외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교육 정책수립·관리에 관한 사항 - 국가지표,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 소관분야 국가중장기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 소관분야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팀 명	업 무 분 장	비 고
지속가능 발전이행 2팀	-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 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지원팀	- 지방조례, 준칙(안) 마련에 관한 사항 - 지방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 지방로드맵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관광 추진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소식지 등 운영	
연구위원	- 기획과제 추진 - 국정과제회의 보고서 등 정책과제 지원 - 국가전략 및 국가 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 통	- 소관 전문위원회, 소위원회, 연구팀 구성운영 - 소관 대통령 지시사항, 국정과제 추진 및 관리 - 소관 국정과제회의 준비·보고 - 소관 정책홍보 및 전문위원회 홈페이지 관리 - 소관에 대한 국내·외 협조사항	

○ 정책기획

팀 명	업 무 분 장	비 고
사회건강팀	- 지속가능한 사회와 관련된 사항 - 지속가능한 건강과 관련된 사항 - 환경과 고용에 관한 사항 - 소관분야 국가중장기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 소관분야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 법령·행정계획 검토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물자연팀	- 지속가능한 물, 연안해양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한 농업 및 산림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한 자연생태에 관한 사항 - 소관분야 국가중장기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 소관분야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 지속주간 행사 총괄에 관한 사항	

팀 명	업 무 분 장	비 고
국 토 팀	- 지속가능한 국토의 개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한 교통정책·관리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한 재난재해정책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에 관한 사항 - 소관분야 국가중장기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 소관분야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에너지 산업팀	-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관리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한 산업 정책·관리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협약대응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책임(SR)에 관한 사항 - 소관분야 국가중장기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 소관분야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갈등관리 정책팀	- 갈등 예방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갈등관리기법 및 갈등조정 프로세스 개발·보급 - 갈등조정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 소관분야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 법제정에 따른 갈등특위 운영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팀별 담당자 및 담당별 세부업무

○ 기획·총괄

구 분	담 당	세 부 업 무	비 고
기획홍보팀	정은혜 (팀장)	- 본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지속위 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관한 사항 총괄(법시행령 등) -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총괄 - 국가중장기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총괄 - 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 대통령지시사항, 국정과제 추진사항 총괄 - 용역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 지속가능발전 주간행사에 관한 사항 - 홍보 및 정보화업무 추진 총괄 - 인사, 예산, 용도, 경리, 서무 등 행정 업무 총괄	
	김학봉	- 대통령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업무 추진 관리 - 지속위 직원회의, 청와대 주관회의 등 대내외 회의 주관·지원 - 위원회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계약직채용, 파견자 관리 등 인사업무 추진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관한 사항(법시행령 등) -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총괄 - 위원회 혁신업무에 관한 사항 - 본위원회,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 위원장 일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가중장기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총괄 - 용역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지속위 업무매뉴얼 발간에 관한 사항	
	전승찬	-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국회업무와 관련된 사항 - 주간실적 및 계획(월간 포함)에 관한 사항 - 기록물 관리 및 이관에 관한 사항 - 비정규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서무와 관련된 사항	

구 분	담 당	세 부 업 무	비 고
지속가능 발전이행 1팀	김종환 (팀장)	- WSSD, NCSD,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과의 국내·외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사항 - 소관분야 국가중장기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 소관분야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 국가지표,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총괄 - 지속발전이행전문위 구성·운영 - 지속가능발전 주간행사에 관한 사항	
	박경석	- 소관 연구팀 구성·운영 - 지속가능발전교육 정책수립·관리에 관한 사항 - 국가지표,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 주간행사에 관한 사항 - 소관 대통령지시사항 추진관리 - 기타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관련 협력사항 지원	
	최선미	- 국제협력 및 홍보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 전반 국제동향 조사 및 자료 작성 - 영문 홈페이지 업데이트	
지속가능 발전이행 2팀	김요은 (팀장)	- 지방 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 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 주간행사에 관한 사항 - 소관 대통령지시사항 추진관리	

구 분	담 당	세 부 업 무	비고
지방지원팀	권기태 (팀장)	- 지자체·지역시민사회단체 협력 및 지방의 제21에 관련 사항 총괄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에 관한 사항(법시행령 등) - 지방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총괄 - 지속가능한 지역관광개발 로드맵 수립 총괄 - 지방 지속가능발전 로드맵 추진에 관한 사항 총괄 - 국민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 총괄 - 지속가능발전 주간행사에 관한 사항 - 기타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관한 사항	
	인은숙	- 지자체·지역시민사회단체 협력 및 지방의 제21에 관련 사항 - 소관 연구팀 구성·운영 - 지방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지방 지속가능발전 로드맵 추진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한 지역관광개발 로드맵 수립 - 국민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 - 소식지,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e지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소관 대통령지시사항 추진관리	
	김경아 (지원)	- 홈페이지 운영·관리, 소식지, e지원 운영·관리	
연구위원	노태호 (연구원)	- 기획과제 추진 - 국정과제회의 보고서 등 정책과제 지원 - 국가전략 및 국가 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정책기획

구 분	담 당	세 부 업 무	비고
사회·건강팀	윤웅로 (팀장)	- 지속가능한 사회 및 건강과 관련된 사항 - 환경과 고용에 관한 사항 - 사회건강전문위 구성·운영 - 법령행정계획 검토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소관분야 국가중장기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 소관분야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김창희	- 소관 연구팀 구성·운영 - 소관 대통령지시사항 추진·관리 - 기타 사회 및 건강 정책관련 업무지원	
물·자연팀	심재현 (팀장)	- 지속가능한 물, 연안, 해양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한 농업 및 산림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한 자연생태에 관한 사항 -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 후속 조치 - 국토자연전문위 구성·운영 - 지속가능발전주간 행사 총괄에 관한 사항 - 소관분야 국가중장기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 소관분야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김종연	- 소관 연구팀 구성·운영 -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방안 후속조치 - 물·연안·해양·농업·국토·교통 및 재난 재해 등 정책관련 업무 개발 및 지원 - 지속가능발전교육 정책수립·관리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주간 행사에 관한 사항 - 소관 대통령지시사항 추진·관리	

구 분	담 당	세 부 업 무	비 고
국토팀	전형필 (팀장)	- 지속가능한 국토의 개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한 교통정책·관리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한 재난재해 정책에 관한 사항 - 살고싶은 지역사회 만들기 공론화 및 홍보 - 국토자연전문위 구성·운영 - 소관분야 국가중장기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 소관분야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남윤욱	- 소관 연구팀 구성·운영 - 소관 대통령지시사항 추진·관리 -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 관련 후속 조치 지원 - 기타 국토, 교통 및 재난재해 정책관련 업무 지원	
에너지산업팀	이두면 (팀장)	-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형산업정책 수립 추진 -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사항 - 에너지산업전문위 구성·운영 - 소관분야 국가중장기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 소관분야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김규식	- 소관 연구팀 구성·운영 - 소관 대통령지시사항 추진·관리 - 기타 에너지 및 산업 정책관련 업무 지원	
갈등관리 정책팀	이상성 (팀장)	- 갈등 예방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갈등관리기법 및 갈등조정 프로세스 개발·보급 - 갈등조정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갈등관리교재 개발 및 포럼 운영 - 소관분야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정성원	- 소관 연구팀 구성·운영 - 갈등관리교재 개발 및 포럼 운영 지원 - 소관 대통령지시사항 추진·관리 - 기타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지원	

다. 예산

□ 예산현황 : 2008년 1,879백만원('07년, 1,604백만원)

- 위원회 수당, 여비 등 운영지원 : 1,637백만원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관련 : 242백만원
 -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등 72백만원, 지방지속가능발전 체제 구축지원 40백만원, 정보포털 구축 등 130백만원 등
- '00~'08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08년도	'07년도	'06년도	'05년도	'04년도	'03년도	'02년도	'01년도	'00년도
합 계	1,879,182	1,604,049	1,565,723	1,600,235	1,300,108	466,997	561,844	696,578	317,422
비정규직보수 (110)	85,258	102,161	63,334	52,348	41,032	20,355	20,355	17,050	6,600
운 영 비 (210)	932,202	824,357	817,309	751,468	631,522	210,745	196,645	174,557	54,068
여 비 (220)	295,521	256,871	261,565	264,199	242,744	91,257	93,924	41,369	5,934
업무추진비 (240)	102,800	101,735	100,090	123,520	121,800	144,640	140,920	143,640	40,820
직무수행경비 (250)	107,925	107,925	101,925	95,100	85,500	0	0	0	0
연구개발비 (260)	280,000	180,000	180,000	240,000	100,000	0	90,000	240,000	70,000
민간이전 (320)	12,476	0	0	0	0	0	0	0	0
시 설 비 (420)	0	0	10,000	30,000	30,000	0	10,000	40,000	70,000
자산취득비 (407)	63,000	31,000	31,500	43,600	47,510	0	10,000	39,962	70,000

3. 업무 프로세스

가. 위원장 및 위원 위촉

나. 본위원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회 운영

다. 직원 파견/채용

라. 의사결정 프로세스

마. 중장기계획 검토

바. 연구용역사업 추진

가. 위원장 및 위원 위촉

※ 참여정부 대통령자문위원회 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에 따른 것으로 수정필요

□ 업무절차

업무흐름

① 협의회개최 요청



② 협의회위원에게 인사추천 요청



③ 위원추천인사 위원회 전달



④ 협의회 개최



⑤ 협의회결과 정리·보고/전파



⑥ 인사추천회의 상정자료 준비



⑦ 인사추천회의 상정 요청



⑧ 위원위촉결재 협의



⑨ 위촉장 수여

해당위원회가 정책조정비서관실에 회의 개최를 요청(D-6주)

※ 이메일로 요청

※ 양식 : 별첨 2 (인사추천의회 양식)

정책조정비서관실, 협의회 위원들에게 적격인사 추천 요청(D-6주)

※ 1주일내에 적격인사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

- 다만, 3인 이내의 인선 추진시에는 위원회 자체에서 해당수석실과 협의하여 추천

정책조정비서관실, 해당 위원회에 위원장 또는 위원 추천인사 자료를 전달(D-5주)

위원회가 위원장(3배수) 또는 위원 위촉안(2배수)을 작성, 인사협의회에 상정(D-4주)

※ 위원회 자료는 소관 비서관실, 정책조정비서관실과 사전협의

정책조정비서관실, 협의회 논의 결과를 정리하여 정책실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회 위원들에게 전파(협의회+1일)

위원회가 협의회 결과를 반영한 위원장/위원 위촉안을 작성,

위원회가 인사관리비서관실에 인사추천회의 상정을 요청(협의회+3일, D-3)

※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 실시

해당위원회, 인사추천회의 결과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에 위원위촉 결재 협의(D-1주)

해당위원회, 의전비서관실과 협의 위촉장 수여(D데이)

세부업무내용

① 해당위원회가 인사협의회 개최를 요청(D-6주)

- 위원장 또는 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하는 위원회가 정책조정비서관실에 인사협의회 개최를 요청(이메일로 요청)
 - ※ 요청사유와 위촉위원 규모등 기본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 (양식: 첨부 2)

②~③ 정책조정비서관실, 협의회 위원들에게 적극인사 추천요청(D-6주) 및 결과 위원회 전달(D-5주)

- 정책조정비서관실은 위원회 요청을 근거로 1주내에 소관분야 적극인사를 추천해 줄 것을 협의회 위원들에게 요청(이메일 활용)
 - ※ 인선규모가 3인 이내의 경우에는 인사협의회 위원들의 별도 추천 절차 없이 해당수석실과 협의하여 위원회 자체 추천
- 협의회위원들이 추천한 인사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해당위원회에 전달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협의회개최 1주일전까지)
 - ※ 해당위원회는 협의회 상정 자료를 작성시 추천인사의 반영여부 및 반영시의 추천자를 명기
 - ※ 협의회 위원 : 경제정책·사회정책·혁신관리·시민사회·인사수석, 경제·정보과기보좌관, 정책기획위원장, 정책조정비서관(간사) 및 안전관련 위원장·안보수석 등은 필요시 참석 요청

④~⑤ 위원장/위원 위촉안 인사협의회 상정(D-4주)

- 해당위원회가 인사협의회 상정안건(위원장 3배수, 위원2배수)을 작성하여 소관 비서관실과 협의 후, 협의회 개최 3일전까지 정책조정비서관실에 제출하고, 협의회 당일에 자료를 준비하여 위원들에게 배포
 - ※ 회의시작 15분전까지 회의장에 안전자료 복사·비치

- 협의회는 정책실장이 진행하고, 자료는 해당위원회 위원장이 설명하고 논의
- 정책조정비서관실은 협의회 결과를 정리하여 정책실장에게 보고 후, 협의회 위원들에게 전파

⑥~⑦ 인사추천회의 자료 준비(협의회+3일) 및 상정 요청(D-3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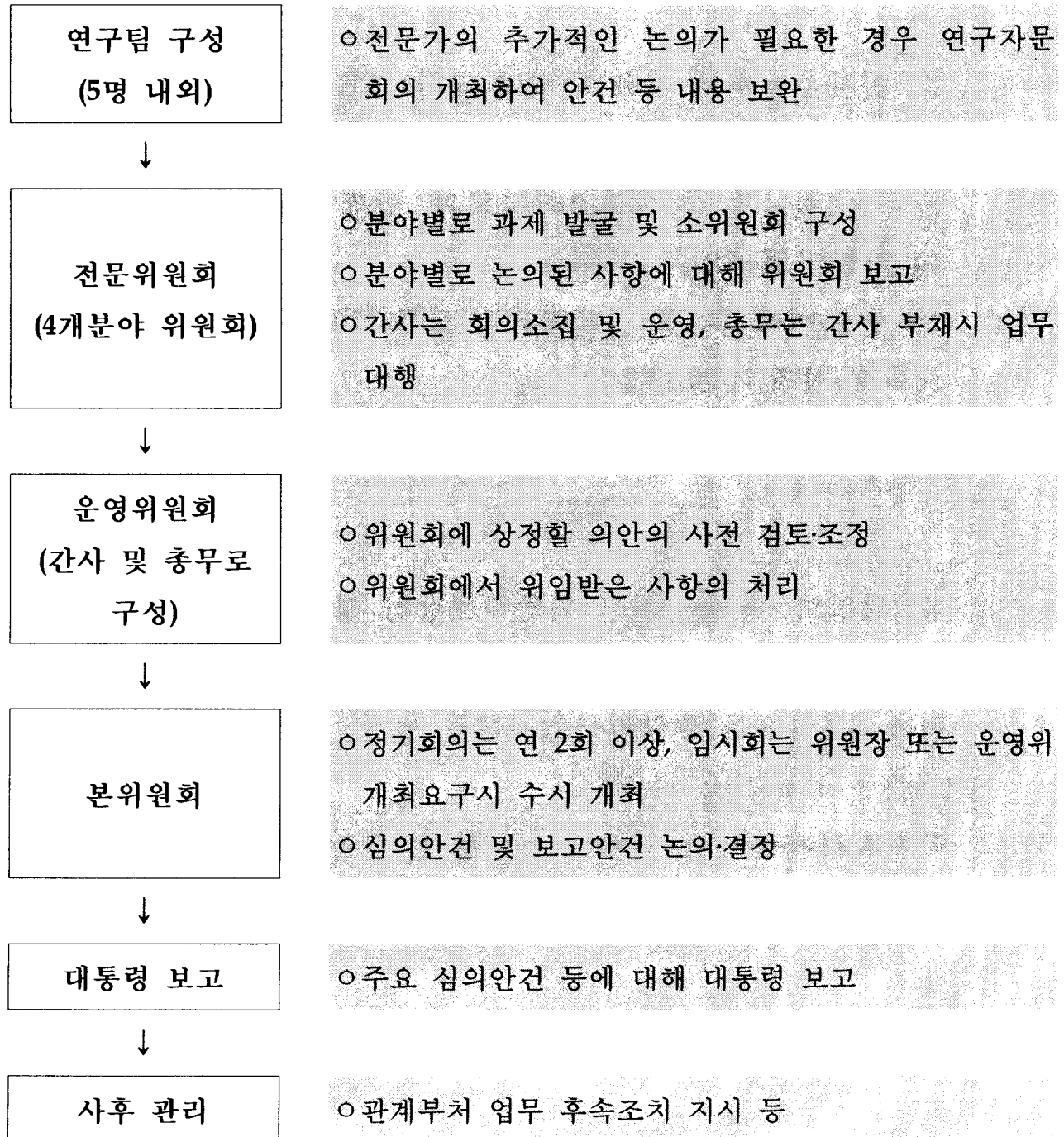
- 해당위원회는 인사협의회 결과를 반영하여 인사추천회의에 상정할 자료를 작성, 신원조회자료와 함께 인사관리비서관실에 제출(협의회+3일, D-3주)
- 인사관리비서관실은 전달받은 자료를 검토 조정하여 인사추천회의에 상정 추진(D-2주)
- ※ 인사추천회의 상정 전에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위촉대상 인사들의 인사검증을 실시

⑧~⑨ 위원회, 위원장/위원 위촉결재상신 협의(D-1주)

- 해당위원회는 인사추천회의 결과에 따라 최종 인선자들에 대한 위촉결재상신을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공문을 통해 협의 추진)
- 의전비서관실과도 협의하여 위촉장 수여일자 확정 및 위촉장 수여 추진

나. 본위원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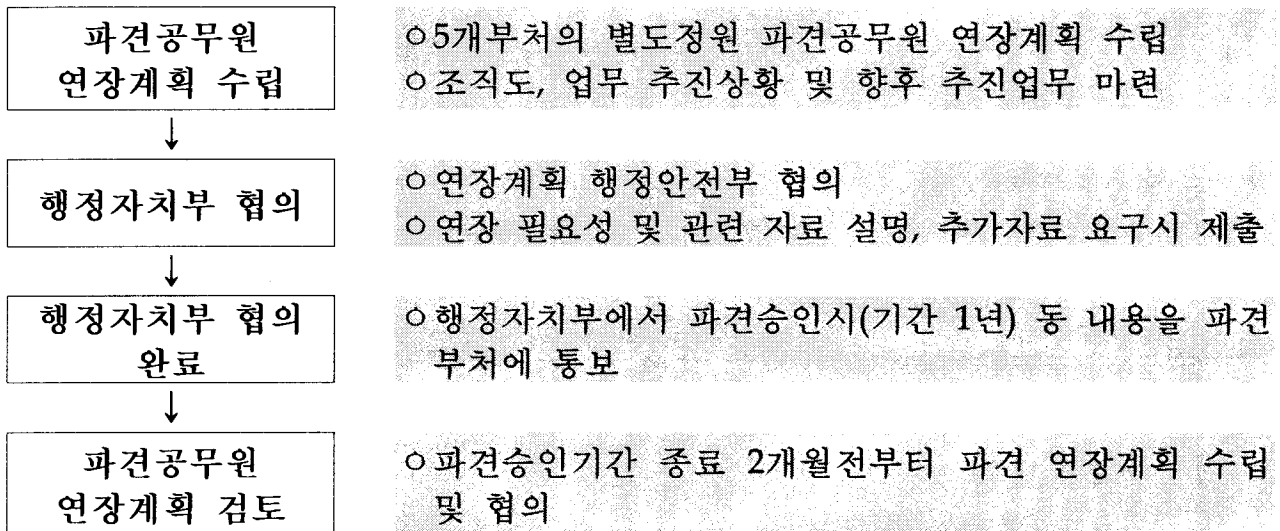
□ 업무흐름



다. 직원 파견/채용

1. 파견공무원 연장 협의(행정자치부)

□ 업무흐름



□ 협의내용

가. 기획운영실 현황

- 기획운영실 총 26명

계	공무원						비정규직	민간기관
	비서관	고위 공무원	4급	5급	6급	계약직		
26	1	1	6	1	1	6	5	5
	청와대 (1)	환경(1)	환경(2) 행자(1) 건교(1) 산자(1) 해수(1)	환경(1)	환경(1)	가급(2) 나급(2) 다급(1) 라급(1)	5	KEI(1) 수자공(1) 에관공(1) 한자공(1) 철도공(1)

※ 비별도 직원 : 환경부 3명(4급 1, 5급 1, 6급 1)

※ KEI 연구위원, 한국수자원공사·에너지관리공단·한국환경자원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3·4급은 업무지원

○ 부처별 · 직급별 별도직원 현황

구 분	계	고위 공무원	4급	비 고
계	6	1	5	
행정자치부	1	-	1	갈등관리정책팀장
산업자원부	1	-	1	에너지 · 산업팀장
환 경 부	2	1	1	국정과제국장 기획홍보팀장
건설교통부	1	-	1	국토팀장
해양수산부	1	-	1	물 · 자연팀장

○ 기획홍보팀

- 위원회 운영,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이행계획 총괄, 국정과제 추진 등
- 환경부 4급, 환경부 5급, 환경부 6급

○ 지속가능발전이행팀(①팀, ②팀)

-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및 지표개발, WSSD 후속대책 수립 및 이행
- 지방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 · 적용, 지속가능발전정보망 구축 · 운영
- 전문계약직 가급, 전문계약직 라급

○ 지방지원팀

- 지방지속가능발전로드맵 수립·추진, 지방이행체계 구축
- 전문계약직 가급, 전문계약직 다급

○ 사회 · 건강팀

- 지속가능한 사회 · 건강 관리
- 환경부 4급, 한국철도시설공단 3급

○ 국토팀

- 국토 및 교통체계 구축
- 건설교통부 4급, 한국수자원공사 3급

○ 물·자연팀

- 물 및 자연관리, 연안개발 및 해양관리
- 해양수산부 4급, 전문계약직 나급

○ 갈등관리정책팀

- 갈등관련 법·제도개선
- 행정자치부 4급, 한국환경자원공사 3급

○ 에너지·산업팀

-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및 산업정책 수립, 기후변화대응체계 구축 등
- 산업자원부 4급, 에너지관리공단 4급

나. 파견기간 연장 필요성

추진경과

- '03. 8.11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신규파견 협의요청(환경부→행자부)
 - ※ 파견인력 협의 : 8명(환경부 2, 3급 각 1명, 6급 1명, 외통부, 건교부, 산자부, 행자부 등 4급 5명)
- '03. 9. 5 : 지속위 신규파견 협의요청에 대한 회신(행자부→환경부)
 - 파견승인 : 6명(환경부 2·3급 1명, 4급 1명, 외통부, 건교부, 산자부, 행자부 등 4급 4명)
 - 파견조건 : 결원보충 있는 파견
 - 파견기간 : 2년(2003. 9. ~ 2005. 9.)

- '05. 4.8 : 지속위 파견기간 연장 협의요청(환경부→행자부)
 - 파견인력 기간 연장 및 파견기관 변경(외교부→해수부) 협의
 - 환경부 2·3급 1명, 4급 1명, 행자부, 산자부, 건교부, 해수부 4급 4명 등 총 6명
- '05. 8.31 : 지속위 신규파견 협의요청에 대한 회신(행자부→환경부)
 - 파견기간 연장(2년, 2005. 9 ~ 2007. 9) 및 파견기관 변경(외교부→해수부) 승인
 - 환경부 2·3급 1명, 4급 1명, 행자부, 산자부, 건교부, 해수부 4급 4명 등 총 6명
- '07. 9.17 : 지속위 파견기간 연장 협의 요청(지속위→행자부)
 - 파견기간 연장(2년, 2005. 9 ~ 2007. 9) : 총 6명
 - 환경부 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행자·산자·건교·해수부 4급 4명
- '07. 9 : 지속위 신규파견 협의요청에 대한 회신(행자부→지속위)
 - 파견기간 연장(1년, 2007. 9 ~ 2008. 9) 승인(총 6명)
 - 환경부 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행자·산자·건교·해수부 4급 4명

파견기간 연장 필요성(2005.9 - 2007.9 → 2007.9 - 20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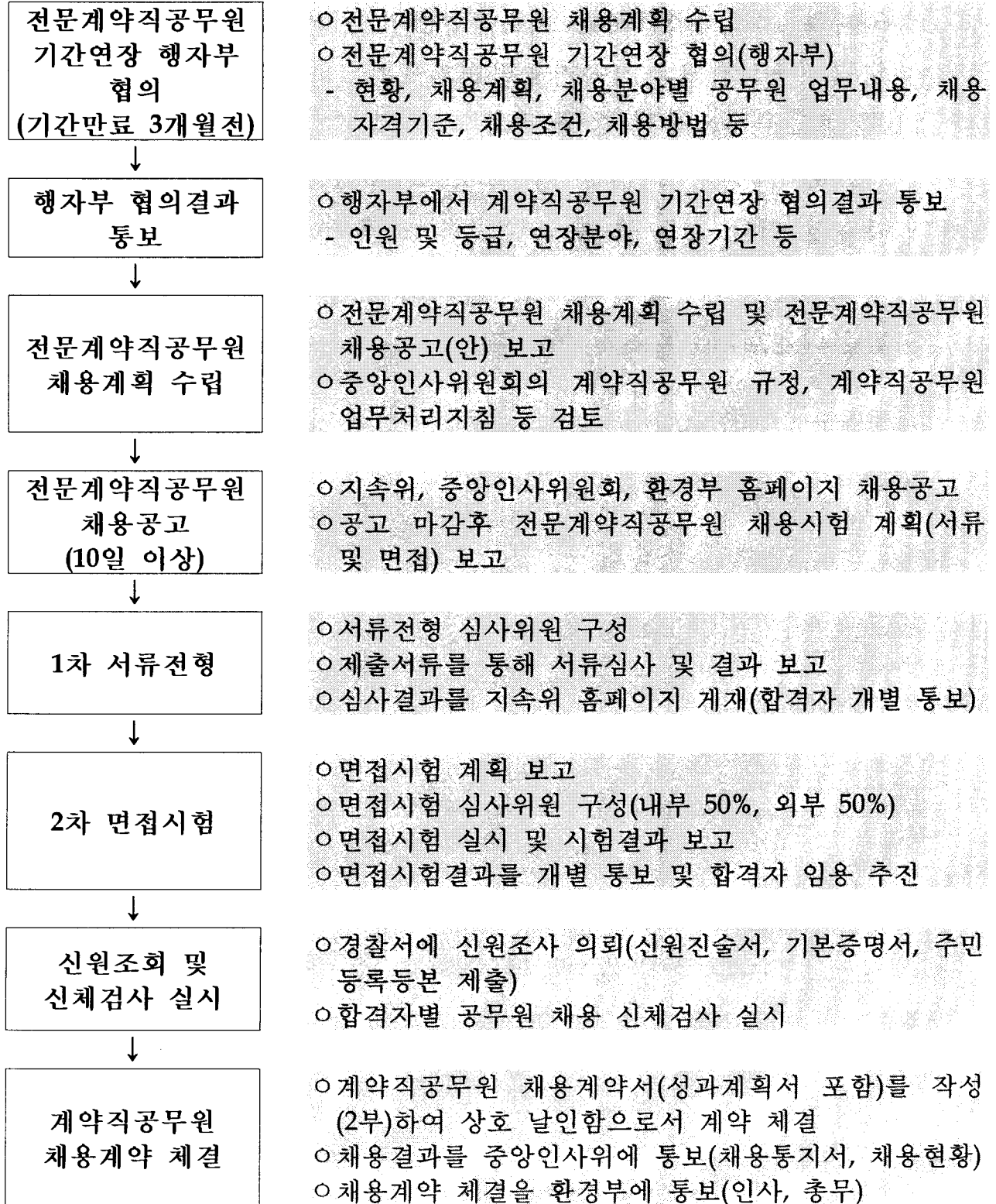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지속성 유지 필요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UN이 「리우선언」 이후 의제21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를 위하여 각국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를 권고한 조직으로서 지속적으로 그 역할이 필요
 - 현재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국정과제위원회로서의 역할외에도 정부의 주요 중·장기정책(43개 정책)에 대해서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07.8) 및 시행('08.2)에 따른 업무추진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08년 2월부터 기본법에 의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그 이행계획의 수립·추진하고,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운용, 지방지속가능발전 로드맵 수립·추진 등을 추진
- 법률에 근거하여 법령 및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의 사전 지속가능성 검토 기능 수행
- 광역 시·도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는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지원

2. 계약직공무원 채용

□ 업무흐름



□ 행자부 협의내용

전문계약직공무원(가, 나, 다, 라급) 채용계획(안)

1. 목 적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07.8.3 공포, '08.2 시행)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법정 위원회로 위상이 제고되면서 새로이 부여받은 임무 수행 및 기존 과제 추진을 위해 전문계약직 정원 유지 및 채용이 필요
 -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수립 및 평가, 법령 및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지방 지속가능발전 협력·지원 등
 - 자진 퇴직(2명) 및 계약기간 만료(4명, '07.12.31)에 따라 계약직 6명(가급 2명, 나급 2명, 다급 1명, 라급 1명)에 대한 신규채용이 필요
 - ※ 법적근거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8125호, 2003.11.11) 제14조제2항,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9조(2007.8.3)
- 전문계약직공무원은 제3기 위원회('03.12~'05.12) 및 현재 제4기 위원회('06.5.2~'08.5.1)에서 총 6인을 채용하여 운영
 - 지속가능한 물·에너지·국토정책 등 주요 국정과제로드맵 추진, 경제·사회·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방향 및 계획수립에 대한 자문 등을 담당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주요기능 변화

법 제정 전	법 제정 후
① 지속가능발전 정책 대통령 자문 ② 43개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③ 국토·에너지·물 등 주요 정책 심의	① 지속가능발전 정책 대통령 자문 ② 국가기본전략 심의 ③ 국가이행계획 심의 ④ 국가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⑤ 법령 지속가능성 검토 ⑥ 78여개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⑦ 정부부처에 대한 정책의견 제시 ⑧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 작성 ⑨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 작성 ⑩ 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 홍보 ⑪ 사회적 갈등에 관한 대통령 자문 ⑫ 지방이행계획 추진 지원 ⑬ 지방지속가능발전 협력·지원 등

2. 그간의 경과

- 2000. 9.20 : 위원회 발족시 민간단체 실무요원(4명) 분과위원회 간사로 위촉
- 2001.12.17 : 전문계약직 4명(가급 2, 다급 2) 신규채용승인(행정자치부)
- 2003.11.29 : 전문계약직(4명) 등급변경 승인(행정자치부)
 - ※ 등급변경 : 가급 2, 다급 2 → 가급 1, 나급 1, 다급 1, 라급 1
- 2004. 5.14 : 전문계약직 2명(가급 1, 나급 1) 신규채용승인(행정자치부)
 - ※ 전문계약직공무원 : 6명(가급 2, 나급 2, 다급 1, 라급 1) 채용·근무
- 2005.12.30 : 전문계약직 2명(나급 1, 라급 1) 신규채용승인(중앙인사위)
 - ※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한 직원의 결원 보충
- 2006. 1.20 : 전문계약직 1명(가급 1) 신규채용승인(중앙인사위)
 - ※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한 직원의 결원 보충
- 2006. 2.6 : 전문계약직(가급, 라급) 채용자격기준 변경협의(중앙인사위)
 - ※ 채용자격기준중 관련학과의 범위 확대
- 2006.4.4 : 전문계약직 3명(가급 1, 나급 1, 라급 1) 신규채용승인(중앙인사위)
 - ※ 계약기간 만료 및 본인 의사에 따라 퇴직한 직원의 결원 보충
- 2006.4.14 : 전문계약직 1명(다급) 신규채용(지속위)
 - ※ 본인 의사에 따라 퇴직한 직원의 결원 보충
- 2006.5.12 : 전문계약직 1명(나급) 신규채용(지속위)
 - ※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한 직원의 결원 보충
- 2006.12.1 : 전문계약직 1명(가급) 신규채용(지속위)
 - ※ 본인 의사에 따라 퇴직한 직원의 결원 보충
- 2007.12.13 : 전문계약직 6명(가급 2, 나급 2, 다급 1, 라급 1) 기간연장(분야조정) 승인(행정자치부)

3. 정·현원 현황

구 분	합계	가급	나급	다급	라급
정원	6	2	2	1	1
현원	4	2	1	0	1
신규채용	6	2	2	1	1

4. 채용자격기준

□ 자격기준

등급	자 격 기 준
가급	1.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급	1.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다급	1. 채용예정 직위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라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관련학과

○ 지속가능발전 이행분야(대외협력 및 교육 포함) : 가급 및 라급

- 행정학, 사회학, 경영학, 경제학, 정치학, 법학, 철학, 환경정책, 환경계획, 도시계획 등 인문·사회과학분야의 학과로서 대외협력 또는 교육관련 학과, 환경계획학, 환경공학, 자원공학, 도시공학, 생태학 등 자연과학·공학분야의 학과로서 대외협력 또는 교육관련 학과

○ 지방지속가능발전 지원분야 : 가급 및 다급

- 환경정책, 환경계획, 도시계획 관련학과, 사회정책, 행정, 경영 관련학과 등 인문·사회과학분야의 학과로서 지속가능발전 관련 학과, 환경계획학, 환경공학, 자원공학, 도시공학, 생태학 등 자연과학·공학분야의 학과로서 지속가능발전 관련 학과

○ 나급(국가전략 및 이행계획 분야)

- 행정학, 사회학, 경영학, 경제학, 정치학, 법학, 철학, 환경정책, 환경계획, 도시계획 등 인문·사회과학분야의 학과로서 국가전략 및 이행계획 관련 학과, 환경계획학, 환경공학, 자원공학, 도시공학, 생태학 등 자연과학·공학분야의 학과로서 지속가능발전 국가전략 및 이행계획 관련 학과

○ 나급(법령 및 행정계획 검토분야)

- 행정학, 사회학, 경영학, 경제학, 정치학, 법학, 철학, 환경정책, 환경계획, 도시계획 등 인문·사회과학분야의 학과로서 법령 및 행정계획 관련 학과, 환경계획학, 환경공학, 자원공학, 도시공학, 생태학 등 자연과학·공학분야의 학과로서 법령 및 행정계획 관련 학과

□ 관련분야

- 지속가능발전 이행분야(대외협력 및 교육 포함) : 가급 및 라급
 - 공무원, 대학, 연구기관, 시민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환경정책 및 홍보기획, 환경교육, 대외협력 등에 대한 업무 또는 연구담당
- 지방지속가능발전 지원분야 : 가급 및 다급
 - 공무원, 대학, 연구기관, 시민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 대외협력 및 환경정책, 지방지원 등에 대한 업무 또는 연구담당
- 국가전략 및 이행계획 분야 : 나급
 - 공무원, 대학, 연구기관, 시민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환경정책, 국가전략 수립 등에 대한 업무 또는 연구담당
- 법령 및 행정계획 검토분야 : 나급
 - 공무원, 대학, 연구기관, 시민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행정법, 환경정책, 환경법, 환경계획, 도시계획 등에 대한 업무 또는 연구담당

5. 채용조건

등급	담당업무	계약기간	연봉액(천원)	
			상한액	하한액
가급	○ 지속가능발전 이행분야(대외협력 및 교육 포함) ○ 지방지속가능발전 지원분야	계약일부터 ~ '09.12월까지	-	42,462
나급	○ 국가전략 및 이행계획분야 ○ 법령 및 행정계획 검토분야	"	52,792	35,176
다급	○ 지방지속가능발전 지원분야	"	43,145	30,642
라급	○ 지속가능발전 이행분야(대외협력 및 교육 포함)	"	37,853	27,000

6. 담당예정 업무내용

□ 가급(2명)

<지속가능발전 이행분야(대외협력·교육분야 포함)>

-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및 평가
- 지속가능한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
- 지속가능발전 분야 국제협력 추진
- 산업계, 시민단체, 정부 등에 대한 협력업무 총괄 등
- 지속가능발전 주간행사 추진

<지방지속가능발전 지원분야>

-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
- 지방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안) 마련 및 협의
- 지방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총괄·지원
- 지방 지속가능발전 로드맵 추진

□ 나급(2명)

<국가전략 및 이행계획분야>

-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총괄
-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법령 및 행정계획 검토분야>

- 법령 및 중장기 행정계획 검토를 위한 매뉴얼 마련 및 운영
- 법령 검토 총괄
- 중장기 행정계획 검토 총괄

□ 다급(1명)

<지방지속가능발전 지원분야>

-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
- 지방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안) 마련 및 협의
- 지방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총괄·지원
- 지방 지속가능발전 로드맵 추진

□ 라급(1명)

<지속가능발전이행분야 (대외협력·교육분야 포함)>

-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및 평가
- 지속가능한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
- 지속가능발전 분야 국제협력 추진
- 산업계, 시민단체, 정부 등에 대한 협력업무 총괄 등
- 지속가능발전 주간행사 추진

7. 채용방법

-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요건 및 업무 적합성 전형)
 -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5배수를 1차 합격자로 선정
 - 심사위원 구성 : 기획운영실장, 국정과제국장, 기획홍보팀장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주제발표, 집단토론 및 개별면접 결과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
 - 주제발표 및 토론(70%) : 제시된 주제에 대한 발표 및 종합토론
 - 개별면접(30%) : 심사위원들과 개별 응시자간 질의답변
 - ※ 필요시 영어 질의답변 포함
 - 심사위원 구성 : 위원장, 기획운영실장, 국정과제국장, 위원 3~4명
 - ※ 심사위원의 1/2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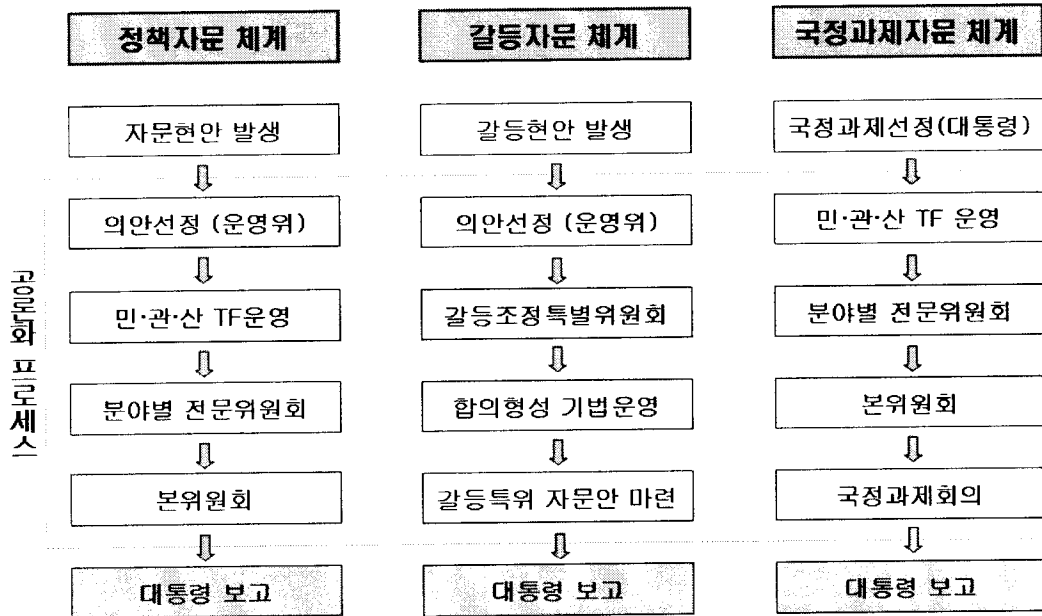
8. 향후 추진계획

- 채용공고 : '07.12.17(공고기간 : '07.12.17(월) ~ 12.27(목)(11일간))
 - 공고방법 : 지속위, 중앙인사위, 환경부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
- 원서접수 : '07.12.17 ~ 12.27(11일간)
- 심사위원 구성 : '07.12.28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08.1.4(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서류심사 : '07.12.28~'08.1.4
- 면접 : '08.1.9
- 최종합격자 발표 : '08.1.15경
- 채용예정자 신원조회 : '08. 1월중
- 채용계약 체결 및 채용결과 통보(중앙인사위, 환경부) : 1월중

라. 의사결정 프로세스(정책자문, 기본법 체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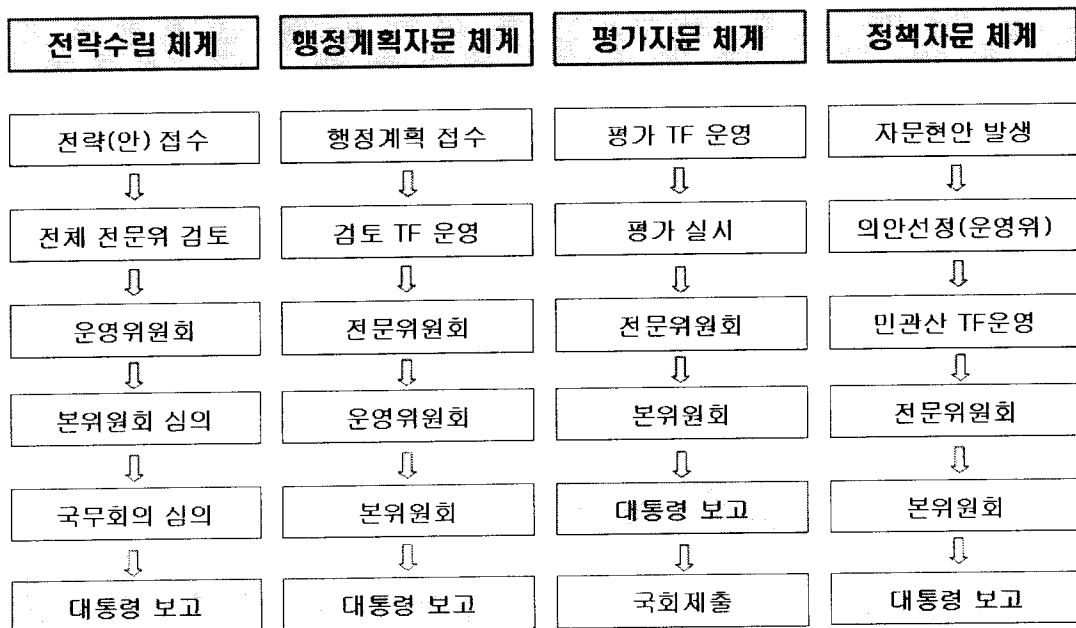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의사결정 프로세스 (1)

정책자문, 갈등자문, 국정과제자문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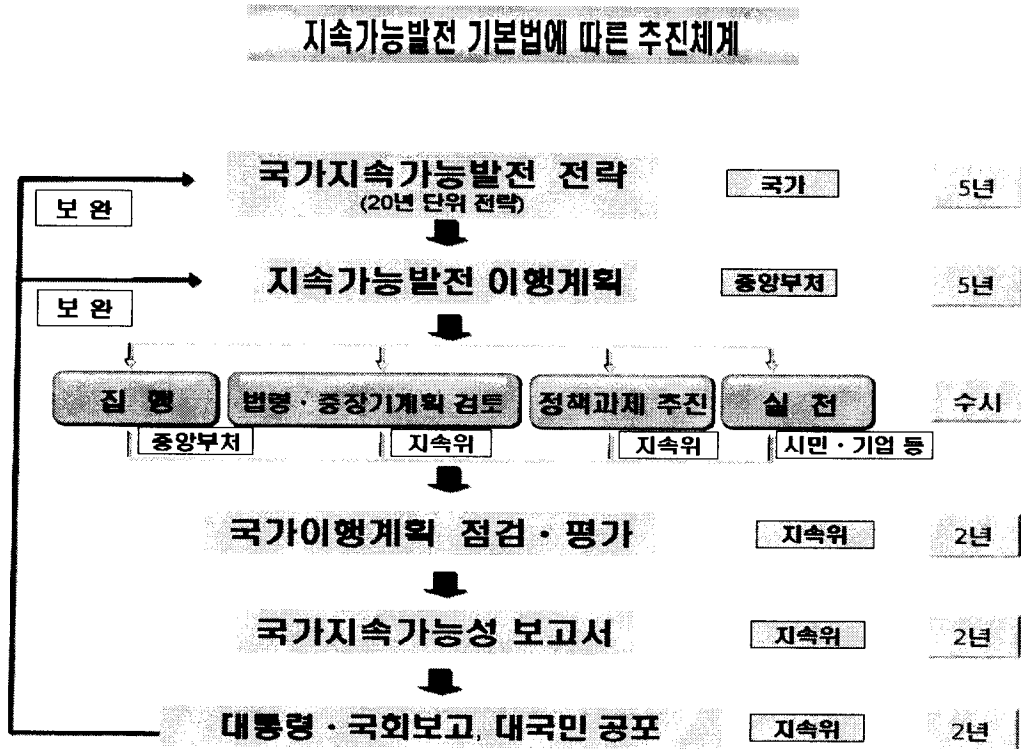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의사결정 프로세스 (2)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 추진체계상 지속위 역할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체계)



□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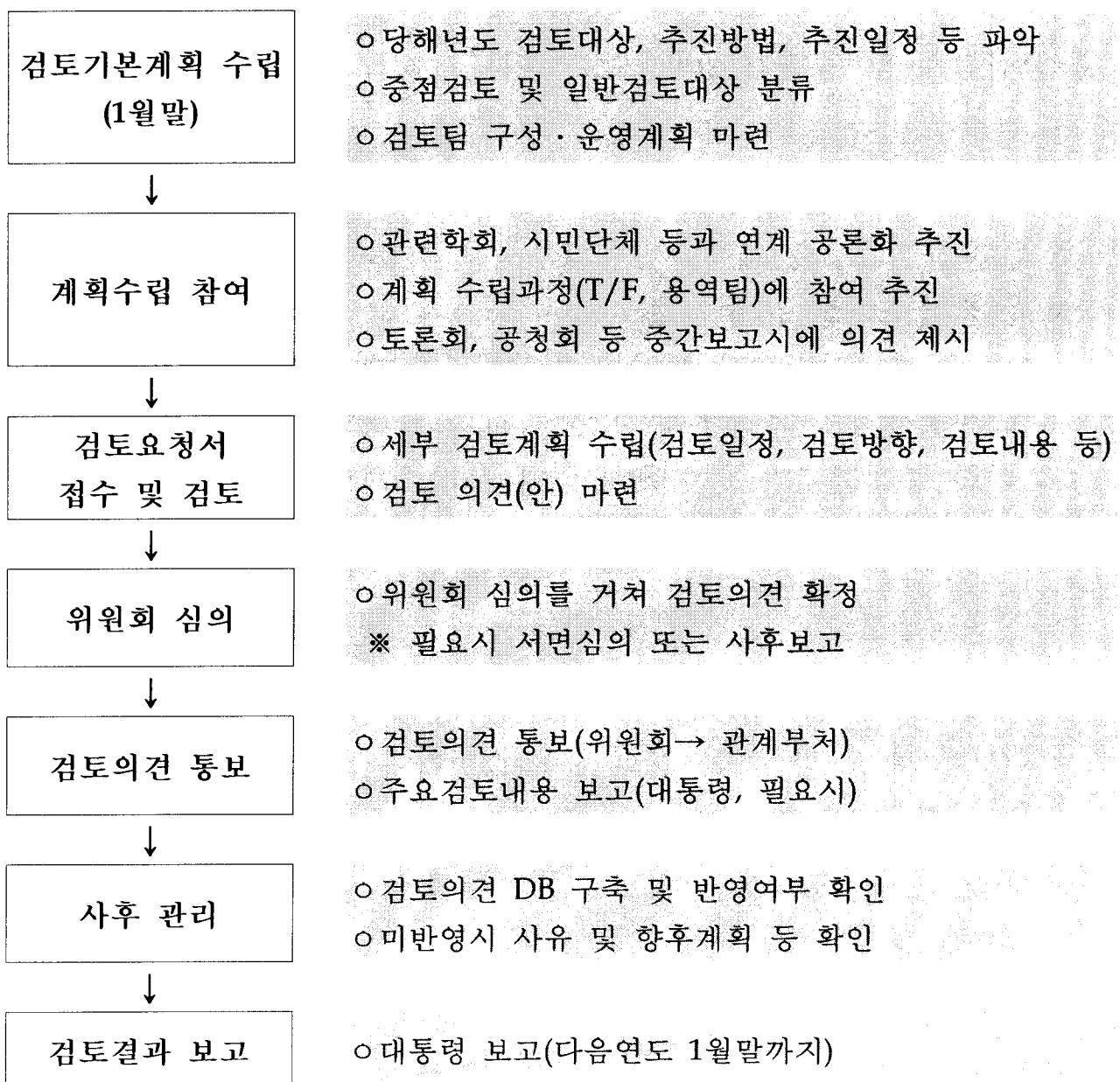


마. 중장기계획 검토

□ 목 적

- 국가 주요 중·장기계획에 대한 검토과정을 체계화하여 검토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검토대상 : 관계부처에서 수립하는 43개 주요 중·장기계획

□ 중·장기계획 검토 단계(절차)



□ 검토 단계별 주요 추진내용

1단계 : 검토기본계획 수립(~1월말)

1. 관계부처에 확인하여 당해연도 검토대상계획을 사전에 파악

- 계획의 주요내용, 수립 사유(기간종료, 계획 수정 등)
- 추진방법(용역사업, T/F구성, 자체수립 등), 추진일정 등
- 계획수립단계 참여가능 여부 및 방법 등

2. 중점검토 및 일반검토대상으로 분류

- 당해연도 검토대상을 계획의 성격 등에 따라 중점검토 및 일반검토대상으로 분류
- 중점검토대상은 계획수립단계부터 참여하여 심층검토 추진

※ 중점검토대상 분류기준

- 국토, 에너지 등 각 분야별 최상위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
- 국정과제보고 후속조치 또는 위원회 정책과제 관련 계획
- 기타 중점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획 등

3. 검토팀 구성·운영

- 검토대상별로 전문위원 및 기타 전문가 등으로 검토팀 구성
- 검토방향, 검토분야 및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 등 마련
- 전차계획에 대한 검토·분석 등을 실시하여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등 마련

※ 특히, 중점검토대상은 검토팀을 사전에 구성하고, 계획수립단계에 참여 추진

2단계 : 사전 참여(~협의요청)

○ 계획수립단계부터 참여

1. 관련학회, 시민단체 등과 연계, 공론화를 통한 의견 마련
 - 필요시 공청회 등 공론화를 통해 검토대상계획에 대하여 검토방향, 검토내용 및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에 마련
 - 마련된 의견을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계획 수립시에 반영 추진
 - ⇒ 특히, 중점검토대상에 대해서는 공론화 등을 통해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을 사전에 마련,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반영 추진
2. 계획수립 T/F(또는 용역팀)에 참여 추진
 - 계획수립을 위하여 관계부처에서 구성한 T/F 또는 연구용역팀에 관련분야 전문위원 등 참여 추진
3. 토론회, 보고회 등 중간보고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제시
 - 관계부처에서 관련기관,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마련한 토론회, 공청회 또는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여 의견 제시
 - 용역보고서 초안 등 계획(안)을 사전에 입수하여 검토
 - ⇒ 사전 참여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참여방안을 마련·추진

3단계 : 검토요청서 접수 및 검토(검토요청일부터 30일 까지)

1. 관계부처에서 검토요청서 세부 검토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 검토일정, 검토방향, 검토내용, 검토팀 운영 등
2. 검토과정에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 추진
3. 마련한 검토의견(안)을 본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의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서면심의 또는 사후보고
4.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의견을 관계부처에 통보(검토 요청일부터 30일 이내 통보)

4단계 : 사후 관리(검토의견 통보~)

1. 관계부처에 제출한 검토의견은 DB 구축 관리
 -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등
2. 검토의견에 대하여 반영여부와 미반영시 사유 확인 및 차기계획에 반영 등 향후 계획 확인
3. 주요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은 청와대 보고
 - 주요 의견은 청와대에 별도 보고하여 관계부처의 계획에 반영 추진

5단계 : 검토결과 보고

1. 당해연도 중장기계획 검토결과를 총괄 정리하여 대통령께 보고(다음해 1월말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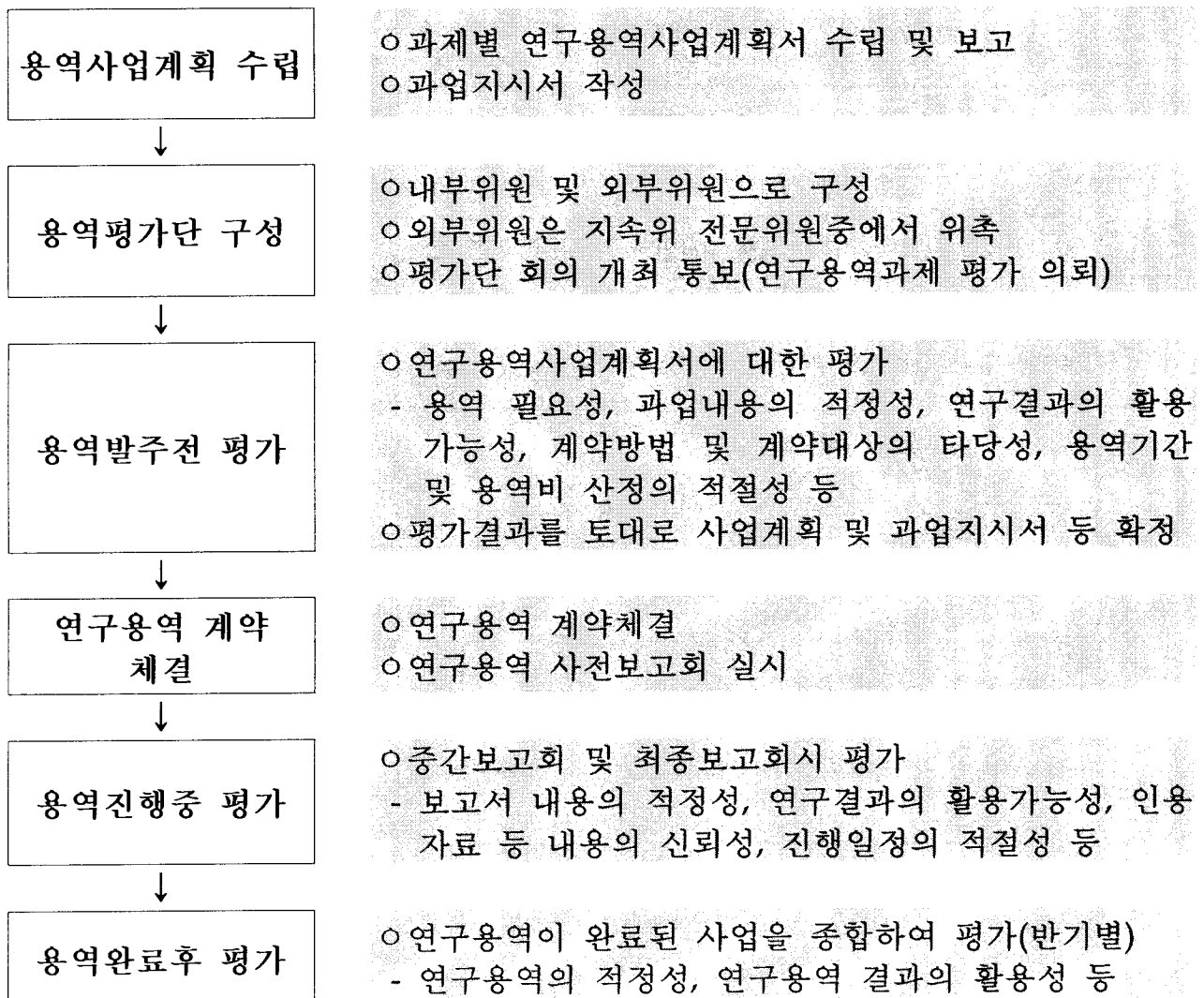
바. 연구용역사업 추진

□ 목 적

- 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평가단을 구성 및 운영

※ 근거 : 용역평가단 구성·운영 규정('05.7.11 제정,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예규)

□ 업무흐름



지속위 연구용역과제 추진 현황

연 도	용역명	수탁자	용역기간	계약액 (백만원)	계약방법
'01년도	소 계(2건)			42.6	
	○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을 위한 작업지침 작성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01.4.19 ~ 6.17	16.6	수의회약
	○ 주요정책 및 계획의 사전검토기준 및 방법에 관한 연구		'01.12.11 ~ '02.6.10	26	수의회약
'02년도	소 계(3건)			79.7	
	○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대응방안	(사)한국환경 안보연구소	'02.5.3 ~ 9.2	17	수의회약
	○ WSSD 이행계획에 대한 국가대응전략 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02.12.23 ~ '03.6.22	10	수의회약
	○ 국가지속가능 발전전략의 기본구상 연구	"	'02.12.26 ~ '03.6.25	52.7	
'03년도	소 계(3건)			64.7	
	○ 갈등해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사)한국행정학회	'03.11.27 ~ 12.26	29.9	수의회약
	○ 국가에너지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연구	서경대학교	'03.12.8 ~ '04.2.7	29.8	수의회약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사)한국도시연구소	'03.12.23 ~ '04.1.22	5	수의회약
'04년도	소 계(7건)			94.7	
	○ 갈등예방 및 해결프로세스 Mapping을 위한 연구	한국통신대학교	04.3.19 ~ 4.18	5	수의회약
	○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안 작성을 위한 연구	충남대학교	04.3.22 ~ 5.21	5	수의회약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홈페이지개편	블루소프트	04.4.23 ~ 5.3	5.7	수의회약
	○ 지속가능한 국가물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간국대학교	04.6.4 ~ 8.3	29.5	수의회약
	○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연구	성공회대학교	04.7.13 ~ 05.4.12	24.5	수의회약
	○ 다기준의사결정방법을 이용한 전원계획평가	경북대학교	04.11.5 ~ 05.2.4	10	수의회약
	○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04.11.25 ~ 05.2.24	15	수의회약

연 도	용역명	수탁자	용역기간	계약액 (백만원)	계약방법
'05년도	소 계(9건)			227.6	
	○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05-14)을 위한 국가실행전략 개발연구	청주교육대 (이선경교수)	05.3.10 ~ 05.6.9	19	수의회약
	○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 준비를 위한 연구	환경사회연구소 (구도완소장)	05.3.30 ~ 05.5.29	11	수의회약
	○ 한탄강댐 갈등조정 과정분석을 통한 공공갈등해결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대 (이선우교수)	05.2.18 ~ 05.5.17	29.5	수의회약
	○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주)알엔에스넷 (정현영)	05.7.15 ~ 05.10.14	29	수의회약
	○ 자원순환형 산업정책연구	(사)한국환경경영 학회 (김인숙)	05.11.9 ~ 06.5.8	29.9	수의회약
	○ 국가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윤서성)	05.11.23 ~ 06.4.22	29.4	수의회약
	○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의제21 제작성 지침개발	(사)광주시민환경 연구소 (윤장현)	05.11.8 ~ 06.2.7	20	수의회약
	○ 공공갈등 사례분석을 통한 표준 갈등사례 분석 모델개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영인)	05.11.23 ~ 06.3.22	29.9	수의회약
	○ 환경관련 일자리 창출 방안	(사)환경정의 (원경선)	05.11.8 ~ 06.3.7	29.9	수의회약
'06년도	소 계(6건)			176.25	
	○ 어린이 건강과 지속가능한 사회	(주)환경과 건강 (전상일)	'06.7.11 ~ '06.11.10	29.7	수의회약
	○ 사용후핵연료 관리체계 및 공론화방안 연구	(사)위험통제학회 (황주호)	'06.8.21 ~ '07.2.22	29.78	수의회약
	○ 에너지가격체계 적정화 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정한경)	'06.12.8 ~ '07.4.7	28.4	수의회약
	○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및 운영방안	인하대학교 (변병설)	'06.12.20 ~ '07.5.19	29.77	수의회약
	○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정책 현황점검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신재생 에너지학회 (송진수 예기원 책임연)	'06.12.22 ~ '07.4.21	29	수의회약
	○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진단 및 기본계획 수립지침 작성 연구	(사)빛고을미래 사회연구원 (김병완 광주대교수)	'06.12.27 ~ '07.5.26	29.6	수의회약

연 도	용역명	수탁자	용역기간	계약액 (백만원)	계약방법
'07년도	소 계(6건)			179.684	
	삶의 질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무원 의식 조사	(주)월드리서치 (김상범)	'07.4.24 ~ '07.7.3	24	수의계약
	삶의 질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전국민 의식 조사	(주)월드리서치 (김상범)	'07.4.24 ~ '07.7.3	25	수의계약
	지방 지속가능발전 진단과 컨설팅 및 시·도 공무원 역량강화 실시방안 연구	(사)빛고을미래 사회연구원 (김병완 광주대교수)	'07.8.29 ~ '08.2.28	41	수의계약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연구	(주)그린리서치 (강미희)	'07.9.5 ~ '08.1.4	32.934	수의계약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본 골프장 건설의 경제· 사회적 영향분석 및 공급정책 방향 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07.11.8 ~ '08.5.7	28.75	수의계약
	법령 및 중장기 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07.11.12 ~ '08.2.11	28	수의계약

Ⅱ. 지속위 주요업무 추진성과

1. 주요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가. 물관리 정책

나. 연안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다. 개발과 보전의 통합적 국토관리체계 구축방안

라. 교통관리정책

마. 국토통합정보시스템

바.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

사.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아. 에너지기본법 관련

자. 대외원조정책(ODA) 개선

차. 어린이 건강대책 수립

카. 지속가능한 국가비전 설정을 위한 환경정책의 미래전략

<향후 과제>

가. 기후변화대책

나. 지속가능한 관광대책

다. 자원절약형 국토관리정책

라. 유해화학물질 통합관리체계 구축

마.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2.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구축

- 가.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
- 나.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 다. 지방의제21 제도화 관련 추진경과
- 라. 지방 지속가능발전 로드맵 수립
- 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및 이행체계 구축
- 바.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 시범적용
- 사. 지속가능발전 국민·공무원 인식조사

3. 갈등관리 및 현안조정

- 가. 갈등관리체계 구축
- 나.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추진 및 후속
- 다. 갈등관리 교육 포럼
- 라. 갈등조정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마. 한탄강댐 갈등조정프로세스
- 바. 장항산단 갯벌매립정책
- 사.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정관련 지속가능성 제고
- 아. 새만금 갯벌매립 관련

4. 중장기 행정계획 검토

계 획 명	의견회신	주관부처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02~2011)	'02. 10	건교부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2~2011)	'02. 12	산자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종합시책	'03. 2	산자부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	'03. 2	건교부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04~'10) 변경	'04. 5. 6	해양수산부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정비기본계획('04~'16)	'04. 6.30	건설교통부
제3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04~'08)	'04. 9.21	산업자원부
제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04~'17)	'04. 12.23	산업자원부
도로정비기본계획('06~'10) 변경	'05. 4.26	건설교통부
국가환경종합계획('06~'15)	'05. 7. 4	환경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05~'20)	'05. 8.11	건설교통부
중부내륙광역권 지정 및 개발사업계획('05~'20)	'05. 8.11	건설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06. 1.24	건설교통부
해양환경보전 종합대책	'06. 5.19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기본계획	'06. 5.25	건설교통부
환경교육발전계획	'06. 8. 8	환경부
전력수급기본계획	'06. 10.4	산업자원부
댐건설장기계획	'07. 5. 7	건설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기본계획	'07. 5. 3	건설교통부
국가기간망교통계획	'07. 8.27	건설교통부
지하수기본계획	'07. 8.21	건설교통부
산림기본계획	'07. 9.27	농림부
습지보전기본계획	'07. 12.4	환경부

5.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가. 지속가능발전 교육

나. 지속가능발전 주간

다. 지속가능발전 담당관 워크숍

라.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 대비 시·도 공무원 워크숍

마.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대비 자문활동

바. 동북아시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워크숍 개최

사. 새천년개발목표(MDGs) 대한민국 보고서 작성

아.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UN 회의 등

자. UN 지속가능발전 센터 유치관련

1. 주요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가. 물관리 정책

나. 연안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다. 개발과 보전의 통합적 국토관리체계 구축방안

라. 교통관리정책

마. 국토통합정보시스템

바.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

사.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아. 에너지기본법 관련

자. 대외원조정책(ODA) 개선

차. 어린이 건강대책 수립

카. 지속가능한 국가비전 설정을 위한 환경정책의 미래전략

<향후 과제>

가. 기후변화대책

나. 지속가능한 관광대책

다. 자원절약형 국토관리정책

라. 유해화학물질 통합관리체계 구축

마.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가. 물관리 정책

□ 검토배경

- 댐건설 등 공급중심과 수량·수질로 이원화된 물관리체계의 비효율성에 대한 논쟁이 장기간 지속
- “지속가능한 물관리체계 구축”을 100대 국정과제중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연관리 체계 구축’의 한 분야로 추진
- 대통령님께서 물관리체계 개선과 관련, 부처통폐합·부처간 협력시스템 구축·차기정부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지시('05.2.17 국정과제조정회의)

□ 추진경과 및 현재 추진현황

- 지속가능위에 ‘물관리정책연구팀(전문가·시민단체 18명)’을 구성('04.2)
 - 연구팀에서 작성한 정책과제에 대해 부처협의(5회), 시민환경단체와 토론회(4회) 개최
- 물관리 체계개편(안)에 대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협의('05.1~4)
- 정책실에서 ‘물관리체계 개선(안)’중 상수도관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부처실무협의('05.6~7, 3회, 감사원·환경부·건교부 등) 및 장관회의 개최('05.8.19, 환경부·건교부장관·지속가능위 위원장 참석)
- 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상수도 관리체계 개선 방안 논의('05.10.12), 부처간 입장차이로 재협의키로 결정
-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 국정과제회의 보고('05. 10.19)
 - 지속위는 물관리체계 일원화 등 대안 제시
 - 대통령님께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와 물기본법 제정 지시

- 부처간 갈등으로 물기본법 제정논의 교착
 - 국무조정실에서 물관리기본법 초안 마련, 환경부·건교부 공동입법으로 추진하도록 양 부처에 통보(2006.3)
- 지속위주관으로 물관리 일원화 국정과제회의 보고('06.5월)
 - VIP께서 물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각종 현안을 조정하고, 위원회의 법적 근거는 '물관리기본법' 등으로 할 것을 지시
- 법안 국회제출('06.10.27) 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계류 중

□ 주요내용

현행 물관리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1) 물수급 예측과 수자원장기계획의 보완

- 장기 물수요예측치(물부족 여부)에 대한 논란 지속
- 정확한 물수요 예측을 위한 합리적인 논의구조 구축

2) 국가종합수요관리계획 수립

- 국가차원의 물수요관리 계획 부재
- '물수요관리 10개년 국가종합계획' 수립

3) 댐개발에서 댐관리로 정책 전환

- 댐건설 계획이 주민반대 등으로 대부분 보류 상태
- 댐건설에서 댐관리로 정책 전환

4) 선진적인 수질관리정책 정착

- 하천·호소 등 수질개선 미흡
- 수질목표 재조정 및 오염총량제의 추진기반 강화

5) 음용수 상습 부족지역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 도·농간 상수도보급 불균형 심각 및 음용수 부족 지역 상존
- 상습 물부족 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 및 도·농간 불균형 해소
- 간이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도 광역상수도과 같이 국고지원 확대로 도·농간 형평성 제고

6) 지하수 公概念 도입을 통한 관리 강화

- 지하수 난개발과 폐공 방치로 오염심각
- 지하수에 공개념 도입 등 관리강화

7) 홍수총량관리 도입 등 홍수대책의 다양화

- 홍수·가뭄 등 물재해 대처에 미흡
- 유역단위 홍수대책의 다양화
- 사전예방적인 홍수방어 개념의 도입

물관리체계 개선 방안

- 물관리체계 이원화 및 중복에 따른 비효율 발생
 - 하천을 부문별로 5개 부처 및 행정구역별로 분산 관리하고 있어 효율적 수자원 및 하천관리에 어려움
 - 광역상수도(건교부·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환경부·자치단체)로 이원화 되어 있어 중복투자로 인한 시설과잉 문제 발생
- 지속위의 상수도 관리체계 개선 방안

① 제1안 : 상수도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

- 광역상수도정비기본계획(건교부), 지방상수도정비기본계획(환경부·자치단체)의 수립주체를 환경부로 통합
-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할 수 있고 물수요 관리에 유리하나, 수도 공급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
- 건교부·환경부·수자원공사의 조직은 변화가 없으나 수자원공사의 수도사업에 대한 감독권한 조정 필요

② 제2안 : ‘(가칭)수도정책조정위원회’ 신설

- 환경부·건교부간 ‘(가칭)수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 기간 운영 후, 일원화 여부를 판단
- 비상설기구로 운영시 조직신설이 없는 반면, 각 계획의 수립 및 인가 권한이 분리되어 있어 의견조정에 한계 우려

※ 국무조정실의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와 ‘수질개선기획단’이 있었으나, 조정기능 미흡 등으로 폐지(‘97~’05년)

※ 국무조정실의 조정안(‘05.10.12 국정현안조정회의)

- 이원화된 상수도계획(생활용수)을 환경부로 통합 일원화하되, 사업인가권(광역-건교부, 지방-환경부)은 현행대로 유지

- 통합계획에 따라 인가가 이루어지도록 통합계획의 구속력 및 실효성 강화

⇒ 환경부, 건교부의 입장차이로 국조실산하에 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입장정리

□ 향후 추진계획

- 국회계류중인 물 관리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노력 필요
- 환경부, 건교부의 공동협조를 통한 법통과 노력 필요

<첨부자료>

1. 지속가능한 물 관리 정책 보고
2.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제 개편

나. 연안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 검토배경

- 육상 경제활동과 해양보전 사이의 갈등, 해양 공간 내 보전과 이용·개발의 부조화, 연안 해양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갈등 등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 배타적경제수역(EEZ) 및 대륙붕에서의 해양자원 확보 및 국제적인 영토분쟁에 대처할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 필요
- 이를 위해 참여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연관리 체계 구축'의 해양 분야 과제로 선정

□ 추진경과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지속위)에 해양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연구팀을 구성('04.7, 24명)
- 관련부처(통일부·국방부·농림부·산자부·환경부·해수부)와 협의 및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수렴 실시

□ 주요내용

- 자연해안·서식지의 순손실(純損失)방지제도 도입
 - 전국의 자연해안선 길이 및 서식지 면적을 정밀 조사한 후 시·도별 보전 목표를 설정하여 추가 손실을 방지하는 방식
- 발전소 온배수 관리
 - 지역주민과의 갈등 최소화, 발전소 인근 연안의 해양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발전소 온배수 배출기준 제정 추진
 - 발전소 냉각 방식개선 및 온배수 이용방식 다양화(양식장, 해양목장, 시설하우스 등)

- 배출허가갱신제도 도입 등 연안해역 수질환경관리 체제 개선
 -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배출기준 강화와 같은 기존의 방식으로 수질 관리에 한계가 있는 특별관리해역에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 처리기술의 개발, 수용수체의 여건변화 등에 맞춰 지속적으로 오염 부하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시설의 허가를 주기적으로 갱신(10년)
 - 지속가능한 하구보호를 위한 “하구관리체계 구축”
 - 국가차원의 대단위 하구개발 완화 및 하구습지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법 개정
 - 기 건설된 하구둑 운영 및 구조개선 등 국가 차원의 하구복원정책 추진 및 하구 관리를 위한 하구환경보호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연안·해양보호구역 통합관리 추진체계 구축
 - 환경부·해수부 등 4개 부처 8개 법률로 지정되고 있는 연안 해양 보호구역 통합관리를 위한 관련 부처간 협의기구 구성
 -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우선순위 설정기준 마련, 부처별 보호구역 종합 평가 및 사후 관리 등 실시
 - 동북아시아 연안 해양관리 이니셔티브 확보
 - 배타적 경제수역(EEZ) 및 대륙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해양 조사 강화 및 해양과학기술력 강화
 - 서해 접경연안(한강하구~백령도) 국제해양평화공원 추진
 - 서해접경연안을 국제평화공원으로 지정하고, 남북한 서해접경 연안환경 및 자원공동조사 추진
 - 남북한 직접협력사업 보다는 유네스코·유엔개발계획 등 국제기구의 협력과 지원을 통한 우회적 접근방식 채택
- ※ 홍해의 북단 아카바만에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국제해양 평화공원”지정('96년)

□ 향후 추진계획

- 주관부처별로 해당정책을 도입, 추진 중에 있음
 - 해수부, 환경부 등 해당정책 관련 연구용역 등 제도화 추진
 - 온배수배출 관리방안 수립 관련 해수부는 3년간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08년부터 정책도입 방안 관계부처와 협의 중

<첨부자료>

1. 연안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다. 개발과 보전의 통합적 국토관리체계 구축방안

□ 배경

- 그동안 경제발전에 중점을 두고 국토·토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토 불균형 심화 및 난개발로 국토환경 훼손
- 이에 따라 참여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연관리체계 구축」을 추진
 - 연안·해양, 물관리, 교통, 국토통합정보시스템 등을 거쳐 개발과 보전의 통합적 국토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보고

□ 추진경과 및 현재 추진현황

-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선언 관련 국정과제회의시 대통령께서 개발과 보전의 통합성 강화와 중요성을 언급하심에 따라 동과제를 대통령 지시사항('05.6.1)으로 추진
- 관련 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약 30여 차례의 발제 및 토론과정과 부처협의를 거쳐 보고서 작성('06.6)
- 국정과제회의 보고('06.7.13)
- 해당부처에서 과제별로 제도개선 추진중('06.7~)

□ 주요 내용

①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강화

- 국토계획에 대응하는 환경계획체계 구축
 -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과정상 관계부처간 협의 조정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침 공동마련 및 협의기구 운영

-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의 환경부문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에 대응하는 환경관리계획 및 생태녹지계획 신설 검토

○ 개발관련 계획·사업의 환경성 제고

- 개발계획의 환경계획 수립 의무화 및 사업과정을 환경전문가가 진행·조정하는 MEP(Master Environmental Planner) 제도 도입
- 개발행위 허가시 환경관리계획 확인 의무화 및 철도·댐·항만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 계획·설계 지침을 마련

○ 국토환경조사 및 계획수립기반 개선

- 개별 시행중인 국토 및 환경조사 항목을 체계화하고 조사결과를 공동 활용

② 환경용량과 지역환경 여건을 고려한 국토관리기반 구축

- 녹지, 대기질 등 환경용량의 저하가 없도록 개발 범위를 조정하는 '환경용량순손실방지' 원칙 확립

- 자연자원 총량관리제 도입 및 오염배출 총량관리제 단계적 확대

○ 지역의 개발가능용량 등 환경여건을 고려한 관리체계 구축

- 개발가능용량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며 지자체의 도시 및 환경계획 작성시 용량을 명시
- 연안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연안용도구역제를 도입하고 녹지를 기반 시설로 확보하기 위한 녹색기반시설제도 도입을 검토

○ 국토보전을 위한 인센티브 등 지원기반 강화

-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 개발 유도지역의 개발권을 부여하는 개발권양도제 도입을 검토

- 양호한 임상 등의 토지보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지방정부가 체결하는 녹지활용계약제, 녹지계획제 등의 비과세범위 확대

③ 국토관리의 지속가능 평가체계 마련

- 지속가능 국토관리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수단으로 활용
- 국토개발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지자체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제 도입
-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단위 개발사업에 대한 통합적, 누적적 환경성을 검토하는 '지역단위 환경성 검토제도' 도입
- 개발관련 계획 및 사업에 대한 환경성 평가제도 개선

④ 국토·환경관리 거버넌스 구축

- 국토정책과 환경정책의 정책간 통합조정체계 구축을 위해 국토와 환경행정 담당부처의 기능 재편 및 통합방안을 검토
- 기능재편 및 통합방안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 개발관련 각종 심의기구에 주민·시민단체 참여확대
 -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등 개발관련 주요 심의기구에 주민 및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
- 정부와 시민, 기업간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협치기구로서의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제고 등 발전방안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추진이 필요한 사항 : 없음

※ 부처별 추진체계 및 일정은 지속 점검 필요

<첨부자료>

1. 개발과 보전의 통합적 국토관리체계 구축방안

라. 교통관리정책

□ 배경

- 도로중심 교통정책으로 개인 승용차 증가에 따라 혼잡비용, 안전사고, 환경오염이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녹색교통으로의 전환 필요
- 참여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연 관리체계 구축」의 한 분야로 추진

□ 추진 경과 및 현재 추진현황

- 지속위 내에 대중교통·철도·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 단체 등 20명으로 연구팀 구성('04.6월)
- 30여 차례의 발제 및 토론을 거쳐 전반적인 교통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분야별 추진과제 선정('05.2월)
- 녹색교통 등 시민단체와 토론회 2회, 관계부처 4차례 협의 등을 통해 보고서 초안 마련('05.5월)
- '05.6.4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서 교통관련 대통령이 언급한 취지를 보완하여 보고서 최종안 마련('05.8월)
- 총리주재 국정과제회의 보고('05.11.2)
- 해당 부처별 과제 이행중

※ '07.2월 진행사항 점검결과 정상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주요 내용

① 도로·철도간 시설투자 형평성 제고

- 수송수단간 효율적 수송분담구조 형성을 위한 「국가기간교통망 1차계획」 수정·보완
 - 지역간 중장거리 교통은 도로에 비해 에너지 효율적이고 수송 효율이 높으며 친환경·환경적인 철도 위주로 확충
- SOC 투자의 교통시설간 투자·지원 형평성 제고
 - 수송수단의 재원여건,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고속도로, 공항 및 고속 철도 건설 국고지원비율 상향조정 검토

②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 활성화

- 지자체별 최적의 대중교통수단 선택 유도방안 마련
 - 도시형태 등 도시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중교통수단의 최적선택을 유도하고 정부지원을 결정하는 기준 마련
- 행정중심도시, 혁신도시 등 신도시 건설시 대중교통중심 도시개발 추진
- 차고지 증명제 도입 등 지구단위 교통환경개선 추진
- 보행·자전거도로 확보 및 폐도로·폐선로 활용방안 수립
- 저공해 차량 의무구입 확대 및 친환경 교통시설 건설지침 마련

③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 교통약자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이동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 수평 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 도입 확대
- 보도폭 및 경사, 횡단보도앞 보도경계 정비 등 보행환경 개선
-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강화

④ 교통안전 강화

- 위험운전자 및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리기준 합리화
- 음주·과속·무면허 운전 등에 대한 삼진아웃제 도입 및 무인장비 단속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 교차로 다기능 장비 등 교통안전시설 확대 설치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추진이 필요한 사항 : 없음

※ 부처별 추진체계 및 일정은 지속 점검 필요

<첨부자료>

1.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마. 국토통합정보시스템

□ 배경

- 대통령께서 정부 주요 중장기 계획에 대해 사전환경성검토가 가능하도록 전 국토의 토지이용계획을 세분화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안 검토할 것을 지시('04.12.30)
 - 또한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각종 개발사업들이 이를 토대로 추진되도록 할 것임을 밝히고('05.6.4, 지속가능발전비전 선언)
 - 향후 사업의 계속성의 제도적 담보를 위해 전자정부계획에 포함시켜 진행토록 지시('06.2.28, E-지원 보고시)
- 현재 국민들이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의 관련 규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며, 이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고 있음
 - 따라서 각 부처의 국토이용 및 규제정보를 상호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필요

□ 추진경과 및 현재 추진현황

- 지속가능위에 국토정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05.2, 12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방안(안) 마련
 - 관련 5개 부처(행자부·농림부·환경부·건교부·산림청)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총 6회), 시민사회단체 의견 수렴(2회) 실시
- 정책실에서 소요예산 지원방안 및 총괄 관리부처 선정을 위한 부처 협의('05.9.15, 12.1, 사회정책비서관·혁신관리수석 주재)
- 전자정부계획 포함을 위해 추가로 관련 부처 협의(4회) 실시
- 국정과제 서면보고('06.5.9)
- 부처별 과제 이행중('06.5~)

□ 주요 내용

① 부처별 토지이용·보전 정보시스템 통합 추진

- 현재 7개 부처에서 개발·운영중인 10개 시스템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통합하여 전자정부사업으로 추진하여 수요자에게 일괄 서비스제공 체계 구축

② 통합 대상 및 절차

-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주축으로 각 부처의 토지이용·보전 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 및 전자정부사업 포함 < 1단계 : 2007년까지 >

- 개별 부처의 국토관련 정보시스템은 소관부처가 계속 유지·관리하고 그 최종 정보만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전자정부사업으로 추진

- 부처별 연계대상 정보시스템

- 건교부 토지종합정보망, 행자부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통합하여, 자치단체로 확대·설치('06년)
- 농림부의 농지종합정보시스템, 산림청의 산지보전정보시스템, 문화재청의 문화재 기본지리정보체계는 1/5,000 축척으로 전환하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연계('05년~'08년)
-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및 국토환경성평가지도(1/25,000)를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개략적인 보전용도 정보를 우선 제공('06년)

- 현행 이용·보전용도 정보의 개선 및 확대 < 2단계 : 2011년까지 >

- 토지이용에 따른 행위제한 관련 정보 개선

- 필지별 용도지역·구역 등 단순한 정보제공에서 지역·구역별 행위제한 내용 및 개발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이용절차 등을 상세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 보전(생태·산림·문화재 등) 관련 정보 개선 및 확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법적으로 지적 고시하여야 하는

문화재지정보호구역, 보전용도지역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표준 도면을 이용하여 '08년까지 구축 완료

- 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아니나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중요한 정보로 사용되고 있는 생태자연도·산림입지도·임상도(1/25,000)를 1/5,000의 상세 도면으로 재작성

○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3단계 : 2011년 완료 >

- 환경, 산림, 문화재지정보호구역 등 보전용도 정보체계를 타 정보 체계와 연계·활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발전된 단계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통합하여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은 신규로 구축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확대·발전시키는 것으로서, 관련 정보는 각 부처에서 생산·연계·관리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추진이 필요한 사항 : 없음

※ 부처별 추진체계 및 일정은 지속 점검 필요

<첨부자료>

1. 국토통합 정보시스템 구축방안

바.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

□ 배경

- 골프장 공급부족 해소와 규제합리화를 위한 규제개선(안)을 국무조정실에서 발표('04.9)
-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심각한 환경정책의 후퇴로 판단하여 문제 제기
- 대통령님께서 개선안의 검토를 지시('04.11.3 제5회 국정과제조정회의)

- 골프장을 건설해도 괜찮은 곳은 건설하고, 만들어서는 안 될 곳은 지켜나가면서 상호 수용이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생태계 훼손이 심한 산지보다는 평지를 이용하면 부작용도 적고, 부가적인 레저산업도 생길 수 있음

□ 추진경과 및 현재 추진현황

- '04.11 : 관련전문가 등 11명으로 검토팀 구성·운영(10회 개최)
- '04.11~12 : 분야별 전문가, 환경단체 의견수렴 및 초안 마련
- '05.1~3 :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림청, 경제정책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과 협의
- '05.4.1 : 이지원으로 대통령께 서면보고
 - 26개 개선사항 중 22개는 국조실의 원안대로, 4개는 협의·수정하여 추진
 - * 보전산지 편입비율의 차등적용 10%축소, 5부능선 전용제한기준 존치, 지방의회 의견청취 유지, 유희매립지의 목적변경 등 4개항 협의·수정
- '05.4.2 : 대통령, 총리실과 협의후 제도화 추진지시
- '05.4.14 : 지속위, 국무조정실과 후속대책 추진협의 및 이관
 - * 국무조정실에서 28개의 세부 항목으로 추진 카드를 작성하여 후속 조치 점검

<참고> 추가적인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 추진현황

- '07.1 : 국조실, 2차 건설규제 개선 추진 (한명숙 총리 중단지시)
- '07.4 : 국조실, 2차 건설규제 개선 추진 (한덕수 총리 추진지시)
- * 쟁점이 많은 입지규제는 완화하지 않고, 절차규제 개선

□ 주요내용

- 총 26개 개선사항 중 절차규제 개선 등 22개 항목은 국무조정실의 원래(안)대로 협의
- 골프장 건설시 보전산지 편입비율과 산지 5부능선 전용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함
- 보전산지 편입비율의 차등적용 상한을 10% 축소
- ※ 10% 축소로 산지가 더 개발될 것으로 보이는 지자체의 수는 80개 (30-80%)에서 40개(30-70%)로 줄어듦

구분	현행	국무조정실	위원회 협의 결과
보전산지 편입	보전산지 편입비율 50%	편입비율 차등적용 30%~80%	편입비율 차등적용 30%~70%
산지전용 제한기준	산지 5부능선 이상	산자락 하단부에서 300m이상	산지 5부능선 이상 단, 예외규정 인정

- 산지전용은 현행대로 산지 5부능선 전용제한 기준(산림청고시)을 그대로 두되, 국무조정실 개선(안)인 ‘산자락 하단부에서 300미터 미만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규정을 두어 가능하도록 함 (단, 이때 예외규정은 지속가능발전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기로 함. 이는 300미터 미만 전용의 경우 대부분의 야산은 개발대상이 되기 때문임)
- 지방의회가 골프장 승인을 지연시키는 것을 개선하고자 했던 ‘지방의회 의견청취 삭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가 현재 검토 중인 ‘도시계획변경시 지방의회 동의절차 도입’ 결정 후에 ‘주민의견 청취기간(14일) 중 지방의회도 의견을 제출’ 하는 것으로 추후에 협의하기로 함
- 매립목적 변경 대상 유희매립지는 중간 조사결과 해당지가 없어 (국무조정실, '05.3) 대상 유희매립지가 생길 경우 다시 협의하기로 함

<첨부자료>

1.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안 검토 및 보고서

사.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1) 1차, 2차 보고

□ 배경 및 추진경과

- 장기적인 에너지정책에 대한 총괄적 검토를 위한 ‘논의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지시(수석보좌관 회의, ‘03.9.29)
 - 대통령님의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 에너지정책 연구팀을 발족(‘03.10.23)하여 그동안의 논의내용을 정리하여 33차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03.12.24)
- *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5대과제 보고 : 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 안정공급, 최적 에너지믹스,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후변화협약 대응
- 동 회의결과, 대통령님은 2만불시대의 에너지 수급구조, 효과적인 수요관리방안, 원전문제 검토 및 대안, 에너지정책 공론화방안 등에 대한 연구검토를 지시
 - 지속위는 ‘2020 에너지예측분석팀’을 구성, 총 17차례의 회의(‘04.29-6.16)를 거쳐 48차 국정과제회의에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전력정책중심’을 보고(‘04.6.24)
- * 보고내용 : 원전적정비중,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 에너지정책 공론화 방안 등
 - ⇒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11년 5%) 및 에너지수요관리 목표(‘15년 10%)의 상향추진 등 성과가 있었으나, 장기전원구성방안 등에 대한 재검토 지시

□ 주요내용

1. 제33차 국정과제 회의 보고

① 에너지 수요관리(이용효율화)

- 기술혁신, 소비절약, 가격정책 등을 통한 에너지 소비 절감
 - 에너지, 산업, 수송, 건설, 도시정책 등 관련 정책간 연계강화
 - 이용효율화 및 친환경성 촉진을 위한 합리적인 가격체계와 세제 개편검토
 - 기술혁신을 통한 효율화 제고

② 에너지 안정공급

- 동북아 협력 등을 통한 에너지 확보
 - 비축 및 저장시설 확충 등 비상시 대응능력 강화
 - 전력설비 등 에너지설비의 지속적 확충
 - 해외자원개발 및 국내 대륙붕개발 활성화를 통한 자주에너지 확대
 -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구성 추진 등 동북아 에너지협력 주도

③ 최적에너지 믹스 전략의 추진

- 석유, 가스, 원자력 등 에너지원 비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에너지 다원화시책을 견지하여 국제에너지 시장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 자원안보, 경제성, 환경친화성, 기술가용성을 조화하는 최적 에너지 믹스 방안을 마련
 -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원전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 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④ 신재생에너지 확대

- 기술혁신과 투자여건조성을 통한 환경친화적 에너지 보급확대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 관련법령 및 제도의 정비

⑤ 기후변화협약 대응

- 환경보전과 기술발전의 기회로 활용
 - 기후변화 협약 대응체계 구축 및 협상능력 강화
 - 에너지 소비절약 및 이용효율화 시책강화
 -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저탄소 에너지원 확충방안 강구

2. 제48차 국정과제 회의 보고

- 수요관리 : 2015년 기준 1차에너지의 10% 절감목표 설정과 추진
 - ‘에너지 수요관리 로드맵’ 수립(가격정책, 조직과 예산확보 방안 포함)
- 신재생에너지 : 2011년 총에너지의 5% 목표 이행
 - 조직혁신, 기술혁신, 제도강화, 재원조달 방안 강구
- 중장기 발전시설 계획의 재검토 : 원전설비 확충계획 축소조정
 - 수요관리 강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등을 통해 2015년 원전 비중을 적정수준(발전량 40%)으로 유지
- 에너지정책 공론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 장기 에너지정책(원전 포함) 수립, 평가, 모니터링

□ 향후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장기전원구성 방안 등은 3차보고 추진('08.1))

<첨부자료>

1. 38회 국정과제회의
2. 48회 국정과제회의
3. 48회 국정과제회의결과
4. 국가에너지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연구

2) 3차 보고

□ 배경

- 제48차 국정과제회의('04.6.24)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보고시 대통령님께서 '장기전원구성방안' 종합적 재검토, 구체적 정책방안 도출을 지시

* 보고내용 : 에너지 수요관리 목표('15년 10%)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11년 5%) 설정, 원전비중 축소 및 에너지 정책 공론화방안 보고

- '05년 지속위의 전원구성(안)의 부처협의 무산 후, '06.1월 원전 적정 비중문제는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확대비서관 회의)

- 지속위는 장기전원구성 논의를 위한 사전준비로 4개의 연구과제 수행

* 산자부는 전원구성의 객관적 근거확보를 위한 「원전경제성평가 연구」 수행

○ 현황 및 문제점

- '07년도 수립예정이었던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및 원전경제성 평가연구(산자부) 등의 지연으로 '장기전원구성' 논의 및 제안이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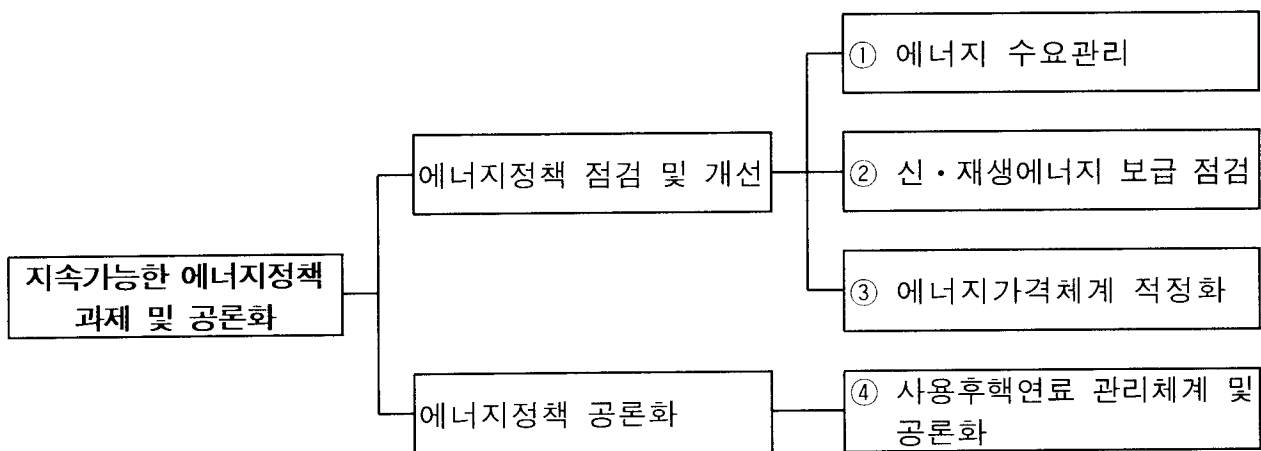
- 따라서, 지속위 연구결과를 별도로 대통령님께 서면보고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정책 과제를 종결

□ 추진경과 및 현재 추진현황

○ 지속위 주요결정 프로세스

- '07년 상반기까지 4개 T/F 팀을 구성하여 지시사항 관련된 에너지 정책연구 수행을 완료하고, 정책점검 연구와 병행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에너지정책 공론화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추진과제 및 체계>



-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과제” 위원장님 보고 ('08.1.25)

○ 청와대 경과보고

- 사회정책수석 및 정책실장 협조('08.1.25)후 대통령님께 서면보고(08.2월)

○ 각 부처 주요협의 경과(쟁점포함)

- '07년 11월부터 산자부 및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실시하였으나, 원활한 조정을 이루지 못한 상태로 지속위의 연구결과만을 보고

주요쟁점	부처의견	지속위 의견
① 효율향상이 강화된 에너지수요 관리정책	○ 효율향상시책은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현실적 대안마련이 어려움(산자부) ○ 국가에너지 이용효율개선은 위한 시나리오의 의미가 불분명	○ 온실가스저감, 고유가 등 급변하는 에너지환경의 효율적대응을 위해 부하관리에 치중되는 경향을 개선하고 수요관리전담기관 집중육성 ○ '15년 10%달성과 에너지절감프로그램을 강화할 때 가능한 목표치임
② 신재생에너지 중 장기 보급목표확대('30년, 9%⇒10~12%)	○ 정부재정, 보급여건 등을 감안 실현 가능성이 낮음(산자부)	○ 주요선진국은 공격적목표설정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있는점을 감안 의욕적 설정필요
③ 교에 환세 10%를 신재생 자원확충	○ 면밀한 검토필요(건교, 예산처)	○ '4차 기후변화종합대책'에 친환경적 세제개편을 전제로 검토중
④ 등유,프로판에 대한 특소세폐지 등	○ 면밀한 검토필요(재경, 건교, 예산처)	○ 외부불경제의 크기에 상응하는 적정 과세 원칙적용으로 에너지원간 차별적과세를 개선
⑤ 사용 후 핵 연료 공론화	○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부처일원화 등은 논란(산자, 과기부)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절차 및 방식 등의 논의를 조속추진 필요

□ 주요내용

1.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① 수요관리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

- 에너지 수요예측의 일관성 부족, 부하관리 위주의 수요관리 정책
- 지원 프로그램의 비효율성, 사업성과의 계량화된 평가 취약 등

② 주요 개선 과제

- 에너지 수요예측(전망)의 일관성 확보, 효율향상을 위한 수요관리 전문기관 육성 등 **에너지 수요관리 기반구축**
- 석탄,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수요관리**
-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 제도(EERS) 등 **강력한 효율향상 시책 시행**
- 시장기능에 의한 효율개선 및 규제와 유인시책의 병행 추진

③ 수요관리 목표 달성 점검

- **2015년 수요관리 목표(10%)는 달성가능할** 전망이며, 향후 우리의 에너지 여건, 선진국의 수요관리 강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강화 필요

2.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①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의 문제점

- 보급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예산 확보 미흡
※ 총소요예산 1조 3,700억에 비해 9,263억만 2차 계획에 반영
- 에너지원간 진입허용용량이 제한된 발전차액지원제도, 설치 및 보수비용의 과다 등 보급 프로그램 추진 애로

② 주요 개선과제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보급확대를 위한 **신규 재원조달 및 관리**
※ 3%를 에너지개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교통환경세('06년 10조)의 배분비율을 높여 신·재생에너지 재원으로 확충 또는 별도 기금 설치 검토
 - 공공기관 의무화,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 등 **보급프로그램 개선**
 -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및 관련 제도상의 장애 요인 제거

③ 보급목표 달성 점검 및 중장기 목표 상향조정

- **201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5%)는 현 추세로는 달성 곤란할** 전망으로 적극적인 개선 대책의 실행이 필요
- 「에너지비전 2030」의 '**30년 보급목표(9%)**'는 '11년 목표 미달성을 전제로 하는 등 에너지 공급여건, 선진국 목표 등에 비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수준으로 **10~12% 수준으로 상향 조정**이 바람직

3. 에너지 가격체계 적정화

① 에너지 가격체계에 대한 평가

- 난방용에너지(등유,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에너지원간 가격체계 불균형
- 에너지세제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사회적 형평성 미반영
- 용도간 교차보조로 산업분야의 효율성제고 유인제시 미흡

② 에너지세제 관련 주요 개선사항

- 난방용 에너지의 형평성 제고 및 교차보조 해소
 - * 서민용 난방에너지인 등유 및 프로판에 대한 특소세 폐지
-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조세체제로 개편 추진
 - * 환경오염, 교통혼잡비용 등을 반영한 조세체제 개편과 탄소세 도입 검토
- 전력요금 개편
 - 주택용, 산업용 등 용도간 전력요금의 교차보조 해소
 - * 주택용, 일반용은 평균 원가회수율을 초과하는 요금을 적용하는 반면,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은 원가회수에 미달
 - 심야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심야전력 요금제도의 개선
 - * 지속위 갈등조정특위의 심야전기제도에 대한 정책권고(안) 내용 포함
 - ☞ 기저발전으로 생산된 잉여전력량을 초과한 심야전기 신규 신청을 최대한 억제하고 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 등

4. 에너지정책 공론화 과제 : 사용후 핵연료 관리체계 및 공론화 방안

① 사용후 핵연료 관리의 문제점

- 사용후핵연료의 일관된 정책 및 전담부처 등에 대한 제도 미비
-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관리의 불투명 및 관리처분 전담기구의 부재
- 관리처분기술에 관한 안정적 선행연구 미흡

② 관리체계 개선방안

- 일원화된 방사성폐기물 법 체제의 확립
 - * 사용후핵연료 관리처분 관련조항은 원자력법과 전기사업법 등에 산발적으로 규정
- 전담 부처의 일원화 및 독립적 의사결정 구조 확보
- 관리처분 전담기구의 설치 및 관리처분 비용의 기금화

③ 사용후핵연료 관리 공론화의 효율적 수행방안

- 공론화 전담기구 설치 및 각 단계별로 세부 이행사항을 확정
-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참여적 공론화 방안 권고

<단계별 공론화 절차(안)>

- ① 1단계(관리체계 정립단계) : 일반시민, 주민의 직접 참여는 불필요
 - 각 분야별 대표자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통해 법제화추진 등 기본 인프라 구축
- ② 2-3단계(중간저장 여부/최종처분단계) : 해당 지역주민 참여보장
 -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저장, 부지선정 및 최종처분을 대한 이해관계자의 공감대형성

□ 향후추진계획

- 장기전원구성을 포함한 에너지 효율향상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주요쟁점사항을 관련부처와 지속협의·반영
 -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수립('08년) 및 기후변화대책에 참고토록 조치

<첨부자료>

1. 2차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보고
2. 2차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보고-위원장
3. 사용후핵연료 연구보고서
4.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정책 개선방안 연구
5. 에너지가격체계 적정화방안 연구

아. 에너지기본법 관련

□ 배경

- 국정과제조정회의시 산자부는 에너지기본법안에 대해 지속위와 협의 및 합의하라는 VIP 지시('04.9.15)

* 그간 에너지정책은 별도의 기본법 없이 정책방향 또는 사업 내용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석유사업법 등 28개 개별법에 근거하여 추진

□ 추진경과 및 현재 추진현황

- 지속위는 '에너지기본법안검토팀' 운영(공식회의 3회, 수시로 자문의견 청취)
- 타부처(환경부, 과기부, 행자부, 법제처) 의견청취

- 산자부와 의견조율 후 실무자회의를 통해 합의안 도출('04.11.16)

구 분	산자부(안)	지속위 의견	협의 결과
'에너지정책의 기본 원칙'에 공공성과 형평성 기술 여부	공공성과 형평성은 철학의 문제이므로 기본원칙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을 위한 근간이므로 기본 원칙에 포함 필요	지속위 의견을 수용하여 기본원칙에 공공성과 형평성을 포함하여 기술
용어의 정의	원자력법에서 규율하는 '핵연료'는 '연료'의 범위에서 제외(과기부)	원자력 발전이 중요한 에너지 정책이므로 핵연료도 연료에 포함	과기부 입장을 수용하여 핵연료를 연료의 범위에서 제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원자력 이용 및 안전에 관한 대책' 포함여부	원자력 이용은 원자력법 규율사항, 안전대책은 에너지안전대책에 기포함	'원자력 이용 및 안전에 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	법률간 충돌문제 등을 감안하여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처리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이행결과의 국회보고 의무 추가	기본계획의 소극적 편성 유발, 행정업무 과중 등 부작용 우려	기본계획 이행결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회 보고 필요	정부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회가 요구할 경우 적극 수용
국가에너지위원회 심의사항에 '원자력발전정책 관련사항' 등 추가	원전발전정책 관련사항은 수용가능, 기후변화협약 대응대책 관련사항은 에너지분야로 한정필요	'원자력발전정책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에 추가	'원자력발전정책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대책중 에너지 관련사항을 심의 대상에 추가(수정반영)
국가에너지위원회 사무국 설치·운영	심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 입법사례가 없고 에너지정책 주무부처와의 업무 중복 및 비효율성 초래 (행자부 및 국회 전문위원도 동일한 견해)	별도의 독립된 사무국을 설치·운영하고, 관련사무는 별도의 상근위원(민간위원중에서 임명)이 총괄	대안으로 위원회 소관 사무를 책임지는 간사위원을 공동간사제(산자부장관 및 위촉위원)로 하여 위원회 소관업무 처리의 중립성 강화

- 산업자원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 기본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04.12.15)
- * 정부안과는 별도로 김성조 의원(한나라당, '05.1.11) 및 조승수 의원(민노당, '05.4.11)이 의원입법(안)을 발의
- 국회 본회의, 에너지기본법안(대안) 의결('06.2.9) 및 법안공포('06.3.3)
 - 국회 상임위(산자위)에서 정부제출안과 두 건의 의원발의안을 통합하여 마련한 대안에 대해 법사위 및 본회의 심의·의결

<정부안 대비 주요 변경내용>

구 분	정부안	국회 의결
용어의 정의(제2조)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핵연료 제외)을 연료로 정의 ⇒ 핵연료를 연료의 개념에서 제외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으로 하되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연료의 범위에서 제외 ⇒ 핵연료도 포함
	-	에너지공급설비, 에너지사용기자재, 열사용기자재 및 온실가스에 대한 용어의 정의 추가
국가등의 책무(제4조)	-	국가·지자체 및 에너지공급자에게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할 의무 부여
법 적용범위(제5조)	단서조항 없음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적용특례 단서조항 추가 ⇒ 원자력법 적용
국가에너지위원회 구성및운영(제9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2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 ⇒ 5명축소
	-	당연직 및 위촉위원 외에 안전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민간전문가 등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제시 가능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기능(제10조)	-	에너지 관련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심의 추가
에너지자원기술전문인력양성(제16조)	-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양성 관련조항 추가
국회보고(제20조)	-	매년 주요 에너지정책의 집행경과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의무화

- 산업자원부는 지속가능위 및 관계부처에 에너지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06.2.17) 및 시행령 공포('06.9.14)

□ 주요내용

① 「에너지기본법」의 주요골자

-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公布案 제3조)
 - 에너지의 안정공급 및 수요관리, 친환경에너지의 보급확대, 산업·환경·안보·교통 등 에너지 관련분야에 대한 통합적 고려
- 에너지계획 수립(公布案 제6~8조)
 - 정부 또는 지자체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5년마다 20년단위) 및 지역에너지계획(5년마다 5년단위) 및 비상시에너지수급계획 수립 의무 부과
- 국가에너지위원회 구성·운영(公布案 제9~10조)
 -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계획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 수행
 - 위원장(대통령) 및 부위원장(국무총리) 포함 2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
 - * 위원은 당연직위원(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위촉위원(대통령이 위촉, 에너지관련 시민단체 추천인사 5인이상 포함)으로 구성
 - 위원회 소관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자원부장관과 위촉위원중 1인이 공동으로 수행
 - * 간사위원 지명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② 「에너지기본법」 시행령의 주요골자

- 국가에너지위원회 구성(案 제3조)
 - 당연직 위원은 재경부, 과기부, 외교부,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기예처 등 7개부처 장관으로 구성
 - 산자부장관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촉위원의 자격요건 및 추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7일이상 공고
 - 산자부장관과 공동으로 구성되는 간사위원은 위원회 구성후 위촉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 전문위원회 구성(案 제6조)

-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을 위해 에너지정책, 기술기반, 자원개발, 갈등조정 등 4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 에너지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중에서 산자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
 - * 에너지정책 전문위원회는 20인이내, 기술기반·자원개발·갈등조정 전문위원회는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에너지원별·사업분야별 특성을 감안하여 전문위원회별 기능을 설정
 - * ① 에너지정책 : 에너지 Mix,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 주요 에너지 정책
 - ② 기술기반 : 에너지기술개발, 친환경에너지 개발·보급 등
 - ③ 자원개발 : 국내외 자원개발 활성화, 자원개발전문기업 육성 등
 - ④ 갈등조정 : 에너지 관련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조정·해소
- 전문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을 간사로 정함

○ 시민단체의 정의(案 제2조)

- 민간 위촉위원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5인이 포함됨에 따라 민간위원을 추천할 시민단체의 개념을 규정

<시민단체의 정의>

「비영리시민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중 정관 규정상 다음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 정함

- 에너지 사용절약 및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업
-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오염의 방지 및 개선에 관한 사업
- 에너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업
-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조정 및 예방에 관한 사업

○ 민간활동 지원(案 제17조)

- 민간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종류와 지원내용을 정함

* 제2조에 규정된 '시민단체' 및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에너지 관련업무 위탁시 필요한 경비를 지원

○ 국회 보고(案 제21조)

- 주요 에너지정책의 집행경과 및 결과에 대한 국회보고가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보고시기 및 작성방법을 정함

*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보고서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보고서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

□ 향후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첨부자료>

1. 에너지기본법
2. 시행령제정안 검토
3. 에너지기본법 지속위 검토
4. 에너지기본법 협의과정

자. 대외원조정책(ODA) 개선

□ 배경

- 2000년 9월 유엔총회는 2015년까지 절대빈곤층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목표를 채택하고,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 개도국 대외원조 지원확대를 결의함
 - 우리나라는 무역과 투자면에서 개도국에 대한 의존도가 50%를 넘어섰으나 원조수준은 초보 단계임
- 정부, 시민사회, 전문가 등 지속가능한 ODA를 위한 역할 요청
 - ODA 활동에 국민 이해와 참여 폭을 넓히고 ODA가 세계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속위 적극적 역할 요구

□ 현황

- 전반적 현황 평가
 - 양적 확대 미흡 : GNI 대비 '06년 0.05%이며 '10년 0.1%, '15년 0.25%(30억 달러) 목표이나 OECD DAC 회원국 평균의 1/2 이하
 - 질적 개선 시급 : 차관 제공조건에 적합한 나라와 차관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서로 달라 유상원조 제공이 어려워지고 있음
 - 협의·조정 취약 : 각 부처간 경쟁, 독자적 실행,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 기능 취약, 각 수원국별 통합적 국가 프로그램이 부재함
- 문제점
 - 우리나라 ODA 수준은 국제 목표는 0.7%의 1/11,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0.25%)의 1/4에 불과함
 - 유·무상 원조 집행부처간 상호협업 및 조정 체계 미흡
 - ※ 무상원조는 외교부(KOICA), 유상원조는 재정부(수출입은행)로 이원화
 - 유·무상 원조의 연계전략 부재 등으로 개별 프로그램별 지원에 그쳐 원조의 성과가 미흡함

□ 추진경과 및 현재 추진현황

- 2기 위원회
 - '02.12월 사회분과위원회 ODA소위원회(소위 위원장 신혜수) 구성, 7차례 회의, ODA 개혁방안과 정책과제 논의
 - '03.5.28, 사회분과위원회 정책자문안,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개혁과제와 개선방안' 의결, 차기 위원회로 이관함
- 3기 위원회
 - '04.4~6, 국제협력소위, ODA 정책개선과제 추진방안 논의
 - '04.6.25, 지속위 주관, 외교부, 재경부, 시민단체 워크숍 개최,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개혁과제와 개선방안" 토론
 - '04.11.관계부처, 시민단체, 전문가 등 30명 워크숍 개최, 정책제안서 채택(11.26~27, 양평한화콘도)
- 대통령 자문안 제출('04.12.20)
 - '우리나라 대외원조(ODA) 정책의 개혁과제와 개선방안'
- 4기 위원회
 - '07.10.5, '한국 ODA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 개최, 관계기관, NGO 등 '04년 이후 상황점검 및 방향 논의
 - '07.12.11, 'ODA 개선을 위한 지속위 활동 방향 간담회' 개최, 향후 지속위 역할 모색 및 과제 도출 협의

□ 주요내용('대외원조 개선방안')

- 2009년 대외원조액 GNI의 0.1%로 확대: 729.4백만불 목표
 - 경제규모가 비슷한 나라의 대외원조 비율: 호주 0.25%, 네덜란드 0.8%, 스페인 0.23%
- 대외원조관련법 제정
 - 대외원조 이념, 목표, 원칙, 유·무상증장기계획 수립, 유·무상조정메커니즘, 민간참여 등
- ※ 현재 무상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유상원조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근거
- 유·무상 원조를 포괄하는 종합 대외원조계획 수립
 - 증장기 원조정책, 원조액 증액, 유·무상 비율 개선, 중점지원국 선정, 수원국별 종합프로그램 수립, OECD DAC 가입

- 부처간, 민·관 협의체계 구축
 - 외교부, 재경부 등 유·무상 관련부처 실무조정위원회 구성
 - 무상원조 부처간 협의체계 구축(외교, 과기, 정보통신, 환경 등)
 - 해외원조 NGO와 정부간 상설 정책협의회 개최
- 대외원조의 효율화 및 홍보
 - 우리나라 비교우위 개발경험 및 제도개선 분야를 집중지원
 - 사후관리·평가 강화 및 지방정부·공공기관 등의 체계적 원조액 통계 작성
 - 대국민 홍보 강화 : NGO 지원 및 협력 강화, 학교·시민교육 활성화 및 적극 홍보
- 주요 쟁점 부처간 협의 내용('05년~'07년)
 - 금융 조건 개선 : 차관 제공조건에 적합한 나라와 차관 요구 국가들이 서로 달라 유상원조 제공이 곤란
 - “untied화”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장관회의에서 향후 논의 예정
 - 무상비율 제고 : 재경부(유상)-외통부(무상)이 50대50이나 국제적 추세는 무상임
 - 2010년 DAC 가입시 양적, 질적인 면에서 국제적 수준으로 전환해야 하고, 매3년 국제 피어리뷰에 대비해야함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추진이 필요한 사항
- ODA의 지속가능성 개념 정의 및 확산
 - ODA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 국민적 지지기반 확대
 - 사업 선정·계획단계에서 지속가능발전 개념 반영 여건 조성
- ODA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 지표, 평가 기준 마련
 - ODA 지속가능성지표를 개발, 객관적 지속가능성 준거 마련
 - ODA 사업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 검토
- 협의 조정 시스템 정립
 - 외통부-재경부-지자체간 조정제도 필요 (예: 일본 ODA 일원화)
 - 장기적으로 대외원조청 설립(예 : 스웨덴, 호주, 캐나다)
- 지속가능한 ODA 전문성 확보
 - ODA 관련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함
- ODA 관련 지속위 역할 정립을 위한 기초 조사
 - ODA 철학·이념, 사업계획, 이행, 평가 등 단계별로 지속가능 발전 관점의 전략적 반응을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함

○ '08년 추진계획

- 원조 집행 수원국가별 실태 파악
- ODA의 지속가능성 개념과 가이드라인 및 평가지표 개발

<첨부자료>

1. 대외원조정책개선방안 자료집
2. 대외원조(ODA)정책 개선방안
3.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 자료
4.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 자료
5. ODA 토론회 결과 지속위 역할 정리
6. ODA 개선을 위한 지속위 활동 방향 간담회 결과 보고

차. 어린이 건강대책 수립

□ 과제 채택 배경

- 식생활 서구화, 환경오염 요인의 증가 등으로 성장기 어린이의 비만 및 알레르기 질환의 증가, 운동부족에 따른 체력저하 초래
 - ※ 초등학생 비만비율이 최근 3년간 2배 증가 : 남 15.4%, 여 15.9%(복지부)
 - ※ 6세 미만 신생아의 40%가 아토피(서울 YMCA)
-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 및 체력의 악화는 국가지속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으로 국가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
 - 어린이 비만, 아토피 등 질환 증가 및 체력 저하 ⇒ 성인병 증가 ⇒ 노동력 조기 상실, 생산성 저하 ⇒ 과도한 의료비 및 복지비 지출 ⇒ 국가지속가능발전 저해
 - ※ 우리나라 비만인구는 324%,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1조8천억원

□ 추진경과 및 현재 추진현황

○ 지속위 주요 결정 프로세스

1. '06.2. 어린이건강과 지속가능한 사회 연구팀 구성
 - 회의 및 워크숍개최 10회 개최, 연구위원 21명
2. '06.7~'07.1 어린이건강 연구용역 및 보고
 - '07.7. 4 : 지속위 본위원회 대책(안) 심의·확정
 - '07.8.31 : VIP 재가

○ 청와대 보고 경과

1. '07.3.23 : 지속위 본위원회 대책(안) 보고
2. '07.5.22 : 청와대 관계부처회의(사회정책비서관 주재, 교육, 문광, 농림, 복지, 환경부 및 지속위 참석)
3. '07.5.29 :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 지원단과 협의

○ 각 부처 주요 협의 경과(쟁점 포함)

1. '06.12.8 : 1차 부처협의(교육, 문광, 복지, 환경 등 10개 부처·청)

- 어린이건강정책위원회설치 (주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국무총리실 산하 설치

2. '07.3.19 : 2차 부처협의(교육, 문광, 복지, 환경 등 10개부처·청)

3. '07.3.23 : 지속위 본위원회 대책(안) 보고

4. '07.5.22 : 청와대 관계부처회의(사회정책비서관 주재, 교육, 문광, 농림, 복지, 환경부 및 지속위 참석)

5. '07.5.29 :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 지원단과 협의

6. '07.5.30 : 3차 부처협의(교육, 문광, 복지, 환경, 청소년위 등 11개 부처·청)

⇒ 협의과정에서 당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후 위원회 설치에서
현행 대책과 같이 건강분과 설치 등으로 변경

7. '07.7. 4 : 지속위 본위원회 대책(안) 심의·확정

○ 최종 보고/결정

1. '07.8.31 : VIP 재가

○ 현재 추진현황

· 지속위에서 주관하는 업무는 없으며 추진과정에 대한 현황 파악

1. 어린이건강종합대책 및 세부이행계획수립 (보건복지부)

2. 어린이건강특별위원회 구성(민간위원 12명 포함)

-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 구성

□ 주요내용

1. 어린이건강 국가관리체계 구축(4개과제)

- 매 5년 마다 「어린이건강국가종합계획」 수립
 - 신체적 건강문제는 물론 최근 문제되고 있는 약물, 자살, 교우관계 등 정신 건강 문제 포함
- 총리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어린이 건강분과(어린이건강 정책조정위원회)설치 및 사무국 설치
 -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장기 국가전략 수립 및 부처별 추진 상황 점검·평가

2. 아토피·천식 기타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18개과제)

- 아토피·천식 기타 환경성질환 종합감시체계 구축
 - 초기질환 상담, 응급대처 프로그램 운영, 정보소통체계구축 등을 위해 콜센타 설치('08년)
 - 국·공립병원 등을 환경성 질환연구센터로 지정, 환경오염 등 유발 인자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조사·연구 수행('09년까지 9개소)
- 천식지수(Asthma Index) 및 정보제공 체계 개발 등을 통한 천식 예보제 운영('08년)
- 학교·보육시설 보건환경 개선
 - 2012년까지 전국 500개 초등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지하수 사용 학교 절반 축소(1,151개소('05)→566개소('10))
 -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금년중 법령 개정)
- 아토피·천식 질환자 지원
 - 취약계층 약제비 등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알레르기 환자용 우유·특수분유 구입 비용 지원 등

- 기타 어린이 생활공간 및 어린이용품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등
- 어린이 환경기준 제정, 놀이터등 야외 생활공간 화학물질노출 기준마련,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또는 제한 확대, 유해화학물질 함유 사실 표시 방법 개선 등

3.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강화(11개과제)

-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 대책 마련
- 학교 급식지원센터 설치(농촌) 또는 공동구매 방안(도시)을 활용한 식재료 공급 체계 구축 활성화 :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 우수 우리 농산물 공급시 기존 농산물과의 가격 차이를 국가 지원
- 보육·아동복지·청소년 복지시설 급식 관리강화
- 학교급식법에 준하는 영양관리기준, 식재료품질관리기준 및 시설 관리기준 제·개정 등
- 어린이 특성을 고려한 식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중금속·유해화학물질 허용기준 설정 품목확대(현행 20개 → 국제수준(250여개)으로 확대)
- 식품첨가물 사용량 제한, 9개 타르색소 중 적색2호는 금년 중 사용 금지 기타는 안전성평가 후 제한 검토 등

4. 비만 예방 및 체력증진(10개과제)

- 비만 체력을 고려한 학교중심 건강관리 체계 구축
- 학생 건강검진시 발육중심의 단순 건강검진 대신 비만도, 심폐 지구력 등 건강체력 평가
- 방과 후 어린이 식생활·건강 체력교실을 개설 : 식생활교육과 방과 후 체육활동을 병행

- 학교 사회 체육활성화 등 어린이 증진대책 마련
 - 1학교 1 방과후 학교 체육프로그램 개발, 전 학년대상 건강 체력장제 도입 등
- 저소득층 영양불량 어린이 지원강화
 - 저소득층 어린이 대상 보건소 무상 영양평가 실시
 - 평가결과 영양불량 어린이에 대해 보충영양식품 바우처 지원 및 보호자 영양교육 실시

5. 컴퓨터 게임 중독 예방 및 체계적 관리(10개과제)

- 게임중독 관련 정부 중·단기 대책 수립
 -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표준화된 게임 중독 기준 마련, 게임 중독에 대한 체계적 지표를 개발 및 게임 콘텐츠 심사 활용 방안 검토
- 게임 이용단계별 어린이 보호 대책 강화
 - 심사단계 : 7세미만 등급 신설 등 게임등급 분류 및 콘텐츠 심사기준 강화
 - 접속단계 : 정통부 i-PIN 제도 확대 등 어린이 식별 강화
 - 이용단계 : 12세미만 등급 게임도중 일정시간 경과 시 주의·경고 문구게시 의무화
- 게임 공급자 의무 강화
 - 부모 등 친권자 요구시 게임 이용시간, 현금결제 사용내역 등 이용정보 제공 의무화
 - 부모 등 친권자 요구시 중독현상 어린이 고위험자에 대한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 및 시간대 제한 등

6. 재원확보방안

- 부처내 정책우선순위조정을 통해 해당과제별로 '08년 예산 편성시 부처 자체 예산에 우선 반영
 - 투자계획은 국가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음
- 아울러 담배세 인상 등 국민건강증진기금 확충을 통해 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의 건강투자재원을 확보 노력

□ 향후 추진계획

- 각 부처 추진상황 파악

<첨부자료>

1. 어린이건강대책
2. 어린이건강대책 보도자료

카. 지속가능한 국가비전 설정을 위한 환경정책의 미래전략

□ 배경

○ 과제 채택 배경

- 새로운 “지속가능한 국가비전”의 큰 틀에 반영되어야 할 환경부문 체계를 분석해 보고, 이에 따른 미래전략 및 추진항목을 정리,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기획
- 본 보고서의 취지는 현재의 비전(희망한국 비전2030)을 보완하여 경제, 사회,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로 준비
- 비전2030에 있어 제시된 사회·경제부문의 전략, 핵심과제 및 그 목표에 있어 고려되지 못한 환경부문의 주요 주제를 파악, 그 반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환경부문의 정책강화를 위한 틀을 제공하는 열개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둠.

○ 현황 및 문제점

- 참여정부의 국정원리로 채택된 “비전2030”은 동반성장의 개념 아래 경제-사회 통합을 제시함으로써 장기적 국가비전의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는 등 미래지향적 정책 패러다임을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2030은 사회와 경제 2개 부문에 역점을 두어, 환경부문에 대한 고려가 미약하거나 배제되어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을 받음.
- 지식기반 사회로 전이된 세계는 지금 환경위기를 성장의 기회요소로 적극 활용하는 3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쟁국 및 선진 각국은 지속가능발전을 핵심국정원리로서 채택하는 상황.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3대 전략축인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로운 정책 운영기조가 정립되어야 하며, 이에 경제와 사회의 통합을 고려한 동반성장 패러다임에 미래 세대의 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현 세대의 경쟁력을 보장하는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을 접목·통합이 필요

□ 추진경과

- '07.3.6 국가환경정책 어젠더 발굴 1차 회의
 - 기후변화, 무역장벽, 환경보건 등의 분야의 경제-사회적 측면과 연계 필요
- '07.4.3 : 2차 회의
 - 집필진 구성, 비전보고서의 목차 및 방향성 검토
- '07.4.13 : 3차 회의
 - 집필분야 업무 분장 및 진행사항 논의
- '07.6.1 : 4차 회의
 - 초안내용 검토 및 분야별 연계사항에 대한 검토
- '07.6.23 : 사회정책 수석보고
 - 초안 내용 및 향후 일정에 대한 보고
- '07.7.19 : 자문회의
- '07.11.24 : 사회정책 수석 2차 보고
 - 비전보고서 최종내용 보고 및 자문회의
- '07.11.29 : 사회정책 수석 결과보고
 - 자문회의 내용 반영 방안 및 보고서 최종발간 계획보고
- '07.12.14 : 집필진 보고서 발간자문회의
 - 11월 자문내용 반영 건 보고 및 토의, 보고서 최종안 확정
- '07.12.21 : 보고서 발간

□ 보고서의 내용

- I. 지금까지의 국가비전 기조 및 현황
- II. 지속가능한 국가비전의 필요성
- III. 미래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가비전
 - III-1. 지속가능한 비전의 구성원칙
 - III-2. 국가비전의 지향점
- IV. 국가비전 이행을 위한 환경정책의 미래전략
 - 미래전략 1 『기후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 미래전략 2 『국제환경규제 강화와 무역체계의 변화를 도전의 계기로』
 - 미래전략 3 『안전하고 쾌적한 국토형성을 내적역량강화의 근원으로』
 - 미래전략 4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국가경쟁력 향상의 기본 전략으로』
 - 미래전략 5 『사회통합과 사전예방적 갈등관리를 지속성장의 기본 틀로』
- V. 결론
 - V-1. 새로운 국가비전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 V-2. 향후 추진 및 보완·발전 시켜야할 부문

□ 향후 추진계획

- 보고서의 배포 및 확산
 - “백서” 함께 배포 예정

<첨부자료>

- 1. 지속가능한 국가비전 설정을 위한 환경정책의 미래전략

<향후과제>

가. 기후변화대책

□ 배경

- 최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향후 전 지구적 대응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
 - IPCC '기후변화 4차 평가보고서' 발간으로 경각심 강화, UN 주최 고위급회의('07.9.24)에서 Post-2012 협상 촉진 모멘텀이 제공
-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관한 점검 및 평가를 통해 그간 국가 대응 정책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
 -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단기 경제적 효과에 치중하고, 국가의 장기 지속가능성 및 경쟁력에 대한 고려 미흡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적 지향점(목표)과 로드맵 부재
 - 협상 전략면에서의 소극적 대처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미비, 상설조직 취약 등 제도적 인프라의 부족 등
-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추어 정부 대응정책을 평가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
 - 특히, 지속위의 거버넌스 기능을 활용하여 정부와 더불어 기업, 시민사회 등 민간부문의 대응노력 강화 방안을 모색

□ 추진경과 및 현재 추진현황

- 지속위는 상기 문제점을 토대로 ‘기후변화 대응정책 검토와 제안’을 연구하여 관계부처 회의 등에서 보고
 - 사회정책수석 주재 기후변화 관계차관 간담회(‘07.9.4)에서 논의
 - 국무총리 주재 기후변화 대응 워크숍(‘07.10.11)에 보고 및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07.10.16) 참석
- 기후변화대책 실무위원회(‘07.7.13) 및 기후변화대책위원회(‘07.12.17)에 참석하여 “기후변화 4차 종합대책”(안)을 확정
 - 국무총리 지시(‘07.10)에 따라 급변하는 국제상황에 맞추어 기후변화 전반에 걸친 범정부적 적극대응을 위해 종합대책(안)을 마련

<종합대책 요약>

1. 비전 및 목표

- 비전 :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술개발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
- 목표 : ① ‘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5년 수준으로 동결
②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으로 사회·경제·환경적 피해 최소화
③ 선진국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확보

2. 분야별 중점추진대책

- 온실가스 감축 : ①저탄소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 ②원자력비중 확대 검토, ③6대부문 에너지수요 확대검토, ④농축산·산림·폐기물 온실가스 감축, ⑤기후친화형 신산업구조 유도, ⑥탄소시장활성화 추진
- 기후변화 적응 : ①기후변화 예측능력제고, ②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③범사회적 역량강화
- 연구개발 : ①연구개발투자의 전략성강화 및 종합조정기능 보강, ②기초·원천기술 확보, ③온실가스 배출 감축기술 개발, ④원자력기술개발 확대
- 인프라구축 : ①기후변화대책법 제정 추진, ②기후변화대응 지원대책 강구, ③국가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④국가 총체적 대응체제 구축
- 국제협력 : ①의무부담 대비 협상, ②국제공조 및 개도국 지원

□ 주요내용

○ 지속위의 시민단체 주도 기후변화 대응 행동계획 지원

- 환경, 에너지 분야 시민단체 합동회의 개최를 통해 국민행동지침을 공동으로 수립('08년 상반기)

* 예시 : 고효율기기 사용, 냉/난방온도 적정화, 대중교통 이용 등 건물, 수송을 포함한 각 분야별 실천사항 발굴, 정리

- 시민단체 중심의 홍보, 대국민 교육, 캠페인 등 활동 전개

○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 활성화 유도

-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등과 협조하여 기업의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 지속가능경영과 연계한 기업의 구체적 실천목표 수립, 대응전략 논의

- 기업-시민단체, 정부, 지자체간 파트너십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기업의 온실가스 저감 등 대응사업 추진상의 애로요인 발굴·정리

○ 공론화 기구 중심의 정부, 시민단체, 기업활동 종합 점검 및 논의

-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의 기후변화 대응 행동지침을 합의하는 협약식 또는 국민 실천선언 대회 개최

* 지속위의 '지속가능발전 주간(week)' 등 적정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 검토

- '08년 하반기부터 주기적(예: 반기별) 민·관·NGO 협의회를 개최하여 국가 대응 전략을 평가·점검

- 공론화 논의를 토대로 정부 종합대책을 수정, 반영하여 추진하고, Post-2012 체제 논의 동향 등 국제 흐름에 맞추어 관련 제도 정비 및 기반 강화 논의

□ 향후추진계획

- 기후변화대응 “공론화기구”를 구성하여 국민실천운동 전개 및 국가 대응전략 평가 등을 수행

<첨부자료>

1. 기후변화 대응정책 검토와 제안
2. 기후변화 국가대응체계에 대한 제안
3. 기후변화보고 지속위
4. 기후변화 제4차 정부대책

나.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 배경

- 세계관광기구(WTO), UN, UNDP 등 국제기구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권고('02)
- 현행 대규모 관광개발정책에서 지역 자원의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전환을 위하여 정책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추진경과 및 현재 추진현황

- 과제선정 : 전문가 자문회의
'07.5.17 1차 전문가 자문회의
'07.5.31 2차 전문가·부처 자문회의
'07.6.7 3차 전문가 자문회의
- 정책연구 :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연구'
'07.9.28 착수보고회 개최
'07.10.30 중앙부처 담당자 간담회 개최
'07.11.6 관광업계 종사자 간담회 개최
'07.11.23 중간보고회 개최
'07.12.13 지자체 담당실무자 간담회 개최
'07.12.28 최종보고회 개최
'08.1. 연구용역 종료

□ 주요내용(연구용역 내용)

-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정책기조의 전환
 - 문제의 진단
 -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한국 지속가능한 관광의 새로운 비전
-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6대 전략별 이행과제
 - ① 지속가능한 제도기반 구축, ② 지속가능한 관광문화 구축, ③ 지속가능한 관광인프라 구축, ④ 사회적 자본 강화, ⑤ 지역주도의 관광개발, ⑥ 과학적 관광 관리
 - 지속가능한 관광 이행과제의 추진시기
-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을 위한 지침
 -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추진 원칙과 단계
 -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평가지표
 -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성공 십계명

□ 향후 추진계획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보고서를 마련하여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로드맵)수립·추진 필요
- 연구보고서 3부를 변형하여 지방자치단체용 '지속가능한 관광 가이드라인' 제작 필요

<첨부자료>

1.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연구

다. 자원절약형 국토관리정책

□ 배경

- 지난 30여년간 고도의 압축성장과 급속한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물·에너지 등 자원 소비도 증가
- 최근의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국토환경을 보다 자원절약형으로 개선할 필요성 대두

※ 지속위 워크숍에서 본위원인 김정욱 교수가 연구과제로 제안('06.5월)

□ 추진경과 및 현재 추진현황

-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연구팀 구성 및 9차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연구범위 등을 논의('06.8~'07.1월)
- 자문회의(11차)에서 세부 연구과제별 연계성이 낮아 용역이 곤란하므로 T/F 형태로 연구추진 결정('07.2월)

※ 세부 연구과제 : 에너지시설 공간배치, 도시성장관리, 교통체계

- 자문회의(12차)에서 기존 연구목차가 체계적이지 않고, 내용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연구결과를 정책화하기 곤란하다는 지적('07.4월)

※ 과제명(국토관리 측면에서 본 국가자원 절감방안) 및 목차 조정

- 연구진행상황 중간보고(위원장)시 연구팀 구성의 한계 및 연구범위 등의 이유로 초안 완료 후 과제 종결하는 것으로 결론('07.7.18)
- 연구보고서 초안 마련('07.11월)

※ 보고서 완성도 미흡 및 정권말기 등의 상황으로 인해 과제추진 중단

□ 주요 내용

구분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조치내용
수 자 원	- 공급위주의 정책	- 유역 단위의 수자원 관리 (수량과 수질 통합) - 통합수자원관리평가 - 물의 수요관리 강화	- 법 제정 (물관리기본법) - 환경영향평가기법 개발 - 중수도 이용 확대 - 수도요금 탄력제 도입
교 통	- 도로위주 지역 교통 - 승용차 중심 교통 · 대중교통 이용여건 저하 · 보행환경 저하	- 철도중심 지역교통체계 구축 · 경부 고속철도 잔여구간 및 호남고속철도 지속 추진 · 일반철도 화물분담률 확대 · 국제철도와의 상호연결 추진 · 민간투자를 통한 사철 도입 - 대중교통 활성화	- 예산 조정 - 철도에 대한 타당성 평가제도 개선 - 역세권 정비, 신 대중 교통수단(노면전차 등) 도입
건 축	- 건축물 수명 단기화 - 에너지절약 정책 미비	- 수명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 등 도입	- 예산 확보 - 법령 개정
전 력	- 공급면에서 입지양극화	- 지역간 송전요금 차등화 ※ 산업시설·인구 분산 유도	- 요금규정 개정 (국민적 합의 우선) - 열병합발전 전환 유도

□ 향후 추진계획

- 정부조직법 개정과 연계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개정추이에 따라
과제 추진여부 재검토 필요

<첨부자료>

1. 국토관리측면에서 본 국가자원 절감방안

라. 유해화학물질 통합관리체계 구축

□ 배경

○ 과제 채택 배경

- 유해화학 물질이 원료, 생산, 유통, 폐기에 이르는 전과정 동안 단계별, 제품별, 부처별로 관리되어 누출, 오염 등에 대해 담당 부처가 모호하며, 일부물질에 대해서는 다수의 부처가 중복 관리 및 신규물질에 대해 2개 이상의 부처에 중복하여 신고 하는 등 혼선정리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전 세계적으로 약 10만여 종의 화학물질이 상업적으로 유통되며 그중 2000여 종이 유해화학물질로 분류
- 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공장에서 혹은 운송 중에 노출되어 인체나 환경에 위해를 가하거나 공정 중에 발생하는 부산물·불순물로 인한 사고나 공산품·소비자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 물질로 인한 소비자 사고 등 사고사례 보고가 빈번해 지고 있음
- 국내유통 원료 화학물질은 그 이용목적 및 성상에 따라서 7개 부처의 약 13개 법안에 의하여 관리되어, 동일 화학물질이 용도에 따라 여러 관련법에서 동시에 관리될 수 있으며, 관리의 사각 지대가 존재 예상

□ 추진경과 및 현재 추진현황

○ 지속위 주요 결정 프로세스

- '06.8.24~'06.9.27 : 제1차 연구팀 구성
 - ※ 강성구(호서대), 강헌(수원대) 등 학계 5명
- 팀명 : 유해화학물질 통합관리방안
- 결과 : 3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산자부 등 관련부처 비협조 및 연구팀 재구성을 위해 발전적 해체

○ '07.3.22~'07.7.2 : 제2차 연구팀 구성

- 팀명 : 국가차원 화학물질 효율관리방안
 - ※ 류재천(KIST), 노영만(한양대) 등 학계, 산업계 10명
- 결과 : '07. 7. 2까지 총 8회 회의개최 보고서 초안 완성

- 청와대 보고 경과
 - 초안 작성 추가협의 필요
- 각 부처 주요 협의 경과(쟁점 포함)
 - 부처 협의 진행 못함
- 최종 보고/결정
 - 국가차원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 보고(초안) 완성
 - 향후 새로운 연구팀 구성하여 논의 필요

□ 주요내용

- 최종보고서(초안) 내용
 - 서론
 - 화학물질의 위해성 개념
 - 국제적 흐름과 국내 현황
 - 중요부처의 화학물질 관련법규의 조사 및 법규의 중복(모순)성
 - 화학물질 규제관련법에 대한 국내현황
 - 화학물질 관리시 도출된 문제점들의 구체적 사례
 - 국외현황 (미국, 일본, EU, OECD, UNEP, WHO 사례)
 - 대응전략 및 해결방안
 - 정책건의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추진이 필요한 사항('08년 추진계획 포함)
 - 연구팀 구성하여 부처 협의 및 정책보고서 확정

<첨부자료>

1. 국가차원의 유해화학물질관리방안 연구보고서

마.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 배경

- 경제·사회·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더불어 재활용 등 **자원순환형 산업구조 정착**이 필요
- 제3기 전문위원회에서 '05년 하반기 자문과제로 선정('05.2.25)하여 연구팀 구성('05.7월) 이후 연구 수행
 - * 연구방향 : 자원순환형 산업구조 정착을 위한 산업정책 전환의 필요성과 기본골격을 제시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과 이에 근거한 로드맵 작성
- 동 과제를 연구용역('05.9~'06.5, LG환경연)으로 수행하였으나 **보고서 구성체계 및 내용 등의 추가적인 보완 필요**
- . 전문가 자문결과('06.9.26) 보고서 작성 논거(Data, 인용문헌) 및 정책과제 정리 필요성이 제기
- 용역 수행기간의 장기화 등을 감안하여, 연구 요약 및 보완작업은 계속하되, 용역은 종료('06.10)

□ 추진경과 및 현재 추진현황

- 연구용역을 토대로 정책보고서 작성을 위해 산업 및 환경분야 전문가로 **전문연구팀 구성·운영('06.12)**을 통해 **보고서 초안 마련('07.6)**
 - 팀원간 역할분담을 통해 **주요국의 재활용정책 및 제도조사** 등 기존 보고서를 보완하여 초안 작성
 - * 과제명을 종전의 '자원순환형 산업정책' 연구에서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정책**' 연구로 변경
 - 외부전문가 자문('07.5)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 동 과제는 지속위가 추구하는 부처간 주요 정책의 조정 및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의 관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
 - '자원순환'의 개념 및 관련 정책추진에 대한, 산자부와 환경부간 민감성으로 **통합된 정책 대안 조정이 어려울 전망**
 - 산업정책 차원 위주의 자원관리시스템을 연구하여 보고할 경우, 경제성과 환경성이 통합적으로 고려된 관리체계 구축과 상치
-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는 국가차원에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 시점에서 과제를 마무리(위원장 보고, '08.1.15)하고 **차기위원회에서 국가 로드맵 수립 및 세부추진방안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 * 국가자원의 기본원칙 설정(범위 등) ⇒ 이론적배경 마련 ⇒ 연구체계 및 절차정립 ⇒ 국가통계구축 및 자원의 투자·활용 등 개선방안 및 로드맵 수립 ⇒ 부처협의 ⇒ 시행

□ 주요내용

- 독일,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 뿐만아니라 신흥경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도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중
 - 재활용정책과 상호연계하여 자원의 전과정 흐름에서 국가차원의 통합자원관리를 위한 정책추진
 - 특히, 재활용보다는 재사용(reuse), 감소(reduction)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자원생산성을 유도
- 독일, 일본 등 자원관리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자원관리를 위한 **국가통계시스템 구축 및 방법론 개발**에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자
 - * 독일 : 자원순환 및 폐기물관리법('04), 미국 : 자원보호 및 재활용법('76), 일본 : 순환형 사회형성기본법('01), 중국 : 순환경제발전 가속화에 관한 지침('05)

○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이행계획(안)

구 분	세부 사업 내용
법령 및 제도 정비	○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법(안) 제정 - 공동입법으로 자원관리 목표 및 방향 제시 및 시스템구축 ○ 국가 자원관리 기본계획 수립(중장기) ○ 폐기물/재활용 관련 제도 개선, 사용후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 등 표준 마련, 제품중심의 자원관리 통합화
자원관리 인프라 구축	○ 자원 및 제품별 물질흐름 분석 및 DB구축 ○ 자원생산성 평가지표 개발 및 목표 설정 ○ 자원관리를 위한 국가통계 시스템 정비 ○ 자원관리 전문인력양성과 해외 협력사업 개발
생산/소비에서 자원생산성 제고	○ 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과 인센티브 제공방안 ○ 기업 자원생산성 개선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과 기술개발 지원 ○ 자원절약에 대한 소비자인식 제고 및 제도개선

□ 향후추진계획

- 동 과제는 국가차원의 통합자원관리를 촉발하기 위해 추진된 과제로 국가자원관리 로드맵 수립 등 향후 단계적인 연구보완이 필요
 - 산업자원 뿐만 아니라 바이오 등 국가자원의 지속가능성 우선순위 평가 및 이론적배경 마련 등을 통해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
 - 국내 자원관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자원의 범위 및 관리체계 정립 등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의 기본골격 및 방향 등을 설정
 - 국가자원통계 종합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등 자원관리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추진체계 정립
 -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한 세부 이행 과제 도출, 우선순위 설정 및 시행주체간 의견수렴

<참고자료>

1.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정책 검토보고
2.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정책보고서
3. 자원순환형 산업정책연구

2.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구축

가.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

나.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다. 지방의제21 제도화 관련 추진경과

라. 지방 지속가능발전 로드맵 수립

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및 이행체계 구축

바.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 시범적용

사. 지속가능발전 국민·공무원 인식조사

가.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

□ 배경

○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국제적 확산과 정착

- 1972, 유엔인간환경회의, "하나뿐인 지구" 보전 행동 합의
- 1987, "환경과 발전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 '우리 공동의 미래' (일명 Brundtland Report)에서 지속가능발전 개념 등장
- 1992,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국제규범으로 정착, 의제21,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채택
- 2002,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 실천과제와 이행계획 합의

○ 국내 필요성

- 우리나라는 고도 압축성장으로 경제개발에 성공했으나, 사회통합과 환경보전 측면의 지속가능성 악화
- 노동, 농민, 환경 등 사회 각 부문의 갈등이 확대, 장기화
- 사회통합 · 환경보전 · 경제발전의 상호조화와 균형을 통해 미래를 기획하고 선도하는 국가비전이 필요

○ 국내 현황 및 문제점

- GDP는 OECD 국가 중 10위권으로 경제규모는 급속성장
- 경제 총량 성장에 비해 노동, 국민보건, 복지 등 형평성 미흡
- 경제성장의 환경 압력이 국토와 환경의 수용 범위를 넘어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이로 인한 환경갈등이 확산
- 세계경제포럼, 환경지속가능성지수(2005) : 146개국 중 122위

□ 추진경과

○ 대통령 지속가능발전비전 선언 준비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함께 시민단체, 전문가가 검토한 정책 과제들을 부처협의를 거쳐 비전보고서(안)를 작성
 - 2003년 12월 출범한 3기 지속위는 먼저 본위원회와 전문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전망을 분석
 - 2004년 3월부터 전문위원회별로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8개의 연구팀 운영, 분야별 정책과제 선정
- '05.2월, '시대적 요청과 국내외의 요구를 고려하여 '지속가능 발전 비전' 선언 준비'하도록 대통령 지시
 - '지속가능발전 비전선언'을 위한 연구팀, 연설문안 작성 기초 위원회,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연설문 초안에 대한 환경단체 간담회('05.5.11) 자문위원회 회의 ('05.5.17), 운영위원회의 최종 보고('05.5.18)
 -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주재 5개 부처 국장 회의에서 쟁점사항
- '05.6.1,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조정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정책과제”로 보고
- '05.6.4, 환경의날, “경제·사회·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를 향한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대통령 선언

○ 분야별 정책 수립 추진 경과

- 참여정부 100대 국정과제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연관리체계 구축」 및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 '04.5월부터, 국토정책연구팀(14명)을 구성, 연구팀 발제 및 토론회(20회)와 공론화(2회)를 거쳐 보고서 작성
 - '04.2월부터, 물관리정책연구팀 구성, 연구팀 회의 및 시민단체와 토론회 등 논의결과를 토대로 보고서 마련
 - 연안·해양정책연구팀 구성, 연구를 거쳐 『연안·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보고서 작성
 - 제38차 국정과제보고(04.2.12)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보고 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등 추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제정팀, 제도개선 연구팀을 구성 운영
 - '04.6월부터 교통정책연구팀을 구성·운영
 - 제48차('04.6월) 국정과제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04.8월,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 연구팀 구성·운영

□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 비전 및 추진원칙

○ 비전 : 지속가능발전으로 더불어 골고루 잘사는 나라

- 중앙과 지방의 동반성장을 통해 다 함께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하는 나라 건설

○ 추진원칙 : 예방과 정책통합, 참여와 협력, 책임공유와 이행

- 자연의 한계를 인식하여 예방우선의 정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성에 입각한 통합적인 정책수립 및 추진
- 정부·시민사회·기업 등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대화를 통해 신뢰와 협력의 문화 형성
- 미래세대와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 이행

○ 9대 정책 및 27개 실행 과제

1. 개발과 보전의 통합성 강화

- 1-1.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
- 1-2. 국토이용·보전을 위한 정보시스템 통합
- 1-3. 환경과 농업정책의 통합
- 1-4. 토지이용의 공공성 제고

2.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 2-1. 물 수요관리 10개년 종합계획 수립
- 2-2. 댐 개발에서 댐 관리로의 정책기조 전환
- 2-3. 수질오염 총량제 내실화

3. 연안·해양의 통합관리

- 3-1. 자연해안·서식지 순손실방지제 도입
- 3-2. 연안·해양보호구역 통합관리
- 3-3. 하구 환경관리체계 구축
- 3-4. 연안해역 수질관리
- 3-5. 발전소 온배수 관리체계 확립

4. 갈등관리체계 구축

- 4-1. 갈등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 4-2.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운영
- 4-3. 갈등예방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5.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

- 5-1. 교통수단별 투자체계 개선
- 5-2. 대중교통 활성화
- 5-3. 녹색교통체계 구축
- 5-4. 교통안전 강화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6. 환경친화적 조세체계 전환

- 6-1. 환경친화적 조세체계 전환

7.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 7-1. 지속가능한 소비체계 구축
- 7-2.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구축

8.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 8-1. 사회부문별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 8-2. 정부 추진체계 강화
- 8-3.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9.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외협력

- 9-1. 한반도 생태계 보전을 위한 남북협력
- 9-2. 국제적 책임 공유

□ 후속조치

- '06년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 ※ <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참조
- '06년~'07년,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선정 및 시범적용
 - ※ <사.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시범적용> 참조

<첨부자료>

1. 인수위 보고서 환경관련 부문 요약 표
2.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 건설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정책과제
3. 환경의날_VIP연설문 050902(영문)

나.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 배경

- 우리나라는 경제중심 발전전략 추진으로 환경보전과 사회통합은 상대적으로 취약
 - 경제규모는 OECD 국가 중 10위권으로 급속 성장한 반면 개발 압력이 환경 자정능력을 넘어서서 지속가능성이 악화
 - ※ 2005 환경지속성지수가 146개국 중 122위, 29개 OECD 최하위 수준
 - 지역·계층·세대간 갈등 확산으로 사회통합 미흡
 - '05.6.4,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발표 : '경제·사회·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
 - 개발·보전의 통합적 국토관리, 환경친화적 경제구조 정착 등 5대 정책목표 및 9개 핵심 이행과제를 제시
- 국제적 지속가능발전 실천 참여 의무
 - 1992 유엔환경개발회의 의제21 채택,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이행을 규정 (Agenda 21, 8.7.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채택)
 - 2002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 '05년까지 지속가능발전 국가전략과 이행계획 수립을 합의(JPOI, XI. 지속가능발전 제도 강화, 제162항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이행)

□ 추진경과

- 전략 수립 및 보고 프로세스
<그림 참조>

**국가
지속가능발전
비전선언**
(‘05.6.4)

제10회 환경의 날, 국가 지속가능발전 비전 대통령 선언

‘국가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 후속작업 추진계획 보고

**이행계획 수립
지침서 작성**
(‘05.6~9)

이행계획 TF 구성
22개 부처 참여

관계 전문가 자문
부처의견 수렴

세부이행계획 수립지침
부처 시행

계획 대상과제 선정
이행계획 수립지침

**이행계획
보고서 초안
작성**
(‘05.9~‘06.5)

14개 부처 작성 주관
22개 부처 협조

초안 지속위 제출

부처별 이행계획
보완 작성

전문위원회 검토
성과평가지표 제안

**전문가검토
부처 협의
계획 보완**
(‘06.6~9)

부처 수정안 제출

전문위원회 재검토
의견서 제출

부처-부처 / 부처-지속위
조정 협의, 세부 수정

부처별 이행계획
재보완 작성

이행계획 요약 작성 → 부처 검토 보완
지표 조정 전문가회의 → 부처 협의

부처간 최종 점검을 위한 토론회 개최(9.1, 9.15)
지속위 본위원회 심의(‘06.10)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국무회의 보고 확정** (‘06.10.31)

UNCSD 제출
(‘06.12~‘07.3)

- 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의의
 -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의 범정부 5년(2006~2010) 실행계획
 - WSSD 합의에 따른 국내 이행계획
 - 국내 최초 경제·사회·환경의 통합·연계관리 종합실천계획
 -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및 평가 시스템 기반 마련
- 보고 후 추진현황
 - '06.10.31 국무회의 보고, 확정 즉시 소관부처별 이행 착수
 - '07.3.12-16, UN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회의 개최(지속위 주최, 서울 COEX ASEM홀)
 - ※ UN, OECD, UNESCAP, 중,일,인도 등 아태 8개국 대표 24명 참가

□ 주요내용

- 22개 부처가 공동 참여하여 2006~2010년 추진할 5대 핵심 정책 분야, 48개 이행과제, 223개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수립
 - '05년 대통령 지속가능발전비전 선언의 핵심 이행과제, WSSD 이행과제 등을 종합, 국내 실정에 적합한 과제를 선정

비전선언시 이행과제

- 개발과 보전의 통합성 강화
- 지속가능 에너지이용체계 확립
- 자원순환형 사회 촉진 등

2002 WSSD 이행과제

-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
-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확산
-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등

48개 이행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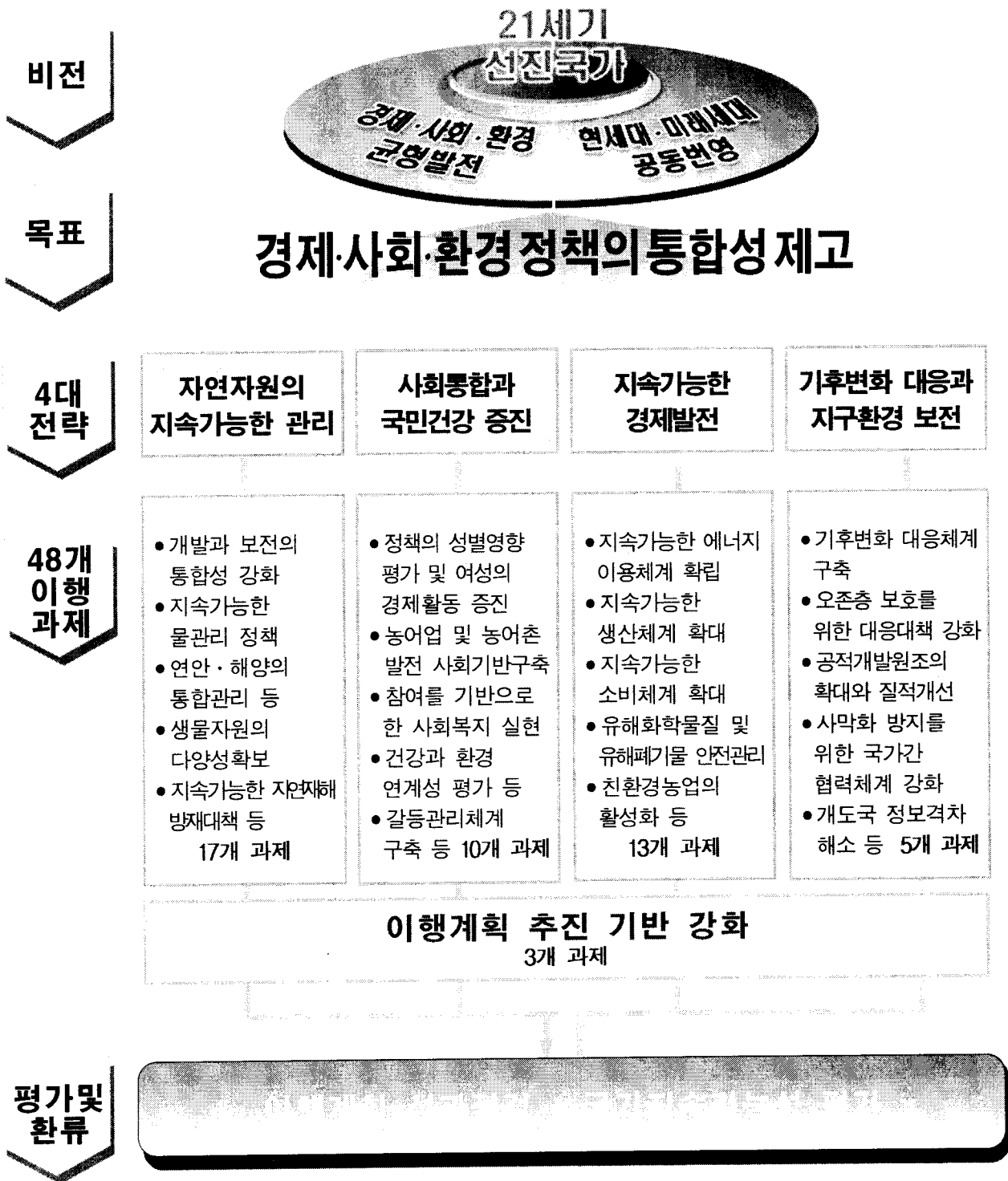
국정과제/인수위 과제

- 갈등관리체계 구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
- 지속가능발전 기반 강화 등

UN 새천년선언 과제

- 안전한 먹는 물 공급 확대
- 도시빈민의 생활환경 개선
- 국내 난민보호

○ 국가비전과 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 체계



□ 향후 추진계획

○ '08년 추진계획

- 부처별 이행계획 추진현황 점검 체계 수립 중(기획홍보팀)

· '08년 상반기 중 체계 구축, '08.1.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시범 평가 결과와 병합하여 전략 및 이행계획 보완 예정

※ '08.2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으로 20년 단위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필요에 따라 재검토 중임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20년) 및 이행계획(5년) 수립 추진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 확정안에 따라 계획, 추진

<첨부자료>

1. 국가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 수립지침
2. 국가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 소관부처 최종확인요청 공문
3. 국가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 국무회의보고자료
4. 국가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 보고서 및 요약
5. 국가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1권
6. 국가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2권
7. 국가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3권
8. 국가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4권

다. 지방의제21 제도화 관련 추진경과

□ 배경

- '92년 리우에서 채택된 의제21(제28장)은 각 국의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방의제21을 수립하도록 권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01년 현재 총 248개의 지자체중 222개(89.5%)에서 지방의제21을 작성하였거나 수립 추진 중임
- 그러나, 지방의제21 추진실적은 주로 환경보전과 관련된 실천 중심의 일회성 사업에 치중되어 있고, 지자체 차원의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음
- 따라서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지방의제21을 활성화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제도화 필요

□ 추진경과 및 현재 추진현황

- '01.12~'02.6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지방의제21 추진 제도화 방안 마련·본위원회 의결('02.6.20)
 - 지방의제21 활성화와 지방지속위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 시도는 '03년까지, 시군구는 '05년까지 지방지속위를 설치 하도록 권고
- '04.3~'05.4 지방의제21연구소위, 지방의제21연구팀 구성·운영(총 30여 차례 회의)
- '04.9~'05.2 지방의제21 제도화를 위한 3개 권역 순회 간담회 및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2회)
- '05.6.1. 국정과제조정회의에서 활성화 방안 포함하여 보고
 -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정책과제' 보고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향 설정
- '07.5.10 지방지속가능발전로드맵 수립 및 실행방안 보고
- ※ '07.8.3 가능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공포로 지방의 지속가능 발전을 제도적으로 추진토록 규정

□ 주요내용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정책과제)

- (가칭)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이 지속가능발전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방의제21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으로 공감대 형성
- 지방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수립
 -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지역 실천계획으로 지자체의 주요 행정계획을 총괄 조정하여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
 -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원칙 및 의제(WEHAB 의제 등), 지방의제 21의 실천과제, 행정시책의 정책과제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선정, 수립
-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
 - 지방의제21이 지역의 경제·사회·환경을 통합하여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전담부서 설치 및 예산지원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도에서 원만히 시행되도록 조례제정, 지속위 설치·운영 지원 필요

<첨부자료>

1. 지속가능발전비전과 정책과제

라. 지방 지속가능발전 로드맵 수립

□ 배경

- 제4기 지속위 출범시 대통령께서 지자체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의제 개발과 연구에 관심을 갖도록 당부하심('06.5.2, 제4기 지속위 위촉장 수여 및 환담행사)
- 국가균형발전 등 지역개발 과정에서 예상되는 난개발 문제를 예방하고 원활한 정책 집행을 위하여 사전에 지역의 발전방향을 합의하는 제도와 정책 기반의 조성이 긴요
- 지금까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이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성과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지방지속가능발전 로드맵 마련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

□ 추진경과 및 현재 추진현황

- '06.5.26 : 전문가 등 '지방지속가능발전로드맵' TF팀 구성·운영
- '06.8~'07.2 : '지방지속가능발전 로드맵(안)' 마련 공론화 진행
 - 지역단체·지방공무원 간담회('06.8), 지속가능발전강원대회('06.9.6)
 - 지속위 전문위원, 본위원, 자문위원 의견수렴·보완('06.10~11)
 - 지방의제21전국대회('06.10), 전문가 간담회('06.11)
 - 관계부처 의견수렴('06.11~12) 및 시·도 정책기획관회의('06.12)
- '07.3~5 : 대통령 서면보고('07.5.10)
- '07.8.3 : 로드맵의 내용을 반영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공포
- '07.8~'08.2 : 지방지속가능발전 진단 및 컨설팅 연구 진행중
- '07.11.14 : 지방지속가능발전지원단 구성·운영
- '07.12.6~7 : 시·도 공무원 워크숍 개최(부산)
- '08.1 : 시·도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표준(안) 송부

□ 주요 내용

- 비전 : 분권과 자율에 기반한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실현
- 추진전략
 - 지방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 수립 유도
 -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 마련
 - 선도 지자체 선정·육성을 통한 지원 및 단계적 확산
- 중점 추진과제 : 4대분야 7대 중점과제

4대 분야	7대 중점 과제
I. 비전 확립	1. 지방지속가능발전 비전선언 및 협약 체결
	2.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II. 추진 체계 구축	3.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및 지속위 설치·운영 강화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행정 혁신
III. 실천 역량 강화	5. 지속가능발전 선도지자체 선정 및 육성
	6.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교육 내실화
IV. 평가 체계 운영	7. 지방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 향후 추진계획

- 제2차 시·도 공무원 워크숍 개최
 - 지방 지속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실무 등
- 지방지속가능발전지원단의 개편·운영을 통한 지원강화
 - 권역별 전문가 풀 운영 등 시·도 지원 강화 필요
 - 시도 행정계획 검토 내실화 등 운영 지원
 - 선도지자체 선정 육성방안 등 마련 필요

<첨부자료>

1. 지방지속가능발전로드맵 수립 및 실행방안

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및 이행체계 구축

□ 배경

- '03년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의 이행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 제안
 - '02년 "WSSD 이행계획"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률제정 권고
- 국정과제조정회의 보고('05.6) 및 대통령 지시('06.7)에 따라 입법 추진

대통령 관련 말씀

-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정책과제' 대통령 보고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 법적기반 마련을 우선 추진과제로 보고 ('05.6.1, 국정과제 조정회의시)
- 국토종합계획 수립시 심의 전단계에 지속위에서 대통령에게 자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검토 지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의 역할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지시 ('06.7.13, 국정과제보고회의시)

□ 추진경과 및 현재 추진현황

<법 제정 준비단계>

- '국가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추진(KEI, '05.11~'06.4)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 공론화 및 시안 마련('06.7~'07.1)
 - 법제연구원 등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TF 구성·운영 및 학계, 지자체, 산업계,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등 의견수렴
 - 국회의원·보좌관 설명회('06.11.22, 11.30), 광역지자체 정책기획관 회의('06.12.5), 환경부 실무 검토 및 사전 협의('07.1), 22개 부처 지속가능발전담당관 회의 및 사전 협의('07.1.16)

<법 제정 추진단계>

- 관계부처 협의 : '07.3.28~4.26
 - 중앙부처, 지자체 등 61개 기관에 의견조회(5개 기관 의견제출)
 - 중장기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에 대한 건교부 반대로 “협의” 대신 “의견 통보”로 문구 조정하여 합의
- 입법예고 : '07.4.13~5.3
 - 일반인 e-mail 의견제출 1명 3건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07.5.4 (규제해당사항 없음)
- 법제처 심사 ('07.5.4~'07.5.22)
 - 위원회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으로 전략 수립 주체를 '위원회'에서 '정부'로 조정하고, 위원회 기능중 '이행계획에 대한 조정·심의'는 삭제
- 국무회의 심의('07.6.5) 및 국회 제출 ('07.6.5)
- 환노위 심의 및 의결 ('07.6.21)
 -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관주도로 운영되지 않도록 구성원의 절반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자가 되도록 규정
- 법사위 심의 및 의결 ('07.7.2)
 -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란) 제정 필요성 인정
 - (소관부처에 대한 논란) 간사부처로서 환경부의 역할 인정
 - (법령 검토에 대한 논란) 부처협의과정에서 지속위에 통보하면 필요한 경우 지속위가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
- 국회 의결('07.7.3) 및 공포('07.8.3)
 - (국무회의 심의시 대통령님 말씀) 지속가능발전과 같이 의미있는 업무를 법적 기반을 가지고 추진하게 된 것이 바람직하며, 각 부처의 협조를 당부

<시행령 제정 추진단계>

○ 시행령(안) 입안 ('07.8~9)

- (전략 수립주체) 균형특별법의 사례를 참고하여 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고, 환경부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절차 등 절차를 수행하도록 함
- (이행계획 수립관련) 이행계획 수립지침을 환경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하여 각 부처에 송부하도록 함
- (지표 작성 주체) 국가 지속가능성 지표는 위원회가 작성하도록 함
- (중장기 행정계획 검토) 지속가능성 검토대상 78개 행정계획(안) 마련

○ 부처협의('07. 10. 29 ~ 11. 08) 및 입법예고('07.11.20 ~ 12.9)

- (중장기 행정계획 검토) 건교부, 산림청, 농림부 등에서 일부 행정계획 삭제 의견을 제시하여 수용
- (지방의제 21) 지방의제21 추진을 장려한다는 문구 삽입
- (갈등특위) 법상 근거가 없는 갈등특위는 삭제하고, 갈등관련해서는 전문위 구성·운영
- (위원회 사무국) 사무국 설치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며, 간사를 두는 규정으로 대체

○ 법제처 심의('07. 1월 초~1. 21)

- (전략 수립주체) 위원회가 전략초안 작성은 곤란하며, 환경부가 관계 행정기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략을 수립토록 수정
- (지방 의제21) 법상 근거가 없으며 의제21의 한 부분으로 지방의제21을 볼 수 있으므로 삭제

○ 법제처 심사 완료 후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의 이견으로 차관회의 상정 보류('07. 1. 22~)

- (산업자원부) 법 소관부처가 환경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여야 함
- (행정자치부) 위원회 폐지가 정부방침으로 확정된 시점에서 위원회

존치를 상정하는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건설교통부) 지속가능성 지표를 위원회가 작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개별 부처가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 국무회의 의결('08.4.10) 및 공포('08.4.16)

- 차관회의 상정없이 바로 국무회의 의결
- 당연직 위원 구성수 수정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법 개정 관련>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폐지방침 발표('08.1.16)

○ 정부차원에서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 국회처리 추진 중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등 개정안 국회제출·의원입법(안상수 의원등 140인)
 - '국가위원회' 폐지에 따라 이행계획 점검, 법령 및 행정계획 검토 등 국가위원회 기능을 환경부장관이 수행, '지방위원회'는 존속
 - 개정안 공포 3월후 법을 시행하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종료를 위한 잔무처리 사항에 한하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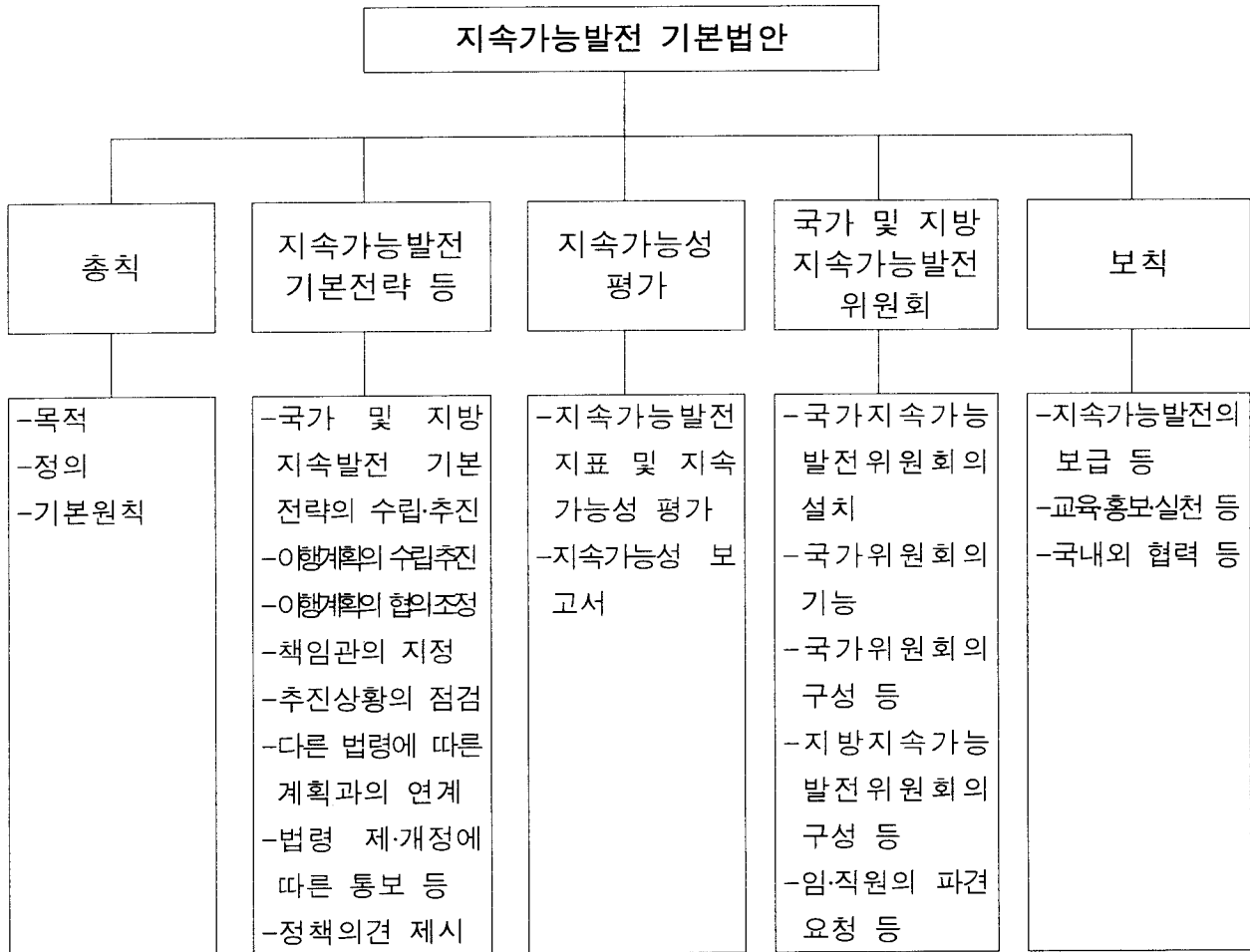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양당 협상결과 지속위 존치 합의('08.2.22)

- 위원회 폐지기준(활동성과, 기능달성 여부 등)을 볼때 지속위 폐지는 부적절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소관부처는 환경부로, 기획재정부 이관 논의 등은 바람직하지 않음

□ 주요내용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법률안의 체계 : 5장 22조로 구성



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원칙(안 제3조)

- 정책결정에 대한 시민참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촉진,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 및 기술혁신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을 명시

나.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안 제4조 및 제5조)

-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원칙 등을 담은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20년마다 수립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본전략 조화를 이루는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20년 단위로 수립

다. 이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각각 2년마다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

라. 법령 및 중장기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안 제11조)

- 국가지속위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법령 제·개정시 및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지방지속위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방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시 검토의견을 제시함
 - ※ 현제도 지속위 규정(대통령령 제19563호)에 따라 수자원장기 종합계획 등 43개 행정계획 등에 대해 검토·의견제시

마.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의 평가·공표(안 제13조 및 제14조)

-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종합적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공표
 - ※ 지속가능성 지표 : 대기오염도, 평균수명, 수송분담률 등

바.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
 - 시·도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장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국가와 지방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
- 16개 시·도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의무화하고 시·군·구는 자율적으로 설치

사. 지속가능발전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 정부가 지속가능발전 정보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보급 및 확산
- 시민단체나 기업 등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활동 지원 근거 마련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가.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절차(안 제2조)

-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입안한 후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

나. 국가이행계획의 수립절차(안 제4조)

- 환경부장관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이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이행계획 수립지침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관 분야에 대한 국가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 국가이행계획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심의를 위하여 그 계획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다. 법령 제정·개정 등에 따른 통보의 기간·절차(안 제10조)

- 법령의 통보시기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송부하는 때로 하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령과 중·장기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해당 부처에 통보하도록 함.

라.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의 평가(안 제11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지속가능성 지표를 작성하고,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마.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안 제12조)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최근 2년간의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바. 지속가능발전 교육(안 제23조)

- 국가와 지자체는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속가능발전 주간 운영 등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사. 부칙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은 폐지
- 법령 및 행정계획의 통보시기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부터 적용
- 기존의 국가이행계획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기본법에 의하여 계획 및 지표가 수립·작성될 때까지 동 영에 의한 계획 및 지표로 봄

□ 향후 추진계획

-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및 법에 따른 업무 추진
- 지방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구축 추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관련 첨부물>

1. 환경부 보고자료_070305
2. 지속법 청와대검토의견_070319
3. 관계부처 협의현황_070405
4. 법제처 사전설명결과_070410
5. 건교부장관 협의자료_070415
6. 지속법_부처협의안_070419
7. 지속법 환노위위원장면담자료_070426
8. 관계부처협의완료결과_070501
9. 지속법 심사관련 서류_070501
10. 지속법 법제처 합심안전_070510
11. 전략수립주체관련 회의결과_070510
12. 지속법 공청회결과조치_070529
13. 국무회의 의결후 국회제출절차_070605
14. 지속법 국회설명자료_070605
15. 국회행정실_요구자료_070613
16. 지속법 국회질의답변자료_070621
17. 해외 지속가능발전 입법 사례_070621
18. 지속법 환노위 논의 회의록_070619
19. 지속법 환노위법안심사소위_수정의결_070621
20. 지속법 법사위 논의자료_070629
21. 지속법 법사위소위 심사 쟁점별 답변 자료_070630
22. 지속법 법사위 논의회의록_070701
23. 법 제8612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_070803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정관련 첨부물>

1. 지속법 제정 이후 후속조치 추진방안_070723
2. 시행령안 전문가 회의자료_070830
3. 시행령안 환경부 검토의견_위원장보고결과_071008
4. 시행령안 부처협의안_071025
5. 시행령안 검토의견종합_071111
6. 시행령안 전국협의회의의견수용_071224
7. 시행령안 법제처 심의결과 보고_080114
8. 시행령안 법제처 국장결재_080118
9. 시행령안 법제처 처장결재_08012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개정안 관련 첨부물>

1. 지속법 개정안_행자부작성_080121
2. 지속법 개정안_안상수의원발의_080121
3. 위원회 업무관련 검토사항_080116
4.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준치관련 브리핑 자료(080222)

바.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 시범적용

□ 배경

- UN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은 '90년대 후반부터 국가 지속가능발전 평가지표체계를 개발, 활용중임
- '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도 '지표를 활용한 계획이행 평가」 권고(JPOI, X. 이행수단 제130-131항)
- 우리나라는 사회·환경·경제 분야 77개 지표를 선정, '06.10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07년 중 시범적용기로 함

□ 추진경과

- 2000년부터 환경부,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 여러 기관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대한 연구 시작
 - ※ 국가환경성평가지표 개발 적용연구('00년, 환경부), OECD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에 따른 국내통계 발전방향('03년, KEI) 등
- '05년, 지속위는 그간 연구결과를 토대로 256개 예비지표 선정 등 국내지표 개발에 본격 착수
 - 256개 예비지표 중 국내 적용가능성, 통계자료 유무, 국제지표와 연관성 등을 고려, 1차 지표(안) 169개 마련
- '06년, 1차 지표(안)를 토대로 토론회, 부처협의 등을 거쳐 77개의 2차 지표(안) 마련, 개발 완료
 - '06.10.31 국무회의 보고,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확정
 - '07년 중 시범적용, 문제점 보완 후 2년마다 평가기로 함
- ※ 지속가능발전기본법('08.2.4 시행) 제14조에 의거 2년마다 지표에 의한 국가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대통령 보고 후 공포해야 함
- '07.3월부터 세부평가기준 마련, 통계청 등 관련기관 통계자료협조 등을 통해 77개 지표를 평가하고 관계 부처협의
 - '07. 3~4월 : 세부 적용평가 기준 마련
 - '07. 5~8월 : 통계자료 수집·평가

- '07. 9~12월 : 지표 보완 및 지표관리체계 부처 협의
- '07. 12월 : 평가보고서 작성
- '08. 1월 : 지속위 본위원회 심의
- '08.1.25 대통령 서면보고
 - '08.1.10, 사회정책수석 주재 사회통계정비 관계부처 회의 보고
- '08.2.14, 언론 발표(기자 브리핑), 홈페이지 공개('08.2.19)

□ 주요내용

- 사회·환경·경제 3개 분야, 14개 영역, 34개 항목, 77개 지표 ※ 세부내용은 붙임 '지속가능발전지표 세부내용 및 적용결과표' 참조

- 사회 분야 : 6개 영역, 12개 항목, 25개 지표

영역	형평성			건강					교육	주택	안전	인구
항목	빈곤	노동	남녀 평등	영양 상태	사망 률	수명	식수	건강 관리	교육 수준	생활 환경	범죄	인구 변화
지표 개수	3	2	2	1	1	1	1	3	3	3	2	3

- 환경 분야 : 5개 영역, 11개 항목, 27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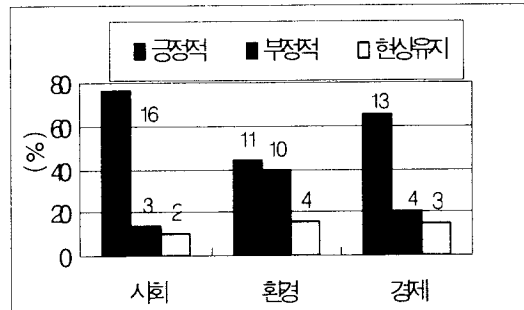
영역	대기			토지			해양/연안		담수		생물다양성
항목	기후 변화	오존 층	대기 질	농업	산림	도시 화	연안 지역	어업	수량	수질	생태계
지표 개수	3	1	1	5	3	2	3	2	2	2	3

- 경제 분야 : 3개 영역, 11개 항목, 25개 지표

영역	경제구조				소비/생산				정보화 등		
항목	경제 이행	무역	재정 상태	대외 원조	물질 소비	에너지 사용	폐기물 관리	교통	정보 접근	정보 인프라	과학 기술
지표 개수	5	1	2	1	1	4	4	3	2	1	1

○ 시범평가 결과

- 최근 5년간('02~'06)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추세
 - 특히 근로시간, 여성경제활동,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등 사회분야 지표의 개선이 뚜렷하며
 - 화학비료사용량, 4대강 수질 등 환경분야와 1인당 GDP, R&D 지출비율 등 경제분야 지표들도 개선추세
- 다만, 뚜렷한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는 사회분야 지표도 OECD수준에는 아직 못 미치는 수준이며
- 온실가스배출량, 갯벌면적 등 환경분야, 1인당 에너지소비량, 폐기물발생량 등 경제분야 지표들은 악화추세
- 77개 지표 중 변화추세를 평가한 지표는 66개로서, 이중 60%(40개)가 개선, 26%(17개)는 악화, 14%(9개)가 변동없음으로 평가되었음



□ 향후 추진계획

- 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실시와 개선방안 수립·추진
 - 개선사항 : 개별 지표정의 수정, 평가결과 해석방법, 타 국내 지표와의 연계성 및 핵심대표지표 홍보방법 등
 - 지표통계 신뢰성,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해 통계청이 통계를 생산하고 지속위가 평가하는 분담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 '08년 추진계획
 - 상반기 : 해석방법 등 개선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평가개선안 마련
 - 하반기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의한 지표 평가
 - 통계청 :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 통계 생산 및 제공
 - 지속위 : 지표평가, 해석 및 정책적 시사점 제안 등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첨부자료>

1. 지표현장적용가능성연구
2.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국무회의 보고자료
3. 부처검토의견 종합
4.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시범적용결과 보고
5.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시범적용 세부평가결과
6. 보도자료_지속가능발전지표시범평가결과

참고자료 : 지표 목록 및 시범평가 총괄표

분야	영역	항목	지표	5년 추세	현황 ('06년 기준)	OECD 평균(년도)
사회	1.형평성	1-1.빈곤	01) 빈곤인구비율	↗	10.8%	10.2('00)
			02)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	0.310	
			03) 실업률	→	3.5%	6.7('05)
		1-2.노동	04) 근로시간	↘	191.2 시간	144('05)
			05)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	62.8%	
		1-3.남녀평등	06)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	65.3%	
			07)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	54.8%	60.8('05)
	2.건강	2-1.영양상태	08) 유소년 영양 상태	→	결핍 6.9%, 과잉 7.9%('05)	
			09) 영아 사망률	↘	4.1명/천 명	5.8('04)
		2-3.수명	10) 기대여명	↗	79.2세	78.3('05추계)
			11)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	82.6%(읍) 37.7%(면)('05)	
		2-5.건강관리	12) 건강보험보장률	↗	61.8%('05)	
			13) 사회복지지출	↗	GDP 9.02%('05잠정)	20.7('03)
			14) 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	→	78.3%(BCG)('05)	
			15) 중등학교 순졸업률	→	98.4%(중학교, '05)	82('05)
	3.교육	3-1.교육수준	16)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	30.9명	21.4('04)
			17) 공교육비 지출	→	7.2%(정부+민간)('04)	5.9('03)
			18) 최소주거기준 미달 가구수	↘	13%('05)	
	4.주택	4-1.생활환경	19) 주택 수(인구 1천 명당)	↗	279.7호('05)	
			20)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	6.4배	
	5.재해·안전	5-1.범죄, 재해	21) 범죄발생률	↗↘	3,787건/10만 명	
			22) 자연재해 피해	↗	63명, 1.9조원	
	6.인구	6-1.인구변화	23) 인구 증가율	↘	0.33%	0.77('05)
			24) 인구 밀도	↗	485명/km ²	34('05)
			25) 고령인구비율	↗	9.5%	13.9('05)
	환경	1.대기	26) 온실가스 배출량	↗	591.1MtCO ₂ ('05)	
			27)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	12.24tCO ₂ ('05)	11.02tCO ₂ ('05)
			28)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	0.82tCO ₂ /백만원('05)	0.45tCO ₂ /2,000USD('05)
		1-2.오존층	29) 오존층파괴물질 소비량	↘	CFC : 2,913톤 할론: 124톤	
			30) 광역도시권별 대기오염도	↗	서울:41, 부산:21, 대구:29, 인천:30, 광주:33, 대전:43, 울산:23회 (초과횟수/측정소)('05)	
		2.토지	31) 농지면적 비율	↘ (↗)	1,800천ha, 1.45ha/호	
			32)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비율	↗	6.2%	
			33) 식량자급률	→	29.2%('05)	
			34) 화학비료 사용량	↘	257 kg/ha(N,K,P)	23.3(N)('97)
			35) 농약 사용량	↘	12.9 kg/ha	0.7('04)
			36) 국토면적 중 산림지역 비율	↘	64.1%	34.4('04)
			37)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9.2 m ²	
			38) 목재 벌채 정도	↗	10.7%	60%('04)

분야	영역	항목	지표	5년 추세	현황 (‘06년 기준)	OECD 평균(년도)
		2-3.도시화	39) 도시화율	↗	90.3%	
			40) 수도권 인구 집중도	↗	48.6%	
	3.해양/연안	3-1.연안지역	41) 연안오염도	→	COD 동해 090 석해 1.27, 남해 1.40mg/l	
			42) 폐기물 해양 투기량	↗↘	8,812 천m ³	
			43) 갯벌 면적 증감	↘	-653.3 km ² , (-20%) (‘87~‘05)	
		3-2.어업	44) 수산자원량	↘↗	790만 톤(‘05-목표치)	
			45) 어업양식량	↗	1,259천 톤	4,417천톤(‘04)
	4.담수	4-1.수량	46) 취수율	→	36.2% (‘05)	11.4%(‘05)
			47) 1인당 1일 물소비량	↘	362 ℓ /인/일 (‘05)	920(‘05)
		4-2.수질	48) 4대강 수질오염도	↘	BCD 팔당1.2, 물금2.7, 대청1.1, 주암1.1	
			49) 하수도 보급율	↗	83.5 % (‘05)	64% (‘04)
	5.생물 다양 성	5-1.생태계	50) 자연보호지역비율	↗	9.84 %	16.4%(‘05)
			51) 국가생물종 수	↗	29,916 종 (‘05)	
			52) 멸종위기종 수	↗	221종 (‘05)	
경제	1.경제 구조	1-1.경제이행	53) 국내총생산(GDP)	↗	8,838 억불	
			54) 1인당 GDP	↗	18,374 \$	28,486(‘05)
			55) 경제 성장률	→	5.0 %	2.5%(‘05)
			56) GDP 대비 순 투자율	↗↘	30.5%	21.3%(‘03~‘05)
			57) 소비자물가지수	↗	117 (2000년=100)	115(‘05)
		1-2.무역	58) 무역수지	↗↘	104.5억불	-1.3% (‘05)
		1-3.재정상태	59) 국민 1인당 조세부담률	↗	21.2%	35.9%(‘05)
			60) 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	→	29.8%	
		1-4.대외원조	61) GNI대비 공적대외원조(COA) 비율	→	0.05%	
	2.소비 /생산	2-1.물질소비	62) 자원생산성	↗	120 만원/톤 (‘05)	
		2-2.에너지 사용	63) 1인당 연간 에너지 소비량	↗	4.79 TOE (‘05)	4.73(‘04)
			64) 총에너지 공급량	↗	229백만TOE(1차 에너지 소비) (‘05)	5,508(‘04)
			65) 재생가능에너지자원 소비 비중	↗	2.2%	6.1%(‘05)
			66) 에너지 원단위	↘	0.307 TOE/백만원	0.195(‘00)
		2-3.폐기물 관리	67) 생활 및 일반폐기물 발생량	↗	106 백만톤/년 (‘05)	550kg/인(‘04)
			68) 지정폐기물 발생량	↗	8,634톤/일(‘05)	
			69)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	↗	6,849드럼(‘05)	
			70) 폐기물 재활용 및 재이용	↗	56.3%(생활) 68.5%(사업장) (‘05)	
		2-4.교통	71)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	42.6% (‘05)	
			72) 자전거 도로 총 연장	↗	9,066 km	
			73) 자동차 사고건수	↘	사망 3.2명/1만대, 13.0명/10만대	2.5명/1만대, 10명/10만대 (‘05)
	3.정보 화 등	3-1.정보접근	74)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	14,043 천명(인구비 29.1%))	16.9%(‘06)
			75) PC보유 가구비율	↗	79.6%	59.7%(‘06)
		3-2.정보인프라	76) 온라인 신청가능 민원종류	↗	648 종	
		3-3.과학기술	77) GDP 대비 R&D 지출 비율	↗	3.2%	2.26%(‘05)

사. 지속가능발전 국민·공무원 인식조사

□ 배경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일반국민과 공무원들의 인식 및 실천수준과 정책 수용도를 파악하여,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인식 확산 및 제고를 도모하고,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필요

□ 추진경과 및 현재 추진현황

- 조사설계 :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설계
'06.10.23~12.7 1:1 면접을 통한 조사 등 조사방법, 샘플 설계
- 조사용역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민인식조사(국민,공무원)'
'06.12.29 설문지작성(지속위, 전문가, 수시과제)
'07.1.10~26 설문지(안)에 대한 공유 및 의견수렴
'07. 3.12~3.19 사전조사(Pre-test) 실시
'07.3.23~4.30 조사실시
'07.5.9 중간보고회 (조사결과 발표)
'07.5.22(1차) 결과분석 자문회의
'07.6.18(2차) 결과분석 자문회의
'07.6.28 최종보고회
'07.7.16(3차) 결과정책보고서 작성회의
'07.7.26(4차) 결과정책보고서 작성회의
'07.7.31(5차) 결과정책보고서 작성회의
'07.11.1 조사결과 대외홍보(홈페이지 게재 등)
'07.11.2(6차) 최종평가 회의

□ 주요내용

- 개인수준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
-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
- 지속가능발전관련 정책분야별 수준 및 중요도
- 지속가능발전 용어 인지도 및 인지내용
-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 및 요소별 중요도

- 중앙 및 지방정부, 기업의 지속가능발전 고려 정도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일상적 행위 및 실천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관 및 사업 인지도

□ 주요 조사결과 및 시사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태도>

- 대다수가 지구환경위기(기후변화, 산림파괴 등)의 심각성 공감(91.0%)
- 정부의 지구환경위기 대비태세가 미흡(76%)
- 대다수가 미래세대를 위해 불편을 감수할 의향을 가짐(69.3%)
- 대체로 환경/에너지/자원 보전을 위해 개인적 노력의사가 있음

⇒ 국민적 실천 의지와 위기감에 비하여 정부의 대응태세가 낮아, 향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추진 필요

<삶의 질에 대한 평가>

- 개인 삶의 질에 만족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음(만족 41%,불만족 20.1%)
- 대다수가 개인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긍정적 전망(71.8%)
- 개인 삶의 질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25.7%)
-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우선 추진과제로서 '빈부격차해소'(33.0%), '일자리창출'(28.3%)이라 응답

⇒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향후 사회정책 분야의 관련 이슈를 적극 발굴·추진 필요

<지속가능발전 인식>

- 지속가능발전 용어 인지도(25.3%),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일치되는 의견 정인지도(5.4%)는 낮게 나타남
- 개념인지 후 대다수가 지속가능발전이 국가발전 목표로 적합응답(88.4%)
 - 공무원의 경우, 96.3%가 국가발전 목표로 필요하다 응답(1천명조사)
- 대다수가 지속가능발전이 달성가능하다고 응답(81.1%)

⇒ 대다수가 지속가능발전을 국가발전 목표로 수용하고 있어, 향후 인식 제고를 통해 행정이념으로 정착시킬 필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위 역할>

- 향후 사업으로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26.7%),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22.1%), 정부 주요행정계획 검토(14.7%) 순으로 제시
- 추진정책 중 개발과 보전의 통합정책(38.6%), 갯벌보전정책(39.4%),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실행방안 제시(39.1%)등을 높이 평가

⇒ 국가와 지방의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통합적 추진과 이를 제도화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필요

□ 향후 추진계획

- 지속가능발전 인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필요
 - 인식변화의 추이를 분석하여, 정책 추진 및 홍보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필요
 - 동 조사와 같은 심층면접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매년 지속가능발전 주간행사시 인식변화에 대한 간단한 조사 실시 필요

<첨부자료>

1.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일반국민 인식조사 보고서
2.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보고서

3. 갈등관리 및 현안조정

가. 갈등관리체계 구축

나.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추진 및 후속

다. 갈등관리 교육 포럼

라. 갈등조정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마. 한탄강댐 갈등조정프로세스

바. 장항산단 갯벌매립정책

사.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정관련 지속가능성 제고

아. 새만금 갯벌매립 관련

가. 갈등관리체계 구축

□ 배경

- 참여정부 출범이후 새만금 간척사업, 천성산 터널공사 등을 둘러싼 갈등이 분출되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 없어 갈등해결 지연 및 사회적 손실 초래
 - 대통령께서 빈발하는 사회적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 제3기 위원회에 갈등관리 기능부여

□ 추진경과

- 대통령님께서서 3기 지속위에 갈등관리 시스템구축 지시('03.10)
- 지속위 주관으로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을 연구('03.10~'04.1)
- 국정과제회의에서 대통령께 연구내용 보고('04.2.12)
 - 대통령께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등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지시
- 지속위에서 갈등관리법 제정방안을 대통령께 보고('04.9.24)
 -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 등 총리실 주관으로 추진
-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등 관련자료 국무조정실에 이관('04.10.2)
- 갈등관리기본법(안) 국회제출('05.2, 국무조정실)
 - 국회의원 등의 부정적 입장으로 법제정 무산
- 대통령님께서서 '대통령령' 제정 검토지시('06.9, 총리 주례보고시)
- 갈등조정특별위원회('06.11.21~'08.11.20) 설치
 -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결 목적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정('07.5.13 시행)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 공포('07.8)

□ 주요내용

○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지원

- 갈등관리기본법제정 연구팀을 구성하여 법 시안을 마련, 대통령님께 보고하고 국무조정실에 이관('04.10.2)
-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하여 국회 제출('05.5.27)
- 국회에서 법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대통령님께 보고드리고 대통령령으로 제정('07.2.12, 대통령령19889호)

○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 검토

- 지속위에서 기본연구를 거쳐 '갈등관리법안'에 반영하여 국무조정실에 이관('04.10)하였으나, 법 제정 어려움으로 대통령령으로 기존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지원 등을 통하여 육성하는 방안 강구

○ 갈등관련 법과 제도 개선

- 지속위에서 '갈등관련 법제도 개선지침'을 마련, 관계 부처를 통해 소관 법령 중 갈등예방을 위한 자체 제도개선 추진('04.8)
- 지속위에 법제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팀을 구성, 개선과제 추가 발굴 추진('05.1)
- 관련 5개부처(건교부·해수부·환경부·산자부·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수용 가능한 10개 법률을 우선 정비과제로 선정, 서면보고 후 관계부처 시행('06.5)

○ 갈등관리 세미나 및 포럼 실시

- 갈등관리 전문가 포럼('04.6), 전문가 초청세미나('04.7)
-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정책 워크숍('04.7.28)
 - 대통령님 참석, 공공갈등의 원인과 문제점 진단, 제도개선 토의 등
- 공공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 포럼 운영('05.5.6)

○ **갈등관리 교육 및 교재 개발**

- 교재 출판 : 공공갈등 관리의 이론과 기법(상, 하)
- 갈등관리전문가양성 워크샵 (3차례 실시)
- 갈등관리전문가양성 교육 2회 실시(각5일간/총 64명)
- 지방자치단체 소지역갈등 교육 1회 실시(4일간/ 32명)
- 중앙공무원 교육원 등 전문교육 개설 운영(22개 과정)
 - 중앙공무원교육원, 자치인력, 환경, 건설, 농림교육원, 시·도 공무원 교육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등

○ **한탄강댐 갈등조정 추진 및 후속조치 지원**

- 공동협의회 운영소위에서 '공협'구성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관련자들의 참여거부로 관련업무를 국무조정실로 이관('05.5)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산하에 「검증·평가실무위원회」를 설치 실무검증 추진('05.8)
-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 제5차회의에서 「검증·평가 실무위원회」가 건의한 「홍수조절용댐·천변저류지안」을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방안으로 수용기로 결정('05.8.22)

○ **갈등조정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심야전기제도' 정책권고안 마련('07.7.4)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과('08.2.4) 동시, 갈등조정특위의 설치근거인 「지속위 규정」 폐지로 갈등특위는 폐지하고 갈등 관련 정책자문 사안에 대하여 전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자문 역할 수행 예정('08.1월 방침확정)

<첨부자료>

1. 정부의 정책조정 및 갈등조정체계
2. 국가 갈등관리시스템 관련 회의결과
3. 갈등관리 백서 자료
4. 백서 기본자료

나.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추진 및 후속

□ 배경

○ 대통령님 지시(03.4.15)

- 국무조정실이 주도하고 청와대 및 각 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갈등해소 논의기구 구성을 검토하기 바람
- 갈등해소를 위한 절차, 방법, 아이디어를 모아 준거할 만한 원칙을 만들고 모범사례를 축적하여 적절한 시점에 보고해 주기 바람

□ 추진경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추진경과】

- 대통령님 지시에 따라 '갈등해결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03.10-'04.1)
- 대통령님께 갈등관리기본법 제정방안 등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보고('04.2.12 국정과제회의)
- 갈등관리기본법(시안)연구
 - 갈등관리기본법제정팀 구성, 연구팀 및 의견수렴 회의를 통해 갈등관리기본법 1차시안 마련('04.3~6)
 - 시민단체·전문가·부처 의견수렴 및 시민사회수석실 보완('04.7)
 - 관계부처 1급회의, 국무총리 보고 후 시안 수정('04.8)
-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을 대통령께 보고('04.9.30)
 -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 등 총리실 주관 추진
- 갈등관리기본법 관련서류 국무총리실(입법 주관부처) 이관('04.10)

【국무조정실 및 국회 추진경과】

- 국무조정실에서 정부입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
 - 입법추진팀 회의를 거쳐 법안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04.11~05.4)
 -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공청회, 법제처 심사(4.26~5.19)
 - 차관회의(5.19) 및 국무회의(5.23) 의결을 거쳐 국회 제출(5.27)
- 국회(정무위원회) 법안 상정 및 심의
 - 국회 정무위 상정('05.11.24), 공청회(11.25), 법안심사 소위 심의(12.6)
 - * 오제세·이명규 의원 등에게 법안설명회 약 50여회 개최(05.4~12.5)
- '06년중 국무조정실에서 국회(정무위원회)와 협의를 계속하였으나 부정적인 의견으로 인하여 입법 추진에 어려움
 - *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 실시('06.3.9)
 - * 한나라당 보좌관(7.19), 열린우리당 보좌관(7.21) 설명회 개최 및 박병석 정무위원장 등에게 법안설명회 9회 실시(8.9~8.23)
- 정무위 법안소위 추가논의결과 법안소위 계류기로 결정(9.18)
- 국무조정실에서 국회 입법지연에 따른 추진방향을 대통령님께 보고
 - 대통령께서 갈등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대통령령」 제정방안 검토 지시('06.9.18, 총리 주례보고시 대통령 지시사항)
- 국무조정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제정 추진
 - 대통령령 초안 마련 및 법제처와 실무협의 실시('06.10.16)
 - 대통령령 초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06.10.26)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정('07.2.12, 대통령령 19889호)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07.5.11, 총리령 847호)

□ 주요내용

- 명칭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07.2.12, 대통령령)
- 적용대상 : 공공기관의 공공정책 등(정책 · 사업 · 법령)
 - 공공기관간의 갈등이 아니라, 공공정책등과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간의 갈등
 - 대통령령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총리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대통령령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
- 갈등영향 분석 방법 명시
 - 정책입안단계부터 주요 이해관계인과의 직접면담을 통해 사전에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강구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 공공기관에 설치, 총11인 이내로 갈등영향분석서 심의, 갈등관리 역량강화(시책수립, 교육훈련, 법령정비 등)를 위한 자문
-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 공공정책에 시민과 이해관계인을 결정과정에 동반자로서 참여시켜 사회적 합의형성을 도출하는 새로운 방법
-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 운영
 - 공공기관과 이해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중립적인 조정자 선임, 조정회의체 구성, 기본규칙 제정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

<첨부자료>

1.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07.2.12, 대통령령 19889호) 및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07.5.11, 총리령 847호)
2. 대통령령 제정 검토회의 결과
3. 갈등관리법제정 대응방향 검토
4. 갈등관리기본법 및 법 · 제도개선 자료집

다. 갈등관리 교육 포럼

□ 추진배경

- 빈발하는 공공갈등의 예방을 위하여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의 하나로 추진
 - 대통령지시 : 갈등다발부처 공무원 등에 대한 갈등관리 교육 실시('04.2)
- 사회갈등의 대부분이 공공정책·사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므로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

□ 추진경과

- 갈등관리교육 추진기반 구축('04.3)
 - 행자부,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공무원교육원, KDI(협상조정센터) 주축으로 '갈등관리교육과정'을 개설·운영
 - '지속위'에서 갈등다발부처 갈등관리교육 추진 협조요청 및 갈등관리교육 전문가 강사인력풀 제공('04.5)

□ 주요내용

-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갈등관리 포럼, 세미나 등 개최
 - 갈등관리 전문가 포럼('04.6), 전문가 초청세미나('04.7)
 -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정책' 워크숍('04.7.28)
 - '공공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 포럼('05.5.6)
- 공무원교육기관 등의 갈등관리 교육
 - 중앙공무원교육원 : '01년 개설, 연2회(1주일과정), 5급이상
 - 지방혁신인력개발원 : '98년 개설, 연1회(1주일과정), 4-6급
 - 16개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도 갈등관리, NGO협상과정 등 갈등관리 관련과정을 다양하게 개설, 운영
- 업무특성상 갈등관리가 중요한 환경부, 건교부, 해수부 산하 교육기관에서도 갈등관리과정을 운영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연4회(1주일과정), 공무원/민간

- 건설교통인재개발원 : 연3회(3일과정), 5급이하
 - 해양수산인력개발원 : 연1회(3일과정), 공무원/민간
 - 한국개발연구원 : 연5회(2~3일과정), 공무원 7급이상/민간
 - 각 부처에서도 수시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관련 교육 및 워크샵 실시(국방부, 복지부 등)
- 갈등관리 교육 교재 인 '공공갈등 관리의 이론과 기법' 발간
 - 관련전문가 연구팀을 구성(총괄 : 박재묵 충남대교수, 30여명 참여), 40여 차례 회의와 토론을 거쳐 초안 마련, 1차 워크샵에 시범 적용한 후 보완을 거쳐 출판
 - 수록 내용 : 공공갈등의 이해(총론), 갈등영향분석, 참여적 의사결정, 의사소통, 협상, 조정 등에 대한 이론 및 사례 등
 - 지속위의 '갈등관리전문가양성 워크샵' 실시(2회)
 - 교육대상 : 총 64명(1회 각32명)
 - * 공무원 19명(중앙10, 지방9), 공기업9명, 시민단체 28명, 변호사7명, 교수1명
 - 내용 : 공공갈등 이해, 갈등영향분석, 참여적 의사결정, 의사소통, 협상과 조정 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해 주요 프로세스별 교육 진행
 - 공무원 교육기관을 비롯하여 시민교육기관, 대학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갈등관리 교육이 더욱 확산되어 나갈 필요가 있음
 -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워크샵과 세미나, 갈등문제에 대한 교육, 포럼 등을 통하여 공무원, 시민사회 등을 비롯한 우리사회 전반의 갈등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됨

<첨부자료>

1. 대통령님 지시사항('04.2)에 따른 갈등관리교육계획안
2. 「갈등관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활성화 방안연구」에 대한 최종보고서

라. 「갈등조정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배경

- 갈등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대통령님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06.11월 4기 위원회는 정책자문 기능과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한 자문기능을 분리하여 “갈등조정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 (위원회규정 제3조, 대통령령 제19453호)

□ 추진경과

- “갈등조정특별위원회” 구성('06. 12. 1, 청와대 오찬행사로 추진)
 - 위원위촉 : 위원장, 본 위원회 위촉위원 21명, 지역 대표 31명 등 52명(시·도별 2명, 단 경기도 1명)
 - ※ 후보자 추천안 제출→ 인사협의회 상정(2배수)→ 인사추천회의 및 인사검증→ 위촉 동의 및 중앙인사위 위촉결재상신→ 대통령 위촉
 -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06.11.21~'08.11.20)
- 후보과제(4개) 선정('06.12.15, 과제검토소위),
- 갈등현안 조정 후보과제(4개)중 3개를 예비과제로 선정, 추진결정('07.1.19, 과제검토소위)
- 1차 갈등조정특별위원회 회의('07.3.23)
 - 갈등현안조정과제 추진을 보류하고 '심야전기제도' 공론화를 시민배심원단회의로 추진하고 '시민배심원단회의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결정
- '에너지 가격정책 과제 공론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07.3.28)
 - 위원구성(7명) : 특위위원 3명, 찬·반전문가 2명, 에너지 관련 언론인 1명, 배심제프로세스전문가 1명
- '시민배심원단회의 운영위원회' 회의(4회)
 - 1차 : 공론화과제 제안서 보고 및 토의, 운영위원회 운영방향, 언론보도, 증언 발표자 및 증언자료 검토('07.4.11)
 - 2차 : 시민배심원단 구성방안 논의 등('07.4.20)
 - 3차 : 시민배심원단(21명) 구성 확정 등('07.4.30)
 - 4차 : 배심원제 오리엔테이션 산자부 심야 전기제도 업무현황 설명, 현행 유지·신규중단 요금인상측 각 1인씩 증언 및 질의응답 등('07.5.7)

- 심야전기제도 시민배심원단 회의(3회)
 - 예비회의 : 배심원 오리엔테이션('07.5.21)
 - 1차 : 신규중단 요금인상측 증언청취 및 질의응답 등('07.5.31~6.1)
 - 2차 : 현행유지측 증언청취, 보충질문 및 토론, 시민배심원단 회의 및 최종의견 결정('07.6.12~6.13)
- 2차 갈등조정특별위원회 회의('07.7.4)
 - '심야전기제도' 정책권고안 검토 및 확정
- 갈등특위 과제 소위원회 개최('07.9.14)
 - 갈등특위위원 제안 신규의제(10건) 검토 등
- 3차 갈등조정특별위원회 회의('07.12.10)
 - 갈등특위 운영성과 및 활동방향 등 논의

□ 주요내용

- '심야전기제도' 에 대한 정책권고
 - 왜곡된 심야전기제도를 개선함이 타당하기에 기저발전으로 생산된 잉여전력량을 초과한 심야전기 신규신청을 최대한 억제하고,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

□ 향후 조치사항

- 갈등특위는 폐지하고 갈등관련 정책자문 사안에 대하여 전문위원회를 통해 자문역할 수행 예정('08.1 방침확정)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과('08. 2. 4)동시, 갈등조정특위의 설치근거인 「지속위 규정」 폐지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정비

<첨부자료>

1. 갈등조정특별위원회 개최현황 및 위원 명단
2. 갈등조정특위 운영방안 보고서
3. 정책과제 공론화 시민배심원제 추진소개
4. 심야전기제도 배심원단의견

마. 한탄강댐 갈등조정프로세스

□ 배경

- 경기 북부지역 및 철원지역의 대홍수('96, '98, '99년)를 계기로 수립한 '수해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한탄강댐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 등의 반대로 건설계획이 중지됨에 따라 대통령께서 '한탄강댐 관련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지시('03.12.19, 강원도민과의 대화 시)

□ 추진경과 및 내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업무추진】

- 제38회 국정과제회의시 '한탄강댐 갈등관리 추진계획'을 대통령님께 보고('04.2.12,)
- 지속위 내에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04.2, 갈등조정전문가 4명) 설치, 관련 당사자(찬·반측 주민대표, 환경단체, 건교부/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갈등조정절차를 진행
- 「관련당사자회의」('04.6.~'04.8, 21차례 회의)에서 「조정소위」에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대안결정을 위임하기로 합의('04.8)
- 이에 조정소위는 '천변저류지와 홍수조절용 댐'을 대안으로 조정결정 하여 대통령께 보고('04.11.2, 국정과제 조정회의)
 - 조정결정 요지 : 천변저류지와 홍수조절용 댐의 홍수 조절효과, 댐의 규모 및 안전성 등 4개 확인 사항을 협의체를 구성하여 '05.10까지 검증(1년간)
 - 관련당사자들 지속위가 '공동협의회'를 구성·운영 해 줄 것을 요청

【공동협의회 구성·운영 관련 당사자입장 및 협의과정】

- 댐건설 반대측은 홍수조절용 댐을 포함한 모든 대안에 대한 경제성 및 환경성검토를 공동협의회 의제로 포함하는 안을 주장, 그러나 찬성측과 건교부/수자원공사는 이를 거부('05.2.23)
- 운영소위는 반대측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여 '홍수조절용댐'의 경제성과 환경성검토를 의제로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시, 그러나 찬성 측과 건교부/수자원공사가 거부('05.3.11, 3.18)
 - 이에 대해 운영소위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천변저류지와 홍수조절용댐의 환경영향평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법적 절차사항을 공동협의회의 의제로 논의하는 절충안 제시
- 운영소위는 4개 관련당사자에게 절충안의 수용여부 등 공동협의회 참여여부를 공문으로 최종 확인 요청

- 찬성측·환경단체·건교부/수자원공사는 참여입장인 반면, 반대측은 참여거부('05.4.21)
- 이에 따라, 운영소위에서 4개 관련당사자 합의에 의한 공동협의회 구성이 어려울 것으로 결정('05.4.22)
- 운영소위는 공동협의회 구성을 위해 당사자들과 34차례의 협의를 진행하였으나('04.12~'05.4), 전문가의 검증기간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일정지연 시 주어진 기간('05.10까지) 안에 공동협의회 임무완수가 곤란
- 한탄강댐 갈등조정 추진경과와 평가에 대하여 대통령님께 서면 보고하고 국무조정실에 관련업무를 이관('05. 5.23)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와 그 산하에 이해 당사자를 배제하고 분야별 전문가들로 「검증·평가 실무위원회」를 설치 검증평가 작업 실시('05.8)
- 임진강 홍수방지대책에 대한 타당성 검증 실시(1,2차 특위, '05.9.9, 12.27)
- '06.2월까지 댐을 배제하고 가능한 대안검토 결과, 제방增高와 천변저류지 등으로는 안정적인 홍수대책으로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3차 특위, '06.3.27)
- '06.8월까지 기존 연구자료, 해외사례조사 등을 통한 모든 대안에 대하여 검증·평가를 실시기로 결정(4차특위, '06.5.15)
- 4차 특별위원회 후 신뢰성과 객관성 제고 등을 위해 토론회, 여론조사 등 실시
 - 천변저류지의 홍수조절효과 계량화 방안 검토를 위한 일본출장(5.31~6.3)
 - '기본 홍수량 및 댐 홍수조절효과'관련 토론회 개최(6.8)
 - 검증·평가(안)에 대한 실무위원회 워크샵(7.21)과 외부전문가 및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8.4)
 - 검토대안 관련 지역주민의 수용성 여론조사 실시(7.27~8.11)
 - 지역주민피해 및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지방문 영향평가조사 실시(KDI 갈등조정 협상센터, 7.31~8.14)
- 검증평가실무위원회 검증평가결과, 제시된 5개 대안 중 홍수조절용댐과 천변저류지를 함께 건설하는 방안이 홍수조절의 적정성, 안전성, 환경성 등에서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건의
- 「검증·평가실무위원회」가 건의한 「홍수조절용댐+천변저류지안」을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방안으로 수용기로 결정(5차특위, 8.22)

□ 추진 평가

- 대화와 합의의 원칙하에 중립적인 조정자에 의한 갈등 해결을 시도한 첫 사례로서 대안적 갈등해결 절차의 적용가능성을 보여줌
 - 찬·반 주민대표 등 이해당사자들은 댐건설여부에 대한 입장은 다르지만 갈등조정 및 공동협의회 구성 과정에서 인내심을 갖고 성의 있는 대화를 진행하였음을 높이 평가
 - 이를 통하여 4개 당사자중 3개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냈으나, 반대측 주민대표의 반대입장 고수로 전체 합의를 이루지는 못함
- 대형국책사업 추진 시 입안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합의를 도출하는 등 사전예방 차원의 적극적 갈등관리가 중요

<첨부자료>

1. 한탄강댐관련 공동협의회 추진경과 및 평가요약
2. 임진강공동협의회 운영소위 활동결과보고

바. 장항산단 갯벌매립정책

□ 배경

- '89년 군산산업단지와 함께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었으나 군산산단(470만평)은 '93년에 착공되어 '06년말 완공된 반면, 장항산단은 IMF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추진과정에서 사업면적도 지속적으로 축소

※ 470만평('89) → 445만평('00) → 374만평('05)

- '05.5월 장항산단 착공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하였으나, 환경훼손 문제와 산단조성의 경제성 논란으로 지연
 - 해양환경파괴 문제로 지속위, 환경부, 해수부 등 갯벌매립 반대 입장
 - 서천군, 충남도는 원안착공을 주장하며 물리적인 압력시위 시작
 - 서천군수 단식('06.11), 서천군민 상경시위 및 자녀 등교거부 · 금강 하구둑 점거 시도('06.12) 등

□ 추진경과 및 현재 추진현황

- 갯벌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
 - 갯벌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만큼 서해안 해양생태계를 교란하고 희귀철새 서식지를 파괴할 수 있는 대규모 갯벌매립은 불가입장
 - 지역에서는 장항갯벌이 이미 갯벌기능을 상당부분 상실하였고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해 조속한 착공이 필요함을 주장
- 충남도 전체의 지역문제로 비화
 - 군산산업단지 우선 준공, 새만금지역 공단입지 허용 등으로 인해 지역차별론이 대두되면서 충남도 전체의 문제로 광역화

○ 중앙정부와 정부정책에 대한 지역의 불신

- 역대 정부는 계속하여 사업추진을 약속하였으나 산단 진입도로 건설사업 일부 지원 등에 그침으로써 불신을 초래

○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정부부처간 이견이 지역에 상세히 노출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가중

○ 갈등해결 노력과정

- '06.11월 : 관계부처, 서천군, 충남도로 장항산단특위 및 실무위를 구성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였으나 서천군 참여거부로 무산됨
- '06.11월 : 지속위는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대안마련 모색에 주력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해외 성공사례 출장 추진
- 국내 민간투자회사에 지역발전프로젝트 자문 및 연구조사 진행
- 영국(에덴프로젝트)과 대만(국립해양박물관)을 방문, 사례조사
 ➡ 환경부 국립생태원, 해수부 해양생물자원관 대안이 수립됨
- '07.3월 : 서천군은 정부대안에 대하여 전문가 27명에게 용역을 의뢰한 결과 80%이상이 산단 조성 보다는 정부대안을 추진토록 권고
- '07.5.17 : 서천군 정부대안 조건부 수용 전격발표
- '07.5.22 : 국무회의에서 장항산단 종결보고
- '07.5.31 : 관계부처 주관 서천지역 설명회 개최
- '07.6. 8 : 관계부처와 서천군 협약서(MOU) 체결

□ 향후 추진계획

- 국조실 산하에 '서천발전TF' 발족 및 서천군 관계자 영국시찰
 - 사업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실행계획 수립, 추진 중
 - 서천군수 및 군의회 관계자 영국 에덴프로젝트 시찰('07.6)
- 부처별 사업 추진관련 조직 설치 및 예산준비 등 업무추진
 - 환경부는 국립 생태원 추진기획팀 설치, 운영 중
 - 해수부 국립 해양생물자원관 추진기획단 설치, 운영 중
 - 건교부는 내륙산단 조성사업 추진 중
- 국립생태원은 2011년까지, 해양생물자원관은 2012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사.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정관련 지속가능성 제고

□ 배경

- 동서남해안권은 우수한 입지여건과 풍부한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토지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와 기반시설부족으로 지역발전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어 과감한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역발전 유도
- 경남도가 중심이 되어 동서남해안의 연안을 중심으로 U자형 해안발전을 추진하여 서울중심의 수도권 일변도의 불균형성장을 해소하고자 함

□ 추진경과 및 현재 추진현황

- '06.8~12 : 4개 법안 의원발의(신중식, 김재경, 주승용, 윤두환 의원)
- '07. 4.19 : 국회 건교위 상임위 의결
- '07. 4~11 : 국회 법사위 심의(법안심사소위로 회부)
- '07. 11.22 :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 '07.12.05 : 지속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대응 필요성 논의
- '07.12.14 : 지속위 본위원회 개최, 특별법 제정 반대건의문 채택
- '07.12.20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정반대 건의문 대통령님께 보고
- '07.12.24 : BH 4가지 조건*을 반영한 추가 개정을 조건으로 요구
 - ①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개발구역에 적용
 - ② 총괄계획가 제도를 도입
 - ③ 경관심사와 건축물 개별심사를 의무화
 - ④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제도화
- '07.12.25 : 연안권 10개 시·도지사 4가지 조건에 합의 서명
- '07.12.26 : 국무회의에서 **해안권발전 특별법** 공포됨

□ 특별법 주요내용 및 문제점

1) 주요내용

- 연안권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등 36개의 법률 인·허가 의제
- 첨단산업단지 조성. 투자진흥지구 지정
- 입주기업 지원. 국고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연안권발전위원회. 연안권발전기획단 등 전담조직 설치

2) 문제점

- 법률유보원칙 위배 등 위헌성 문제 (제2조, 제5조제3항)
 - 강원도 폐광지역의 지원범처럼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바 금번 특별법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특별법은 남·동·서해안의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전체 234개 시·군·구중 73개 포함, 전국토의 29%)가 포함됨

- 기존 국토공간계획상의 국토계획시스템과 상충
 - 전 국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의 기능 및 적성에 맞게 도시지역 등 4개의 용도지역(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지정하여 관리
 - 특별법상 개발구역으로 지정 시 도시지역으로 의제, 개발 가능함
 - 국토이용계획과 관계없이 사업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 추진으로 국토이용체계가 무너지고, 다른 법령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적용 시 대응 곤란

-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권한부여(11조, 15조, 16조)
 - 개별 민간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만 획득하면 36개 법률, 69개 인·허가 사항 의제처리 가능
- 확정계획 절차가 없는 과도한 인허가 의제(15조)
 - 실시계획 승인만으로 자연공원법상 비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허가 의제 (대통령령에 정하는 자연공원 및 시설·규모 범위 내)
- 국토개발에 관한 “선계획, 후개발” 원칙 훼손
 - 특별법의 개발구역 지정시 연안의 모든 지역이 개발가능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기존의 선계획, 후개발원칙이 와해
- 국립공원 등 29개 자연공원의 개발대상에 포함(제12조)
 - 국립공원도 개발대상에 포함되어 보전할 곳은 확실하게 보전하고 개발할 곳은 원활하게 개발되도록 한다는 참여정부의 원칙이 훼손될 위험
- 참여정부의 기본 환경정책 및 균형발전체계와 상충
 - 한반도 대표적인 3대 보전축(연안, DMZ, 백두대간)의 하나인 연안의 개발을 통한 환경훼손(특히 해상국립공원) 우려와 과도한 규제 완화·지원

□ 향후일정

- 건교부에서 상기 4가지 조건을 반영한 개정법을 주승용 의원입법으로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
- 특별법 개정 및 대통령령 제정 시 환경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응 예정

<첨부자료>

1.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안 공포 재검토 건의
2.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처리방안 검토

아. 새만금 갯벌매립 관련

□ 배경

- 제2의 시화호 사태와 갯벌생태계 훼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고조되면서 정부는 '99년 “새만금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코자 하였으나 찬반을 둘러싼 사회적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을 해소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찬반양론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대통령께 자문키로 함

□ 추진경과 및 현재 추진현황

- '00.11.13 : 국토분과위원회 3차 회의, 내부과제 선정
- '01.1 : 운영협의회에서 국토분과, 수자원분과 공동 추진 사업으로 결정, 국토·수자원 분과 합동회의에서 소위구성
- '01.1~3 : 새만금 소위 회의, 국토·수자원 합동회의 개최
- '01.3.20 : 본 위원회, 새만금 자문안 의결 및 대통령 자문('01.3.21)
- '01.3.22 : 기자회견, 새만금 사업 재개결정의 연기 및 지속위가 주도하는 사회적 의사결정 역할부여 요청
- '01.4~5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01.5.7~5.11 :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공개토론회 개최 (3회)
- '01.5.25 : 정부, 새만금 간척사업 재개 발표
- ※ '01.5.29 일부 민간위원 탈퇴 등으로 위원회 공전

□ 주요 내용

- 갯벌의 가치 관련
 - 기 간척사업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변화추이 등을 고려하여, 서식지 상실로 인한 철새 보호방안, 어패류 생산에 미치는 영향, 하구 갯벌의 특성과 가치 등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함
- 수질 관련
 - 상당한 수준의 대책과 예산을 투자하여도 만경강 수역의 수질기준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환경부의 검토결과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객관적인 자료와 평가라고 판단됨

- 경제성 관련
 - 공동조사단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사업의 경제성 판단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객관성과 정밀성이 미흡하여, 보다 충분한 토론과 검증과정이 요구됨
 - 간척 토지의 이용목적 관련
 - 농지확보와 갯벌보전, 지역발전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만금 간척사업의 목적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이해관계자간의 선명한 합의과정이 요구됨
 - 사회 여론 동향
 - 정치, 사회적인 갈등이 증폭하고 있는 시점에서 조급한 정책결정은 갈등의 마감이 아니라 더 큰 불신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충분한 국민들의 의견수렴과 이해 속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 요구됨
- ⇒ 현 상황에서 새만금 사업 추진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 지속위가 참여하는 사회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자문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

<첨부자료>

1. 새만금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2. 새만금기자회견 자료집

4. 중장기 행정계획 검토

4. 중장기 행정계획 검토

1. 개 요

□ 추진배경

- 국가의 중장기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제고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주요 중·장기행정 계획 등에 대하여 지속가능성을 검토(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제1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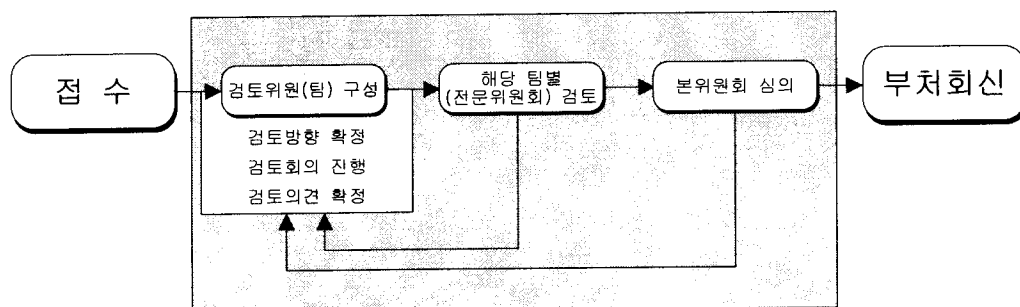
□ 검토대상 및 검토시기

- 검토대상 : 법령에 정해진 **43개 행정계획**과 위원회의결을 거쳐 선정된 계획
- 검토시기 : 중·장기행정계획 수립 시

□ 검토방법

- 각 부처에서 수립된 행정계획(안)이 접수되면 지속위에서는 검토팀 구성 → 검토방향 확정 → 검토위원 구성 및 결정 (→ 검토회의 소집) → 전문위원회 개최 → 본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회신
- 각 부처에서는 지속위 검토의견을 행정계획 수립 시 반영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검토절차 모식도>



2. 검토실적

□ 검토현황

계 획 명	의견회신	검토부처	붙임번호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02.2	환경부	4301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02~2011)	'02. 10	건교부	4302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2~2011)	'02. 12	산자부	430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종합시책	'03. 3.26	산자부	4304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	'03. 3.26	건교부	4305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03.6.12	환경부	4316
자원재활용기본계획	'03.7.23	환경부	4306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04~'10) 변경	'04. 5. 6	해수부	4307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정비기본계획('04~'16)	'04. 6.30	건교부	4308
제3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04~'08)	'04. 9.21	산자부	4309
제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04~'17)	'04. 12.23	산자부	4310
도로정비기본계획('06~'10) 변경	'05. 4.26	건교부	4311
국가환경종합계획('06~'15)	'05. 7. 4	환경부	431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05~'20)	'05. 8.11	건교부	4313
중부내륙광역권 지정 및 개발사업계획('05~'20)	'05. 8.11	건교부	4314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05~15)	'05.12.22	건교부	4315
수자원장기종합계획	'06. 1.24	건교부	붙임2-1
해양환경보전 종합대책	'06. 5.19	해수부	붙임2-2
행정중심복합도시기본계획	'06. 5.25	건교부	붙임2-3
환경교육발전계획	'06. 8. 8	환경부	붙임2-4
전력수급기본계획	'06. 10.4	산자부	붙임2-5
댐건설장기계획	'07. 5. 7	건교부	붙임2-6
대도시광역교통기본계획	'07. 5. 3	건교부	붙임2-7
국가기간망교통계획	'07. 8.27	건교부	붙임2-8
지하수기본계획	'07. 8.21	건교부	붙임2-9
산림기본계획	'07. 9.27	농림부	붙임2-10
습지보전기본계획	'07. 12.4	환경부	붙임2-11

□ 기별 검토실적

구 분	검토계획	제시의견	반영여부
제1기	3	21	미확인
제2기	4	-	
제3기	9	-	
제4기	11	253	169건 반영
계	27	-	-

3. 향후 계획

□ '08년 2월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

○ 검토대상 중장기계획 확대(43개→75개)

□ '08년도 : 중장기 행정계획 검토개선방안 수립·추진

○ 연구용역결과('08.2월)를 기반으로 검토효율화 등 개선방안 마련

<첨부자료>

1. '06-'07 중·장기행정계획 검토결과보고 1부
2. '06-'07 중·장기행정계획 검토자료 1부
3. 계획별 검토자료 각 1부 끝.

5.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 가. 지속가능발전 교육
- 나. 지속가능발전 주간
- 다. 지속가능발전 담당관 워크숍
- 라.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 대비 시·도 공무원 워크숍
- 마.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대비 자문활동
- 바. 동북아시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워크숍 개최
- 사. 새천년개발목표(MDGs) 대한민국 보고서 작성
- 아.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UN 회의 등
- 자. UN 지속가능발전 센터 유치관련

가. 지속가능발전 교육

□ 추진경위

- 1992 : 유엔환경개발회의(리우데자네이루)
 - 의제21의 36장 ‘교육·공공·인식 및 훈련’에서 교육의 핵심적 역할 강조
- 2002 :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요하네스버그)
 -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2005-2014) 계획 수립 권고
- 2007.8.3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개발 및 홍보·교육 등을 실시(제21조)

□ 추진실적

- 2005.6 :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을 위한 국가추진전략개발연구
- 2006.10.12-13 : 환경교육·지속가능발전교육 강화방안을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
- 2007.2.27-28 : 중앙행정기관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워크숍 개최
- 2008.1 : 지속가능발전종합교육 계획(안) 수립

□ 향후계획

- 2008. 상반기 : 지속가능발전종합교육계획 수립
- 2008~ : 지속가능발전교육실시(국회사무처,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공무원 교육기관)

<첨부자료>

1.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연구보고서 1부
2. 지속가능발전종합교육계획(안)1부. 끝.

나. 지속가능발전 주간

□ 추진배경

- 지속가능발전 관련 행사 및 교육·홍보 활동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시민운동으로 정착되도록 노력 할 필요성 제기
- 지속가능발전 용어에 대한 국민 인지도는 25.3%
(출처 : 2007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일반국민 인식조사 보고서)
- 2003년부터 지속가능발전주간을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지속가능발전 인지도가 23%('02)에서 50%('06)로 증가

□ 추진경과

- 지속주간행사를 환경부,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합의
- 공공기관 담당자들과 행사관련 내부회의 개최 및 방향정립

□ 행사개요

- 주제 : 지속가능 발전, 미래를 위한 현재의 약속
- 일시 : 10.4(목)~10.10(수)
※ 제9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10.4-6)가 양평 개최 예정

<기관별 행사내용>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주간기념식 및 지속가능발전 성과와 발전방향 토론회
 - 기후변화 국가 대응전략 토론회
 - 한국의 공적원조(ODA)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
-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을 위한 기업역할 토론회
 -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기업의 도전과 기회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제9회 지방의제21행사 : 10.4(목)~10.(토) 경기도 양평
- 중앙부처(산림청)
 - 숲체험, 산림환경교육, 산악페스티벌행사
- 지자체(부산시, 대구시)
 - 지속가능발전포럼 개최
 - 지속가능발전토론회, 자동차배출가스점검
 - 환경순회교육, 자연정화활동 등

<홍보 관련>

- 안내책자(5,000부) 및 브로슈어(5,000부), 포스터(1,000부)
 - 중앙부처, 지자체, 대학교, 관련학회, 시민단체에 배포
- 언론홍보 - 브리핑 실시(10.1), 각종 신문사 칼럼게재 등

<기대 효과>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에 기여
- 중앙부처·지자체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부의지 표명
-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기업, 민간단체, 학계 등의 자발적 참여확대로 시민운동으로 유도

□ 향후 추진계획

- 2007년 지속주간발전행사결과를 향후 행사내용에 반영
 - 행사결과를 피드백 하여 내년행사 참고자료로 활용
 - 중앙부처, 지자체, NGO가 함께 주관하는 행사구상 등
- 제2회 지속가능주간 행사시 일반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개최 추진방안 강구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에 의거, 행사예산 사전확보 및 기획추진팀 구성하여 체계적인 행사준비
- 초·중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료 작성·배포
 - 지속가능발전개념에 대한 이해 및 생활실천 분위기 조성

<첨부자료>

1. 주간 홍보책자
2. 주간 로고 및 포스터

다. 지속가능발전 담당관 워크숍

□ 배경

- 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 추진 담당자 지정, 교육
 - 유관 중앙행정기관에 담당관을 지정하고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하여 동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담당케 함
- 중앙행정기관 내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담당자 교육
 - 지속가능발전 관련 과제의 발굴 및 추진 등을 수행하게 함
- 워크숍 목표
 - 지속가능발전 담당관들로 하여금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내외의 다양한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높임
 - 지속가능발전의 세계적 흐름을 인지하고, 정부 중앙부처 내에 지속가능발전 실천 필요성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함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 의미와 내용, 후속 프로세스와 실행 및 평가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태지역 지속가능발전 전략 UN회의'('07.3.12-16, 서울 예정)를 사전에 대비함
 - 공무원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한국의 사례를 UN 및 아태 지역 국가에 소개하고 공유함

□ 담당관 지정 근거규정 및 대통령 지시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6946호)
 - 제12조 (지속가능발전팀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과제의 발굴, 업무추진상황의 관리 및 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지속가능발전팀을 둘 수 있음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 향후 관리계획 대통령 보고 및 지시사항('06.10.31, 제48회 국무회의)
 - (보고) 부처별 이행계획 담당관(이행계획 T/F 담당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이행과제별 성과지표에 따라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
 - (지시)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과 관련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가 늘고 있고, 국제규범상 제약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측면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등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법률 제8612호, '07.8.3)
 - 제8조(지속가능발전책임관의 지정)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 및 그에 따른 이행계획, 제13조에 따라 작성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음.

□ 추진경과

- '05.9월, 국가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 작성 관계부처 T/F 구성
 - 동 계획 작성을 위한 22개 중앙행정기관 부처별 담당자로 구성
- '06.9.1. 국가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 관계부처 검토회의 개최
 - 동 계획 수립 기간 중 부처간 협의 등 수시회의 및 연락업무 담당
- '07.1.16.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정 및 '07년 제1차 회의 개최
 - 이행계획 수립 후속조치 및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워크숍 개최 방안 협의
- 제1기 정부중앙부처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워크숍
 - '07.2.27~2.28, 천안 상록리조트, 담당관 32명 참석
- '07.3.12~16, 유엔 지속가능발전전략 아태지역회의 참석

□ 주요 내용

- 2007년 제1차 회의 내용
 - 일시 및 장소 : '07.1.16, 지속위 회의실, 18개 기관 참석
 - 주요 내용
 - 이행계획 수립 후속조치 - 추진상황 점검 · 평가 방안
 - 담당관 지정 취지 및 '07년 업무운영계획 설명
 - 담당관 워크숍 추진계획 논의
- 워크숍 주요 내용
 - 일시 및 장소 : '07.2.27~28, 천안 상록리조트
 - 주최 : 중앙공무원교육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참석자 : 23개 중앙행정기관 담당관(과장, 사무관) 32명 참석
- 주요 내용
 - 지속가능발전의 이해
 -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추진현황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이행계획의 의의와 과제 등

□ 향후 추진계획

- '08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 지속가능발전책임관 지정 대비(시행령 마련 후 추진)

<첨부자료>

1.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워크샵
2. 분임원 명단
3. 국내 지속가능발전 정책사례와 과제 - 황희연
4. 지속가능발전의 이해

라.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 대비 시·도 공무원 워크숍

□ 배경

-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낮은 인식과 담당부서의 부재 등 시·도의 다양한 편차가 있어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어려움 노정
- 특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대비하여 시도 지속가능발전 담당 공무원의 인식증진과 지방이행체계 구축의 기반조성 필요

□ 추진경과 및 현재 추진현황

- 지속위 주요 추진경과 및 현황
 - '07.8.28 시·도 정책기획관회의에서 워크숍 필요성 공감
 - '07.10~12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표준안 마련
 - '07.11~'08.2 지방지속가능발전 지원단 구성운영 및 워크숍 일정 마련
 - '07.12.6~12.7 제1차 시·도 공무원 워크숍 실시
 - ※ 16개 시·도 기획관실, 환경국 공무원 40명 참석
 - '08.1~ 시·도 기본조례 표준안 송부
- 각 시·도 주요 쟁점 사항
 - 시·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시·도 지방의제21추진기구의 관계
 - 소관부서 지정(기획실과 환경국의 관계)
 -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과 인력지원

□ 주요내용

일 자	세 선	내 용
12.6(목)	발제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과 지방이행체계의 이해 - 백규석 국정과제국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발제 2	지속가능발전의 이해와 국내외 현황 - 김병완 교수 <지방지속가능발전 지원단 단장>
	발제 3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현장과 모델 - 임경수 대표 <(주)이장>
	(회의)	제2차 지원단 회의 개최 -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업무편람 및 2차 워크숍 프로그램 기획
12.7(금)	발제 4	지방 거버넌스 사례와 협력 증진방안 - 이창우 기획실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회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표준(안) 협의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방지원팀

- 지방지속위는 정책심의자문기구로서, 지방의제21추진기구는 실천기구로서 각각 존치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 당분간 기초 지자체의 지속위 구성·추진은 권하지 않음. 시·도의 운영상황을 살펴가면서 추후에 논의 필요
- 시·도지사를 정점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정책기획관실이 총괄하여 운영하되, 환경국의 내용적 협조가 매우 필요함
- 지방지속위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어서 시·도의 부담은 그리 많지 않으며, 총액인건비제 인상 등을 통해 시·도의 인력증원을 협의예정

□ 향후 추진계획

- 시·도 기본조례 제정 및 시·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지원
 - '08.3 제2단계 지방지속가능발전 지원단 구성·운영
 - '08.3 시·도 공무원을 위한 지방지속가능발전 업무매뉴얼 작성
 - '08.4~5 제2차 시·도 공무원 워크숍 개최

<첨부자료>

1. 제1차 시·도 공무원 워크숍 발제자료
2. 제1차 시·도 공무원 워크숍 회의결과
3.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시·도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표준안

마.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의 대비 자문활동

□ 배경

- 2002년 남아공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Rio+10)는 '92년 리우회의 이후 지난 10년간의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향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로 향후 세계의 경제·사회질서를 환경가치 중심으로 재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됨
- 동 회의와 관련하여 유엔에서는 각국에 '국가준비위원회' 설립하고 지난 10년간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성과 및 향후 10년간의 목표 제시를 권고하는 등 효과적인 회의준비를 요청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Rio+10 회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전에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 필요

□ 추진경과 및 추진현황

- '01.3.20 : 2002 Rio+10 대책추진 기본계획 확정
 - 지속위를 유엔에서 권고하는 'Rio+10 국가준비위원회'로 지정
 - 국가준비위내에 총괄대책반, 전략대책반, 협상대책반을 설치
- '01.5~'02.7 : 각 대책반별 민·관·산 준비회의 개최
 - WSSD 국가대응 방안 연구용역 실시('02)
 - 2차례 WSSD 준비 공개토론회 개최('01.12, '02.5)
- '02.8~9 :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참석(194개국 4만여명 참석)
 - 한국은 100여명의 정부대표 및 300여명의 NGO 등이 참가

□ 주요 내용

- 회의 결과
 - 8.24~9.3일간의 "WSSD이행계획" 협상 결과 빈곤퇴치를 위한 세계 연대기금의 설립, ODA의 목표달성 촉구 등 대부분의 이행계획서 문안을 타결하고 협상안을 채택함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는 “요하네스버그 선언문”을 채택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추진되는 협력사업으로서 “파트너쉽/이니셔티브” 사업을 제안함
-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가 온실가스감축의무를 표명하여 기후변화협약의 발효가 가시화됨

○ 한국참가단의 활동

- 정부대표단은 수석대표연설 및 이행계획 문안협상을 통하여 우리 입장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우분트환경전시장에 홍보관을 설치, 운영
- 한국NGO 및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여성위원회 등은 한국시민 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의지와 역동성을 널리 알렸으며
- PCSD는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협상에 자문하는 한편 국제 NCSD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위상을 높이고 3차례의 정부·NGO간 보고회의를 주관함

○ WSSD의 성과에 대한 세계적인 평가

- 유엔 및 각국 정부들은 이번 회담이 지구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약속과 행동계획에 합의했다고 자평하고 정부·기업·시민사회가 새로운 파트너쉽을 만드는데 약진한 것으로 평가
- 이에 비해 지구촌의 다양한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말뿐인 잔치”, “리우-10”이라고 혹평하였으며, 현지에서 집단적 항의시위를 벌이고 각국 정부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행동을 촉구

□ 향후 추진계획(지속위의 과제)

- 21세기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인 지속가능발전이념의 실현을 위한 실천역량의 강화와 국민의식 확산에 주력하여
- 국내 거버넌스 개선을 위하여 정부·기업·시민사회간의 파트너쉽을 강화하고 이를 지역에까지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 및 상호 협력을 지속 추진 필요

- 국내 정책수립 및 이행평가 그리고 국제협력을 입체적으로 추진하여
 - UNCSD 정기회의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체계적인 참가 대책과 정책을 수립하고
 - NCSD간 네트워크 구성을 주도하여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적, 지구적 차원의 파트너쉽/이니셔티브 사업에 많은 국내 단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개역할을 수행함

첨부자료

1. WSSD 참가결과 및 향후대응방향
2. WSSD 결과보고
3. WSSD 이행계획(국문)

바. 동북아시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워크숍 개최

□ 배경

- 1992 Rio회의 이후 UN이 각국에 NCSD 설치를 권고함에 따라 세계 80여국에서 NCSD를 운영중이며, 동아시아에도 많은 국가에서 NCSD가 활동중
- 동아시아 환경현안 해결과 지속가능발전이념의 확산을 위하여는 역내 국가의 NCSD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중요
- 2002년 WSSD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각국 NCSD의 활동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지역 내 지속가능발전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국가간 NCSD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성 제기

□ 추진경과 및 현재 추진현황

- '02.7.8~7.9 제1차 동북아시아 NCSD 워크숍 개최(서울)
 - 한국, 필리핀, 중국, 일본, 몽골 등 5개국 50여명 참석
- '02.8.30 세계 NCSD 워크숍 개최(남아공)
 - WSSD 기간내 부대행사로 개최(100여명 참석)
- '05.10.20~10.21 제2차 동아시아 NCSD 워크숍 개최(서울)
 - 한국, 필리핀, 중국, 일본, 몽골, 네덜란드, UN 등 7개국 100여명 참석
- '05.12.19 제2차 동아시아 NCSD 워크숍 개최결과 유엔 보고
- '06.5 유엔은 UNCSD 회의에서 '제2차 동아시아 NCSD 워크숍 개최결과'를 공식 배포

□ 주요 내용

- 제1차 동북아시아 NCSD 워크숍
 - 각 국의 NCSD 현황 발표
 - Multi Stakeholder간의 New Governance 형성을 위한 NCSD의 역할
 - 동아시아 환경현안과 협력방안
 - 동아시아 NCSD 교류협력 활성화방안
- 제2차 동아시아 NCSD 워크숍
 - 각 국의 NCSD 현황 및 WSSD 후속활동 발표
 - 각국의 지속가능발전 주요 현안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과제
 -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 지속가능발전 협력을 위한 현안과 과제

□ 향후 추진계획

- 제3차 워크숍 개최로 역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강화 필요
 -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주도할 필요

첨부자료

1. 제1차동북아NCSD회의결과 보고('02.7)
2. 제2차동아시아NCSD워크숍결과 보고('05.10.20)
3. 제2차 동아시아NCSD워크숍 유엔보고 공문('05.12.19)
4. 유엔보고 공문 붙임자료 : summary_report(UN).doc('05.12.19)

사. 새천년개발목표(MDGs) 대한민국 보고서 작성

□ 배경

- 2000년 유엔 천년정상회의는 빈곤, 질병, 환경파괴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기간 및 이행목표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어 「천년정상선언」 채택
- 2001년 제56차 유엔총회는 동 선언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사무총장의 「Roadmap」 보고서를 채택하고, 국제사회가 이행해야 할 개발관련 8개 과제를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로 명명
 - 2004년까지 유엔총회는 사무총장 보고서를 통해 매년 이행상황 검토
- 우리나라도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노력에 동참 필요

□ 추진경과 및 추진현황

- '05.7.18 지속위 주최 'MDG 이행보고서' 작성 관련 간담회 개최
- '05.8.11 MDG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책기획위원회 주관으로 빈 부격차차별시정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 지속가능발전위 등 4개 국정과제위원회 공동협의(간사기관 : 지속위)
 - 전문가들로 국가보고서 작성T/F를 만들어 보고서 작성시작
 - 개도국보고서(목표 1~7), 공여국보고서(목표 8)에 국한하지 않고 목표 1~8까지 모두 점검하여 이행보고서를 작성기로 함
- '05.8.25 지속위 주최 MDG 보고서 초안 검토 간담회 개최
 - 8월말 관계부처, NGO 확대간담회를 개최하여 보고서 초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입장 및 의견 청취 후 보고서(안) 확정
- '05.9~10월간 한글 최종본 영문화 및 편집 작업
- '05.11.28 영문본 최종본 확정
- '05.12.7 영문본 발간 및 UN 제출

□ 주요 내용

- 우리는 신흥공여국의 입장에서 MDG 보고서 1장에서 7장까지 MDG 목표를 달성해 온 경험을 공유하고, 8장에서 개도국 MDG 달성 지원 노력을 홍보
- 1장부터 7장은 MDG 목표별 우리나라의 현황을 평가하고, MDG 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수행 및 결과를 분석, 개도국의 MDG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의 경험을 제공
 - 우리나라는 빈곤퇴치, 초등교육 보편화, 유아사망률, 산모건강, HIV/AIDS 등 질병퇴치 등 측면에서 이미 MDG 목표를 달성한 반면, 양성평등 및 환경보존 분야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평가
- 8장에서는 그간 해외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단기간 내에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를 달성하고 원조 수원국에서 신흥공여국(emerging donor)로 변모해 온 우리나라가 개발경험 공유와 인적자원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도국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강조
 - 특히, 교육훈련, 의료사업, 환경, 여성, 정보격차해소, 지식이전 등 분야별 사례를 언급함으로써 생생한 현장감을 제공

□ 향후 추진계획

- 2010년 제2차 국가보고서 작성 필요(5년마다 이행보고서 작성)
 - 민·관의 합동 TF를 구성하여 6개월 이상의 여유기간 동안 작성 필요

첨부자료

1. MDG 대한민국 국가보고서(한글본)
2. MDG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영문본)

아.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UN 회의 등

-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전략 발표 등 관련 3개 국제회의

경과 요약

- 지속위는 '06.10월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NSSD)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행에 착수함
- UN은 '06.5월, 제14차 UNCSD에서 우리가 제출한 '동아시아 NCSD 워크숍' 결과를 배포하는 등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 NS 수립 모델의 아태지역 확산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를 제안해옴
- 1. '07.3.12-16, '아태지역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유엔회의'를 UN과 공동 개최('06.12.19-20 준비회의), 8개국 및 국제기구 대표 24명 참가함
- 2. '07.5월, 제15차 UNCSD에서 서울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5월 7일, 유엔 본부에서 '아시아-유럽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CSD-15 특별부속회의를 한국(지속위)과 벨기에 정부가 공동 주최함
- 3. '07.10월, OECD 지속가능발전 연례회의(AMSDE)에서 한국 지속가능발전전략 사례 발표함

1. 아태지역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유엔회의

□ 배경

- '06.10.31 지속위는 22개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행에 착수함
- 동 과제는 국제적 합의사항으로 UN, OECD 등에 보고됨
 - 1992년 리우 UN환경개발회의 의제21 관련
 -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 합의 관련임
 - ※ “각국은 '05년까지 NSSD 수립, 이행에 착수”
 - 2005년, OECD에 한국은 '06년까지 수립, 이행기로 보고함

□ 추진경과

○ UN의 한국 사례 확산을 위한 회의개최 제안

- '06.5월 제14차 UNCSD회의, '동아시아 NCSD 워크숍'('02년, '05년) 개최 결과 등 한국의 지역내 이니셔티브 소개 및 제안

※ “아태지역에 한국의 전략 수립 과정 등 모델 소개를 위한 유엔과 한국정부 공동 국제회의 개최”

○ 준비회의 개최

- '06.12.19~20 (2일), 서울 KOICA 연수원
- 4개국(한,일, 말레이시아, 태국, 몽골, 필리핀) 및 UNDESA (UN경제사회부 지속가능발전국), UNESCAP 대표 참석

○ 본회의 개최

- '07.3.12~16 (5일), 서울 COEX ASEM홀
- 9개국(한, 중, 일,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몽골, 필리핀) 및 UNDESA, UNEP, OECD 대표 등 24명 참석

□ 주요내용

○ 준비회의

- '07년 3월, 본회의 내용과 과정, 준비문건 등 진척 검토
- 참가국 지속가능발전전략 및 관련정책 추진현황 보고
- 본회의 개최일정 재확인 및 프로그램 결정
- 컨설턴트의 기본보고자료 검토 및 보완 방안 제안
-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역내 주요 국가의 참여 방안 논의

○ 본회의

- UN(DESA, 경제사회부), 대한민국 정부(지속위) 공동주최, 환경부, 외교통상부 후원,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유한킴벌리,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협력

- 2007. 3. 12~16 (5일), 서울 COEX(아셈홀)
- 참가자 : 9개국 및 유엔, 국제기구 등 해외 21명, 국내 약 150명
 - 아태지역 8개국 15명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몽골)
 - 한국 : 지속위, 환경부, 산자부 등 정부 부처 및 NGO, 기업 대표 약 150 명
 - UN : 지속가능발전국장 등 4명 외 관련 국제기구 2명 (OECD, UNEP)
- 주요내용
 -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NSSD 수립 과정과 경험을 아·태지역 국가들과 공유, 공동 평가
 - NSSD 추진체계, 수립과정, 내용, 이행검증 등 분야 심층 분석하고, 배울 점과 보완할 점을 공유함
 - 회의 논의결과를 정리, 참가국 및 유엔 대표 공동 권고문 발표
- 권고문 주요내용
 - 총평
 - 참가국들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경험과 워크숍 과정을 통해 귀중한 통찰과 교훈을 얻었음
 - 수립과정 (Process)
 - 한국 지속위는 계획과 정책을 검토하고 공론과 조정을 이끌어내는 매우 효과적인 기구 다른 나라에도 추천할 만하고, 지속위와 NSSD의 연속성을 위한 입법조치를 주문함
 - 전략 내용 (Contents)
 - 아태지역에서, 그리고 범지구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대한 민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주목함
 - 국제적 합의와, 명확한 목표와 예산을 전략에 담은 점이 중요함
 -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Monitoring & Evaluation)
 - 한국의 모니터링 체계를 다른 나라에도 권장함

□ 향후 추진계획

- 회의 참가국들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NCSD) 워크숍 등 네트워크 구축 추진 필요

2. 제15차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15) 참가

□ 배경

- ‘아태지역 지속가능발전전략 유엔회의’ 결과 등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노력을 CSD-15 연례회의에 보고, 홍보함
- CSD-15 기간 중 특별부속회의(side event) 개최 요청
 - UN DESA는 한국의 아태지역 지속가능발전 선도 노력 등을 유럽 국가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유할 필요를 제기함

□ 추진경과

- CSD-15 한국 대표단에 참여, 지속가능발전전략 부문 발표 및 행사를 담당함
- 교차이슈회의 참가 및 특별부속회의 개최 개요

일시	2007. 5. 1 ~ 5. 8 (6박 8일)
장소	유엔본부 (미국 뉴욕)
참가자	김은경 기획운영실장, 김종환 지속가능발전이행팀장, 최선미 국제협력담당
주요 활동	1. CSD 회의 교차이슈 분과 국가대표 참석, 발언 2. 특별부속회의 진행, 한국 사례 발표 3. 참가국 대표 양자 협의 등 국제협력 발전방안 모색 4. 뉴욕 소재 지속가능발전 관련 현장 및 시설 견학
주요 결과	1. ‘NSSD 피어리뷰 국제회의’에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참여’를 제안하여 의장협상안에 채택, 논의됨 2. 특별부속회의 50여명 참석, 각국 사례 등 토론 3. 프랑스 부처간 지속위원장, 벨기에 CSD 수석대표, 네덜란드 지속가능발전대사와 양자 협의

- 교차 이슈(Cross-cutting issues) 전체회의 발언
 - 일시 : '07.5.2. (10:00-12:00) 유엔본부 컨퍼런스센터
 - 지속위가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전체회의에서 발언함
-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에 대한 리뷰와 동 전략의 이행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이니셔티브를 확대”
- 특별부속회의 개최
 - 회의 명칭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 아시아 - 유럽 지역의 상호학습·리뷰 경험』
 - 일시, 장소 : '07.5.7. (13:15~14:45) 유엔본부 컨퍼런스룸 4
 - 주최 : 한국지속가능발전위원회, 벨기에 연방기획처
 - 참석자 : 대한민국,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벨기에(CSD15 벨기에 수석대표), 네덜란드(지속가능발전대사), 프랑스(환경 대사) 등 7개국 대표와 회의 좌장 UNDESA (DSD 국가정보 모니터링부장)등 총 50여 명
 - 회의 내용 :
 - * 7개국 대표 및 유엔 DESA 대표의 각국 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상호검토 (Peer Review Process) 결과에 대한 발제 및 토론
 - * 아·태 지역과 유럽연합 국가간 지속가능발전전략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안 및 국가간, 지역간 협력방안 논의
 - * 향후 국가간 지속가능발전전략 상호검토 및 경험공유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기로 함

□ 향후 추진계획

○ '08년 추진계획

- 동아시아 NCSD 협의회 개최 필요성 등 내부 논의 추진
- 제16차 CSD회의(5.5~5.16, 유엔본부) 준비 참가
- 3.26 관계부처 준비회의(환경부): 의제검토, 역할분담 및 우리나라 입장 정리 등
- ※ 지속위 소관 의제: partnership 및 major group 등

3. 2007 OECD AMSDE(지속가능발전전문가 연례회의) 참가

□ 배경

- 동 회의는 국가대표단(주OECD대한민국대표부 및 환경부, 지속위 등)이 참가하는 공식 연례회의임
- OECD 사무국이 지속위에 우리나라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및 이해사례 소개하도록 요청해옴

※ OECD는 회원국과 세계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사례와 평가 도구를 개발, 공유하기 위하여 연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함.

□ 추진경과

- 참가 개요

일시	2007. 10. 6 ~ 10. 11 (총4박6일, 기내1박)
장소	Tour Europe, La Defense (프랑스 파리)
참가자	김은경 기획운영실장 김종환 지속가능발전이행팀장 최선미 국제협력담당
주요 활동	1.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피어리뷰” 세션 패널 참석 발표 2.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촉진 정책, 개발협력정책 등 회의 참석 3. 프랑스 연안·하구보전청 사무총장 면담 및 현장방문 4. 프랑스 지속가능발전 부처간 위원장 면담
주요 결과	1.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및 주요 성과와 '07.3월 개최된 아·태지역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회의 결과 등을 OECD 회원국에 홍보 2. OECD 지속가능발전 정책 동향 파악, 관계부처 공유 3. 프랑스의 연안 및 하구 보전 정책 사례, 사업 현황 및 관련 제도 조사 4. 프랑스 생태·지속가능발전·국토관리부와 지속가능발전주간 행사 등 협력방안 논의

□ 주요내용

○ 주요 내용

- “국가별 지속가능발전전략(NSDS: National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피어리뷰” 세션 발표
 -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및 주요 성과, ‘07.3월 개최된 아·태 지역 NSDS회의 결과 및 동 피어리뷰 회의가 역내 국가들의 정보공유 및 NSDS 역량배양에 기여하였음을 설명함
- 각국의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추진 사례 발표
 -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벨기에, 이탈리아 정부 대표, “NSDS는 전세계의 지속가능발전 촉진에 유용한 도구임을 재확인”, 전략 수립 및 이행, 리뷰 촉진·지원을 위한 OECD의 역할 논의
- ※ 유럽국가 및 대부분의 회원국은 동 전략 및 피어리뷰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하여 적극 지지 및 OECD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동 전략 체계 및 평가지표 체계를 만들어 공통적으로 의무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자율적인 접근을 지지함

□ 향후 추진계획

- OECD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평가체계 등 정책 수립방안 모색작업의 진행 경과를 파악, 국내 관계기관과 협의, 대응
- ‘08년 추진계획
 - ‘08년 연례회의 (10.20-21, 프랑스 파리) 국가 대표단 참가준비 추진 (5기 위원회 ‘08년 사업계획에 포함)

첨부자료 (파일 날짜)

1. 1-1_Republic of Korea's NSDS_Shared Learning and Review(2006.8.8)
2. 1-2_Elements of HCA revised by ROK_23_Nov_06 (2006.11.23)
3. 1-3_NSSD of ROK_english_01(2007.1.4)
4. 1-4_NSSD of ROK_english_02(2007.1.4)

5. 1-5_BackgroundReport_5_Dec_06(2006.12.6)
6. 1-6_NSSD Technical Meeting Report(2007.1.18)
7. 1-7_UN회의 결과 보고서(2006.12.28)
8. 2-1_유엔 아태지역 회의 보도자료_070309(2007.3.9)
9. 2-2_Korean Participants_070301(2007.3.1)
10. 2-3_FINAL Participants_Seoul_7march2007(2007.3.7)
11. 2-4_KOREAN NSSD 2006-2010(2007.3.11)
12. 2-5_유엔회의(3월) Country_participants_recommendations_final (2007. 3.19)
13. 2-6_유엔회의(3월) 결과 권고문(2007.3.19)
14. 2-7_유엔회의(3월) 결과보고서_070322(2007.3.22)
15. 2-8_FinalReport0402(2007.4.2)
16. 3-1_07385_--_CSD_Side_Event_7-5_CR_7(2007.4.30)
17. 3-2_UNCSD-15 부속회의 보도자료_070430(2007.4.30)
18. 3-3_LEAFLET_CSD_SIDE_EVENT_KOREA_BELGIUM(2007.4.30)
19. 3-4_환경부장관 발제문_교차이슈_지속위 관련 내용(2007.4.30)
20. 3-5_Presentation by Korea_CSD side event(2007.5.14)
21. 3-6_uncsd 15 참가보고(2007.5.9)
22. 3-7_지속위 제15차 UNCSD 참가보고서_070516(2007.5.16)
23. 3-8_전문 15-CSD-0507-00-지속가능발전전략(2007.5.7)
24. 4-1_OECD 지속가능발전전략 전문가회의 참가보고서_최종(2007.10.24)
25. 4-2_OECD_AMSDE 2007_Republic of Korea_final (2007.10.24)
26. 4-3_OECD_AMSDE 외교부 전문 및 한국 발표문(2007.10.24)

자. UN 지속가능발전 센터 유치관련

□ 배경

-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각국은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2005년까지 수립·이행하기로 합의함
 -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도국들의 NSDS 수립·이행이 부진함
- 동북아 국가지속위(NCSD) 워크숍 개최('02년, '05년, 서울)
 - 동북아국가, UN 등 7개국 참여, '서울선언' 채택 등 역내협력 논의
 - '06. 5 제14차 UNCSD에서 회의결과 공식보고, 한국의 리더십 주목 계기
- 「아태지역 국가지속가능발전 유엔회의」 개최('06.12, '07.03 서울)
 - 아·태 8개국(중국,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몽골 등) 및 유엔 국제기구(UNEP, UNESCAP, OECD) 등 참가
 - 참가국 및 국제기구는 아·태 지역 국가들의 지속가능발전 능력 배양 및 협력체계 지원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 역할 요청
- 제15차 CSD에서 「아시아 - 유럽 NSDS 회의」 주최('07.5 유엔본부)
 -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노력과 리더십을 국제 사회에 소개

⇒

유엔은 우리나라의 NSDS 수립·이행 경험과 역내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아·태지역 NSDS 확산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책임국가로 판단하여,
지속가능발전전략 아·태지역센터 서울 설립을 제안함

○ 국내적 필요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UN 등 국제기구를 유치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나 실적은 부진한 편임
- UN에 한국적자 비율이 매우 낮아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중임
-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아태 지역의 환경시장에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진출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지원이 필요함

□ 추진경과 및 현재 추진현황

- UN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노력과 성과, 주변국 반응을 고려, 동 지역 센터 설립을 제안해옴('07.3.12 1차 제안, 9.11 공식 제안)
 - 유엔 제안 :
 - 유엔경제사회부(DESA) 소속 공식 유엔기구로 지속가능발전 아태지역센터 '08년 서울에 설립
 - 아·태지역 국가들의 지속가능발전 촉진 지원역할 수행
 - 예산 : 최소 5년간 연간 약 20억원 예상(한국정부 부담)
- '07.9.17,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
 - 사회문화조정관(주재), 청와대, 환경부, 외교부, 행자부, 예산처, 지속위 담당국장
 - “유엔의 「유엔지속가능발전 아·태지역센터」 설립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 결론
- ※ 다만 수용시, 필요한 예산부담, 기능 및 역할을 충분히 사전검토하고 정부 정책결정과정 논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제시(행자부, 예산처)
- “설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관련 부처간 검토 및 협의한 후 장관회의(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등)에서 논의하여 확정”(지속위, 환경부 중심)키로 함
- 국회 예산 요구 및 심의
 - '08년 예산 요구서 국회 제출
 - '07.11.5, 국회입법조사처, 'UN지속가능발전 아태지역센터 설치 타당성 검토' 보고서 (홍미영 의원 입법조사 질의 회답)
 -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심사결과 제외됨

□ 주요내용

- 유엔사무국 경제사회부 소속 공식 유엔기구, '08년 서울에 설립
 - 아·태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이행 지원 센터
 - 예산 : 최소 5년간 연간 약 20억원 예상(한국정부 부담)
- ※ 유엔 제안 개요 첨부

□ 향후 추진계획

- 5기 지속위 업무계획에 포함, 입장정리 필요 사안임
 - 환경부, 외교부, 재정기획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 필요
- * 필요시 국조실 주관 실무검토회의 개최

<첨부자료>

1. 국무조정실, 유엔지속가능발전 아태지역센터 설립 제안 검토회의 결과보고_국무조정실
2. 지속위, UN 아태 지속가능발전센터 설립 제안 3쪽 검토자료
3. 지속위, UN 지속가능발전 아태지역센터 검토자료
4.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질의회답서> UN 지속가능발전 아태지역센터 설치 타당성 검토
5. UN DESA, <RoK Project Office proposal> (아태지역센터 설치 공식 제안서)
6. UN DESA, <RoK Project Office proposal> (아태지역센터 설치 공식 제안서) (부속서)
7. UN DESA, <RoKTrustFundAgreement24Oct07(아태지역센터 설치 신탁기금협정문)> 제안
8. 지속위, <UN 아태지속가능발전센터 예산 설명자료> 2008년도 예산 요구 설명자료
9. 지속위, <UN 한국 국적자 분포>
10. UN아태지역 지속가능발전전략회의 참가국 일동, <유엔회의(07년 3월) 결과 권고문 Recommendations>

참고 자료 : 유엔 제안 개요

1. 명칭: 유엔지속가능발전 아·태지역센터
(UN Project Offi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Asia and Pacific)
2. 소속:
 - o UN (DESA,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경제사회국)
3. 사업집행주체: UN (DSD/DESA 경제사회부 지속가능발전국)
4. 예산:
 - o 최소 5년간 연간 약 20억 원
 - o 시설, 운영비용, 인건비, 사업비, 홈페이지, 도서관등 제비용 포함
5. 소재지 및 재정부담: 서울, 대한민국 정부
6. 설립 목적:
 - o 아태 개도국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NSDS) 수립, 이행을 지원·촉진
 - o 유엔 경제사회부(DESA)의 지속가능발전 국제 합의 사항 이행노력 지원
7. 주요활동
 - o NSDS 수립 지원을 위한 지역협력제도 및 프로세스 개발
 - o 역내 국가들의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사용 지원
 - o 그룹 및 개인 학습용 NSDS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실시
 - o 도서관, 온라인 교육,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공유·제공
8. 인력

직급/역할	센터장	전문가	행정요원	비서
인원	1	3	1	1

※협의 조정 중인 사항

- 예산 : 구성·총액(사업비/인건비 비중 조정 등)
- 인력 : 과제에 따라 자문그룹 형성이나 한국정부 인력 파견 등 조정가능
- 명칭 : “Project Office” 혹은 “Regional Center” 등 명칭(예 : 유엔거버넌스센터 UN Project Office for Governance)

Ⅲ. 참 고 자 료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령(법/시행령)
2. 지속가능발전기본법/시행령/조례(안)
3.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4.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세칙
5.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윤리규범
6.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임전결규정
7. 용역평가단 운영규정
8. 지속발전위원회 위원 현황
9. 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 현황
10. 기획운영실 직원 명단
11. 회의록 목록
12. 용역보고서 목록
13. 홍보책자 목록
14. 언론보도자료 목록
15.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목록
16. 3·4기 위원회 국정과제로드맵 추진현황
17. 3·4기 위원회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현황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령 (법/시행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령

2008. 4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법	시행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227 제2조(정의) 227 제3조(기본원칙) 228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제4조(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 229 제5조(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 231 제6조(이행계획의 수립·추진) 232 제7조(이행계획의 협의·조정) 23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227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제2조(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 229 제3조(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230 제4조(국가이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232 제5조(국가이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233 제6조(지방이행계획의 수립) 233 제7조(이행계획의 협의·조정 절차) 234

법	시행령
제8조(지속가능발전책임관의 지정) 235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 235 제10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236 제11조(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통보 등) 236 제12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238	제8조(지속가능발전책임관) 235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절차 등) 235 제10조(법령 제정·개정 등에 따른 통보의 기간·절차 등) 236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13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238 제14조(지속가능성보고서) 239	제11조(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238 제12조(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239
제4장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5조(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240 제16조(국가위원회의 기능) 240 제17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241	제13조(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 등) 242 제14조(위원장의 직무) 242 제15조(회의) 242

법	시행령
제18조(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243 제19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245	제16조(전문위원회) 243 제17조(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무처리) 243 제18조(의견수렴 등) 244 제19조(조사·연구의 의뢰) 244 제20조(수당 등) 244 제21조(운영세칙) 245
제5장 보 칙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 245 제21조(교육·홍보 등) 247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247	제22조(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 245 제23조(지속가능발전 교육 등) 247
부 칙	
	제1조(시행일) 248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248

부	시행령
	제3조(범령 및 행정계획의 통보시기 등에 관한 적용례) 248 제4조(국가기행계획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경과조치) 248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249

◇ 시행령 별표 250

법	시행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2007. 8. 3 법률 제861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정 2008. 4. 16 대통령령 제2076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시행령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기술지식을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경제제도를 정비하고 기업경영의 혁신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의 정의·안전과 통합을 촉진한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5.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기술혁신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잠재적인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기술발전을	

법	시행령
추진한다.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7. 국가는 공정한 국제무역이 지속될 수 있는 국제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8. 국민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제2조(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입안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제4조(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 ① 정부는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이하 "의제 21"이라 한다),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이하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이라 한다)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	

법	시 행 령
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에너지·교통·국토이용·농업, 빈곤·건강·교육, 생태·물·해양·산림 등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추진전략과 원칙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지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14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와 경제적·	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안을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

법	시행령
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와 정부 내의 업무분담체계 및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는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	여 필요한 사항

법	시행령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이를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방법 및 절차와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조(국가이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이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한 후 중앙행정기관에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이행계획 수립지침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이행계획의 수립·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가이행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시 행 령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방이행계획(이하	1. 국가이행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 2. 국가이행계획의 추진목표 3. 분야별 실행계획,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4. 그 밖에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국가이행계획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국가이행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그 계획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이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 2.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방이행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이행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법	시행령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지방이행계획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국가이행계획과의 조화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의 조화 3. 필요한 재원 및 실현 가능성
제7조(이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국가이행계획 또는 지방이행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이행계획의 협의·조정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7조에 따른 협의·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송부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8조(지속가능발전책임관의 지정)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 및 그에 따른 이행계획, 제13조에 따라 작성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와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책임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이행계획을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년마다 최근 2년간의 국가이행계획 추진실적을 스스로 평가하고,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받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국가이행계획에 따라 추진상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행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법	시행령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예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제10조(법령 제정·개정 등에 따른 통보의 기간·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법령의 통보 시기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송부하는 때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표에 따른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해당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때)에 해당 행정계획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과 중·장기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

법	시행령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이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제·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방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	터 30일 이내에 법령과 중·장기 행정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국가위원회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의 제·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13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11조(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소관업무에 관한 지표만 해당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

법	시행령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지속가능성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때에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최근 2년간을 대상으로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결과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법	시행령
제4장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5조(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제16조(국가위원회의 기능)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제4장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법	시행령
6.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등에 관한 사항 7. 제13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10. 제21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제22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하여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7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	시행령
시·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 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분야별로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 ⑥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농림수산업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② 위원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의 회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법	시행령
제18조(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	②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간사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17조(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무처리) 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통령실의 환경 담당 비서관이 된다. ②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 ③ 실무추진단의 단장은 대통령실의 환경 담당 비서관이 겸임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법	시행령
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이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행정계획의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8. 제21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제22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	제18조(의견수렴 등) 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업무는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학계 등 여러 분야와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 세미나,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그 밖의 직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법	시행령
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 ① 정부는 국민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	제5장 보칙 제22조(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 ①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이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관한 사항

법	시행령
추·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의 의뢰 및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 또는 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관한 사항 3. 국가이행계획 및 지방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이행계획 및 지방이행계획의 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법 제11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과 그 검토결과에 관한 사항 6.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8.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여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민에게 유용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②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현황조사 또는 지

법	시행령
제21조(교육·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전략의 수립·이행·평가와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국립환경인력개발원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제23조(지속가능발전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기업 등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속가능발전 주간(週間) 운영 등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에 따른 의제21,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규범을 실천하기 위

법	시행령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여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법령 및 행정계획의 통보시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규정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가이행계획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경과조

법	시행령
	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에 따라 수립·작성된 국가이행계획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국가이행계획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가 수립·작성될 때까지는 이 영에 따른 국가이행계획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영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중·장기 행정계획 (제10조제2항 관련)

1.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2. 「생명공학육성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3. 「원자력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
4.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
5. 「관광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장기계획
6.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7. 「청소년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8.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종합계획
9. 「농어촌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융수 이용 합리화계획
10. 「농업·농촌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
11.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기본계획
12. 「산림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13.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육성계획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 중 같은 조 제2항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계획
15. 「산업발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18. 「에너지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에너지기본계획
19. 「에너지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계획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
2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22.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2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24.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
25.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6.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27.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28.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29.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
30.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3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32. 「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33. 「수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
3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35. 「습지보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

3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
3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38. 「자연공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39.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4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원재활용기본계획
4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42. 「폐기물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43.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
4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45.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4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47.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
4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
49.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50.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51. 「골재채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골재수급기본계획
52. 「교통안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53.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54.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5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5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
58. 「도로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도로정비기본계획
5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60.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6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
62. 「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63. 「철도건설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64. 「하천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65. 「하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66.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67. 「어장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 기본계획
68. 「연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69. 「연안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계획
70. 「항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7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72. 「해양수산물전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물전기본계획
73. 「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74. 그 밖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선정한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07.8.3 제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08.4.16 제정)	00사·도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표준안 (‘08.1.8 시·도 송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기술지식을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경제제도를 정비하고 기업경영의 혁신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의 정의·안전과 통합을 촉진한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5.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기술혁신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잠재적인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기술발전을 추진	

한다.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7. 국가는 공정한 국제무역이 지속될 수 있는 국제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8. 국민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제4조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 ① 정부는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이하 “의제 21”이라 한다),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제2조(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이하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이하 한다)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에너지·교통·국토이용·농업, 빈곤·건강·교육, 생태·물·해양·산림 등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	· 도시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입안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안을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국가지속가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추진전략과 원칙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지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능발전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제3조(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14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방법·절차와 정부 내의 업무분담 체계 및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 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가 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는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경미한 변경 등)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제4조제3항제1호, 제5호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이를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방법 및 절차와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및 제6호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당초의 00시·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부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방법·절차 등)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기본전략의 수립시,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00시·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이행계획의 수립·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	제4조(국가이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가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다른 국가이행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이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이행계획 수립지침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이행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 2. 국가이행계획의 추진목표 3. 분야별 실행계획,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4. 그 밖에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전략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국가이행계획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국가이행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그 계획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이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 2.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방이행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제4조(이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방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지방이행계획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이행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국가이행계획과의 조화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의 조화 3. 필요한 재원 및 실현 가능성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이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당초의 기본전략의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행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 2. 당초 이행계획의 소요비용을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7조(이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제7조(이행계획의 협의·조정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시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국가이행계획 또는 지방이행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위원회 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는 시·도지사가 법 제7조에 따른 협의·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책임관의 지정)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 및 그에 따른 이행계획, 제13조에 따라 작성한 지속가능발전지표	제8조(지속가능발전책임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이나 이에 준	제6조(지속가능발전책임관) 시·도지사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기획관을 지속가능발전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정책기획관, 혹은 기획관 등 시·도의 직제에 따라 조정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이행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년마다 최근 2년간의 국가이행계획 추진실적을 스스로 평가하고,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받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국가이행계획에 따라 추진 상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계	제7조(추진상황의 점검절차 등) ①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행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최근 2년간의 이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자체평가서를 기본전략과 이행계획에 근거하여 추진상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전문가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

제10조(다른 법령에 따른 제회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 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10조(법령 제정·개정 등에 따른 통보의 기간·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법령의 통보 시기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송부하는 때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표에 따른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해당 법령에서 관계 기관	

통보하여야 한다.	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제8조(행정계획 수립·변경 등에 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 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 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 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 보하여야 한다.	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때)에 해 당 행정계획을 국가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른 통보 기간·절차 등) ① 법 제 11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위원회에 통보 하여야 하는 중·장기 행정계획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보기 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고, 제3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과 중· 장기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 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령과 중·장기 행정계획을 검토 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은 별표와 같으며, 그 통보시기는 당해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심의 위원회 상정 이전, 또는 심의위원 회가 없는 경우에는 확정이전으 로 한다.
⑤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이나 행정계 획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	④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3 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관한 보고 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대통 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기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때에 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 원회의 검토와 조정을 거친 후 위 원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제·개정 또는 행정계획	1. 중·장기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전략 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2. 기타 운영위원회 검토결과 중·장기 행정계획의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장기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위원회

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방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의 검토결과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국가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의 제·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13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11조(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소관업무에 관한 지표만 해당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때에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전략을 작성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3조제3항에 의한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거 확정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적용결과, 제6조제2항에 따라 이행계획에 대한 점검결과 및 그 당시 국내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속가능성보고서) ① 국가 위원회는 2년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최근 2년간을 대상으로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작성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검토결과 2.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분야별 지속가능성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과제 4. 향후 정책방향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최근 2년간을 대상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를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 계획 추진상황 점검결과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지방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 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 한다.	4. 그 밖에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기간으로 하여 다음년도 6월 말 까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제4장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5조(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지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제16조(국가위원회의 기능)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협의·조정 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6.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등에 관한 사항 7. 제13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작성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10. 제21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제22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하여 대통령에 대한 자문

이 필요한 사항		
제17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제4장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3조(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농림수산업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② 위원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회의회의 회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분야별로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 ⑥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장"이라 한다)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

	른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간사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17조(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무처리) 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통령실의 환경 담당 비서관이 된다. ②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 ③ 실무추진단의 단장은 대통령실의 환경 담당 비서관이 겸임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8조(의견수렴 등) 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업무는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학계 등 여러 분야와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 세미나,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그 밖의 직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이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제11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은 “00시·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시·도의 기획관리실장, 산업경제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사회복지국장 등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4.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행정계획의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8. 제21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제22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당연직위원은 해당 시·도의 기획관리실장(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하여 경제, 사회, 환경분야의 국장으로 하되, 4~5명 정도가 바람직 ※ 민간위원의 경우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되, 시민사회단체는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③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법 제18조 제2항의 1호, 2호, 7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전문위원회 간사, 지속가능발전책임관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전문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회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간사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10조제2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기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위원회의 사무처리) ①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1. 위원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등에 부의되는 안전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등의 기능에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등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②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은 사무기구를 총괄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③ 그 밖에 사무기구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민관협력의 증진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할 때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8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

		위 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00시·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시·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기관·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의한 경우 제21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		

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 나 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전 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 ① 정부는 국민에게 지속 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 하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 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제5장 보칙 제22조(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 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이하 “지 속가능발전정보망”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지속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는 다른 자료 제출의 범위, 관계	가능발전 기본전략에 관한 사항 3. 국가이행계획 및 지방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이행계획 및 지방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법 제11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과 그 검토결과에 관한 사항 6.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홍보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8.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여건에 관한 사항

전문기관의 장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의 의뢰 및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 또는 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그 밖에 국민에게 유용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②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현황조사 또는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국립환경인력개발원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물」에 따른 공기업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제21조(교육·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전략의 수립·이행·평가와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지속가능발전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기업 등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속가능발전 주간(週間) 운영 등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에 따른 의제21,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규범을 실천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지속가능발전 실천 등) ①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국가위		

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기업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기 위하여 민간실천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법령 및 행정계획의 통보시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규정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가이행계획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에 따라 수립·작성된 국가이행계획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국가이행계획 및 국가지속가능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기 설치 운영 중인 시·도의 경우에 한함

	발전지표가 수립·작성될 때까지는 이 영에 따른 국가이행계획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영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별표]

중·장기 행정계획(시행령 제10조제2항 관련)

1.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2. 「생명공학육성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3. 「원자력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
4.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
5. 「관광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장기계획
6.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7. 「청소년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8.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종합계획
9. 「농어촌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융수 이용 합리화계획
10. 「농업·농촌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
11.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기본계획
12. 「산림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13.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육성계획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 중 같은 조 제2항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계획
15. 「산업발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18. 「에너지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에너지기본계획
19. 「에너지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계획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
2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22.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2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24.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
25.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6.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27.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28.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29.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
30.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3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32. 「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33. 「수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
3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35. 「습지보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
36. 「아생동·식물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아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
3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38. 「자연공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39.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4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원재활용기본계획
4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42. 「폐기물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43.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
4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45.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4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47.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
4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
49.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50.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51. 「골재채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골재수급기본계획
52. 「교통안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53.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54.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5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57. 「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담건설장기계획
58. 「도로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도로정비기본계획
5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60.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6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
62. 「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63. 「철도건설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64. 「하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65. 「하천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
66.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67. 「어장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 기본계획
68. 「연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69. 「연안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계획
70. 「항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7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7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73. 「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74. 그 밖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선정한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

[기본조례표준안 별표]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기본조례 표준안 제8조 제1항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통 행정계획>

1. 관광진흥법 제4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2. 친환경농업육성법 제7조의 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실천계획
3. 산림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림계획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업진흥계획
5. 에너지기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너지계획
6.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3 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환경보전계획
7. 자연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8. 습지보전법 제5조 7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실천계획
9.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토양보전계획
10. 폐기물관리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
11. 국토기본법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도종합계획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5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공급계획
13. 주택법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주택종합계획
14. 지하수법 제6조의 2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하수관리계획
15. 연안관리법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계획
16.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한 댐건설기본계획

1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혁신발전계획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1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사업계획
20. 농업·농촌기본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도 농업·농촌발전계획
21. 농어촌정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22. 수도법 제4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
23. 하천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
24. 영유아보육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
2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26. 항만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항만에 관한 항만기본계획
27. 자연공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계획
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29. 하수도법 제5조의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30.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조 규정에 의한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
31.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풍수해저감종합계획
3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기본계획
33. 경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계획
34. 교통안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35.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시책

<특정 시·도 행정계획> 해당 시도만 반영

1. 국토기본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 국제자유도시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3.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4.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5.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제정 2000. 8. 5 대통령령 제16946호
 개정 2002. 6. 3 대통령령 제17621호
 개정 2003. 6. 25 대통령령 제18016호
 개정 2005. 8. 31 대통령령 제19023호
 개정 2006. 4. 21 대통령령 제19453호

제1조 (목적)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해결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11.11>

제2조 (기능)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3.11.11>

1. 경제·사회·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정책방향의 설정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물·에너지 대책 등 주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관한 사항
4.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의 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협약 등 주요 국제환경협약의 국내이행대책 및 대응전략에 관한 사항
6.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이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11.11, 2006.4.21>

②위원장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03.11.11>

③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된다.<개정 2006.4.21>

④위촉위원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4.21>

⑤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4.21>

⑥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통령비서실의 지속가능발전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된다.

제3조의2(갈등조정특별위원회) ①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갈등조정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가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특별위원회는 7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도별 시민단체·학계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④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⑤특별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보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06.4.21]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제3조제4항 및 제3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03.11.11, 2006.4.2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3.11.11>

②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③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삭제 2006.4.21 >

제9조 (전문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간사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③전문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6.4.21>

④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자문위원)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3.11.11>

제11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①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1. 위원회·특별위원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등에 부의되는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등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등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 ②사무기구에는 기획운영실장 1인을 두며, 기획운영실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지속가능발전팀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과제의 발굴, 업무추진상황의 관리 및 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지속가능발전팀을 둘 수 있다.

제13조 (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주요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 위원장 및 위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참석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직원의 파견 등) ①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및 관계기관·단체 등의 임원·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사무기구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5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요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주요 중·장기계획은 별표와 같으며, 그 통보시기는 당해 계획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에 협의를 요청하는 때로 한다.

④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계획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토론회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등의 위원·자문위원 그 밖의 직원·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의2 (위원의 해촉 등)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윤리규범을 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이 위원윤리규범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당해 위원의 해촉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1.11]

제19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8016호,2003.6.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4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부칙(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1> 생략

<32>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33> 내지 <43>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125호,2003.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9023호, 2005.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제4조 생략

부 칙<제19453호, 2006.4.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03.6.30, 2005.8.31, 2006.4.21>

주요 중·장기계획(제15조제3항관련)

1.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
2. 「원자력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진흥종합계획
3. 「관광진흥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4. 「농업·농촌기본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
5.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계획
6. 「산림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
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시책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
적활성화 기본계획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1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계획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13.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수급기본계획
1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환경종합계획
15.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16.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교육·홍보시책
17.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
18.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19. 「습지보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기본계획
20.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기본계획
2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2.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24.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2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사업계획

2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27.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공급계획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30. 「수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
31.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32. 「도로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기본계획
33. 「하천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34. 「지하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리기본계획
35.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37.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38.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종합대책
39. 「연안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계획
40.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
4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
42. 「철도건설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4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 중 동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계획
44.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주요 정책 및 계획

제정 2000. 9.26 지속가능발전위원회훈령 제1호
 일부개정 2002.11.13 지속가능발전위원회훈령 제2호
 전문개정 2004. 1.16 지속가능발전위원회훈령 제3호
 일부개정 2004. 9.20 지속가능발전위원회훈령 제4호
 일부개정 2006. 7.18 지속가능발전위원회훈령 제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운영

제2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의안의 제출) ①의안은 위원장, 전문위원회 간사 또는 위원 1/3이상의 발의로 제출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개회) 위원회는 위원장의 개회선포와 함께 개회된다.

제5조(산회) 위원회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제6조(발언의 통지) ①위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위원은 통지를 한 위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7조(발언의 계속)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위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위원은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발언회수의 제한) 위원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위원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발언시간의 제한) 위원의 발언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의사진행발언·신상발언 및 보충발언은 5분을, 다른 위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표결의 선포) ①표결할 때에는 위원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12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위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위원장의 제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14조(투표절차) ①각 위원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투표할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기획운영실 직원으로 하여금 투개표 상황을 점검·계산하게 할 수 있다.

③투표의 수가 참석위원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감표위원은 다른 위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15조(표결결과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1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회의록 사본을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장 갈등조정특별위원회 운영

제16조의2(특별위원회의 간사 등) ①갈등조정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에 간사 및 총무 각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총무는 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특별위원회 회의운영 및 과제의 처리, 연구팀 운영 등

전반에 대한 업무를 통할한다.

③총무는 위원장과 간사를 보좌하여 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한다.

제16조의3(회의) ①위원장은 규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의4(의안의 제출) 의안은 위원장, 특별위원회 간사 또는 위원 1/3이상의 발의로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의5(의사 및 의결 정족수) 특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갈등해결을 위한 공론의 결과에 대한 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의6(연구팀의 운영) 특별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현안 또는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의 공론화를 위한 과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의 일부위원과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을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의7(준용규정) 제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특별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장신설, 2006.7.18]

제4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규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검토·조정하고 지원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규정 제2조제3호에 관한 사항
3. 규정 제2조제7호에 의한 사회적 갈등의 해결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4. 기타 위원회 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

②규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규정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 관한 사항
3. 규정 제2조제7호에 의한 그 밖에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1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규정 제3조제6항에 의한 간사, 제16조의2제1항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간사 및 총무, 규정 제9조제3항에 의한 각 전문위원회 간사,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무, 제28조제2항에 의한 기획운영실장, 기타 위원회 위원중에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6.7.18>

③운영위원회에 총무위원 1인을 두며, 총무위원은 의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하며, 각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6.7.18>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전문위원회 운영

제2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①규정 제9조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별표]의 전문위원회 주요 연구·검토 업무분야를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문위원회는 규정 제9조제3항의 간사 1인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등 총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위원회에 중복 참여할 수 있다.

④전문위원은 관계부처 국장 및 관계전문가중에서 간사의 제청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21조(전문위원회의 운영) 전문위원회는 과제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조사·연구용역의 의뢰, 관계부처,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자료검토 및 의견청취, 공청회 또는 토론회의 개최, 현장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2조(간사의 임무 등) ①간사는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간사는 과제별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간사 유고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전문위원회의 회의) ①전문위원회의 회의는 간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전문위원회의 총무) 전문위원회별로 총무 1인을 두며, 총무는 간사가 지명한다.

제25조(연구팀의 운영) ①전문위원회의 과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 중 일부위원과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7.18>

②연구팀의 팀장 및 위원은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006.7.18>

제26조(연구위원의 임명) 위원장은 간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경우 전문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장 사전검토

제27조(사전검토) 규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의결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검토·조정을 거친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은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제7장 기획운영실

제28조(구성)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운영실을 두며, 그 산하에 업무 수행팀을 둘 수 있다.

②기획운영실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제29조에 규정한 직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업무 수행팀과는 별도로 연구보조요원, 운전원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9조(직무) 기획운영실은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위원회 운영 및 각 전문위원회간의 업무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정리·배부, 심의결과의 정리 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서무·인사·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또는 제작·배포 등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8장 직원인사 및 복무관리

제30조(파견직원의 인사) ①기획운영실에 파견되는 직원의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필요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기획운영실에 파견되는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 등에 있어서 파견을 이유로 불리하게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파견된 직원중 승진 요건을 갖추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위원장은 파견자의 원소속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승진

임용 또는 승진임용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품위유지 및 공사의 구분)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분명히 하여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직원의 복무) 기획운영실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며, 기획운영실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33조(파견철회요청 또는 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은 기획운영실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기관의 장에게 파견철회를 요청하거나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3월이상 직무를 담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제9장 예산 관리

제34조(수당등 지급) 위원장, 위원, 전문위원, 기획운영실 직원 및 기타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급기준은 예산회계법령에 따라서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5조(채용직원의 보수) 채용직원의 보수는 정부의 민간인 채용기준 및 보수규정을 준용하되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문서 및 보안

제36조(문서 정의) 문서라 함은 위원회 내부 또는 국내·외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위원회에서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37조(결재) 문서의 기안문의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무내용에 따라 하부조직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발송) 문서의 발송은 기획운영실에 비치된 문서의 등록대장에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등록대장의 확인란에 서명날인 후 문서등록번호를 붙여 발송하여야 한다.

제39조(문서보안) 문서 및 전화 등 보안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안업무규정과 동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1장 보칙

제4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41조(회의내용의 공표·누설금지) ①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위원회·운영위원회·특별위원회·전문위원회 위원, 소위원회 위원 및 연구위원, 기획운영실 직원은 회의 내용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를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위임)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업무집행시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 2004.9.20>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호, 2006.7.18 >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문위원회 주요 연구·검토 업무분야(제20조제1항관련)

1. 사회·환경·건강 분야

- 가.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지표의 개발에 관한 사항
- 나. 환경·건강분야 주요정책과제 발굴·자문에 관한 사항
- 다. 빈곤, 인구, 여성, 청소년, 복지 등 사회분야의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라. 관련 국가주요정책의 사전검토 등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관련분야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갈등해결정책 분야

- 가. 지속가능 사회구현과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해결시스템 구축 관련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 나. 관련 국가주요정책의 사전검토 등에 관한 사항
- 다. 기타 관련분야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물·국토·자연 분야

- 가. 지속가능한 물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나. 환경친화적 자원절약형 국토 자연환경관리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다. 연안개발 및 해양관리에 관한 사항
- 라. 관련 국가주요정책의 사전검토 등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관련분야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산업 분야

- 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과제 발굴·로드맵 작성,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 나. 기후변화협약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다.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개편 등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자문
- 라. 관련 국가주요정책의 사전검토 등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관련분야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대외협력·교육 분야

- 가. WSSD 후속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나.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발전에 관한 사항(NCSD, 지방의제)
- 다. 학교, 사회 등 각 분야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홍보
- 라. 관련 국가주요정책의 사전검토 등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관련분야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제정 2004. 1. 16 지속가능발전위원회훈령 제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윤리규범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윤리규범은 위원회의 소속위원 전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3조(위원의 책무) 위원은 본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지인, 친족 또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 단체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당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 위원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외부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인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당해 위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직의 입후보) 위원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해촉 등

제7조(해명자료의 제출 등) ①위원장은 이 윤리규범에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명자료를 제출 받은 위원장은 동 자료를 검토한 후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8조(해촉 등) 위원회는 규정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의 해촉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윤리규범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0. 11

개정 2005. 7. 7.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예규 제 1 호

개정 2006. 7. 4.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예규 제 4 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획운영실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및 효율화를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인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실장, 국장 및 팀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휴가·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제4조(협조사항) ①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팀과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팀(부서)을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위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 7. 4.부터 시행한다.

별 표

위 임 전 결 사 항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 팀원	위임전결			위원장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팀장	국장	실장	
1	대통령지시사항	실천계획의 수립 및 실적 종합보고		기안			○
		추진실적 관리	기안		○		
2	위원장지시사항	실천계획의 수립 및 실적 종합보고		기안			○
		추진실적 관리	기안		○		
3	국정과제회의·국 정과제조정회의	보고자료(보고서, 슬라이드) 작성		기안			○
		회의준비	말씀자료작성 등 중요사항	기안	○		
			참석자 파악 등 일반사항	기안	○		
		지시사항 또는 보완사항 등에 대한 실천계획 수립		기안		○	
		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관라평가	기안		○		
4	대통령서면보고	보고자료작성		기안			○
		실천계획 수립 및 관리		기안		○	
5	본위원회, 갈등조 정특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본위원회, 갈등조정특별위원 회 및 운영위 구성		기안			○
		회의개최 및 결과보고		기안			○
		위원회 운영 일반사항 (일정통보, 참석수당 지급 등)	기안	○			
6	전문위원회 및 연구팀 구성·운영	전문위원회 구성		기안			○
		전문위원회 회의개최 및 결과보고		기안			○
		연구팀 구성		기안		○	
		연구팀 회의개최 및 결과보고	기안		○		
		전문위원회 등 운영 일반사항 (일정통보, 참석수당 지급 등)	기안	○			
7	주요 중장기계획 검토	계획수립 및 검토의견 작성		기안		○	
		기타 자료요청 등	기안		○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	위임전결			위원장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팀원	팀장	국장	실장	
8	관계부처와의 업무협조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	법령·훈령·예규의 제개정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제· 개정		기안			○
		훈령 등 행정규칙 제·개정		기안		○	
10	시책홍보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시책 및 업적 의 홍보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시책에 대한 여론 파악	기안	○			
		기타 홍보 자료수집	기안	○			
11	국내 출장·복명 및 휴가·조퇴 ·외출 등 승인	국 장	기안			○	
		팀 장(연구위원 포함)	기안		○		
		팀 원	기안	○			
12	국외 출장	연간 출장계획 수립	기안			○	
		출 장 승인	국장	기안		○	
			팀장(연구위원 포함)	기안		○	
			팀원	기안	○		
13	연가, 병가, 외출 등 복무관리	국 장	기안			○	
		팀 장(연구위원 포함)	기안		○		
		팀 원	기안	○			
14	각종 행사	중요행사(장·차관참석)		기안			○
		일반행사	기안		○		
15	국제회의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계획 수립·추진	기안	○			
16	외국주요인사 초청 및 방한	초청계획 수립	주요인사 (장·차관급이상)	기안			○
			기타인사	기안		○	
		다른 부처와의 협의	기안	○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	위임전결			위원장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팀원	팀장	국장	실장	
17	주요업무보고	연두 주요업무보고		기안			○
		대통령·국무총리 주요현안 보고사항		기안			○
		수석보좌관회의, 연석회의, 비서관회의 자료		기안		○	
		기타 내부 회의자료	기안	○			
18	대국회·정당 관 련 업무 총괄	당정협의사항		기안		○	
		정책자료 제출	기안		○		
		일반자료 제출	기안	○			
19	인사관리 업무	전문계약직 채용·관리	채용계획 수립	기안			○
			채용 및 성과상 여급 산정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직원 파견 동의			기안		○
		신원조사 및 신원보증		기안	○		
		제증명서 발급		기안	○		
20	용역추진	평가단 회의 개최			기안		○
		용역관련 일반사항		기안	○		
21	예산집행관련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2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3	홈페이지 운영관리	홈페이지 개선 등 기획조정		기안		○	
		홈페이지 자료관리		기안	○		
24	각종 간행물 발간	발간계획		기안		○	
		자료의 수집 및 보완		기안	○		
		배포 및 관리		기안	○		
25	직장교육	특별교육(외부강사 초청등)		기안		○	
		기타교육		기안	○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 팀원	위임전결			위원장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팀장	국장	실장	
26	시민사회단체 등 대외 협조사항			기안		○	
27	보안업무	보안교육	기안		○		
		비밀문서 재분류	기안	○			
		보안장비 및 보안자재 관리	기안	○			
		기타 보안에 관한 사항	기안	○			
28	문서 관리	문서의 분류심사 및 수발	기안	○			
		문서의 분류 및 보존관리	기안	○			
29	각종 통계처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0	각종 자료관리	수집 및 배포	기안	○			
		폐기	기안	○			

제정 2005. 7. 11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예규 제2호
일부개정 2006. 6. 28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예규 제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추진하기 위한 용역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한다)의 구성과 운영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평가단은 단장 1인과 10인 내외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획운영실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국정과제국장, 연구위원 및 각 팀장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은 필요시 단장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총괄팀 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중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구표의 순위에 따라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운영) ①평가단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평가단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단장이 결정한다.
③평가단 회의는 필요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평가사항) 평가단은 다음 각항의 사항을 평가한다.

① 용역발주전 평가 : 연구용역사업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 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용역의 필요성
- 나. 과업내용의 적정성
- 다.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 라. 계약방법 및 계약대상의 타당성
- 마. 용역기간 및 용역비 산정의 적절성 등

② 용역진행중 평가 :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중간보고회 또는 최종보고회시에 다음사항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보고서 내용의 적정성
- 나.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 다. 인용자료 등 내용의 신뢰성
- 라. 진행일정의 적절성 등

③ 용역완료후 평가 : 연구용역이 완료된 사업을 종합하여 반기별로 다음사항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연구용역의 적정성
- 나.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성 등

제6조(평가지기) ‘용역발주전 평가’는 과업지시서가 완성된 후 계약 체결전에 평가를 실시하고, ‘용역진행중 평가’는 과업지시서에 따른 중간보고회 또는 최종보고회시에 실시한다.

제7조(안건의 제출) ①각 팀장은 소관 업무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거쳐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1호서식에 의한 평가의뢰서를 작성, 평가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장은 평가회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사항과 관련있는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평가방법) 평가단은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평가사항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각 팀장은 주요 평가내용에 관한 자료를 계획서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 활용) 각 팀장은 소관 용역사업에 대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평가단 회의에서 수정·보완된 내용을 평가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또는 용역보고서를 수정·보완하여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①평가단의 위촉위원 또는 제7조제2항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의 전문가가 제5조제2항의 평가사항중 용역수행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 6.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연구용역과제 평가의뢰서

1. 용역명 :
2. 용역목적 :
3. 용역(예정)기간 :
4. 용역(예정)수행자 :
5. 소관전문위원회(팀명)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용역평가단구성·운영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연구용역평가를 의뢰합니다.

200 . . .

전문위원회 팀장

붙임 :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등)

<별지 제2호서식>

연구용역 발주전 평가서

<과제명 :

>

평가위원 :

(서명)

구 분	주요 평가내용 (체크리스트)	평가결과(점수)		
		우수	보통	미흡
용역의 필요성 (25)	①유사과제의 기 수행여부 등 확인결과 신규사업의 필요성	10	7	3
	②연구용역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10	7	3
	③연구용역 추진시기가 시의 적절한지 여부	5	3	1
과업내용의 적정성 (25)	①과업내용이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적합한지 여부	10	7	3
	②과업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사전자문 및 의견수렴 여부	10	7	3
	③과업내용이 구체적인지 여부	5	3	1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20)	①국정과제 또는 서면 보고 가능성 여부	10	7	3
	②정책연구 또는 담론 활용 가능성 여부	10	7	3
계약방법 및 계약대상의 적정성 (15)	①계약방법의 적정성 여부	5	3	1
	②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구성이 적정한지 여부	10	7	3
용역기간 및 용역비의 적절성 (15)	①용역기간의 적절성 여부	5	3	1
	②단계별 추진일정의 적정성 여부	5	3	1
	③용역비 규모 및 용역비 산정의 적절성 여부	5	3	1
평가점수		점		

주) 평가위원 점수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용역사업 추진

[종합의견]

<별지 제3호서식>

연구용역 (중간, 최종)평가서

<과제명 : _____ >

평가위원 : _____ (서명)

구 분	주요 평가내용	평가결과
보고서 내용의 적정성	①보고서 체계가 적절한지 여부	
	②연구내용이 과업지시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③전문가의 자문 실시 및 의견반영 여부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①연구결과가 연구목적에 맞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여부	
	②연구결과를 정책화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 되었는지 여부	
인용자료 등 내용의 신뢰성	①관련자료의 신뢰성 확보 여부	
	②관련자료가 시의적절(時宜適切)한지 여부	
진행일정의 적절성	①과업지시서 추진일정에 따라 진행되는지 여부	
	②연구결과 활용측면에서 진행일정이 적절한지 여부	

[종합의견]

<별지 제4호서식>

연구용역 완료후 평가서

<과제명 :

>

평가위원 :

(서명)

구 분	주요 평가내용	평가결과
연구용역의 적정성	①당초 기대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는지 여부	
	②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구성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③연구용역 추진방법·과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④연구비가 적정하였는지 여부	
연구결과의 활용성	①당초 목적에 맞게 연구결과가 활용되거나 활용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②후속연구가 필요한지 여부	

[종합의견]

< 제1기 본위원회 >

□ 위 원 : 총 33명 (위촉위원 21명, 당연직위원 12명)

□ 임 기 : 2000. 9. 20 ~ 2002. 9. 19

○ 민간위원 (21명)

성 명	출생 년도	소속 및 직위
강문규	31	위원장
권태준	37	서울대 교수
김귀곤	44	서울대 교수
노유희	27	배달녹색연합 고문
박영숙	32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박이동	32	성균관대 명예교수
박종식	48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소장
서한태	28	‘푸른전남21’ 추진협의회 상임의장
손병두	41	전경련 상근 부회장
송보경	45	서울여대 교수
유재현	49	세민재단 이사장
이상은	48	아주대 환경공학과 교수
이정식	45	국토연구원(KRIHS) 원장
이정전	43	서울대 교수
이진순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이태복		청와대 복지노동 수석
장명수		한국일보 사장
장현준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정만조	36	변호사
정현식	43	성균관대 교수
최 열	49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당연직(12명) : 농림부, 환경부, 과학기술부, 국무조정실,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 제2기 본위원회 >

□ 위 원 : 총 34 명 (위촉위원 21명, 당연직위원 13명)

□ 임 기 : 2002. 10. 4 ~ 2003. 6. 25

○ 민간위원 (21명)

성명	출생년도	소속 및 직위
박영숙	32	위원장
곽창욱		변호사
김귀곤	44	서울대 교수
김수삼		한양대 교수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
김재옥	46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회장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장
남승자		KBS 해설위원('98-'01)
문국현	49	유한킴벌리(주) 대표이사
박은경	46	환경과 문화연구소 소장
박재영		(주)한진중공업 대표
박재일		(사)한살림 회장
박종식	48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소장
성준용		LG환경·안전연구원 원장
신부용		(사)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윤서성	4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이규방		국토연구원(KRIHS) 원장
이상은	48	아주대학교 교수
지영선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황두열	43	SK(주) 대표이사 부회장

○ 당연직(13명) : 행정자치부,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농림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국무조정실,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 제3기 본위원 >

□ 위 원 : 총76 명 (위촉위원 28명, 시도 대표 49명)

□ 임 기 : 2003. 12. 15 ~ 2005. 12. 14

○ 민간위원 (76명)

성 명	출생년도	소속 및 직위
고철환	46	위원장
강규석	38	심원학술재단 이사장
고창실	37	전) 제주일보 논설위원
공이송	40	동신대학교 객원교수
김강렬	61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상임이사
김경량	53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김경희	51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기수	33	실로암 복지재단 이사장
김두희	35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김미선	56	국제신문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김삼룡	25	원광대학교 마백연구소 소장
김성구	47	한밭새마을금고 이사장
김승목	44	변호사
김웅배 (사망)	42	목포대학교 총장
김정욱	46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주영	39	소설가
김희경	61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희은	55	(사)여성사회교육원 원장
류창우	35	대구대학교 대구사회연구소 이사장
문국현	49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박광섭	50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박성인	38	삼성전자(주) 스포츠단 단장
박재묵	50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박종식	48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소장
박효숙	51	(사)광주여성의전화 상임이사

배은하	55	성 도미니코 수녀원
서원명	48	경상대 농업생명과학대 농업시스템공학부 교수
서정의	58	(사)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회장
송남수	45	전국농민연대 상임대표
승효상	52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대표
신혜수	5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오홍숙	54	부산 생명의전화 원장
우봉제	26	선도직물(주) 회장
유지나	60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 교수
이균범	34	전) 동신대학교 총장
이기영	52	동아대학교 인문학부 사학과 교수
이문교	39	제주관광대 초빙교수
이병해	42	울산과학대 교수
이삼열	4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이상훈	37	충북일보 대표이사
이석영 (사망)	48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수영	45	전) 경기개발연구원 대표
이영자	49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이영호	50	한국종교연합 선도기구 대표
이원락	45	문경 요양병원 원장
이종만	37	전)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공동대표
이진	42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상임회장
이태훈	50	가천길의료재단 의료원장
이필원	37	(사)한국노사문제연구원 이사장
이학영	52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이혜경	53	여성문화예술기획 이사장
이희원	51	인제대 의대 부속 서울 백병원치과 구강악안면외과 과장
임숙경	52	임숙경법률사무소
임승남	51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장성효	49	중앙일보 논설위원
장희익	38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성환	66	아산 YMCA 사무총장
전형준	61	울산학원 원장
전호영	38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 공동의장
정광화	4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정대연	47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정용하	55	부산대학교 정외과 교수
정진승	45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지영선	49	보스턴 총영사
최상림	57	한국여성노동자회 협의회 대표
최정철	62	(주)신화컨설팅 대표
최태길	53	밀양대학교 교수
최형재	63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하선규	46	부산시 의원
하성룡	57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도시공학과 교수
한경호	52	21세기농촌선교회 회장
한영주	50	전북발전연구원 원장
한지현	43	광운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허상수	55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교수
홍덕률	57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홍청자	4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고문

< 제4기 본위원회 >

□ 위 원 : 총 33명 (위촉위원 21명, 당연직위원 12명)

□ 임 기 : 2006. 5. 2. ~ 2008. 4. 16.

○ 민간위원 (21명)

성명	출생년도	소속 및 직위
김재옥	46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회장
김정옥	46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김희은	55	(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박영숙	57	한국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 감사
박오순	56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박종식	48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소장
손양훈	58	인천대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신창현	53	환경분쟁연구소 소장
윤순진	67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이진	42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이민부	54	한국교원대 지리학과 교수
이은희	55	서울여대 생명환경디자인전공 교수
이태훈	50	가천의과학대 길병원 병원장
장재연	57	아주대 의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정희성	5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최형식	55	전) 전라남도 담양군 군수
한경구	56	국민대 사회과학대학 일본학전공 교수
허동수	43	GS칼텍스 대표이사 회장
황희연	51	충북대 공과대학 도시공학과 교수
김상희	54	(전임)위원장 ('06.1.31 ~ '07.7.30, 전, 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윤서성	43	(전임)위원장('07.8.31 ~ '08.1.26, 전, KEI 원장)
문국현	49	(전임)위원 ('06.5.2 ~ '07.9.21, 전,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 당연직 :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갑등조정특별위원회 〉

□ 위 원 : 총 52명 (제4기 본위원 중 위촉위원 21명, 시·도 추천위원 31명)

□ 임 기 : 2006. 11. 7 ~ 2008. 4. 16.

○ 시도추천 위원 (31명)

성 명	출생년도	소속 및 직위
강태재	46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고숙희	57	세명대 행정학과 부교수
고창후	64	법무법인 해오름 구성원 변호사
곽현근	62	대전대학교 행정학부 부교수
김보금	60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사무처장
김인주	55	광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대표
김재경	60	대구MBC '김재경여론현장' MC(방송인)
김태성	52	제주YMCA 사무총장
김태숙	64	(주) 주간 당진시대 신문사 기획실장
박동석	44	전,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박종근	46	울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박홍석	56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서상호	44	경상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신용호	63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유영남	53	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
윤성윤	61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경희	48	경남여성단체 상임대표
이성근	52	영남대 정치행정대학 행정학부 지역개발학 교수
이영남	59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임동규	47	부산YMCA 사무총장
임선숙	66	변호사
임승남	51	푸른전남21 이사
장상훈	51	전,충남시군의회 의장회 회장
정순훈	52	배재대 총장
정용하	55	부산대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송자	57	강원소비자연맹 사무국장
조철현	38	천주교 광주대교구 신부
최막중	60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최현복	57	맑고푸른 대구의제21 추진협의회 회장
최형재	63	다이나믹 전주연구원 대표
홍재웅	41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상임대표

< 제1기 전문위원회 >

□ 위 원 : 총 91명

□ 임 기 : 2000. 9 ~ 2002. 9

■ 산업과환경 분과위원회 (총 16명)

성명	출생년도	소속 및 직위
김뇌명	42	기아자동차(주) 대표이사
박영우	54	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이천확산실장
박종식	48	위원장, 삼성지구환경연구소장
박준우	49	상명대 경제학교수
신헌식	48	금호산업(주) 상무이사
안기철	55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유상희	57	동의대 교수
유재성	53	두산에코비즈넷 대표이사
이규용	55	환경부 환경정책국장
이병욱	56	POSRI 환경경영연구센터장
이윤배	48	순천향대 교수
이인렬	54	전경련 산업담당상무
이재훈		산자부 산업정책국장
이태영	59	한국코트렐(주) 사장
정 윤	57	과기부 연구개발국장
황종식	64	에코솔루션 사장

■ 국토보전 분과위원회 (총 14명)

성명	출생년도	소속 및 직위
유재현	49	녹색미래 이사장
강봉균	43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광진	50	행자부 지방 재정세제국장
김영화	50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김주현	52	현대경제연구소 전무
노유희	27	서울대 명예교수
박재영	42	한진건설 사장
소만호	51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안건혁	48	서울대 공대 지구환경시스템학과교수
윤서성	4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이정식	45	국토연구원(KRIHS) 원장
장동규	48	건교부 국토정책국장
정만조	36	변호사
최병선	48	경원대 교수, 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 생태·보건 분과위원회 (총 14명)

성명	출생년도	소속 및 직위
김귀곤	44	서울대 교수
김록호	58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교수
김상희	54	여성민우회 대표
김수일	54	교원대 교수(동물관리)
김재옥	46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사무총장
김종원	59	계명대 교수(식물생태)
노유희	27	녹색연합 고문
박해상		농림부 식량생산국장
변철식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서한태	28	“푸른전남21” 추진협의회 상임의장
정도영		환경부 폐기물자원국장
정홍식	61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 회장
지영선	49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최중기		인하대 교수(해양생태)

■ 수자원 분과위원회 (총 15명)

성명	출생년도	소속 및 직위
곽승준	60	고대 경제학과 교수
김 승	53	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김수삼	45	한양대 교수
김홍상	61	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남궁은	50	환경부 상·하수도국장
서왕진	64	환경정의시민연대사무국장
서한태	28	“푸른전남21” 추진협의회 상임의장
손정수		농림부 농촌개발국장
심명필	50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윤서성	4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윤재용	61	서울대 공대 교수
이용우	52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장
최계운	54	인천대 토목공학과 교수
최영철	49	건교부 수자원국장
한승호	54	한화환경연구센터 센터장

■ 에너지대책 분과위원회 (총 16명)

성명	출생년도	소속 및 직위
고윤화	54	환경부 대기보전국장
김동원		산자부 자원정책심의관
김창섭	62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변화협약 대책반원
민만기	66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박영덕	54	SK(주) 상무이사
박이동	32	성균관대 명예교수
배위섭	60	광주대 토목환경공학부 교수
손병두	41	전경련 상근부회장
송보경	45	위원장, 서울여대 교수
안미정	61	특허청 유전공학심사담당관실 심사관
이상곤	47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이필렬		방송통신대 부교수
정 윤	58	과기부 연구개발국장
정수일		건교부 도시건축심의관
허은녕	64	서울대 자원공학과 교수
황두열	43	SK(주) 대표이사 부회장

■ 국제 · 지역협력 분과위원회 (총 15명)

성명	출생년도	소속 및 직위
강윤영	55	에너지경제 연구원 기후변화 대책연구 단장
곽일천	55	경원대 지역개발학과 교수
권태준	37	서울대 교수
김종천		환경부 국제협력관
김주현		행자부 지방재 정세제국장
박영숙	32	위원장,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박은경	46	대한YWCA 연합회 부회장
성준용	47	LG환경안전연구원 원장
여진구	63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사무담당위원
염태영	60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처장
이창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장
정현식	43	성균관대 교수
조환복	54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한화진	59	한국환경 · 정책평가연구원 지구환경연구센터장
황진택	56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수석연구원

< 제2기 전문위원회 >

□ 위 원 : 총 82명

□ 임 기 : 2002. 10. 4 ~ 2003. 6. 25

■ 국토수자원 분과위원회 (총 21명)

성명	출생년도	소속 및 직위
김수삼	45	위원장, 한양대 토목환경 공학과 교수
강교식	52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권용우	48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
김안제	38	서울대 명예교수
남궁은	51	환경부 상하수도국 국장
박석순	57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박재영	42	(주)한진중공업 사장
서왕진	64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서정호	5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국장
성익환	5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신부용	43	(주)교통환경연구원 원장
심명필	50	인하대학교 공대 환경토목공학부 교수
염태영	60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사무처장
우효섭	53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선임연구부장
윤서성	4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윤희정	65	평택대학교 조교수
이규방	50	국토연구원 원장
이상은	48	아주대학교 경공학과 교수
전경수	49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과 교수
전재경	55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정학수	54	농림부 농촌개발국 국장
조명래	55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경제산업 분과위원회 (총 21명)

성명	출생년도	소속 및 직위
강운영	55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대책연구실 실장
김재옥	46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회장
김종갑	51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
김중수	47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창섭	62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변화협약대책반 팀장
김호철	49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원장
문병위	56	(주)한국수력원자력 R&D 팀장
민만기	66	녹색교통 사무처장
박영우	5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국제기구팀장
박인례	54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박종식	48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소장
박준우	49	상명대학교경제학과 교수
성준용	47	LG환경·안전연구원 원장
박영일		과학기술부 연구개발국장
유재성	53	(주)두산에코비즈넷 대표이사
윤서성	4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윤성규	56	환경부 환경정책국장
이병욱	56	포스코경영연구소 환경경영연구센터장
이인렬	54	전국경제인 연합회 산업담당 상무
임영록	55	재정경제부 정책심의국 심의관
황두열	43	SK(주) 대표이사 부회장

■ 환경생태 분과위원회 (총 21명)

성명	출생년도	소속 및 직위
강교식	52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김귀곤	44	서울대 조경학과 교수
김남춘	57	단국대학교 생명자원과학부 교수
김미화	60	쓰레기문제해결위한시민운동 협의회 사무처장
김병완	61	광주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김영화	50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장
김정훈	62	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문국현	49	(주)유한킴벌리 대표이사
박병상	57	인천 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
박재일	38	(사)한살림 회장
성준용	47	LG환경·안전연구원 원장
여진구	63	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처장
이규방	50	국토연구원 원장
이기명	63	한국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 사무처장
이창우	5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장순천	57	(주)동아기술공사 전무이사
제종길	55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원호	50	외교통상부 환경과학 심의관
지영선	49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최승담	55	한양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한승호	54	한화환경연구소 소장

■ 사회 분과위원회 (총 19명)

성명	출생년도	소속 및 직위
곽창욱	39	변호사
권 율	64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연구위원
김미혜	56	이화여자대 사회복지학 교수
김정렬	60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남승자	43	전) KBS 해설위원
박승주	52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 국장
박영숙	32	한국환경·사회 정책연구소 이사장
박은경	46	환경과문화연구소 소장
설동훈	64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신철영	50	경실련 사무총장
신혜수	50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대표
안주엽	60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양길승	51	녹색병원 원장
이근석	57	안산YMCA 사무총장
이용홍	54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이정수	62	녹색미래 사무총장
정봉협	58	여성부 기획관리심의관
조옥라	50	서강대학교 사회학 교수
차명제	51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 제3기 전문위원회 >

□ 위 원 : 총 100명

□ 임 기 : 2004. 2. 21 ~ 2005. 12. 14

■ 사회·환경·건강 전문위원회 (총 20명)

성 명	출생년도	소속 및 직위
이영자	49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허상수	55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교수
강상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구환경센터장
고형림		(주)효성화학연구소 책임연구원
권영근		(사)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권호장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부교수
김미화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사무처장
김자혜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사무총장
정희석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김택천	55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운영위원장
박하정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문태훈	57	중앙대학교 산업과학대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교수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여진구		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처장
오정례		(사)정부정책연구원 원장
이태훈	50	가천길의료재단 상임이사
이필원	37	(사)한국노사문제연구원 이사장
전형준	61	울산학원 원장
정광화	4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진공기술센터부장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 (총 20명)

성명	출생년도	소속 및 직위
김승묵	44	변호사
박재묵	50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강명구		서울대 사회과학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강영진		미 조지메이슨대 분쟁해결연구원 전문중재인
김 경		Accord21 상임고문
김종현		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김희은	55	(사)여성사회교육원 원장
박수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소장
신창현	53	환경분쟁연구소 소장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임승남 (현고)	51	대한불교조계종 기획실장
전성환	66	아산 YMCA 사무총장
정강자	53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정용하	55	부산대학교 정외과 교수
정진승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조상행		순천YMCA(부설) 평화교육훈련센터소장
최정철	61	(주)신화컨설팅 대표
한영주	50	전북발전연구원 원장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교수

■ 물·국토·자연 전문위원회 (총 20명)

성명	출생년도	소속 및 직위
지영선	49	한겨레신문 콘텐츠 평가위원
정갑식	57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고기원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 수자원연구실장
김경희	51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제남	63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류영창		환경부 상하수도 국장
서원명	48	경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시스템공학부 교수
성익환	5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염태영	60	수원환경운동센터 공동대표
오성규	67	환경정의 사무처장
윤석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부장
이지훈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이창수		경원대학교 공과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전병성		건교부 수자원 국장
조중래	52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진장원		충주대 건설도시공학과 교수
최명철		(주)단우건축사무소 대표이사
최연홍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환경정책학과 교수
최지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에너지·산업 전문위원회 (총 20명)

성명	출생년도	소속 및 직위
이진	42	공주영상정보대학장
신성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문위원
강광규	5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구환경연구센터 팀장
김신종		환경부 대기보전국장
김창섭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김태호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사무처장
김호철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감사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박종식	48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소장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오대균	63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변화대책단 팀장
유종반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윤성규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심의관
윤순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필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정대연	47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승호		한화환경연구소 소장
허은녕	64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홍현중		KBCSD 실무위원장

■ 대외협력·교육 전문위원회 (총 20명)

성명	출생년도	소속 및 직위
이삼열	41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원장
조명래		단국대 사회과학부 도시및지역계획학 교수
김경량	53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김광철		환경을생각하는전국교사모임 회장
남상민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문국현	49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박영우		환경부 국제협력관
박은경	46	환경과문화연구소 소장
박효숙	51	(사)광주여성의전화 상임이사
신혜수	5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유문종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사무처장
유영국		교육부 학교정책심의관
유지나	60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 교수
이강실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영호 (진월)	50	한국종교연합 선도기구 대표
이정수	61	녹색미래 사무총장
이창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조 현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한경호	52	21세기농촌선교회 회장

< 제4기 전문위원회 >

□ 전문위원 : 총 107명

□ 임 기 : 2006. 5. 2 ~ 2008. 4. 16.

■ 국토자연 전문위원회 (총 27명)

성명	출생년도	소속 및 직위
강 헌	54	수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경철	60	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김타균	68	국회 홍미영의원실 보좌관
김태선	68	임채정 국회의장 민정비서관
김혜정	64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홍상	6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문태훈	57	중앙대학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교수
배기목	62	대진대학교 교수
변병설	64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변창흠	65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서순탁	59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양근율	5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윤석영	5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부장
윤지선	46	인하대학교 환경토목공학부 교수
이경기	62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승일	60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용우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환경연구실 연구위원
이용희	62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법학부 교수
이원희	52	농촌공사 대단사업처장
이지훈	61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이창수	59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이창희	6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전재경	55	법제연구원 사회문화법제연구팀장
정갑식	57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정희성	5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위원장
조중래	52	명지대 교수
최동진	62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 지속가능발전이행 전문위원회 (총 28명)

성명	출생년도	소속 및 직위
권 율	6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광식	55	21세기대안정책포럼 대표
김덕준	60	호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미경	61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
김병완	61	광주대 법정학부 교수
김석중	56	전경련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제남	63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택천	55	지방의제 21 전국협의회 운영위원장
김형진	61	변호사
남미정	57	과천푸른내일을여는여성들 대표
박종남	55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
박태윤	59	연세대 교육대학원 교수
박평수	60	고양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박형서	51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성정희	64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유길용 (정길)	61	에코붓다 대표
유문종	63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사무처장
유미호	66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정책실장
이선경	64	청주교대 교수
이정수	61	녹색미래 사무총장
이창우	5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형용	64	민간협력포럼 공동대표
정규호	66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정선순	58	(전)서울시의회 의원
조홍섭	57	한겨레신문 편집부국장
차명제	53	성공회대(NGO)
최석진	44	자연보전협회 국제환경연구소장
최진선 (문호)	59	원불교 교무, 서울유스호스텔 대표

■ 에너지산업 전문위원회 (총 29명)

성명	출생년도	소속 및 직위
강광규	5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강만옥	5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강승진	57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강정민	65	평화협력원 연구위원
김미화	60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처장
김수덕	62	아주대학교 교수
김종대	58	충북대학교 교수
김창섭	62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남기석	52	전북대학교 교수
민동기		건국대학교 교수
민만기	66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박영우	54	지속가능경영원장(대한상의부설)
박진섭	64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석광훈	70	녹색연합 정책위원
신철호	63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오대균	63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등록소장
이병욱	56	세종대학교 교수
이상훈	70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변화처장
이영희	61	가톨릭대학교
이은영	69	소비자시민모임 자원실장
이재성	53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이철호	54	공주대학교 교수
정한경	54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근형	55	(주) 동호 부사장
조성경	70	명지대학교 교수
최승국	65	녹색연합 사무처장
허은녕	64	서울대학교 교수
황기연	58	홍익대학교
황주호	56	경희대학교 교수

■ 사회건강 전문위원회 (총 23명)

성 명	출생년도	소속 및 직위
강성구	64	호서대 화학공학과 교수
구자인	66	진안군청 정책팀장
권호장	63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
김미숙	5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가족연구팀장
김양희	55	한국여성개발원 평등정책연구실장
김자혜	51	소비자 시민모임 사무총장
김재현	65	건국대 환경과학과 교수
김창길	6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환경연구팀장
박명숙	69	환경정의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
신용승	6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안병옥	63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여진구	63	생태보전 시민모임 사무처장
오성규	67	환경정의 사무처장
오창현	67	꽃자왈 사람들 기획팀장
이미영	67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이필원	37	(사)한국노사문제연구원 이사장
임경수	66	풀무학교 환경농업과 교수
임종한	61	인하대 의과대학 의학2과 부교수
전성환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최진석	6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하은희	62	이화여대 교수
허상수	55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교수
홍종호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기획운영실 직원 명단

□ 청와대(총 2명)

성명	원소속부처	직급	담당팀(업무)	근무기간
염태영	청와대	비서관	기획운영실장	05. 1.29~06. 2.28
김은경	청와대	비서관	기획운영실장	06. 3.21~08. 2.29

□ 환경부(총 28명)

성명	원소속부처	직급	담당팀(업무)	근무기간
문정호	환경부	국장	기획조정실장	1기
홍준석	환경부	국장	기획조정실장	1~2기
정연만	환경부	국장	기획조정실장	2~3기
남재우	환경부	국장	기획운영실장	04. 1.31 ~ 05. 1.30
윤승준	환경부	국장	국정과제국장	05. 4.13 ~ 06. 2.21
김종천	환경부	국장	국정과제국장	06. 3. 2 ~ 07. 3.16
백규석	환경부	국장	국정과제국장	07. 3.19 ~ 08. 2.22
신충식	환경부	서기관	기획총괄팀	1기
고형필	환경부	서기관	기획총괄팀	1-2기
방의석	환경부	서기관	기획총괄팀	2기
백운석	환경부	서기관	기획총괄팀	03. 9. ~ 04. 7
유제철	환경부	서기관	사회환경팀	04. 2. ~ 05. 2.
윤명현	환경부	서기관	기획총괄팀	04. 6.30 ~ 05. 6.29
이규만	환경부	서기관	사회환경팀	05. 2.17 ~ 06. 3.31
박미자	환경부	서기관	기획홍보팀	05. 7.18 ~ 07. 3.30
김필홍	환경부	서기관	사회건강팀	06. 4. 3 ~ '07. 8.23
정은해	환경부	서기관	기획홍보팀	07. 3.31 ~ 08. 3.30
윤웅로	환경부	서기관	사회건강팀	07.10.29 ~ 08.10.28
이동건	환경부	사무관	기획총괄팀	04.10.22 ~ 05. 4.21
안연섭	환경부	사무관	기획총괄팀	05. 4.13 ~ 06. 4.12
오영준	환경부	사무관	기획홍보팀	06. 5.19 ~ 07. 5.18
김학봉	환경부	사무관	기획홍보팀	07. 5.21 ~ 08. 5.20
권영홍	환경부	행정주사	기획총괄팀	1기
구자관	환경부	행정주사	기획총괄팀	2기
문정호	환경부	행정주사	기획총괄팀	03. 3. ~ 04. 3.
김규원	환경부	행정주사	기획총괄팀	04. 3. 4 ~ 05. 3. 3
이양재	환경부	행정주사	기획총괄팀	05. 3.14 ~ 06. 3.13
전승찬	환경부	행정주사	기획홍보팀	06. 4. 3 ~ 08. 4. 2

□ 타 부처 (총 36명)

○ 재정경제부(1명), 과학기술부(1명), 외교통상부 (3명), 행정자치부(6명), 문화관광부(2명), 농림부(3명), 산업자원부(8명), 건설교통부(5명), 해양수산부(7명)

성명	원소속부처	직급	담당팀(업무)	근무기간
이성한	재정경제부	서기관	지속발전팀	1기
이재영	과학기술부	서기관	지속발전팀	1기
장명수	외교통상부	서기관	국제환경팀	1기
유기연	외교통상부	서기관	경제산업팀	2기
신형은	외교통상부	서기관	대외협력교육팀	04. 1. ~ 04. 9.
최월화	행정자치부	서기관	기획총괄팀	1기
정상봉	행정자치부	사무관	기획총괄팀	2기
서철모	행정자치부	서기관	갈등관리정책팀	03. 9. ~ 04.11.
김경원	행정자치부	서기관	갈등관리정책팀	04.11.14 ~ 06.11.13
문연호	행정자치부	서기관	갈등관리정책팀	06.11.10 ~ 07.11.9
이상성	행정자치부	서기관	갈등관리정책팀	07.11.12 ~ 08.1.15
최규종	문화관광부	서기관	지속발전팀	1기
김기국	문화관광부	사무관	경제산업팀	2기
이상혁	농림부	사무관	지속발전팀	1기
김철	농림부	사무관	사회환경팀	02. 9. ~ 04. 9.
권진욱	농림부	연구관	사회환경팀	04. 9.20 ~ 05. 3.
유연백	산업자원부	서기관	국제환경팀	1기
채희봉	산업자원부	서기관	경제산업팀	2기
박정욱	산업자원부	서기관	에너지산업팀	03.10. ~ 04. 9.
강혁기	산업자원부	서기관	에너지산업팀	05. 2.17 ~ '06. 1.31
나기용	산업자원부	서기관	에너지산업팀	05. 7.18 ~ '06. 1.18
박병찬	산업자원부	서기관	에너지산업팀	06. 1. 9 ~ 06.10.19
안병화	산업자원부	서기관	에너지·산업팀	06.10.19 ~ 07.10.18
이두면	산업자원부	서기관	에너지·산업팀	07.11.19 ~ 08.11.18
류윤호	건설교통부	국장	지속발전팀	1기
류영창	건설교통부	국장	국토환경팀	2기
백승근	건설교통부	서기관	교통T/F팀장	03. 9.30 ~ 05. 9.29
박하준	건설교통부	서기관	국토팀	05. 5.10 ~ 07. 2. 6
전형필	건설교통부	서기관	국토팀	07. 2. 7 ~ 08. 2. 6
조신희	해양수산부	사무관	국제환경팀	1기
천재홍	해양수산부	사무관	국토환경팀	2기
김남웅	해양수산부	사무관	갈등관리정책팀	03.12. ~ 04.12.
길인환	해양수산부	사무관	기획홍보팀	05.10.26 ~ 07. 2.23
한기준	해양수산부	서기관	물국토자연팀	04. 6.28 ~ 06. 3. 1
우동식	해양수산부	서기관	물국토자연팀	06. 3. 2 ~ 07. 3. 1
심재현	해양수산부	서기관	물자연팀	07. 4. 2 ~ 08. 2.22

□ 연구기관(총 4명)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성명	원소속부처	직급	담당팀(업무)	근무기간
구도완	KEI	연구위원	수석연구위원	03.10. ~ 04.10.
최진석	KEI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04.10.22 ~ 05.10.21
박창석	KEI	책임연구원	연구위원	06. 4. 3 ~ 07. 7.31
노태호	KEI	연구위원	연구위원	07. 8.16 ~ 08. 2. 5

□ 공사·공단(총 15명)

○ 한국수자원공사(4명), 한국환경자원공사(4명), 한국철도공사(1명), 한국철도시설공단(2명), 에너지관리공단(4명)

성명	원소속부처	직급	담당팀(업무)	근무기간
박두호	한국수자원공사	연구원	물국토자연팀	04. 2. ~ 05. 1.
유용권	한국수자원공사	과장	물국토자연팀	05. 2.28 ~ 06. 2. 27
김지현	한국수자원공사	과장	물국토자연팀	06. 2. 6 ~ 07. 1.14
남윤욱	한국수자원공사	과장	국토팀	07. 1.15 ~ 09. 1.14
박현규	한국환경자원공사	과장	물국토자연팀	05. 1.20 ~ 06. 1.19
서창혁	한국환경자원공사	과장	물국토자연팀	06. 1.20 ~ 07. 3.27
유영찬	한국환경자원공사	과장	갈등관리정책팀	07. 3.28 ~ 08. 1.19
정성원	한국환경자원공사	과장	갈등관리정책팀	08. 1.20 ~ 09. 1.19
김기춘	한국철도공사	부장	대외협력팀	05. 4.18 ~ 06. 4.17
정천희	한국철도시설공단	차장	사회환경팀	05. 4. 7 ~ 06. 4. 6
김창희	한국철도시설공단	차장	사회건강팀	06. 4. 8 ~ 08. 3.14
우재학	에너지관리공단	과장	에너지산업팀	04. 2. ~ 05. 2.
김상호	에너지관리공단	과장	에너지산업팀	05. 3. 7 ~ 06. 3. 6
이한우	에너지관리공단	과장	에너지산업팀	06. 3. 8 ~ 07. 3. 7
김규식	에너지관리공단	과장	에너지·산업팀	07. 3. 8 ~ 08. 3. 7

□ 민간계약직(총 25명)

○ 가급(9명), 나급(4명), 다급(3명), 라급(3명), 간사(4명), 정책위원(2명)

성명	원소속부처	직급	담당팀(업무)	근무기간
유성	전문계약직	가급	에너지산업팀	02. 6. ~ 04. 2.
유성	지속위	간사	민간간사	01. 3. 2 ~ 02. 6.
차명제	전문계약직	가급	국제·지역분과, 국토	02. 6. 1 ~ 03.12.31
이상헌	전문계약직	가급	에너지산업팀	04. 5. 6 ~ 06. 2.16
고재경	전문계약직	가급	대외협력교육	04. 9.13 ~ 06. 4.31
김종환	전문계약직	가급	지속가능발전이행1팀	06. 4. 5 ~ 07.12.31
김종환	전문계약직	가급	지속가능발전이행팀	08. 1.18 ~
김요은	전문계약직	가급	지속가능발전이행2팀	06.12. 1 ~ 07.12.31
황상규	전문계약직	가급	지속가능발전이행팀	06. 4.17 ~ 06.10.31
권기태	전문계약직	가급	지방지원팀	08. 1.18 ~
권기태	전문계약직	나급	지속가능발전이행팀	06. 4. 5 ~ 07.12.31
권기태	전문계약직	다급	갈등관리정책팀	02.12.18 ~ 06. 4. 4
권기태	지속위	간사	민간간사(물, 국토)	01. 3. 2 ~ 02.12.17
엄두용	전문계약직	나급	갈등관리정책팀	04. 1.13 ~ 05.12.31
박태순	전문계약직	나급	갈등관리정책팀	05. 1.21 ~ 06. 7.31
김종연	전문계약직	나급	물국토자연팀	06. 5.26 ~ 07.10.04
박경석	전문계약직	다급	지속가능발전이행팀	06. 4.17 ~ 07. 9. 6
인은숙	전문계약직	다급	지방지원팀	08. 1.18 ~
인은숙	전문계약직	라급	지방지원팀	06. 4. 5 ~ 07.12.31
민수현	전문계약직	라급	홍보협력.정책개발팀	2기
김현정	전문계약직	라급	사회환경팀	04. 1.13 ~ 05.12.31
염형철	환경연합	간사	민간간사	1기
김제남	녹색연합	간사	민간간사	1기
김타균		정책위원	정책위원	05. 3. 2 ~ 06. 2.28
제진수		정책위원	정책위원	05. 3. 2 ~ 06. 2.28

□ 비정규직(총 8명)

성명	원소속부처	직급	담당팀(업무)	근무기간
공지아	계약직	사무원	지방지원팀	01. 2. ~ 08.12.31
최선애	계약직	사무원	기획총괄팀	1기
문영숙	계약직	사무원	기획홍보팀	03. 3. ~ 08.12.31
이선길	계약직	운전원	기획홍보팀	03. 11. ~ 08.12.31
김수영	계약직	사무원	기획총괄팀	03. 11. ~ 05. 2.28
정혜영	계약직	사무원	기획홍보팀	05. 3. 2 ~ 08.12.31
김경아	계약직	사무원	기획홍보팀	07. 8. 6 ~ 08.12.31
최선미	계약직	영어자문요원	지속가능발전이행2팀	06.10.26 ~ 07.12.23

※ 회의록 책자로 만든 목록으로 연도별 실제 회의개최 횟수는 다를 수 있음

□ 2004년

회 의 명	횟 수
국정과제회의 대통령 보고	2회
본위원회	4회
운영위원회	3회
본위원회 간사·총무단	3회
사회·환경·건강 전문위원회	40회
전문위원회	9
지속가능발전 기본구상연구팀	5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연구소위원회	8
부처내 지속가능발전연구팀 소위원회	7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 연구소위원회	7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현장 적용가능성 연구소위원회	4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	47회
전문위원회	4
2003 갈등해결정책연구팀	5
갈등정책 국정과제 보고슬라이드 준비팀	4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준비팀	11
법·제도개선팀	12
갈등관리 법제정팀	9
갈등관리 교육훈련연구팀	2
갈등관리프로세스팀	80회
한탄강댐 갈등관리준비단	17
한탄강댐 갈등조정 준비소위원회	24
한탄강댐 문제 조정을 위한 관련당사자 회의	21
갈등관리워크샵(VIP 참석) 준비소위원회	2
갈등관리포럼 준비 및 개최	3
갈등관리지원센터설립안 연구용역 중간보고	1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 전문가 자문회의	6
한탄강댐조정소위원회 조정결정관련 회의	6

물·국토·자연 전문위원회	81회
전문위원회	14
물관리정책연구팀	26
교통정책연구팀	4
국토정책연구팀	4
연안 및 해양정책연구팀	16
골프장 건설규제개선(안) 자문보고서 작성팀	9
임진강유역 홍수피해방지를 위한 공동협의회 운영소위원회	8
에너지·산업 전문위원회	96회
전문위원회	8
2003년 에너지정책연구팀	5
2003 에너지·산업팀	4
2020 에너지예측·분석팀	19
에너지정책·공론화팀	8
기후변화대응정책연구팀	14
장기전원구성정책연구팀	12
에너지수요관리정책연구팀	9
에너지정책공론화연구팀	11
에너지기본법 검토소위원회	3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검토소위원회	3
대외협력·교육 전문위원회	38회
전문위원회	9
대외협력·교육 전문위원회 국제협력소위원회	2
대외협력·교육 전문위원회 교육소위원회	1
지방의제21팀	16
국제협력소위원회 및 교육소위원회	10
2004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394회

□ 2005년

회 의 명	횟 수
본위원회	3회
운영위원회	2회
사회·환경·건강 전문위원회	28회
전문위원회	11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연구소위원회	8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현장 적용가능성연구소위원회	9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공공개발관련 갈등예방을 위한 법류정비방안연구팀 공공사업관련 갈등관리 법제개선연구팀 공공갈등예방을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 포럼 준비소위원회 공공관리 교재개발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워크샵 운영위원회 공공관리 교재개발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워크샵 갈등영향분석팀 공공관리 교재개발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워크샵 의사소통팀 공공관리 교재개발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워크샵 조정연구팀 공공관리 교재개발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워크샵 참여적 의사결정팀 공공관리 교재개발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워크샵 협상연구팀 한탄강담갈등조정 내부평가 T/F팀	69회 8 3 9 4 4 5 8 8 7 6 7
물·국토·자연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국토정책연구팀 교통정책연구팀 국토이용·보전 세분화 정책자문연구팀 국정과제보고 준비회의 해양정책연구보고서 작성팀 임진강유역홍수피해방지를 위한 공동협의회 운영소위원회	123회 9 16 23 11 21 20 23
에너지·산업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기후변화대응정책연구팀 장기전원구성정책연구팀 에너지정책공론화방안연구팀(방폐장정책) 산업정책연구팀 지속가능발전 이론정립 포럼	37회 3 9 11 6 3 5
대외협력·교육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지방의제21연구팀 국제협력소위원회, 교육소위원회	27회 8 9 10
2005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289회

□ 2006년

회 의 명	횟 수
본위원회	3회
본위원 및 운영위원 간담회	1회
운영위원회	4회
자문회의	2회
기획홍보팀	2회
국민의식조사 자문회의	2
지속가능발전 이행 전문위원회	35회
전문위원회	1
지속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 및 평가시스템 구축전문가 자문회의	1
DMZ 생태계 보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1
국가지속가능발전이행	3
국가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 평가지표	3
국가지속가능발전교육전문가	1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작성 T/F	7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1
지속가능발전기반강화 이행계획	1
지속가능발전추진체계	2
환경교육발전계획 사전검토 T/F	3
지방지속가능발전로드맵 보고서 작성 T/F	7
아태지속가능발전전략 UN회의	4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	13회
주요국책사업 갈등관리방안연구팀	6
지방자치단체 소지역 갈등관리 워크샵 준비팀	7
에너지·산업 전문위원회	55회
전문위원회	1
장기전원구성 정책연구팀	8
사용후핵연료 처분문제에 관한 공론화 프로세스개발연구팀	15
통합형 에너지수요관리정책 추진방안연구팀	6
자원순환형 산업정책연구팀	3
에너지절약형 국토관리 체제 구축방안	7
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팀	6
수요관리정책연구팀	7
에너지가격체계의 적정화방안연구팀	1
자원순환형 산업정책보고서 작성TF팀	1

물·국토·자연 전문위원회	52회
전문위원회	3
살고 싶은 지역사회만들기 자문회의	1
터널공사 평가체계 개선연구팀	12
하천관리 및 복원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연구팀	11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연구팀	9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안) 검토소위원회	4
살고 싶은 지역사회만들기 협의회	1
지속가능한 하천 및 하구 관리방안	6
주민참여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및 적용방안 연구팀	5
사회·건강 전문위원회	31회
전문위원회	1
어린이 건강과 지속가능한 사회정책연구팀	8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사회건강 분야) 검토소위원회	1
어린이 건강과 지속가능한 사회정책연구팀 검토소위원회	1
어린이 건강과 지속가능한 사회정책연구팀(사회건강분야 신규과제 추진방안) 협의회	1
세계화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3
지속가능한 소비촉진 방안	9
어린이 건강 정책연구팀	4
유해화학물질 통합관리 방안	3
2006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198회

□ 2007년

회 의 명	횟 수
전체회의	1회
본위원회	4회
운영위원회	3회
자문회의	1회
기획홍보팀	2회
지속가능발전 인식조사 결과보고서 작성회의	1
지속가능한 지역레저관광 자문회의	1
갈등관리정책팀	5회
갈등조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	3
심야전기제도 시민배심원단	2

지속가능발전 이행 전문위원회	38회
전문위원회	5
지속가능 발전기본법 제정 추진 부처협의	1
지속가능성 지표적용평가 과제 자문회의	7
지속가능발전교육 T/F팀	2
아·태지역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UN회의	1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참가결과	1
지방지속가능발전 진단 및 기본전략 작성지침 작성연구팀	1
삶의 질과 지속가능발전 인식조사 결과보고서 작성회의	5
지방지속가능발전 진단과 컨설팅 및 시·도 공무원 역량강화 실시방안연구 중간보고회	2
지속가능한 국가전략과 사회협약 포럼	1
차기정부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1
시·도 정책기획관 회의	1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회의	5
지방지속가능발전지원단	3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표준안 제정 자문회의	1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대비 시·도 공무원 워크샵	1
에너지·산업 전문위원회	32회
전문위원회	3
기후변화대응정책 전문가 회의	1
사용후핵연료 처분문제 공론화 프로세스개발연구팀	5
에너지가격체계 적정화방안연구팀	5
자원순환형 산업정책보고서 작성 T/F팀	7
수요관리정책연구팀	1
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팀	8
기후변화 대응관계 국장회의	1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안) 전문가 회의	1
물·국토·자연 전문위원회	32회
전문위원회	3
지속가능한 하천 및 하구 관리방안 T/F팀	1
대형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갈등 해소방안연구팀 자문회의	2
보호지역 관리체계관리 정책개발 회의	6
자원절약형 국토관리체계 구축방안연구팀	5
국토관리측면에서 본 국가자원절감방안연구팀	2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 및 운영방안	5
국가 중·장기계획 검토 자문회의	5
주택종합수정계획(안) 검토팀	1
국가기간교통망계획수정(안) 검토팀 자문회의	1
제4기 위원회 성과 및 발전방향 워크샵 개최를 위한 전문위 간사간담회	1
사회·건강 전문위원회	12회
전문위원회	1
어린이 건강 정책연구	4
국가차원 화학물질 효율관리방안	7
2007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130회

회의개최 현황

○ 2002~2007 연도별 회의개최 회수 및 편성 예산

연도	회의개최 회수	편성예산
2002	○ 113회 - 본회의 3, 운영위 9, 전문위 46, 연구소위 등 55	561백만원
2003	○ 148회 - 본회의 1, 운영위 7, 전문위 20, 연구소위 등 120	466백만원
2004	○ 402회 - 본회의 4, 운영위 4, 전문위 36, 연구소위 등 358	1,300백만원
2005	○ 262회 - 본회의 4, 운영위 2, 전문위 40, 연구소위 등 216	1,600백만원
2006	○ 321회 - 본회의 3, 운영위 4, 갈등위 2, 전문위 19, 연구소위 등 293	1,565백만원
2007	○ 144회 - 본회의 4, 운영위 3, 갈등위 3, 전문위 12, 연구소위 등 122	1,604백만원

2000~2001년도 회의개최 현황

1. 본회의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00. 9. 26 (제1차 회의)	본회의실	당연직위원 : 김명자 환경부장관 등 12명 위촉위원 : 강문규 위원장 등 17명	○위원회운영세칙 ○분과위원회 설치 및 검토과제 선정 ○2000년도 운영세칙 확정
00. 12. 26 (제2차 회의)	본회의실	당연직위원 : 통상교 섭본부장 등 10명 위촉위원 : 강문규 위원장 등 16명	○2000년도 분과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확정
01. 3. 20 (제1차 회의)	본회의실	당연직위원 : 김명자 환경부장관 등 11명 위촉위원 : 강문규 위원장 등 13명	<회의안건> ○2002년 세계환경정상회의 대책추진 기본 계획(안) ○국토이용체계 개편검토안 ○수자원장기종합계획(안) 검토안 ○경의선건설을 중심으로한 비무장지대 보전방안 ○지속가능한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 방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조세제도 개편방안 ○새만금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안건>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의제21 국가실천계획 보완 가이드라인 작성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01. 10. 5 (제2차 회의)	본회의실	당연직위원 : 김명자 환경부장관 등 10명 위촉위원 : 강문규 위원장 등 10명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발전적 개선방안(안)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분야별 작업지침(안) ○ 2002 세계지속발전정상회의(WSSD) 관련 국제동향 및 향후 추진계획(안) ○ 「의제21 국가실천계획」에 대한 이행평가 및 보완방향에 관한 검토보고서

2. 운영협의회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00. 10. 4 (제1차 회의)	코리아나 회의실	위원장, 6개분과위원장, 청와대 환경비서관, 기획조정실장 등 9명	○ 위원회 홍보계획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미나 개최계획(안) ○ 2001년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연구용역 과제 ○ 위원회 운영방안
00. 10. 9 (제2차 회의)	세실 레스토랑	위원장, 6개분과위원장, 청와대 환경비서관, 기획조정실장 등 9명	○ 제1차 운영협의회 결과 및 그후 추진상황 ○ 분과위원 선정 ○ 민간간사요원 선정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워크숍 개최계획
00. 11. 3 (제3차 회의)	프레스 센터	위원장, 6개분과위원 장, 청와대 환경비서 관, 기획조정실장 등 9명	○ 분과위 검토과제 선정 ○ 분과위원회 운영방안 ○ 분과위원의 수 ○ 분과위원회 민간간사 선임 ○ 행정사항
00. 11. 30 (제4차 회의)	하림각	위원장, 4개분과위원 장, 청와대 환경비서 관, 기획조정실장 등 7명	○ 위원회 발전방안에 관한 워크숍 및 위 원 의견조사 결과검토 ○ 운영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 본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 일자 선정 ○ 차기 운영협의회 토의사항에 대한 검토
00. 12. 20 (제5차 회의)	프레스 센터	위원장, 5개분과위원 장, 청와대 환경비서 관, 기획조정실장, 김 제남 민간팀장 등 9 명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1년도 운영계획 (안) ○ 2000년도 분과위원회 운영상황(보고)
01. 1. 5 (제1차 회의)	본회의실	위원장, 6개분과위원 장, 청와대 환경비서 관, 기획조정실장, 5 개 분과총무 등 14명	○ 분과위원 교체에 관한 건 ○ 위원회 실무워크숍 개최계획에 관한 건 ○ 민간간사 추가선정에 관한 건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01. 2. 7 (제2차 회의)	본회의실	위원장, 6개분과위원장, 기획조정실장, 4개분과 총무 등 14명	○분과위 활동비 및 민간간사 수당예산 검토 ○총무단-기획조정실 간담회 결과보고 ○6개분과 과제검토 추진상황 점검 ○Rio+10대책반 구성에 관한 검토 ○다보스 WEF포럼 ESI 발표결과 보고
01. 3. 9 (제3차 회의)	본회의실	위원장, 3개분과위원장, 기획조정실장, 5개분과 총무 등 13명	○분과별 검토과제의 3. 20 본회의 상정 추진 상황 점검 ○새만금사업 검토 추진상황 ○Rio+10 대책추진 기본계획(안) 검토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수립과 「의제21 국가실천계획」 보완추진 방향에 대한 검토
01. 3. 19 (제4차 회의)	코리아나 호텔	위원장, 3개분과위원장, 6개분과 총무, 기획조정실장 등 11명	○제1차 정기회의 진행방안 및 새만금사업에 대한 대처방안 ○위원회 운영세칙 개정문제 검토 ○분과위원 교체·보완 검토 등
01. 4. 6 (제5차 회의)	본회의실	위원장, 4개분과위원장, 4개분과 총무, 기획조정실장 등 10명	○새만금 관련 후속조치 방안 검토 ○위원회 운영세칙 개정방안 검토 ○의제21 국가실천계획 평가에 관한 건 ○Rio+10 국가준비위원회 세부운영계획 ○분과위원회 과제 검토방안에 관한 건 ○기타 : 3. 20 정기회의 결과시달 등
01. 5. 23 (제6차 회의)	본회의실	위원장, 4개분과위원장, 복지노동수석, 4개분과 총무, 기획조정실장 등 11명	○새만금사업 토론회 및 평가회의 결과평가 ○Rio+10 제1차 준비회의 참석결과 보고 ○의제21 토론회 개최계획 ○기획조정시 개선방안 ○민간간사 채용 및 전문위원 위촉활용에 관한 건
01. 6. 15 (운영간담회)	위원장실	위원장, 3개분과위원장, 4개분과 총무, 기획조정실장 등 9명	○6월 위원회 정기회의는 위원회 사정상 연기방안 ○지속위 정상운영방안 ○탈퇴의사를 표명한 위원 교체방안
01. 8. 17 (제7차회의)	위원장실	위원장, 3개분과위원장, 3개분과 총무, 복지노동수석, 기획조정실장 등 9명	○PCSD 개선방안중 민간간사 계약직검토 ○위원사퇴 위원 처리관련 ○지속위 발족1주년 회의관련
01. 9. 10 (제8차 회의)	코리아나 호텔	위원장, 2개분과위원장, 4개분과 총무, 기획조정실장 등 8명	○당연직 위원에 외교통상부장관 추가 ○사무국 개편방안에 민간협력팀 추가 ○2001년도 제2차 본회의 안건 논의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01. 10. 17 (제9차 회의)	본회의실	위원장, 2개분과위원장, 청와대 환경비서관, 기획조정실장 등 8명	○ 업무계획보고(안)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촉위원 임명방안 ○ 제2기 분과위원회 위원구성(안)
01. 10. 23 (운영간담회)	프라자 호텔4층	위원장, 5개분과위원 장, 기획조정실장 등 10명	○ 제2기 분과위원회 위원구성(안) ○ 청와대 업무계획보고(안) 검토
01. 12. 21 (제10차회의)	본회의실	위원장, 5개분과위원 장, 청와대 환경비서 관, 기획조정실장 등 10명	○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 제2기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수자원분과위원장 임명 및 실무위원 위촉 - 위촉위원 분과위 배분 등 위원구성 마무리 ○ 기후변화대응 기능강화를 위한 분과위 원회 개편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협약 대응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지역분과 소위원회를 개편하여 분과위 신설 또는 특위 구 성방안 검토

3. 생태·보건분과

일 시	장 소	참 석 자	주요토의 내용
00.10.23 (제1차 분과회의)	본회의실	위촉위원:최열분과위원장 등 3명 실무위원:김록호위원등 7명	○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제도화방안 등 4개 예시과제 토의 ○ 2000년, 2001년 분과위원회 검토과제 선정
00.11.14 (제2차 분과회의)	본회의실	위촉위원:최열분과위원장 등 4명 실무위원:김록호위원등 7명	○ DMZ에 대한 보전방안에 대한 6개부처 및 NGO의 보고 및 토의 ○ 경의선 철도·도로공사 검토소위구성 ○ 선정과제에 대한 검토추진방안
00.12.27 (DMZ소위 제1차회의)	위원장실	위촉위원:최열분과위원장 등 2명 실무위원:최중기위원	○ 통일대교~장단간 도로확장 및 개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설명 ○ 향후 용역관련 추진방향
01.2.23 (제1차 분과회의)	본회의실	위촉위원:최열분과위원장 등 2명 실무위원:김종원위원등 7명	○ 비무장지대 생태계보전방안(경의선 복원을 중심으로)에 대한 소위활동 결과보고 및 대통령자문보고 작성계획검토 ○ DMZ 보전관련 향후 활동계획 및 2001년도 사업추진 내용
01.3.5 (생명안전소위 제1차회의)	프레스센터	실무위원:김재옥위원등 3명	○ GMO 및 유해화학물질 관련 동향청취 ○ 소위의 검토과제 선정
01.3.14 (제2차 분과회의)	본회의실	위촉위원:최열분과위원장 등 2명 실무위원:정홍식위원등 6명	○ 비무장지대 보전방안 (경의선 건설을 중심으로) 자문안 검토 ○ 생명안전대책소위 위원회 구성 및 향후 추진방안 논의 ○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향후 추진방향 보고 및 토의

일 시	장 소	참 석 자	주요토의 내용
01.4.9 (제3차 분과회의)	본회의실	위촉위원:최열분과위원장 등 4명 실무위원:김상희위원등 8명	○ 의제21 국가실천계획 검토, 소위구성 ○ GMO 관련 농림부등 3개부처 업무보고
01.4.27 (의제21소위 제1차회의)	분과회의실	실무위원:최중기위원등 6명	○ 의제21 국가실천계획검토 분담 -검토형식과 방향, 부처보고 일정확정
01.5.16 (제4차 분과회의)	본회의실	위촉위원:최열분과위원장 실무위원:김재옥위원등 10명	○ 「생명안전대책소위원회」 활동계획논의 ○ LMO 관련 과기부등 3개 부처 업무보고 ○ 비무장지대 생태조사 일정논의
01.5.24 (생명안전소위 제2차회의)	서울교육 문화회관	실무위원:김재옥위원등 3명 소위원:박병상박사등 3명	○ 생명안전관련 자문의 범위와 방향검토, 선정 ○ 자문형식 및 4개분야 검토의견 작성논의
01.6.7 (생명안전소위 제3차회의)	프레스센터	실무위원:김재옥위원 소위원:박병상박사등 4명	○ LMO관련 농림부등 2개부처보고 및 토의 ○ 각부처의 LMO관련업무의 종합논의등 계획검토
01.8.29 (분과 간담회)	프레스센터	김귀곤 위원장 등 5명	○ 분과위원회의의 정상화 ○ 9월 회의 상정안건 등
01. 12. 28 (제5차분과 회의)	본회의실	위촉위원:김귀곤분과위 원장 등 2명 실무위원:이명우위원 등 8명	○ 위원회 활동 소개 및 상견례 ○ 2002년도 업무계획(안) 검토 ○ 소위원회 구성(안) 검토

4. 산업과환경분과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00. 10. 20 (제1차 분과회의)	본회의실	10명	○ 위원별은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될수 있는 1~2개 과제를 선정하여 차기회의시 제출하여 금년에 논의할 우선과제를 선정하기로 함
00. 11. 8 (제2차 분과회의)	본회의실	12명	○ 중·장기과제와 단기과제로 구분하여 선정 - 중·장기과제 :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 단기과제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 ○ 차기회의시 관련부처 및 기관에서 각 20분간 브리핑 후 토론
00. 11. 22 (제3차 분과회의)	본회의실	12명	○ 분과위 2차에서 토론된 과제를 확정 ○ 중·장기과제와 단기과제를 수행 위한 2개 소위원회 구성
00. 12. 7 (제1차 소위)	분과회의실	6명	○ 전문위원 선임 및 과제범위 토의
00. 12. 21 (제2차 소위)	분과회의실	6명	○ 환경관련 조세제도의 실태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 ○ 친환경적 세제의 방향과 실현방안 토의
01. 2. 2 (제1차 소위)	분과회의실	6명	○ 환경조세의 개편 및 대통령 자문방안 발제 ○ 환경조세의 중·단기 개편방안 논의
01. 2. 22 (제1차분과회의)	본회의실	13명	○ 경제적 유인제도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 초안 검토
01. 3. 8 (제1차 소위)	포스코경영 연구소	6명	○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전략 의제과제 ○ 산업발전전략은 산자부와연계하여
01. 3. 12 (제2차분과회의)	본회의실	12명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 보고서 분과위 최종검토
01. 4. 12 (제3차 분과회의)	본회의실	10명	○ 제5차 운영협의회 결과보고 ○ 의제21 검토소위원회 구성 ○ 지속가능산업발전전략 소위원회 활동보고
01. 4. 28 (제1차 의제21소위)	포스코경영 연구소	5명	○ 국가의제21 역할분담 ○ 소위 활동계획 수립
01. 5. 17 (제2차 의제2차소위)	포스코경영 연구소	5명	○ 위원회별 작성한 원고 검토 ○ 원고작성형식 ○ 일정 및 토론회 발표자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01. 5. 21 (제4차 분과회의)	본회의실	10명	○ 국가의제21 검토소위 활동결과 보고 및 토론 ○ 신임총무 선임
01. 6. 15 (제5차 분과회의)	본회의실	9명	○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전략 (덴마크사례 벤치마킹) 발표
01. 8. 29 (제6차 분과회의)	강남소래기	7명	○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전략 중간보고
01. 9. 13 (제7차 분과회의)	본회의실	11명	○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전략토의 ○ 「의제21 국가실천계획」에 대한 이행상태 및 보완방향토의 ○ 분과위원 교체(이병욱, 신현식위원)

5. WSSD 준비위원회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01. 4. 12 (제1차회의)	위 원 회 분과위원 실	12	○ WSSD관련 국제회의 일정 및 추진계획등에 관한 일람표 작성 보고 ○ 국제회의 참석자의 회의결과 및 국제동향 등 보고 제도화 ○ 실무위원회 운영지침 마련
01. 10 .30 (제2차회의)	"	12	○ 의제21평가보고서 및 국가개요서 검토 소위원회(6명)구성 ○ 아·태지역(캄보디아)회의 참가 준비 ○ WSSD설명회 개최
01. 11. 19 (제3차회의)	"	12	○ 아·태회의 지역의제 확정 ○ WSSD설명회(12.12)는 주요그룹에서 발표할수 있도록 참여폭을 확대 ○ 국가보고서 제출 - 제출기일이 지연되고있어 빈곤, 주요그룹,의 사결정부분을 보완 우선 제출 - 기타 부문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소위원회를 구성 재검토
01. 12. 12 (제4차회의)	외교안보 연 구 원	9	○ 아·태지역회의 결과보고서 취합 검토 ○ WSSD 2차회의(뉴욕)대비 유엔 동향 신속 전파 및 분석 ○ 의제21검토 소위원회 구성
02. 1. 8 (제1차회의)	위 원 회 분과위원 실	9	○ WSSD 참가대책 및 추진계획 ○ 뉴욕준비 회의안내 ○ 의제21이행관련 사무총장보고서 검토 ○ 제2기실무위원회구성 및 2002년도 업무 추진계획 검토 ○ 2002년 국제회의의 참가 논의 등
02. 1. 22 (제2차회의)	위원회 분과위원 실	14	○ 2차 뉴욕준비회의의 대책 ○ WSSD관련 유엔 권고사항 진행경과 ○ KBCSD 설립추진상황 ○ Rio+10 민간준비위원회 결성준비 상황 ○ 2차 뉴욕준비회의의 관련 우리의 기본입장 및 사무총장 보고서 평가

6. 기타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01. 9. 20 (PCSD) 의제21 국가실천 계획토론회	KEI강당	강문규 위원장 등 60여명	○ 96년 수립된 「의제21 국가실천계획」 38개장을 6개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발표 및 토론
01. 11. 23 (국회기후변화특별위원회공동) 기후변화협약 대응공개토론회	대한상공 회의소	강문규 위원장 등 120여명	○ 기후변화협약의 최근동향과전망 ○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및 연구과제가결과보고 ○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산업계와 환경관련 NGO의 견해 ○ 종합토론
01. 12. 12 (WSSD국가준비 위원회) WSSD 준비토론회	외교안보 연구원	강문규 위원장 등 50여명	○ WSSD 관련국내외 준비동향과 정책대 ○ WSSD 대응을 위한 주요그룹의 역할 및 과제

2002년도(1~8월) 회의개최 현황

□ 본위원회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 토의내용
2002. 6. 20	본회의실	위원장 등 25명	○WSSD 논의동향 및 대응계획 보고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안) 보고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지방의제21 추진제도화 방안

□ 운영협의회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 토의내용
2002. 2. 15	본회의실	위원장 등 14명	○전문계약직 채용기준 ○사전검토법제화 추진현황 ○2002 업무계획 확정 등
2002. 3. 28	본회의실	위원장 등 11명	○WSSD 준비 진행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안 검토 ○2002년 제1차 본회의 개최계획
2002. 5. 9	본회의실	위원장 등 11명	○본회의 상정안건 검토 ○본회의 개최계획
2002. 5. 25	본회의실	위원장 등 14명	○본회의 상정안건 검토 ○분과위원회 활동상황 보고
2002. 8. 14	본회의실	위원장 등 14명	○WSSD참가 계획 ○분과위원회 활동 현황 ○2002년 제2차 본회의 개최 계획

□ 분과위원회(소위원회 포함)

< 국토보전분과 >

일시	장소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2. 1. 29 (제1차 분과위)	본회의실	유재현분 과위원장 등 11명	○국토보전분과위원회 검토과제 ○국토관리 및 교통체계분야 발전전략 추진현황
2002. 3. 5 (제2차 분과위)	본회의실	유재현분 과위원장 등 13명	○지속가능한 국토전략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전략 ○육상교통수단의 환경성 비교분석
2002. 3. 23 (제1차 수도권정비 소위)	분과회의실	조명래 소위원장 등 5명	·발제안 작성 ·수도권 집중현황 파악 ·정책수단의 실태 분석 ·수도권 정책방향 토론 등
2002. 4. 11 (제3차 분과위)	본회의실	유재현 분과위원장 등 10명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전략(안)에 대한 토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관리전략(안)에 대한 토론
2002. 4. 12 (제2차 수도권정비 소위)	분과회의실	조명래 소위원장 등 5명	·발제안 작성 ·수도권 집중현황 파악 ·정책수단의 실태 분석 ·수도권 정책방향 토론 등
2002. 4. 27 (제3차 수도권정비 소위)	분과회의실	조명래 소위원장 등 5명	·발제안 작성 ·수도권 집중현황 파악 ·정책수단의 실태 분석 ·수도권 정책방향 토론 등
2002. 5. 11 (제4차 수도권정비 소위)	분과회의실	조명래 소위원장 등 5명	·발제안 작성 ·수도권 집중현황 파악 ·정책수단의 실태 분석 ·수도권 정책방향 토론 등
2002. 5. 23 (제5차 수도권정비 소위)	분과회의실	조명래 소위원장 등 5명	·발제안 작성 ·수도권 집중현황 파악 ·정책수단의 실태 분석 ·수도권 정책방향 토론 등

일시	장소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2. 6. 3 (제4차 분과위)	본회의실	유재현 분과위원 장 등 11명	◦국토관리전략(안)에 대한 토론 ◦교통체계전략(안)에 대한 토론 - 검토소위 구성
2002. 6. 17 (제6차 수도권정비 소위)	분과회의실	조명래 소위원장 등 5명	◦발제안 작성 ◦수도권 집중현황 파악 ◦정책수단의 실태 분석 ◦수도권 정책방향 토론 등
2002. 6. 27 (제1차 교통전략검토 소위)	녹색교통 운동 회의실	민만기 소위원장 등 5명	◦교통체계전략(안) 검토방향 토의
2002. 7. 10 (제2차 교통전략검토 소위)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민만기 소위원장 등 5명	◦교통체계전략(안) 검토내용 및 보고서 작성 방향
2002. 7. 13 (제7차 수도권정비 소위)	분과회의실	조명래 소위원장 등 5명	◦발제안 작성 ◦수도권 집중현황 파악 ◦정책수단의 실태 분석 ◦수도권 정책방향 토론 등
2002. 7. 25 (제5차 분과위원회)	본 회의실	유재현 위원장 등 8명	◦국토관리전략(안) 토론 ◦교통체계구축전략(안) 토론 - 조정회의 개최(8. 14)
2002. 7. 29 (제8차 수도권정비 소위)	분과회의실	권용우 소위원장 등 7명	◦이창수 교수 원고발표 및 토의 ◦강현수 교수 원고발표 및 토의
2002. 8. 14 (국토분과위 조정회의)	분과회의실	유재현 위원장 등 5명	◦교통체계구축소위원회 검토안 조정·반영 사항 토의

< 수자원분과 >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2.1.22 (제1차 분과위)	본회의실	김수삼과위 원장 등 16명	○ 2001 분과위 운영실적 보고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계획보고 ○ 사전검토대상 계획안에 대한 검토 등
2002.1.22 (제7차 물관리소위)	본회의실	심명필소위 원장 등 6명	○ 소위원 결원충원 ○ 물관리체제개선방안 연구 1부과제 검토
2002.2.5 (제8차 물관리소위)	본회의실	심명필소위 원장 등 6명	○ 물관리 비전과 원칙에 대한 토론 및 문안작업
2002.3.15 (제9차 물관리소위)	본회의실	심명필소위 원장 등 6명	○ 물관리체제개선방안 연구 2부과제 검토
2002.3.19 (제2차 분과위)	본회의실	김수삼분과 위원장 등 9명	○ 운영협의회 결과 및 위원회 워크숍 결과보고 ○ 물관리체제개선소위 활동 보고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계획 중간보고 (수자원분야/건교부)
2002.4.23 (제3차 분과위)	본회의실	김수삼분과 위원장 등 9명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계획 중간보고 (수자원분야/건교부) ○ 한강유역 물관리기관 현장방문 계획안 검토 등
2002.5.21 (제4차 분과위)	본회의실	김수삼분과 위원장 등 14명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계획 2차 중간보고 (수자원분야/건교부) ○ 한강유역 물관리기관 현장방문 결과보고
2002.5.28 (제10차 물관리소위)	본회의실	심명필소위 원장 등 11명	○ 물관리체제개선방안 연구 3부과제 검토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2.6.3 (제1차 수자원 국가전략 검토소위)	서울대 공과대 회의실	이정수 소위 원장 등 7명	○ 소위원회 운영 및 검토방향, 향후 계획등 논의
2002.6.18 (제5차 분과위)	본회의실	김수삼 분과 위원장 등 12명	○ 소위원회 활동상황 보고 ○ 물관리 비전과 원칙(안)에 대한 토론
2002.7.3 (제11차 물관 리소위)	서울북악 파크호텔	심명필 소위 원장 등 6명	○ 물관리체제개선방안 연구 중간종합보고서에 대 한 검토 및 토론
2002.7.5 (제2차 수자원 국 가전략 검토소 위)	국토 연구원 회의실	이정수 소위 원장 등 6명	○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전략(시안) 검토 및 토 론
2002.7.23 (제6차 분과위원 회)	본 회의실	김수삼 위원장 등 11명	○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전략(시안)검토 및 토론 ○ 지속가능한 해양수산물관리전략(시안)검토 및토론
2002.7.23 (제12차 물관리체 제개선소위원회)	분과 회의실	심명필 소 위원장 등 6명	○ 물관리체제개선방안 초안 검토 및 논의
2002.8. 5 (해양수산물관리전 략검토소위원회)	분과 회의실	이정수 소 위원장 등 8명	○ 지속가능한 해양수산물관리전략(시안)검토 및토론
2002.8. 14 (제13차물관리체 제개선소위원회)	분과 회의실	심명필 소 위원장 등 8명	○ 물관리체제개선방안 최종보고회 및 초안 검토· 논의

< 생태·보건분과 >

일 시	장 소	참 석 자	주요토의 내용
2002.1.14 (2002년도 제1차 분과회의)	본회의실	위촉위원:김귀곤분과위 원장 등 2명 실무위원:정홍식위원 등 8명	○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안) 보고 ○ 2002년 지속위 업무계획 검토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추진 현황 보고 - 유해화학물질관리분야(환경부), 산림 자원관리분야(산림청)
2002.1.22 (폐기물종합 계획검토 제1차 소위)	분과회의실	소 위 위 원: 정 홍 식 위 원 등 4명	○ 폐기물관리종합계획(안) 검토일정논의 ○ 위원별 계획서 검토 방법 ○ 전문위원 추천 및 참여방법 ○ 검토보고서 작성방안
2002.1.30 (폐기물종합 계획검토 제2차 소위)	분과회의실	소 위 위 원: 정 홍 식 위 원 등 3명	○ 위원별 검토의견 제출 및 토론 ○ 전문위원 추가선정
2002.2.5 (폐기물종합 계획검토 제3차 소위)	분과회의실	소 위 위 원: 정 홍 식 위 원 등 6명	○ 2차 회의시 제출한 검토의견 재검토 및 추가의견 수렴 ○ 향후 추진방법 및 일정 논의
2002.2.15 (폐기물종합 계획검토 제4차 소위)	분과회의실	소 위 위 원: 정 홍 식 위 원 등 6명	○ 소위원회 검토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최종안 마련
2002.2.18 (제2차 분과회의)	본회의실	위촉위원:김귀곤분과위 원장 등 2명 실무위원:정홍식위원등 9명 소위(전문)위원:김정훈 위원등 2명	○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안) 검 토의견 논의 및 의결 ○ 생명안전소위원회 복원 건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수립 관련 중간 보고일정

일 시	장 소	참 석 자	주요토의 내용
2002.3.29 (제3차 분과회의)	본회의실	위촉위원:김귀곤분과위 원장 등 2명 실무위원:이명우위원등 8명	○소위원회 활동보고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수립 관련 중간 보고 및 토의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분야(산림청) - 지속가능한 유해화학물질분야(환경 부)
2002.4.19 (생명안전대책 관계전문가 회의)	세실 레스토랑	실무위원:양길승 위원 외부전문가:서정일교수 등 4명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해야할 보건분야 과제 선정 건
2002.4.26 (제4차 분과회의)	본회의실	위촉위원:김귀곤분과위 원장 실무위원:정홍식위원 등 6명	○DMZ일원의 관리현황과 계획 관련 5개 부처의 보고 및 토의 - 서울대, 국방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보고 및 토의
2002.4.26 (DMZ대책 제1차소위)	분과회의실	소위위원:김남춘위원 등 4명	○DMZ일원의 관리현황과 향후 관리대책 토의 ○소위 운영일정과 운영방안 관련건
2002.5.16 (DMZ대책 제2차소위)	분과회의실	소위위원:김남춘위원 등 7명	○자문안 구성(안)에 대한 토의 ○DMZ현장방문 관련건
2002.5.24 (제5차 분과회의)	본회의실	위촉위원:김귀곤분과위 원장 등 2명 실무위원:이명우위원 등 5명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추진현황 논의 - 검토소위원회 구성 등 ○습지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한 보고 및 토의 - 해양수산부, 환경부 보고
2002.6.4 (DMZ대책 제3차소위)	연천군청	소위위원:김남춘위원 등 7명	○DMZ 서부전선지역 현장답사 ○DMZ 정책에 대한 토의
2002.6.12 (DMZ대책 제4차소위)	717OP	소위위원:김남춘위원 등 8명	○DMZ 동부전선지역 현장답사 ○자문안 초고에 대한 토의
2002.6.24 (DMZ대책 제5차소위)	분과회의실	소위위원:김남춘위원 등 8명	○자문안 초고에 대한 재토의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 추진일정

일 시	장 소	참 석 자	주요토의 내용
2002.6.27 (제6차 분과회의)	본회의실	위촉위원:김귀곤분과위원장 등 2명 실무위원:이명우위원등 8명	○ 하천유역의 습지관련 정책에 대한보고 및 토론 - 행정자치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등 3개부처 보고
2002.6.29 (DMZ대책 제6차소위)	분과회의실	소 위 위 원:김 남 춘 위 원 등 9명	○ 「비무장지대 일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자문내용(안)에 대한 목차 재구성 및 위원별 역할분담 건
2002.7.23 (DMZ대책 제7차소위)	분과회의실	소 위 위 원:김 남 춘 위 원 등 7명	○ 「비무장지대 일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자문내용(안) 초고에 대한 토의 ○ 추진일정 재조정
2002.7.23 (유해화학 물질전략 1차소위)	분과회의실	김미화 위원 등 4명	○ 유해화학물질분야 국가발전전략 검토 및 수정·보완을 위한 토의
2002.7.26 (제7차 분과회의)	본 회의실	김귀곤 분과위원장 등 9명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중간검토 보고 ○ 「비무장지대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자문안」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 보고 및 토의
2002.8.10 (유해화학 물질전략제 2차소위)	프레지던트 호텔	김미화 위원 등 4명	○ 유해화학물질분야 국가발전전략 검토 및 수정·보완을 위한 토의
2002.8.19 (제8차 분과회의)	본 회의실	김귀곤 분과위원장 등 8명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검토 및 토의 ○ 「비무장지대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자문안」 검토 및 토의
2002.8.19 (DMZ대책 제8차소위)	분과회의실	김남춘 위원 등 6명	○ 「비무장지대 일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자문내용(안)초고에 대한 토의 ○ 추진일정 재조정

< 에너지대책분과 >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 토의내용
2002. 1. 15 (제1차 분과회의)	본회의실	15명	○2002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요업무계획(안) 검토 ○2002년 분과위원회 활동방향 토의
2002. 3. 6 (제2차 분과회의)	본회의실	15명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추진전략」 추진방안 검토 ○2002년도 활동을 위한 전략소위구성
2002. 3. 28 (제1차 전략소위)	분과회의실	2명	○2002년도 전략소위 활동방안 논의
2002. 4. 3 (제3차 분과회의)	본회의실	10명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전략 토의 ○에너지분야 사전검토제도 운영방안 토의
2002. 5. 8 (제2차 전략소위)	분과회의 실	4명	○소위위원 확충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전략 내용토의
2002.6.14 (제4차 분과회의)	본회의실	13명	○에너지가격 및 에너지가격분야에 대한 전문가 초청 의견청취 ○2002년도 정책과제 방안 협의
2002.8.12 (제3차 전략소위원회)	에 너 지 경 제연구원	5명	○「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정책과제) 토의 ○「지속가능한에너지시스템전략」 최종안 토의
2002.8.20 (제5차 분과위원회)	본 회의실	13명	○「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정책과제) 확정 ○「지속가능한에너지시스템전략」 최종안 보고

< 산업과환경분과 >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 토의내용
2002. 1. 17 (제1차 분과회의)	본회의실	16명	○2002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요업무계획(안) 검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전략 보고 (이병욱위원) ○2002년 분과위원회 추진과제(안) 발굴
2002. 2. 27 (제2차 분과회의)	본회의실	14명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보고 및 검토 ○2002년 정책과제 선정 및 추진방안 토의 - 환경산업 관련 제도개편방안 소위원회 구성
2002. 3. 11 (제1차 환경산업육성 관련제도개편 소위)	분과회의실	6명	○환경산업의 현황, 구조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 표 및 토론(안기철위원) ○‘환경산업 육성 지원제도 개편 방안’ 마련을 위 한 역할 분담 및 일정 논의
2002. 3. 28 (제2차 환경산업육성 관련제도개편 소위)	분과회의실	4명	○환경산업육성현황과 개선방안 발표 및 질의(환경부 박미자 사무관) ○환경산업 관련 지원제도 및 육성방안 발표 및 질의 (기계산업진흥회 강수길 환경산업팀장) ○정책연구 목차구성 및 역할분담 등에 관한 토의
2002. 4. 25 (제3차 분과회의)	본회의실	17명	○환경산업육성 관련 지원제도 개선방안(초안) 발 표(산업연구원, 안기철위원)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에 관한 중간보고서 검토 계획 논의
2002. 5. 22 (제4차 분과회의)	본회의실	18명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중간보고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 토의내용
2002. 5. 22 (제3차 환경산업육성 관련제도개편 소위)	분과회의실	4명	○ 환경산업육성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대안 검토 및 개선방안 발채 ○ 발채된 내용을 재검토하여 4차 소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하기로 함.
2002. 6. 27 (제4차 환경산업육성 관련제도개편 소위)	분과회의실	6명	○ 정책과제 최종안 검토, 수정·보완 ○ 수정안에 대하여 제5차 분과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발표자 : 안기철위원).
2002. 7. 3 (제5차 분과회의)	본회의실	13명	○ 환경산업육성·지원제도 개선방안 발표 및 의결 (산업연구원, 안기철위원)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에 관한 최종보고서 검토 계획 논의
2002. 8. 12 (제6차 분과회의)	본회의실	11명	○ 3개분야(과학기술, 산업발전, 농업발전)국가지속 가능발전전략 최종보고서 발표 및 검토 ○ 대기배출부과금 제도개선(안) (이병욱 위원)

< 국제지역협력분과 >

일시	장소	참석자	주요토의 내용
2002. 2. 16 (제1차 지방 CSD 구성 및 LA 21 제도화 방안 소위)	본 위원회 분과회의실	허옥경 등 9명	○기조발제 ○소위원장 선임 ○안건 토의 가. 서울시 CSD 사례 발표 나. 소위원회 호라동 일정 다. 연구과정 및 전략 논의 라. 연구진행방법 논의
2002. 2. 28 (제2차 지방 CSD 구성 및 LA 21 제도화 방안 소위)	본 위원회 분과회의실	김병완 등 4명	○연구계획서 설명: ○서울녹색위 조례 설명 ○안건 토의 가. 연구계획서의 체계 및 내용 검토. 나. 연구보고서 성격 논의 다.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논의: 라. 연구일정 논의:
2002. 3. 16 (제3차 지방 CSD 구성 및 LA 21 제도화 방안 소위)	서울시청 별관 회의실	김병완등 7명	○PCSD 소위원회 운영 설명 ○정부측 위원 소위원회 참여 문제 ○차후 일정 논의 ○집필분야 약할 분담 결정
2002. 3. 30 (제4차 지방 CSD 구성 및 LA 21 제도화 방안 소위)	서울시청 별관 회의실	김병완 등 5명	○소위 일정 조정 ○소위원장이 보고서 책임 편집 ○보고서에 국내 사례 첨가 ○집필분야와 역할분담 확인

일시	장소	참석자	주요 토의 내용
2002. 4. 13 (제5차 지방 CSD 구성 및 LA 21 제도화 방안 소위)	서울 시청 별관 회의실	이창우 등 6명	○ 각자 준비한 원고 발표 ○ 대표집필자의 보고 ○ workshop 내용 조정
2002. 4. 14 (제6차 지방 CSD 구성 및 LA 21 제도화 방안 소위)	서울 시청 별관 회의실	이창우 등 5명	○ workshop 최종 준비 ○ 각자 준비한 원고 발표
2002. 4. 15 (제1차 분과위원회)	본회의실	박영숙 등 11명	○ 동아시아 NCSO workshop 준비현황보 고 ○ 환경분야 국가지속가능발전 실천전략 중간보고(환경교육) ○ 지방CSD 구성과 LA21 소위원회 중간 보고
2002. 4. 24 (지방 CSD 제도화방안 워크숍)	본위원회 대강당	김병완 교수외 50 명 참가	○ Workshop 개최 ○ 주제 발표와 토론
2002. 5. 4 (제7차 지방 CSD 구성 및 LA 21 제도화 방안 소위)	서울시청 별관 회의실	김병완 등 5명	○ workshop 결과 정리 ○ 운영협의회 상정안건 조정 ○ workshop에서 논의 된 사항 검토
2002. 7. 29 (제1차 환경교육 검토소위원회)	YMCA 회의실	여진구 등 4명	○ 환경교육 최종보고서 검토 ○ 분과위 상정여부 논의

< WSSD 실무위원회 >

일 시	장 소	참 석 자	주요토의내용
2001. 1. 8 (제1차 회의)	본회의실	박영숙위원장 등8명	○2기 실무위 구성(15인→17인) ○WSSD 준비보고서 지속적 검토
2002. 1. 22 (제2차 회의)	“	박영숙위원장 등13명	○2차뉴욕회의 관련 우리의 기본입장 정리 및 사무총장보고서에 대한 제안사항 논의 ○WSSD준비보고서는 8월까지 검토
2002. 2. 26 (제3차 회의)	“	박영숙위원장 등 14명	○2차뉴욕회의 동향 및 3차회의 대책 논의 ○위원회TFT 구성 및 행사실무 준비 지원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선정
2002. 3. 12 (제4차 회의)	“	박은경위원 등 10명	○위원회TFT 작성, 의장보고서 검토안 토의 (3, 4차 회의에 활용토록 함)
2002. 4. 18 (제5차 회의)	“	박영숙위원장 등 15명	○WSSD준비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논의 ○본회의 상정 대통령 자문(안) 검토 ○WSSD 3차회의 동향 및 결과 분석
2002. 5. 6 (제6차 회의)	“	박영숙위원장 등 11명	○WSSD논의동향과 국가대응(안)검토 ○UN제출 지속가능발전우수사례 선정 결 과 보고
2002. 6. 18 (제7차 회의)	“	박영숙위원장 등 13명	○WSSD 4차 인도네시아 회의결과 토의 ○지속가능발전 홍보 방안 검토 ○주요그룹 활동사항 논의
2002. 7. 18 (제8차회의)	“	박영숙위원장 등12명	○WSSD 준비 대책반별 추진계획 보고 및 검토 ○WSSD주요그룹별 준비사항 점검 등
2002. 8. 7 (제9차회의)	“	박영숙위원장 등8명	○WSSD 수석대표 기조연설문 내용 논의 ○WSSD 현지 민·관 협조사항(홍보 및 브리핑 실시 등)

2003년도 회의개최 현황

1. 본회의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03. 5. (제1차 회의)	지속위 회의실		○ 위원회 현안사항 등 토의

2. 운영협의회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03. 1. 3 (제1차 소위원회)	지속위 회의실		○ 위원회 발전방안 토의 ○ 1월중 지속가능발전 토론회 개최방안 논의
03. 1.10 (제2차 소위원회)	지속위 회의실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발전방안 토의 ○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안) 토의
03. 1.16 (제1차회의)	지속위 회의실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발전방안 토의 ○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위한 토론회 개최(안) ○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안) 토의
03. 2.11 (제2차회의)	지속위 회의실		○ WSSD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계획(안) ○ 기후변화특위 구성·운영(안) ○ 분과위 정책자문과제 선정(안) ○ 새정부의 정책과제와 방향 제안서
03. 3. 4 (제3차회의)	지속위 회의실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총합서책 검토 ○ 제2차 산업입지 공급계획 검토 ○ 새만금사업 현황과 동향보고 ○ 지속가능한 물관리체제로 개선을 위한 공청회(안) ○ 2003년 지속가능발전 관련 주요국제회의 일정(안)
03. 4. 1 (제4차회의)	지속위 회의실		
03. 5. 6 (제5차회의)	지속위 회의실		○ 분과별 정책자문과제 추진현황 ○ 제3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검토 방안
03. 5.19 (제6차회의)	지속위 회의실		○ 청와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편방안 등 논의
03. 5. (제7차회의)	지속위 회의실		○ 청와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편방안 등 논의

3. 분과위원회

<국토수자원분과위원회>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3. 1.14 (물관리체제 개선소위)	지속위 회의실		○ 물관리체제개선방안 향후 추진계획 논의
2003. 1.16 (1차)	지속위 회의실		○ 제14차 물관리체제개선소위 결과보고 ○ 지하수관리기본계획(안) 사전검토의견 건교부 조치계획 보고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 사전검토 절차이행 검토의견 논의 ○ 지속위 운영협의회 활동사항 보고
2003. 2.20 (2차)	지속위 회의실		○ 물관리체제개선방안 ○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안) 검토결과
2003. 4. 2 (도시유역수 문복원소위)	지속위 회의실		○ 정책과제 연구용역 설명 ○ 도시유역수문복원을 위한 제도 도입방안 주요내용 설명
2003. 4. 3 (도시평가지 표소위 1차)	지속위 회의실		○ 정책과제 연구용역 설명 ○ 지속가능한 도시평가지표의 구축방안 추진계획 논의
2003. 4.17 (3차)	지속위 회의실		○ 물관리체제개선방안 향후 계획 논의
2003. 4.28 (도시유역수 문복원 소위 제2차 회의)	지속위 회의실		○ 도시유역수문복원을 위한 제도 도입방안 목차설명 및 보고서 체제 논의
2003. 5. 1 (도시평가지 표소위 2차)	지속위 회의실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지표의 구축방안 초안 검토
2003. 5. 9 (물관리체제 개선소위)	지속위 회의실		○ 물관리체제개선방안 공청회 결과 검토 및 향후 추진계획
2003. 5.21 (도시평가지 표소위 3차)	지속위 회의실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지표의 구축방안 초안 검토
2003. 5.26 (도시유역수 문복원 소위 제3차 회의)	지속위 회의실		○ 도시유역수문복원을 위한 제도 도입방안 초안 검토
2003. 6. 2 (물관리체제 개선소위 제1 7차 회의)	지속위 회의실		○ 물관리체제개선방안 검토 및 향후 계획 논의

2003. 6.23 (물관리체제 개선소위 제1 8차 회의)	지속위 회의실		○ 유역물관리청(안) 및 기타 대안의 검토 ○ 공청회 검토의견에 대한 논의 등

<사회분과위원회>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3. 1. 6 (ODA 소위 1차)	서울시청		○ 소위원회 추진계획 및 활동내용(작업계획) 검토
2003. 1.21 (1차)	지속위		○ 노동부 부처보고 ○ MDGs(새천년발전목표)의 배경과 내용 검토
2003. 2.11 (ODA 소위 2차)	지속위		○ 한국의 원조현황 및 정책 평가 ○ 원조이념 및 정책목표
2003. 2.18 (2차)	지속위		○ 보건복지부 부처보고 ○ 청소년보호위원회 부처 보고
2003. 3. 3 (ODA 소위 3차)	지속위		○ 원조이념 및 정책목표 ○ 원조의 양적, 질적 구조
2003. 3.11 (3차)	지속위		○ 사회분과위원회 추가 정책과제 선정
2003. 3.24 (인구사회정책 소위 1차)	지속위		○ 소위원회 추진계획 및 작업내용 검토
2003. 3.31 (ODA 소위 5차)	지속위		○ 원조정책의 선진화 방안
2003. 3.31 (인구사회정책 소위 2차)	지속위		○ 작업내용 목차 검토 및 역할분담
2003. 4. 7 (인구사회정책 소위 3차)	지속위		○ 발제 및 토론
2003. 4.15 (인구사회정책 소위 4차)	지속위		○ 분야별 발제 및 보고서 체계 검토
2003. 4.15 (4차)	지속위		○ 정책과제 진행보고 및 중간점검 ○ 사회분과위원회 추가 정책과제 선정
2003. 4.29 (인구사회정책 소위 5차)	지속위		○ 보고서 체계 및 주안사항 검토(4차 후속회의)
2003. 5.13 (ODA 소위 6차)	지속위		○ ODA 정책자문안 초안검토(초안 별첨) ○ 공개토론회 초안 검토
2003. 5.20 (ODA 소위7차)	지속위		○ ODA 정책자문안 초안검토(초안 별첨)
2003. 5.28 (5차)	지속위		○ ODA 정책자문과제 안전 심의 등

2003. 6. 5 (인구사회정책 소위 6차)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o 인구고령화와 사회정책 보고서 초안 검토
2003. 7.22 (ODA 소위 7차)	지속위		o ODA 정책자문안 검토

<환경생태분과위원회>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3. 1.23 (1차)	지속위		o 2003년 환경생태분과위원회 운영계획 o 토지적성평가기준(건교부 마련)에 대한 보고 및 토론 등
2003. 2.28 (2차)	지속위		o 2003년 환경생태분과위원회 업무추진건 o DMZ 답사 관련건 등
2003. 3.13 (생태도시전환 및 조성 검토소위 1차)	지속위		o 03년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연구방안 논의
2003. 3.20 (토지이용 및 환경규제효율성방 안연구소위 1차)	지속위		o 03년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연구방안 논의
2003. 3.27	지속위		o 사회적쟁점 제안과제 (하수 슬러지처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 논의 o DMZ 답사계획 관련 등
2003. 3.27 (생태도시전환 및 조성 검토소위 2차)	지속위		o 03년 정책과제(생태도시전환 및 조성방안) 연구 논의
2003. 4. 1 (토지이용 및 환경규제효율성방 안연구소위 2차)	지속위		o 03 정책과제(토지이용및환경규제 통합 효율성방안) 수행을 위한 연구방안 논의
2003. 4. 24 (생태도시전환 및 조성 검토소위 3차)	지속위		o 03년 정책과제 연구논의
2003. 4. 8 (토지이용 및 환경규제효율성방 안연구소위 3차)	지속위		o 03 정책과제(토지이용및환경규제 통합 효율성방안) 수행을 위한 연구방안 논의
2003. 4.10 (생태도시전환 및 조성 검토소위 4차)	지속위		o 03년 정책과제(생태도시전환 및 조성방안) 연구 논의

2003. 5.13 (생태도시전환 및 조성 검토소위 5차)	지속위		○ 03년 정책과제(생태도시전환 및 조성방안) 연구 논의 ○ 생태도시 조성사업 추진상 문제점 도출 및 논의 등
2003. 5.28 (생태도시전환 및 조성 검토소위 6차)	지속위		○ 03년 정책과제(생태도시전환 및 조성방안) 연구 논의
2003. 6. 5 (토지이용 및 환경규제효율성방 안연구소위 4차)	지속위		○ 03년 정책과제(토지이용 및 환경규제통합 효율성방안 연구) 검토 논의

< 경제산업분과위원회>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3. 2.2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 종합시책 사전검토 소위)	지속위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 종합시책관련 검토의견 교환 및 논의
2003. 2.26 (1차)	지속위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종합시책 검토 및 논의 ○ 경제산업분과 운영방안 및 소위원회 구성(안) 논의
2003. 3.27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를 위한 소위)	지속위		○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 통합적 접근을 통한 환경정책 합리화 방안
2003. 4.22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를 위한 소위)	지속위		○ 소위 추진일정, 보고서 내용 및 체계 등 협의
2003. 4.22 (2차)	지속위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 관련보고 ○ 분과정책과제 추진현황 보고
2003. 4.22 (통합적 접근을 통한 환경정책 합리화방안소위)	지속위		○ 소위 운영방향, 보고서 내용 및 체계 등 협의
2003. 5.26 (3차)	지속위		○ 분과 정책자문과제보고서(안) 검토 및 논의

4. 소위원회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소위원회>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3. 1.15 (1차)	지속위		o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기본구상안 초안 작성 논의
2003. 1.17 (2차)	지속위		o 인수위 제출 자료 초안에 대한 검토 및 논의 o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기본구상안 초안 작성 논의
2003. 1.23 (3차)	지속위		o 인수위 제출자료 초안에 대한 검토 및 논의
2003. 4.24 (4차)	지속위		o 운영협의회 논의결과와 원고 초안에 대한 검토
2003. 5.22 (5차)	지속위		o 기본구상안 관련한 PCSD 위원 워크숍 개최 o 기본구상안 초안에 대한 검토

< WSSD 이행계획 소위원회>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3. 1. 7 (2차)	지속위		o WSSD이행계획 국가실천계획 지침서 작성 추진방안 검토 o WSSD이행계획 후속조치에 대한 PCSD의 역할 검토
2003. 2. 6 (3차)	지속위		o 부문별 가이드라인 점검 등
2003. 4.23 (4차)	지속위		o 분야별 원고검토 및 작업일정 점검
2003. 5.21 (5차)	지속위		o WSSD 이행계획 국가대응전략 작업지침서 검토
2003. 6.13 (6차)	지속위		o WSSD 이행계획 국가대응전략 작업지침서 검토

5. 전문위원회

<갈등관리정책전문위원회>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3.10. 4 (교육훈련개발 팀 제1차 회의)	지속위	이영면(간사), 김현민, 박호환 교수, 박진우 행정관(청와대), 김윤동 과장(행자부), 류혜숙 서기관(교육부), 이주영 팀장 (노동교육원), 권기태(지속위 간사)	o 교육훈련팀 향후 운영계획
2003.10. 4 (법제도정비팀 제1차 회의)	지속위	홍준형, 이재은, 이근주, 심오 택, 김영석, 김경욱, 김철	o 법제도정비팀 향후 추진방향 논의
2003.10.10 (전문위 제1차 간사회의)	대통령비서실 신관 305호	. 비서실 PPR비서관 PPR(김 경욱, 오종식 행정관, 이현경 행정요원) 정책조정(박상우, 김영석 행정 관), 정책관리(박진우 행정관) . 관련기관: 지속위(정연만 기 조실장, 서철모 과장), 정책기획위(조재희 위원), 총 리실(김수도 총괄심의관) . 특별간사: 문화연구팀(서문기 교수), 프로세스개발팀(이선우 교수), 법·제도정비팀(홍준형 교수)	o 간사회의 운영방안 및 정책연구팀 활 동에 관한 사항
2003.10.14 (교육훈련개발 팀 제2차 회의)	서울 파레스호텔	이영면(간사), 김현민, 박호환 교 수, 박진우 행정관(청와대), 김윤 동 과장(행자부), 김원찬 과장(교 육부), 이주영 팀장(노동교육원), 권기태(지속위)	o 보고서 목차 및 주요내용 관련
2003.10.15 (갈등관리프로세 스팀 제1차 회의)	지속위	. 간사: 이 선우 방통대교수 . 전문가그룹: 이영희(카톨릭 대)·권해수(한성대)교수, 조승 현(KEI 책임연구원) . 관계기관: BH(박상우 정책조 정행정관, 이현경 PPR 행정요 원), 국조실 (석성근 과장), 노 동부 (권영순 노사정책과장), 환경분쟁조 정위(정기택 사무 국장), 지속위(서철모 과장)	o 팀 활동방안 및 사례분석과제 도출
2003.10.17 (전문위 제2차 간사회의)	정책기획위	. 비서실 PPR비서관 PPR이 현경 행정요원, 정책조정(김영 석 행정관), 정책관리(박진우 행정관) . 관련기관: 지속위(정연만 기 조실장, 서철모 과장, 김철 사 무관), 정책기획위(조재희 위 원), 총리실(심오택 기획총괄과 장)	o 각 팀별 보고서 목차 결정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 팀별간사: 문화연구팀(서문기 교수), 프로세스개발팀(이선우 교수), 교육훈련개발팀(박호환 교수)	
2003.10.21 (법제도정비팀 제2차 회의)	정부제1청사 1018호	홍준형, 이재은, 이근주, 김현준, 심오택, 김영석, 김경욱, 김철	o 법제도정비팀 보고서 목차 및 추진 일정 논의
2003.10.23 (갈등관리프로세스팀 제2차 회의)	지속위	· 이선우 간사, 권해수 교수, 조승현 주재복 박사 · B(박상우 국장 이현경) · 석성근 총리실 과장, 지속위 서철모 과장	o 갈등유형에 따른 사례분석
2003.10.24 (전문위 제3차 간사회회)	지속위	· 청와대 비서실(박상우 행정관, 김경욱 행정관) · 이선우, 이영면, 홍준형, 서문기 교수 · 총리실 김수도 국장, 지속위(서철모 서기관, 권기태, 김철)	o 보고서 목차에 대한 검토
2003.10.28 (교육훈련개발팀 제3차 회의)	서울 파레스호텔	고철환 위원장, 이영면(간사), 김현민, 박호환, 원창희 교수, 박수선 소장, 박진우 행정관(청와대), 구만섭 서기관(행자부), 권기태(지속위)	o 분야별 집필방향 논의 중간보고서 초안 완료
2003.10.29 (갈등관리프로세스팀 제3차 회의)	지속위	· 이선우 간사, 권해수교수, 이영희 교수, 조승현 박사 · B(이현경) · 석성근 총리실 과장, 지속위 서철모 과장	o 사례분석결과 발제 및 토론
2003.10.31 (법제도정비팀 제3차 회의)	정책기획위	홍준형, 이재은, 이근주, 김현준, 심오택, 김영석, 김경욱, 김철	o 법제도정비팀 보고서 초안 검토
2003.11. 5 (갈등관리프로세스팀 제4차 회의)	지속위	· 이선우 간사, 권해수교수, 이영희 교수, 조승현 박사, 주재복 박사 · B(이현경) · 석성근 총리실과장, 환경분쟁조정위 정기택국장, 지속위 서철모과장	o 사례분석 보고서 초안 발표 및 검토
2003.11. 7 (전문위 제4차 간사회회)	정책기획위	· 청와대 비서실(전기정 비서관, 김영석 박진우 행정관 이현경) · 이선우, 홍준형 서문기 교수 · 총리실 심오택 과장, 지속위(정연만 실장, 서철모 서기관, 권기태, 김철)	o 팀별 보고서 초안 검토
2003.11.10 (법제도정비팀 제4차 회의)	정동 세실	홍준형, 이재은, 이근주, 김현준, 김영석, 서철모, 김철	o 법제도정비팀 보고서 초안검토 o 갈등해결기본법 제정 방안 논의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3.11.11 (교육훈련개발 팀 제4차 회의)	서울 파레스호텔	이영면(간사), 김현민, 원창희 교수, 박수선 소장, 구만섭 서 기관(행자부), 류해숙 서기관 (교육부), 권기태(지속위)	○ 중간보고서 수정 보완
2003.11.12 (갈등관리프로세 스팀 제5차 회의)	지속위	· 이선우 간사, 권해수 교수, 이 영희 교수, 박상우 국장 이 현경 · 석성근 총리실 과장, 지속위 서철모 과장, 강영진 조지메이 슨대 연구원	○ 갈등예방프로그램 전문가 초청 토론
2003.11.14 (교육훈련개발 팀 제5차 회의)	강남 한우리	이영면(간사), 김현민, 박호 환, 원창희 교수, 박수선 소 장, 권기태(지속위)	○ 중간보고서 수정 보완
2003.12. 8 (교육훈련개발 팀 제6차 회의)	강남 한우리	고철환위원장, 이영면(간사), 김현민, 박호환, 원창희 교 수, 박수선 소장, 박진우행 정관(청와대), 권기태(지속 위)	○ 최종보고서 집필 논의
2003.12.15 (법제도정비팀 제5차 회의)	총리실	홍준형, 김현준 교수, 권기 태간사 등 3명	○ 갈등해결기본법 제정방안 논의 ○ 갈등해결지원센터 설립방안 검토
2003.12.19 (전문위 제5차 간사회의)	지속위	· 지속위(위원장 장연만 실장 서 철모 서기관 권기태 감철) · 이선우 서문기 교수 · 청와대 비서실(박진우 행정관 이현경), 총리실(박철곤 심의관 심오택 과장)	○ 각 팀별 보고서 내용중 검토 필요사항 논의
2003.12 (전문위 제6차 간사회의)	지속위		○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2003.12.22 (법제도정비팀 제6차 회의)	정책기획위	6명 (홍준형, 이재은, 김현준, 김 경욱, 심오택, 김철 등)	○ 법제도정비팀 최종보고서 작성관련 논 의 ○ 갈등해결지원센터의 성격 및 소속 검 토
2003.12.30 (교육훈련개발 팀 제7차 회의)	동국대 동국관	이영면교수(간사), 박호 환교수, 박수선소장, 권 기태(지속위) 등 4명	○ 최종보고서 수정보완, 완료

<물·국토·자연전문위원회>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3. 9.26 (물 정책연구 팀 간담회)	지속위	고철환위원장, 김동엽, 조 기안, 이종호 교수, 최지 용, 구도완박사, 방의석, 유성 팀장, 권기태 간사	○ 향후 지속위 물정책 논의방향 ○ 물관리정책 로드맵 구상 논의
2003.11. 7 (물 정책연구 팀 1차회의)	지속위	고철환 위원장, 최연홍(시 립대), 최지용(KEI), 최동 석(남경테크), 정연만실장, 백승근팀장, 엄두용박사, 권기태간사(이상 지속위)	○ 수량, 수질, 법제도, 수급정책 현황과 개선방향
2003.11.19 (물 정책연구 팀 2차회의)	지속위	고철환위원장, 최연홍(시 립대), 최지용(KEI), 최동 석(남경테크), 정연만실장, 백승근팀장, 엄두용박사, 권기태간사(이상 지속위)	○ 물정책의 향후 논의방향
2003.11.27 (물 정책연구 팀 3차회의)	지속위	성익환박사(지질연), 민동 기교수(건국대 경상학부), 김범철교수(강원대 경과학 과), 이창희 박사(KEI 정 책연구부), 고철환 위원장, 기조실장, 백승근 팀장, 엄두용 박사, 권기태 간사 (이상 지속위)	○ 분야별(수급예측, 지하수수질) 물정책현황과 개선방향
2003.11.28 (물수급쟁점 토론회)	지속위		○ 물수급 쟁점에 관한 토론
2003.12. 4 (물 정책연구 팀 4차회의)	지속위	고철환위원장, 여운광(명지 대), 하성룡(충북대), 최용선 교수(시립대), 송재우 변호 사(김앤장), 백승근팀장, 엄 두용박사, 권기태간사(이상 지속위)	○ 수량, 수질, 재정, 법제도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
2003.12.16 (물 정책연구 팀 5차회의)	지속위	이상훈 교수, 이창우 박사, 전재경 박사, 고철환 위원 장, 구도완, 백승근, 엄두용, 권기태(이상 지속위)	○ 수질, 논의구조, 법제도정책 현황과 개선방향
2003.12.19 (물·국토·자연 팀 회의)	지속위	고철환위원장, 백승근, 엄 두용, 권기태	○ 물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브레인스토밍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3.10.23 (총론·공론화연구 팀 제1차 회의)	지속 위	신정식 건국대학교수(간사), 김홍균 서강대학교수, 정대연 제주대학교수, 민만기 녹색교 통운동사무처장, 김정관 산 자부자원정책과장, 박진우 행정관, 이세준 행정관 (지 속위: 정연만 실장, 유 성 팀장) * 위원장님 참관	○ 연구팀 향후 작업내용 방향 및 일정검토
2003.10.23 (에너지공급연구 팀 제1차 회의)	지속 위	손양훈 인천대 교수, 이필렬 방통대 교수, 조성한 안동대 교수, 강광규 KE 연구위원, 임원택 동북아위 박사, 신원우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지속위: 박정욱 과장) · 위원장님 참관	○ 연구팀 작업방향 및 일정
2003.10.23 (법·제도연구팀 제1차 회의)	지속 위	김호철 한국원사직물시험 연구원장, 허은영 서울대 교 수, 한택환 서경대 교수, 문 재도 전기위원회 총괄정책 과장, (지속위: 김기국 사무 관)	○ 향후 작업방향
2003.10.23 (에너지효율소비연 구팀 제1차 회의)	지속 위	신성철 에너지기술연구원 전문위원, 윤순진 서울시립 대학교수, 오대균 에너지관리 공단박사, 김태호 에너지시 민연대 사무처장, 전대천 산 업자원부 자원기술과장, 안 문수 환경부 대기정책과장, (지속위: 위원장 참관, 엄두 용 박사)	○ 향후 작업계획
2003.10.25 (에너지공급연구 팀 제2차 회의)	지속 위	손양훈 인천대 교수, 이필렬 방통대 교수, 조성한 안동대 교수, 강광규 KE 연구위원, 김영덕 에경연 박사, 황주호 경희대 교수, 김창섭 산업기술대 교수 (지속위: 유성팀장 박정욱과장)	○ 연구팀 작업방향 모색을 위한 의견교환(워크샵 형식)
2003.10.28 (에너지정책연구 팀 제1차 회의)	지속 위	고철환 위원장(주재), 신정식 건 국대 교수, 김창섭 산업기술대 교수, 오대균 에관공팀장, 김호 철 한국원사연구원 원장, 강운 영 에경연 연구위원, 한택환 서 경대 교수, 강광규 KE 연구위 원, 김기호 산자부 자원정책심 의관 (지속위: 정연만 기획조 정실장, 유성 팀장, 박정욱 과 장)	○ 에너지대책연구팀 산하 분과연구팀 1차 회의결과 점검 및 향후 작업방향 모색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3.10.31 (에너지공급연구 팀 제3차 회의)	지속위	김창섭 산업기술대 교수, 손양훈 인천대 교수, 이필렬 방통대 교수, 조성한 안동대 교수, 강광규 KEI 연구위원, 황주호 경화대 교수, 김영덕 예경연 연구위원, 석광훈 녹색연합 운영위원, 산업자원부 박건수 서기관 (지속위 유성 탐장 박정욱 과장)	○ 작업범위 및 보고서 목차안 검토
2003.11. 3 (법·제도연구팀 제2차 회의)	지속위	김호철, 김남일, 허은녕, 배 성렬, 전재경, 한택환, 윤종 연, 문재도, 임문수, (지속위: 김기국)	○ 향후 작업방향 및 작업팀 구성 검토
2003.11. 5 (총론·공론화연구 팀 제2차 회의)	지속위	신정식 건국대교수(간사), 황 진택 삼성지구환경연구소박 사, 김홍균 서강대교수, 정대 연 제주대교수, 윤순진 서울 시립대교수, 김종달 경북대 교수,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강운영 예경연 연 구위원, 안문수 환경부대기 정책과장 (지속위: 유성 팀 장)	○ 에너지정책 수립 논의구조 및 작업일정 검토
2003.11. 5 (에너지효율소비연 구팀 제2차 회의)	지속위	유승식 에너지경제연구원 전 문위원, 정인환 협성대교수, 오대균 에너지관리공단박사, 김태호 에너지시민연대 사무 처장, 염택진 산자부자원정책 실시무관, 방종식 환경부대기 정책과 사무관, 박용규 환경 부지구환경담당관실 서기관, 이성원 교통개발연구원동북 아센터연구위원 (지속위 염 두용 박사)	○ 연구과제 목차안 검토
2003.11. 6 (에너지정책연구 팀 제2차 회의)	지속위	고철환 위원장(주재), 신정식 총 론팀간사위원, 김창섭 공급팀간 사위원, 김호철 법제도팀간사위 원, 강운영 예경연 연구위원, 한 택환 서경대 교수, 강광규 KEI 연구위원, 오대균 에관공팀장, 고윤화 환경부 대기보전국장, 문 재도 산자부 총괄정책과장 (지 속위 유성 탐장 박정욱 과장)	○ 각 팀별 주요연구과제 및 보고서 목차 검토
2003.11. 6 (에너지공급연구 팀 제4차 회의)	지속위	김창섭 산업기술대 교수, 손양훈 인천대 교수, 이필렬 방통대 교수, 강광규 KEI 연구위원, 황주호 경화대 교수, 석광훈 녹색연합 운영위원, 산업자원부 박건수 서기관, 환경부 선종오 사무관 (지속위 유성 탐장 박정욱 과장)	○ 주요 에너지원별 가용규모 및 경제성 검토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3.11.12 (법·제도연구팀 제3차 회의)	지속위	김호철 강남일 윤종연 이상훈 (지속위: 김가국) · 참관 위원장	o 에너지정책 논의구조
2003.11.13 (에너지정책연구팀 제3차 회의)	청와대	고철환 위원장(주재), 산정식 총 론팀간사위원 김창섭 공급팀간 사위원 김호철 법제도팀간사위 원 신성철 효율소비팀간사위원 강운영 에경연 연구위원 한택환 서경대 교수, 오대균 에관공팀장 김기호 산자부 국장 장태인 동 북아위 실장 청와대(김성진 비 서관 김성환 행정관 이세준 행 정관), 지속위(정연만 실장 구 도완 연구위원 유성 팀장 박정 욱 과장)	o 1차 보고서 초안 검토
2003.11.19 (에너지정책연구팀 제4차 회의)	지속위	고철환 위원장(주재), 산정식 총 론팀간사위원 김호철 법제도팀 간사위원 신성철 효율소비팀간 사위원 한택환 서경대 교수, 오 대균 에관공팀장 김기호 산자부 국장 고윤화 환경부 국장 박진 우 행정관 (지속위: 정연만 실장 구도완 연구위원 유성 팀 장 박정욱 과장)	o 1차 보고서 초안 검토
2003.11.19 (에너지효율소비연구팀 제3차 회의)	에너지 경제연구 원	유승식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문 위원 장인환 협상대교수, 오대 균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변화협약 대책단팀장 김태호 에너지시민 연대 사무차장 염택진 산자부차 원정책실사무관 방종식 환경부 대기정책과 사무관 박용규 환경 부자구환경담당관실 서기관이성 원 교통개발연구원동북아센터연 구위원 한가주 산업연구원연구 위원 (지속위 엄두용 박사)	o 보고서 작성 방안
2003.11.25 (총론·공론화연구팀 제3차 회의)	지속위	산정식 건국대교수(간사), 정대 연 제주대교수 김종달 경북대교 수 강운영 에경연연구위원 (지 속위: 유성 팀장)	o 총론팀 연구 작업 계획
2003.11.26 (법·제도연구팀 제4차 회의)	지속위	김호철 강남일 이상훈 한택환 (지속위: 박정욱 과장)	o 법제도팀 검토과제 선정 및 계획
2003.11.28 (에너지공급연구팀 제5차 회의)	지속위	김창섭 산업기술대 교수 손양훈 인천대 교수 황주호 경화대 교수 조성한 안동대 교수 김영덕 에경연 박사 석광훈 녹색연합 운영위원 산업자원부 박건수 서기관 환경부 선종오 사무관 (박정욱 과장)	o 주요 에너지원별 검토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3.12. 3 (에너지공급연구 팀 제6차 회의)	지속 위	김창섭 산업기술대 교수, 이팔렬 방통대 교수, 강광규 박사, 황주호 경화대 교수, 석광훈 녹색연합 운영위원, 산업자원부 박건수 서기관, 류연기 사무관 (유성 팀장, 박정욱 과장)	○ 원자력 관련사항 및 최적에너지원 구성 검토방안
2003.12. 5 (에너지공급연구 팀 제7차 회의)	지속 위	김창섭 산업기술대 교수, 손양훈 인천대 교수, 조성한 안동대 교수, 강광규 KRI 박사, 김영덕 에경연 박사, 석광훈 녹색연합 운영위원, 산업자원부 박건수 서기관 (유성 팀장, 박정욱 과장)	○ 원자력 관련사항
2003.12. 9 (에너지정책연구 팀 제5차 회의)	지속 위	고철환 위원장(주재), 신정식 건 국대 교수, 김호철 남부발전 감 사, 강광규 KRI 박사, 김기호 산 자부 국장, 안문석 환경부 과장, 박진우 행정관, 이세준 행정관 (지속위 : 장연만 기획실장, 엄 두용 박사, 박정욱 과장)	○ 1차 보고서 초안 검토
2003.12.11 (법·제도연구팀 제5차 회의)	지속 위	김호철, 감남일, 허은영 문제도, (지속위 박정욱)	○ 에너지정책 기본법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2003.12.12 (에너지공급연구 팀 제8차 회의)	에너지 경제연구 원	김창섭 산업기술대 교수, 손양훈 인천대 교수, 석광훈 녹색연합 운영위원, 산업자원부 박건수 서기관, 환경부 산종오 사무관 (박정욱 과장) * 한수원 노명섭 원자력정책실장, 이춘우 과장	○ 원자력 관련사항 검토 및 최종보고서 작성방안
2003.12.17 (에너지효율소비연 구팀 제4차 회의)	에너지 시민연대	유승식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문 위원, 정인환 협성대교수, 오대 균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변화협 약대책단팀장, 김태호 에너지시 민연대 사무처장, 전대천 산자부 자원정책실과장, 박용규 환경부 자구환경담당관실 서기관, 이성 원 교통개발연구원동북아센터 연구위원 (지속위 : 엄두용박사)	○ 중간보고서 문건 검토, 에너지효율소비 연구팀 핵심제안 과제 선정
2003.12.19 (에너지공급연구 팀 제9차 회의)	지속 위	손양훈 인천대 교수, 조성한 안동대교수, 황주호 경화대교수, 석광훈 녹색연합 운영위원, 산업자원부 박건수 서기관, 환경부 류연기 사무관 (지속위 박정욱 과장)	○ 원자력 관련사항 검토
2003.12.22 (총론·공론화연구 팀 제4차 회의)	지속 위	신정식 건국대교수(간사), 정대 연 제주대교수, 윤순진 서울시립 대교수, 안문수 환경부대기보전 과장 (지속위 : 유성 팀장)	○ 총론팀 원고 검토 및 향후 작업 논의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3.12.29 (에너지공급연구 팀 제10차 회의)	에너지 경제연구 원	김창섭 산업기술대 교수 손양훈 인천대 교수 조성한 안동대 교수 강광규 KE 박사황주호 경희대교수 김영덕 예경연 박사 석광훈 녹색연합 운영위원 산업자원부 박찬수 서기관 환경부 류연기 사무관 (지속위 박정옥 과장)	o 최종보고서(안) 및 향후 작업방향 검토
2003.12.30 (법·제도연구팀 제6차 회의)	지속위	김호철 김남일 문재도 한택환 이상훈 (지속위 박정옥)	o 최종보고서 작성방안

6. 기타회의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3. 1.14 (뉴스레터 편집위원회)	지속위		○ 게재내용 및 편집방법 등 논의
2003. 2.12 (사전검토 소위)	서울 YMCA 회관		○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안) 사전검토
2003. 4. 1 (간담회)	지속위		○ 위원회 기능강화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 보고
2003. 5.20 (간담회)	지속위		○ 인구·고령화대책 방향 등 토의
2003. 5.21 (간담회)	지속위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강화방안 TF 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분야 검토 등
2003. 8.25 (간담회)	지속위		○ 환경분쟁갈등관리 조정팀 구성방안 등 검토
2003. 7.11 (자문회의)	지속위		○ 제3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초안 논의
2003. 1.28 (토론회)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 지탱가능발전을 위한 각국 동향 및 한국정부의 노력평가 ○ 주요환경 현안 및 대책사업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 지속가능한 녹색국가 실현을 위한 노무현 정부과제
2003. 8.21 (토론회)	지속위		○ 분쟁갈등조정 및 관리방안 토의
2003.10.30 (토론회)	지속위 강당	약 170명 관련부처 및 지자체 관계공무원, 지방의제 21 추진기구 관계자, 민간단체, 학계 및 연 구기관의 전문가 등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개편 및 역할강화 방안
2003. 5. 9 (T/F 회의)	지속위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향후 발전방향 등 논의
2003. 5.15 (T/F 회의)	지속위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개편 방안 논의

2003.12.15 (출범기념회의)	청와대	90명 · 위원(57): 지역대표(39), 직능대표(17), 위원장 · 관련부처 장관(2): 행 정자치부(차관), 환경 부(차관) · 청와대(16):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호실장, 정 책수석, 정책관리비서 관, 대변인, 의전비서 관, 홍보기획비서관, 국 정기록비서관, 정책관 리비서관실 박진우행정 관 등 7명 · 지속위(5): 기획운영실 장, 수석연구위원(구도 완), 총괄팀장(백운석), 갈등해결팀장(서철모), 지속위 사무관(김철)	○ 지속위 위원 위촉장 수여 ○ 출범기념 위원회 업무보고 (대통령 주재)
2003.12.26 위원 간담회 (수도권 서울·강원)	서울 롯데호텔		○ 위원간 상견례, 지속위 업무설명 및 활동상황 보고 ○ 업무방향 및 위원회 운영방안 등에 대한 토의, 의견 수렴
2003.12.27 위원 간담회 (수도권 서울·강원)	서울 파레스호텔		○ 위원간 상견례, 지속위 업무설명 및 활동상황 보고 ○ 업무방향 및 위원회 운영방안 등에 대한 토의, 의견 수렴
2003.12.29 위원 간담회 (수도권)	서울 롯데호텔		○ 위원간 상견례, 지속위 업무설명 및 활동상황 보고 ○ 업무방향 및 위원회 운영방안 등에 대한 토의, 의견 수렴

2004년도 회의개최 현황

1. 국정과제회의 대통령 보고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2.12	청와대	국무총리, 관계부처장관(6명), 청와대비서실 관계자, 위원장 및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 위원 등	○ 갈등해결시스템 구축방안 보고 및 토론
2004. 6.24	청와대	관계부처장관(3명),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 위원장 등	○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추진방안 보고 및 토론

2. 본회의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1.16 (제1차 회의)	정부중앙 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장	위원회 위원 77명 등 약 90명	○ 2004년 업무계획 및 업무프로세스 보고 ○ 갈등해결프로세스 구축방안 발표(가톨릭대 이영희 교수) ○ 2004년 추진과제 ○ 갈등해결프로세스와 위원회의 역할, 위원운리규범, 위원회운영세칙,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등
2004. 9.20 (제2차 회의)	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대강당	고철환 위원장 등 위원 29명	○ 200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운영세칙중개정령(안) 등 2개 안건 심의의결
2004.10.15 (제1차 연찬회)		고철환 위원장 등 위원 25명	○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한탄강댐 갈등조정 추진현황,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에 대한 지속가능성 연계방안 추진현황 등
2004.11.12 (제3차 회의)	유성 삼성화재 연구원	고철환 위원장 등 위원 40명	○ 2005년 주요사업추진과제 및 예산 설명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간사·총무회의 및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 갈등관리기본법 추진현황 ○ 한탄강댐관련 갈등조정소위 결정내용 및 공동협의회 운영계획 ○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의사소통구조 진단 및 과제

3. 운영위원회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3.30 (제1차 회의)	제1회의실	박재묵 교수 등 20명	○ 위원회 업무현황 및 주요 추진과제 및 5개 전문위 업무계획 보고 ○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안) 심의
2004. 9.13 (제2차 회의)	제1회의실	고철환 위원장 등 16명	○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운영세칙중개정령(안) 심의
2004.10.28 (제3차 회의)	제1회의실	박재묵 교수 등 13명	○ 보고안건: 지속위 본위원회 연찬회결과, 지속위 간사·총무회의결과 ○ 토의안건: 11월 본회의 운영계획안 및 토론제주안, 기타 제안사항 등
2004.12.22 (제4차 회의)	제1회의실	박재묵 교수 등 14명	○ 보고안건: 2005년 업무계획 골프장건설규제 완화 정책방향(초안)외 ○ 심의안건: 제2차 전력수급(안)에 대한 지속위 검토의견

4. 전문위원회

<갈등관리정책전문위원회>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3.12 (제1차 회의)	제1회의실	갈등관리정책전문위 이재희 위원 등 10명	○ 갈등관리정책연구팀의 활동경과 보고 ○ 갈등관리포럼 운영계획 등 향후 업무계획 논의
2004. 4. 9 ~ 4.10 (제2차 회의)	순천 송광사	갈등관리정책전문위 김승묵 간사 등 17명	○ 갈등예방과 해결방안에 대한 인식 공유 ○ 한탄강댐 갈등관리방향,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방향, 갈등관련 교육훈련계획 등 논의
2004. 9.10 (제3차 회의)		김승묵 위원 등 11명	○ 전문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한탄강댐 갈등조정 추진현황, 갈등관리기본법 및 법·제도 개선
2004.10.11 (제4차 회의)		김승묵 위원 등 12명	○ 한탄강댐갈등조정 추진 현황 및 한탄강댐갈등 소위와 전문위 관계 정립

<대외협력·교육전문위원회>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3.10		이삼열 위원 등 2명	대외협력·교육전문위원회 제1차 간사·총무회의
2004. 3.19 (제1차 회의)	제1회의실	대외협력·교육전문위 이삼열 간사 등 16명	○ 전문위 업무계획(안), WSSD 후속과제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협력 추진방안 ○ 「지방의제21」 실천전략수립 추진방안 등 논의
2004. 3.30		이삼열 위원 등 2명	대외협력·교육전문위원회 제2차 간사·총무회의
2004. 4. 9		이삼열 위원 등 15명	대외협력·교육전문위원회 제1차 워크숍
2004. 5.14 (제2차 회의)	제1회의실	대외협력·교육전문위 이삼열 간사 등 13명	○ 대외원조(ODA) 정책개선방안 워크숍 개최 (6.25) 계획 논의
2004. 9.20		이삼열 위원 등 4명	대외협력·교육전문위원회 제3차 간사회의

<물·국토·자연전문위원회>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3.11 (제1차 회의)	제1회의실	물·국토·자연전문위 지영선 간사 등 21명	○ 전문위원회 업무계획 및 운영 방안 ○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안) 검토
2004. 3.23 (제2차 회의)	제1회의실	물·국토·자연전문위 지영선 간사 등 14명	○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안) 검토소위 검토결과 보고 및 심의 ○ 물관리정책연구팀 연구내용 보고 및 토의
2004. 4. 8 (제3차 회의)	제1회의실	물·국토·자연전문위 지영선 간사 등 19명	○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수립 추진계획 논의 ○ 지속가능한 연안개발 및 해양관리정책수립 추진계획 논의
2004. 4.30~31 (워크숍)		물·국토·자연전문위 정갑식 총무 등 12명	○ 연안개발 및 해양관리방안 발제 및 토론, 물관리정책연구팀 보고서(안) 발표 및 토론, 국토정책연구팀 구성·운영계획 보고 및 토의
2004. 5.20 (제4차 회의)	제1회의실	물·국토·자연전문위 지영선 간사 등 12명	○ 연구팀별(국토정책, 교통정책, 물관리정책) 활동현황 보고 및 점검 ○ 수도정비기본계획 사전 검토
2004. 6.10 (제5차 회의)	제1회의실	물·국토·자연전문위 지영선 간사 등 14명	○ 수도정비기본계획 보완(안) 검토소위 검토결과 보고 및 심의 ○ 연안 및 해양정책연구팀 구성·운영계획 보고 및 토의
2004. 7.15 (제6차 회의)	제1회의실	물·국토·자연전문위 지영선 간사 등 13명	○ 각 연구팀별 연구활동내용 보고 및 연구방향 토의
2004. 9.16 (제7차 회의)	제1회의실	지영선 위원 등 9명	○ 연구팀 연구활동 현황 및 계획보고, 물관리정책연구팀 연구내용 중간발표
2004.10.13 (제8차 회의)	제1회의실	지영선 위원 등 12명	○ 물관리정책연구팀 연구 보고, 새만금에 대한 향후 논의 방향
2004.11.10 (제9차 회의)	제1회의실	지영선 위원 등 9명	○ 골프장 규제완화정책 검토, 연구팀별 연구추진현황 보고, 2005년도 업무계획, 전문위원 추가구성 방안
2004.12. 9 (제10차 회의)	제1회의실	지영선 위원 등 13명	○ 2004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 업무계획(안), 골프장 규제완화정책 검토, 한탄강댐 관련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2005년 신규과제 제안 등

<사회·환경·건강전문위원회>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3. 8		이영자 위원 등 2명	사회·환경·건강전문위원회 제1차 간사·총무회의
2004. 3.10 (제1차 회의)	제1회의실	사회·환경·건강전문위 이영자 간사 등 15명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지속가능발전지 표의 현장적용성 연구 등 향후 추진계획 논의
2004. 4.20		이영자 위원 등 2명	사회·환경·건강전문위원회 제2차 간사·총무회의
2004. 4.23 (제2차 회의)	제1회의실	사회·환경·건강전문위 이영자 간사 등 22명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연구 추진방안, 주요 부처에 지속가능발전부서 설치방안 논의
2004. 6. 4 (제3차 회의)	제1회의실	사회·환경·건강전문위 허상수 위원 등 18명	○ 지속가능발전 기본구상(안) 논의 ○ “부처내지속가능발전부서설치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소위 연구결과 보고 및 토의
2004. 7.29 (제4차 회의)	제1회의실	사회·환경·건강전문위 허상수 위원 등 12명	○ ‘부처내 지속가능발전부서 설치방안(안)’,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과 지속가능발전 연계방안(안)’ 토의
2004. 8.26 (제5차 회의)	제1회의실	사회·환경·건강전문위 이영자 간사 등 12명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연구」 용역 추진현황 및 연구내용점검, 부처내지속가능발전부 서 설치방안 논의
2004.10.14 (제6차 회의)	제1회의실	사회·환경·건강전문위 이영자 간사 등 10명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추진방향, 지속가 능한 노동분야 검토의견, 녹색국가형성의 기초 작업, 녹색국가형성의 대전제 등
2004.11.25 (제7차 회의)	제1회의실	사회·환경·건강전문위 이영자 간사 등 12명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추진방향 등
2004.12.17 (제8차 회의)	제1회의실	사회·환경·건강전문위 이영자 간사 등 18명	○ 전문위원회 및 연구소회 회의 결과 (보고안 건 제1호), 사회·환경·건강전문위원회 2005년 업무계획(안)(보고안건 제2호)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3. 3 (제1차 회의)	제1회의실	에너지·산업전문위 이진 간사 등 20명	○ 위촉장 수여, 위원회 경과보고 ○ 향후 업무계획 등 논의
2004. 3.24 (제2차 회의)	제1회의실	에너지·산업전문위 이진 간사 등 16명	○ 국정과제 보고자료(에너지정책) 연구결과 중 간보고 및 토의 ○ 전문위원회 향후 추진과제 선전 등 논의
2004. 4.23 (제3차 회의)	제1회의실	에너지·산업전문위 이진 간사 등 18명	○ 에너지예측분석팀 및 에너지정책·공론화팀 중간연구결과 보고 ○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검토소위 구성 및 운영방안 논의
2004. 6.11 (제4차 회의)	제1회의실	에너지·산업전문위 이진 간사 등 16명	○ 국정과제보고자료 검토 및 보완사항 토의
2004. 7. 9 (제5차 회의)	제1회의실	에너지·산업전문위 이진 간사 등 15명	○ 48회(6.24)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국정과제 회의 결과보고 및 후속과제 추진계획 논의
2004. 9.10 (제6차 회의)	제1회의실	이진 위원 등 13명	○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및 후속연구팀 중간결과 토의
2004.10. 8 (제7차 회의)	제1회의실	이진 위원 등 15명	○ 고유가시대 에너지정책 에너지기본법, 연구 팀 중간연구결과 토의
2004.11.26 (제8차 회의)	제1회의실	이진 위원 등 15명	○ 4개 연구팀 중간결과보고 및 토의

5. 연구팀 및 소위원회 회의

<에너지대책연구팀>

일 시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1. 7	신성철 위원 등 6명	에너지대책연구팀 에너지효율·소비연구팀 제5차 회의
2004. 1.15	김호철 위원 등 5명	에너지대책연구팀 법·제도연구팀 제7차 회의
2004. 1.26	손양훈 위원 등 3명	에너지대책연구팀 에너지공급연구팀 제11차 회의

<에너지정책연구팀>

일 시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1. 9	정대연 위원 등 4명	에너지정책연구팀 에너지총론·공론화연구팀 제5차 회의
2004. 1. 6	신정식 위원 등 6명	에너지정책연구팀 제6차 간사회의
2004. 1.19	신성철 위원 등 6명	에너지정책연구팀 제7차 간사회의
2004. 1.30	신정식 위원 등 6명	에너지정책연구팀 제8차 간사회의
2004. 2.18	신정식 위원 등 6명	에너지정책연구팀 제9차 간사회의

<2020에너지예측·분석팀>

일 시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2. 9	신성철 위원 등 4명	2020에너지예측·분석팀 제1차 회의
2004. 2.17	원장묵 위원 등 5명	2020에너지예측·분석팀 제2차 회의
2004. 2.23	신성철 위원 등 6명	2020에너지예측·분석팀 제3차 회의
2004. 3. 2	원장묵 위원 등 5명	2020에너지예측·분석팀 제4차 회의
2004. 3.12	신성철 위원 등 6명	2020에너지예측·분석팀 제5차 회의
2004. 3.19	신성철 위원 등 5명	2020에너지예측·분석팀 제6차 회의
2004. 3.29	신성철 위원 등 6명	2020에너지예측·분석팀 제7차 회의
2004. 4. 9	신성철 위원 등 6명	2020에너지예측·분석팀 제8차 회의
2004. 4.16	신성철 위원 등 6명	2020에너지예측·분석팀 제9차 회의
2004. 4.30	신성철 위원 등 6명	2020에너지예측·분석팀 제10차 회의
2004. 5. 6	신성철 위원 등 5명	2020에너지예측·분석팀 제11차 회의
2004. 5.14	신성철 위원 등 6명	2020에너지예측·분석팀 제12차 회의
2004. 5.21	신성철 위원 등 5명	2020에너지예측·분석팀 제13차 회의
2004. 5.28	신성철 위원 등 5명	2020에너지예측·분석팀 제14차 회의
2004. 6. 4	신성철 위원 등 6명	2020에너지예측·분석팀 제15차 회의
2004. 6.12	신성철 위원 등 5명	2020에너지예측·분석팀 제16차 회의
2004. 6.15	오대균 위원 등 3명	2020에너지예측·분석팀 제17차 회의
2004. 6.18	신성철 위원 등 6명	2020에너지예측·분석팀 제18차 회의
2004. 6.21	신성철 위원 등 5명	2020에너지예측·분석팀 제19차 회의

<에너지정책·공론화팀>

일 시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2.20	김창섭 위원 등 4명	에너지정책·공론화팀 제1차 회의
2004. 2.27	김창섭 위원 등 4명	에너지정책·공론화팀 제2차 회의
2004. 3.17	허은녕 위원 등 3명	에너지정책·공론화팀 제3차 회의
2004. 4. 2	허은녕 위원 등 4명	에너지정책·공론화팀 제4차 회의
2004. 4.10	허은녕 위원 등 6명	에너지정책·공론화팀 제5차 회의
2004. 4.19	허은녕 위원 등 4명	에너지정책·공론화팀 제6차 회의
2004. 5. 3	허은녕 위원 등 6명	에너지정책·공론화팀 제7차 회의
2004. 5.10	윤순진 위원 등 2명	에너지정책·공론화팀 제8차 회의

<에너지공론화연구팀>

일 시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9. 7	이필렬 위원 등 4명	에너지정책공론화연구팀 제1차 회의
2004.10.15	이필렬 위원 등 7명	에너지정책공론화연구팀 제2차 회의
2004.10.22	허상수 위원 등 8명	에너지정책공론화연구팀 제3차 회
2004.10.29	허상수 위원 등 8명	에너지정책공론화연구팀 제4차 회의
2004.11. 9	허상수 위원 등 10명	에너지정책공론화연구팀 제5차 회의
2004.11.16	허상수 위원 등 8명	에너지정책공론화연구팀 제6차 회의
2004.11.23	허상수 위원 등 8명	에너지정책공론화연구팀 제7차 회의
2004.11.30	허상수 위원 등 8명	에너지정책공론화연구팀 제8차 회의
2004.12. 7	허상수 위원 등 6명	에너지정책공론화연구팀 제9차 회의
2004.12.14	허상수 위원 등 6명	에너지정책공론화연구팀 제10차 회의
2004.12.28	허상수 위원 등 6명	에너지정책공론화연구팀 제11차 회의

<에너지대안정책 연구팀>

일 시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9. 3	이필렬 위원 등 3명	에너지대안정책연구팀 제1차 회의
2004. 9.10	이필렬 위원 등 3명	에너지대안정책연구팀 제2차 회의
2004. 9.18	이필렬 위원 등 3명	에너지대안정책연구팀 제3차 회의

<에너지기본법(안) 검토연구팀>

일 시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8. 4	강광규 위원 등 3명	지속가능한에너지정책 소위원회 1차회의
2004. 9.23	김호철 위원 등 6명	에너지기본법(안) 검토연구팀 제1차 회의
2004. 9.30	이필렬 위원 등 3명	에너지기본법(안) 검토연구팀 제2차 회의

<에너지수요관리정책연구팀>

일 시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8.13	강광규 위원 등 6명	에너지수요관리정책연구팀 제1차 회의
2004. 8.20	강광규 위원 등 6명	에너지수요관리정책연구팀 제2차 회의
2004. 9. 3	강광규 위원 등 8명	에너지수요관리정책연구팀 제3차 회의
2004. 9.17	강광규 위원 등 6명	에너지수요관리정책연구팀 제4차 회의
2004. 9.24	강광규 위원 등 6명	에너지수요관리정책연구팀 제5차 회의
2004.10. 1	강광규 위원 등 6명	에너지수요관리정책연구팀 제6차 회의
2004.10.22	강광규 위원 등 6명	에너지수요관리정책연구팀 제7차 회의
2004.11.23	강광규 위원 등 6명	에너지수요관리정책연구팀 제8차 회의
2004.12.22	강광규 위원 등 6명	에너지수요관리정책연구팀 제9차 회의

<장기전원구성정책연구팀>

일 시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8.13	김종달 위원 등 3명	장기전원구성정책연구팀 제1차 회의
2004. 8.20	김종달 위원 등 5명	장기전원구성정책연구팀 제2차 회의
2004. 9. 3	김종달 위원 등 6명	장기전원구성정책연구팀 제3차 회의
2004. 9.10	강정민 위원 등 8명	장기전원구성정책연구팀 제4차 회의
2004. 9.18	김종달 위원 등 7명	장기전원구성정책연구팀 제5차 회의
2004. 9.24	김종달 위원 등 6명	장기전원구성정책연구팀 제6차 회의
2004. 9. 7	이필렬 위원 등 3명	전력정책 및 방사성폐기공론화연구팀 제1차 회의
2004.10. 8	김종달 위원 등 7명	장기전원구성정책연구팀 제7차 회의
2004.10.20	김종달 위원 등 5명	장기전원구성정책연구팀 제8차 회의
2004.10.28	김종달 위원 등 3명	장기전원구성정책연구팀 제9차 회의
2004.11. 5	김종달 위원 등 7명	장기전원구성정책연구팀 제10차 회의
2004.11.12	김종달 위원 등 9명	장기전원구성정책연구팀 제11차 회의
2004.11.19	김종달 위원 등 7명	장기전원구성정책연구팀 제12차 회의

<기후변화대응정책연구팀>

일 시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8.13	권원태 위원 등 7명	기후변화대응정책연구팀 제1차 회의
2004. 8.24	윤순진 위원 등 6명	기후변화대응정책연구팀 제2차 회의
2004. 8.31	윤순진 위원 등 6명	기후변화대응정책연구팀 제3차 회의
2004. 9.13	윤순진 위원 등 6명	기후변화대응정책연구팀 제4차 회의
2004. 9.21	윤순진 위원 등 5명	기후변화대응정책연구팀 제5차 회의
2004.10.11	권원태 위원 등 9명	기후변화대응정책연구팀 제6차 회의
2004.10.18	윤순진 위원 등 8명	기후변화대응정책연구팀 제7차 회의
2004.10.25	윤순진 위원 등 7명	기후변화대응정책연구팀 제8차 회의
2004.11. 1	윤순진 위원 등 8명	기후변화대응정책연구팀 제9차 회의
2004.11. 8	윤순진 위원 등 9명	기후변화대응정책연구팀 제10차 회의
2004.11.15	권원태 위원 등 8명	기후변화대응정책연구팀 제11차 회의
2004.11.22	윤순진 위원 등 10명	기후변화대응정책연구팀 제12차 회의
2004.11.29	윤순진 위원 등 6명	기후변화대응정책연구팀 제13차 회의
2004.12.23	윤순진 위원 등 6명	기후변화대응정책연구팀 제14차 회의

<갈등관리기본법제정준비팀>

일 시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1. 3	홍준형 위원 등 5명	법·제도정비팀 제7차 회의
2004. 1.26	홍준형 위원 등 3명	법·제도정비팀 제8차 회의
2004. 3. 8	홍준형 위원 등 7명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준비팀 제1차 회의
2004. 3.18	홍준형 위원 등 3명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준비팀 제2차 회의
2004. 3.26	홍준형 위원 등 2명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준비팀 제3차 회의
2004. 4.12	홍준형 위원 등 4명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준비팀 제4차 회의
2004. 4.28	홍준형 위원 등 6명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준비팀 제5차 회의
2004. 5.10	한귀현 위원 등 2명	갈등관리기본법(안) 소위원회
2004. 5.14	홍준형 위원 등 4명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준비팀 제6차 회의
2004. 5.27	홍준형 위원 등 2명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준비팀 제7차 회의
2004. 8.26	김유환 위원 등 3명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준비팀 제19차 회의

<갈등관리기본법(가칭) 의견수렴 자문회의>

일 시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6. 4	전진숙 위원 등 11명	갈등관리기본법(가칭) 의견수렴 자문회의
2004. 6. 9	김환석 위원 등 11명	갈등관리기본법(가칭) 의견수렴 자문회의
2004. 6.21	김환석 위원 등 9명	갈등관리기본법(가칭) 의견수렴 자문회의

<갈등관리법제정팀>

일 시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7. 1 (11차)	신창현 위원 등 6명	갈등관리기본법(안) 쟁점 논의
2004. 7. 5 (12차)	신창현 위원 등 9명	가칭 사회적합의촉진을 위한 갈등조정기본법 축조심의
2004. 7. 6 (13차)	신창현 위원 등 13명	‘사회적합의 촉진을 위한 갈등조정기본법’쟁점 논의
2004. 7.14 (14차)	신창현 위원 등 7명	갈등영향평가 관련, 갈등 관리위원회 관련, 사회갈등 조정위원회 관련
2004. 7.16 (15차)	신창현 위원 등 4명	갈등기본법(안) 제정추진을 위한 종합검토
2004. 7.20 (16차)	신창현 위원 등 9명	갈등기본법(안) 제정 추진을 위한 종합검토
2004. 8. 6 (17차)	신창현 위원 등 9명	갈등기본법(안) 제정 추진을 위한 종합검토
2004. 8.19 (18차)	신창현 위원 등 7명	갈등기본법(안) 제정 추진을 위한 종합검토
2004. 8.26 (19차)	신창현 위원 등 15명	갈등관리기본법 시안 논의, 공공분쟁 및 갈등 관련 법·제도개선지침안 논의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일 시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2.17	정진승 위원 등 5명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제1차 회의
2004. 2.26	정진승 위원 등 8명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제2차 회의
2004. 3.11	김경 위원 등 5명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제3차 회의
2004. 3.16	정진승 위원 등 11명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제4차 회의
2004. 3.20	정진승 위원 등 5명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제5차 회의
2004. 3.23	정진승 위원 등 5명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제6차 회의
2004. 3.30	정진승 위원 등 6명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제7차 회의
2004. 4. 6	정진승 위원 등 13명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제8차 회의
2004. 4.13	정진승 위원 등 5명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제9차 회의
2004. 4.20	정진승 위원 등 6명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제10차 회의
2004. 4.27	정진승 위원 등 6명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제11차 회의
2004. 5. 4	정진승 위원 등 6명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제12차 회의
2004. 5.11	정진승 위원 등 4명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제13차 회의
2004. 5.20	정진승 위원 등 23명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워크숍
2004. 6.29	정진승 위원 등 5명	한탄강댐 추진 법적절차 검토 소위 제1차 회의

<한탄강문제조정을위한관련당사자 조정회의>

일 시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1. 7	이선우 위원 등 3명	한탄강댐 갈등해결프로세스 디자인 제1차 회의
2004. 4.29	허상수 위원 등 16명	한탄강댐 조정프로세스 정부 환경단체 설명회
2004. 5.20	정진승 위원 등 4명	한탄강댐문제조정관련 당사자회의
2004. 6. 2	정진승 위원 등 15명	한탄강댐문제조정을위한관련당사자 제1차 조정회의
2004. 6. 9	정진승 위원 등 16명	한탄강댐문제조정을위한관련당사자 제2차 조정회의
2004. 6.16	정진승 위원 등 17명	한탄강댐문제조정을위한관련당사자 제3차 조정회의
2004. 6.23	정진승 위원 등 17명	한탄강댐문제조정을위한관련당사자 제4차 조정회의
2004. 6.30	정진승 위원 등 4명	한탄강댐문제조정을위한관련당사자 제5차 조정회의
2004. 7. 7	정진승 위원 등 10명	한탄강댐문제조정을위한관련당사자 제6차 조정회의
2004. 7.14	정진승 위원 등 7명	한탄강댐문제조정을위한관련당사자 제7차 조정회의
2004. 7.21	정진승 위원 등 5명	한탄강댐문제조정을위한관련당사자 제8차조정회의
2004. 7.28	허상수 위원 등 3명	한탄강댐문제조정을위한관련당사자 제9차조정회의
2004. 8. 4	정진승 위원 등 21명	한탄강댐문제조정을위한관련당사자 제10~11차 회의
2004. 8.10	염형철 위원 등 9명	한탄강댐문제조정을위한관련당사자회의 공동현지조사
2004. 8.12	정진승 위원 등 15명	한탄강댐문제조정을위한관련당사자 제12차 조정회의
2004. 8.18	정진승 위원 등 3명	한탄강댐문제조정을위한관련당사자 제13차 조정회의
2004. 8.25	정진승 위원 등 21명	한탄강댐문제조정을위한관련당사자 제14차 회의

일 시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8.26	정진승 위원 등 21명	한탄강댐문제조정을위한관련당사자 제15차 회의
2004. 8.27	정진승 위원 등 21명	한탄강댐문제조정을위한관련당사자 제16차 회의

<한탄강댐문제조정을위한관련당사자회의>

일 시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6.29	정진승 위원 등 4명	한탄강댐문제조정을위한관련당사자회의 법적타당성 검토소위
2004. 8.20	김종원 위원 등 12명	한탄강댐문제조정을위한관련당사자회의 대안검토 기술소위 제5차 회의
2004. 8.23	정진승 위원 등 14명	한탄강댐문제조정을위한관련당사자회의 대안검토 기술소위 제4차 회의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

일 시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5.18	정진승 위원 등 4명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 제1차 회의
2004. 5.25	정진승 위원 등 5명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 제2차 회의
2004. 6. 1	정진승 위원 등 5명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 제3차 회의
2004. 7.12	정진승 위원 등 4명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 제4차 회의
2004. 7.16	홍형표 이원 등 4명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
2004. 8. 3	정진승 위원 등 6명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 제5차 회의
2004. 9. 1	정진승 위원 등 4명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 제6차 회의
2004. 9. 6	정진승 위원 등 9명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
2004. 9. 6	정진승 위원 등 4명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 제7차 회의
2004. 9.10	정진승 위원 등 9명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 제2차 전문가 자문회의
2004. 9.15	정진승 위원 등 9명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 제3차 전문가 자문회의
2004. 9.16	정진승 위원 등 9명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 제4차 전문가 자문회의
2004. 9.18	정진승 위원 등 2명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 제5차 전문가 자문회의
2004. 9.22	정진승 위원 등 5명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 제6차 전문가 자문회의
2004.10. 5	정진승 위원 등 6명	임진강유역 치수대책 결정사항 발표절차 및 최적대안 논의
2004.10. 6	정진승 위원 등 6명	임강유역 홍수피해방지 최적대안 논의
2004.10. 8	정진승 위원 등 7명	최종결과 발표절차 논의 및 최적대안 검토
2004.10.10	정진승 위원 등 7명	환경성분야 자문의견 청취 및 최적대안 논의
2004.10.14	정진승 위원 등 6명	최적대안 결정방법 및 추후 일정 논의
2004.10.25	정진승 위원 등 6명	5개 대안에 대한 평가작업 및 향후 일정 논의
2004.10.26	정진승 위원 등 7명	5개 대안에 대한 평가
2004.10.27	정진승 위원 등 8명	향후 일정 논의 및 5개 대안에 대한 평가
2004.10.27	정진승 위원 등 6명	제1차 평가회의:한탄강댐건설 관련당사자간 갈등조정 프로세스에 관한 자료의 분석·평가를 통한 한탄강댐

일 시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갈등조정 정리 및 개선점과 공공갈등해결 모델 개발안 논의
2004.10.30	정진승 위원 등 6명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방지 대안결정 및 향후 추진 일정 논의
2004.11. 1	정진승 위원 등 6명	최종결정문 작성
2004.11. 4	정진승 위원 등 6명	조정소위 결정 발표에 따른 후속행정조치, 언론홍보와 공동협의회 운영안 논의
2004.11.11	정진승 위원 등 6명	공동협의회 운영원칙 논의
2004.10.26	정진승 위원 등 7명	5개 대안에 대한 평가
2004.11.16	정진승 위원 등 7명	한탄강댐 갈등조정결과 보고 및 공동협의회 운영 관련 제안서 제출
2004.11.25~26	정진승 위원 등 6명	한탄강댐 갈등조정소위원회 워크숍 및 평가회의 :한탄강댐건설 관련당사자간 갈등조정프로세스에 관한 자료 분석·평가 통한 정리 및 개선점과 갈등해결 모델 개발안 논의

<갈등관리워크숍 및 포럼 준비소위>

일 시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3.25	김희은 위원 등 4명	갈등관리포럼준비소위 제1차 회의
2004. 3.25	박재묵 위원 등 6명	갈등관리교육훈련 준비회의
2004. 4. 1	김경 위원 등 4명	갈등관리교육훈련 준비회의
2004. 5.17	김희은 위원 등 3명	갈등관리포럼준비소위 제2차 회의
2004. 5.18	박재묵 위원 등 3명	갈등관리워크숍 준비소위 제1차 회의
2004. 5.25	박재묵 위원 등 3명	갈등관리워크숍 준비소위 제2차 회의
2004. 7. 2	정호원 교수 등 4명	갈등관리세미나 개최
2004. 7.12	박재묵 위원 등 3명	갈등관리워크숍 준비소위 제3차 회의
2004. 7.15	김유환 위원 등 14명	공공분쟁 및 갈등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부처 합동회의
2004. 7.19	박재묵 위원 등 2명	갈등관리워크숍 발제자 회의
2004. 7.23	김선빈 위원 등 4명	갈등관리워크숍 분임토론 진행자회의
2004. 7.28	박재묵 위원 등 12명	갈등관리정책 워크숍 개최
2004. 8.10	박재묵 위원 등 2명	갈등관리워크숍 준비소위 제4차 회의
2004. 8.19	김유환 위원 등 3명	갈등관리시스템 구축관련 부처 1급회의

<물관리정책연구팀>

일 시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1. 7	신영철 위원 등 6명	물관리정책연구준비팀 자문회의
2004. 2. 4	최지용 위원 등 14명	물관리정책연구팀 제1차 회의
2004. 2.13	최지용 위원 등 15명	물관리정책연구팀 제2차 회의

일 시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2.24	김길복 위원 등 4명	물관리정책연구팀 법·제도연구팀 제2차 회의
2004. 2.24	최동진 위원 등 9명	물관리정책연구팀 수량수질연구팀 제2차 회의
2004. 3. 3	지영선 위원 등 6명	물관리정책연구팀 제2차 회의
2004. 3. 5	김길복 위원 등 5명	물관리정책연구팀 법·제도연구팀 제3차 회의
2004. 3. 5	최지용 위원 등 10명	물관리정책연구팀 수량수질연구팀 제4차 회의
2004. 3.16	최동진 위원 등 13명	물관리정책연구팀 제3차 회의
2004. 3.29	최지용 위원 등 8명	물관리정책연구팀 제4차 회의
2004. 4.19	최연홍 위원 등 3명	물관리정책연구팀 편집위원회(TF) 회의
2004. 4.23	최동진 위원 등 10명	물관리정책연구팀 제5차 회의
2004. 5.17	김종원 위원 등 4명	물관리정책연구 T/F팀 제1차 회의
2004. 5.24	최연홍 위원 등 5명	물관리정책연구 T/F팀 제2차 회의
2004. 6. 7	최지용 위원 등 6명	물관리정책연구팀 국정과제보고 준비팀 회의
2004. 6.11	최동진 위원 등 2명	물관리정책연구팀 슬라이드 보고자료 준비회의
2004. 6.11	최연홍 위원 등 14명	물관리정책연구팀 제6차 회의
2004. 6.14	최지용 위원 등 6명	물관리정책연구 국정과제슬라이드준비팀 제5차 회의
2004. 6.18	최동진 위원 등 2명	물관리정책연구팀 슬라이드 보고자료 준비회의
2004. 6.21	최지용 위원 등 5명	물관리정책연구 국정과제슬라이드준비팀 제6차 회의
2004. 6.25	최동진 위원 등 2명	물관리정책연구팀 슬라이드 보고자료 준비회의
2004. 6.28	최지용 위원 등 5명	물관리정책연구 국정과제슬라이드준비팀 제7차 회의
2004. 7. 2	최동진 위원 등 2명	물관리정책연구팀 슬라이드 보고자료 준비회의
2004. 7. 5	최지용 위원 등 5명	물관리정책연구 국정과제슬라이드준비팀 제8차 회의
2004. 7. 9	최동진 위원 등 2명	물관리정책연구팀 슬라이드 보고자료 준비회의
2004. 7. 9	정상용 위원 등 7명	물관리정책연구팀 제7차 회의
2004. 7.12	최지용 위원 등 5명	물관리정책연구 국정과제슬라이드준비팀 제9차 회의
2004. 7.19	최동진 위원 등 3명	물관리정책연구 국정과제슬라이드준비팀 제10차회의
2004. 7.30	김종원 위원 등 4명	물관리정책연구팀 제8차 회의
2004. 8. 20	김종원 위원 등 3명	물관리정책연구팀 검토소위 제4차 회의
2004. 8. 3	이미홍 위원 등 6명	물관리정책연구팀 검토소위 1차회의
2004. 8.12	최동진 위원 등 5명	물관리정책연구팀 검토소위 2차회의
2004. 8.16	이미홍 위원 등 6명	물관리정책연구팀 검토소위 3차회의
2004. 8.27	최지용 위원 등 2명	물관리정책연구팀 연구내용 제1차 부처협의
2004. 9. 2	김원 위원 등 2명	물관리정책연구팀 연구내용 제2차 부처협의
2004. 9. 3	이동률 위원 등 6명	물관리정책연구팀 연구내용 제3차 부처협의
2004. 9. 7	이미홍 위원 등 5명	물관리정책연구팀 연구내용 제4차 부처협의
2004. 9.17	이동률 위원 등 8명	물관리정책연구팀 제9차 회의
2004. 9.23	최동진 위원 등 5명	물관리정책연구팀 제10차 회의
2004.10.18	최동진 위원 등 10명	물관리정책연구팀 제11차 회의
2004.10.25	최동진 위원 등 3명	물관리정책연구팀 제12차 회의

<연안 및 해양정책연구팀>

일 시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5.27	정갑식 위원 등 4명	연안 및 해양분야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제1차 전문가 지문회의
2004. 6. 5	정갑식 위원 등 6명	연안 및 해양분야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제2차 전문가 지문회의
2004. 6.30	정갑식 위원 등	연안 및 해양정책연구팀 제1차 회의
2004. 7.16	정갑식 위원 등 10명	연안 및 해양정책연구팀 해양환경 토론회
2004. 7.23	정갑식 위원 등 10명	연안 및 해양정책연구팀 제2차 회의
2004. 7.30	정갑식 위원 등 5명	연안 및 해양정책연구팀 제1차 총무회의
2004. 8.13	정갑식 위원 등 6명	연안 및 해양정책연구팀 제2차 총무회의
2004. 8.27	정갑식 위원 등 8명	연안 및 해양정책연구팀 제3차 회의
2004. 9.10	정갑식 위원 등 10명	연안 및 해양정책연구팀 제4차 회의
2004. 9.24	정갑식 위원 등 8명	제5차 회의: 해저자원 관련 발제 및 토의, EEZ 관리 방안 관련 발제
2004.10. 8	정갑식 위원 등 8명	제6차 회의: 발전소 온배수 관리방안 관련 발제 및 토의
2004.10.29	정갑식 위원 등 8명	제7차 회의: 해사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외 3개 과제 발제 및 토의
2004.11. 5	정갑식 위원 등 8명	제8차 회의: 연안생태계 현황과 개선책, 수중문화재보호법 제정 등 발제 및 토의
2004.11.19	정갑식 위원 등 8명	제9차 회의: 연안생태계 현황과 개선책
2004.11.26	정갑식 위원 등 19명	제10차 회의: 연안역 균형발전을 위한 신산업화 등 4개 과제 관련 발제 및 토의
2004.12.17	정갑식 위원 등 10명	제11차 회의: 연구보고서 발제 및 토의
2004.12.29	정갑식 위원 등 7명	해양정책보고서 작성팀 제 1차 회의: 연구보고서 작성 방향 토의 및 역할분담 논의

<수도정비기본계획(안) 검토소위>

일 시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5.27	김홍상 위원 등 3명	수도정비기본계획(안) 검토소위 제1차 회의
2004. 6. 7	김홍상 위원 등 7명	수도정비기본계획(안) 검토소위 제2차 회의

<국토정책연구팀>

일 시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5. 7	이창수 위원 등 6명	국토정책연구팀 제1차 회의
2004. 5.21	김홍상 위원 등 8명	국토정책연구팀 제2차 회의
2004. 6. 3	김태희 위원 등 7명	국토정책연구팀 제3차 회의
2004. 6.21	김태희 위원 등 7명	국토정책연구팀 제4차 회의
2004. 7. 5	김태희 위원 등 6명	국토정책연구팀 제5차 회의
2004. 7.19	강현수 위원 등 5명	국토정책연구팀 제6차 회의
2004. 8. 2	강현수 위원 등 7명	국토정책연구팀 제7차 회의
2004. 8.16	오성규 위원 등 4명	국토정책연구팀 제8차 회의
2004. 8.30	이창수 위원 등 7명	국토정책연구팀 제9차 회의
2004. 9.20	김홍상 위원 등 5명	국토정책연구팀 제10차 회의

<교통정책연구팀>

일 시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2.18	조중래 위원 등 3명	교통정책연구팀 제1차 자문회의
2004. 3. 4	이성모 위원 등 3명	교통정책연구팀 제2차 자문회의
2004. 6. 2	조중래 위원 등 15명	교통정책연구팀 제1차 회의
2004. 6.23	조중래 위원 등 13명	교통정책연구팀 제2차 회의
2004. 7. 7	조중래 위원 등 9명	교통정책연구팀 제3차 회의
2004. 7.20	조중래 위원 등 6명	교통정책연구팀 제4차 회의
2004. 8. 4	조중래 위원 등 12명	교통정책연구팀 제5차 회의
2004. 8.17	조중래 위원 등 8명	교통정책연구팀 제6차 회의
2004. 9. 3	김의준 위원 등 8명	교통정책연구팀 제7차 회의
2004. 9.17	김태희 위원 등 6명	교통정책연구팀 제8차 회의

<공공사업 제도개선팀>

일 시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3.11	김유환 위원 등 7명	공공사업 제도개선팀 제1차 회의
2004. 3.25	김유환 위원 등 6명	공공사업 제도개선팀 제2차 회의
2004. 4. 8	전재경 위원 등 5명	공공사업 제도개선팀 제3차 회의
2004. 4.22	김유환 위원 등 7명	공공사업 제도개선팀 제4차 회의
2004. 5. 6	김유환 위원 등 9명	공공사업 제도개선팀 제5차 회의
2004. 5.19	김유환 위원 등 10명	공공사업 제도개선팀 제6차 회의
2004. 6. 3	김유환 위원 등 9명	제도정비팀 제7차 회의
2004. 6.24	김유환 위원 등 6명	제도정비팀 제8차 회의
2004. 7. 6	김유환 위원 등 2명	제도정비팀 제9차 회의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에대한 지속가능성연구소위>

일 시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7. 1 (1차)	허상수 위원 등 4명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과 지속가능발전 연계방안 연구진별 역할분담 연구목차 및 향후일정 등 논의
2004. 7. 8 (2차)	허상수 위원 등 4명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과 지속가능발전 연계방안 초안 검토
2004. 7.16 (3차)	허상수 위원 등 3명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과 지속가능발전 연계방안 초안 검토
2004. 7.21 (4차)	허상수 위원 등 3명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과 지속가능발전 연계방안 검토, 실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정과제 중 지속가능성 평가 검토
2004. 8. 6 (5차)	김귀순 위원 등 4명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과 지속가능발전 연계방안 (안) 검토, 신임위원의 의견수렴 및 역할조정
2004. 9. 8 (6차)	염태영 위원 등 4명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과 지속가능발전 연계방안 추진사항 검토, 위원별 작성자료 검토
2004. 9.16 (7차)	김귀순 위원 등 3명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과 지속가능발전 연계방안 추진사항 검토, 위원별 작성자료 검토

<지속가능발전 기본구상연구팀>

일 시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4. 7 (1차)	허상수 위원 등 8명	연구팀 의의 및 결성 배경 설명, 향후 연구내용에 대한 발제, 연구내용 Focusing
2004. 4.16 (2차)	허상수 위원 등 8명	목차 프로포절에 대한 평가, 새로운 목차 작성
2004. 4.21 (3차)	이시재 위원 등 5명	목차조정, 세부연구내용, 세부연구내용별 연구진 역할분담
2004. 4.30 (4차)	허상수 위원 등 5명	담당분야에 대한 발제 및 토론
2004. 5. 7 (5차)	허상수 위원 등 10명	지속가능발전기본구상(안) 주요내용 및 팀원별 연구분담 등 논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현장적용가능성 연구소위>

일 시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9. 6 (1차)	허상수 위원 등 7명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현장적용가능성 연구전략 연구계획논의
2004.10. 6 (2차)	허상수 위원 등 8명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현장적용가능성 연구목차 집필방향 및 집필자 결정
2004.11. 3 (3차)	허상수 위원 등 8명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현장적용가능성 주요 분야별 연구내용 검토
2004.12.3~4 (4차)	허상수 위원 등 6명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현장적용가능성 주요 분야별 연구 내용 검토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연구소위>

일 시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4. 8 (1차)	허상수 위원 등 5명	연구추진방향, 연구내용, 연구기관, 지속위와 부처 지속가능발전팀과의 연계성 확보방안 등 논의
2004. 6.25 (2차)	허상수 위원 등 4명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연구소위 제2차 회의
2004. 8.28 (3차)	허상수 위원 등 3명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계획 논의
2004. 9.23 (4차)	허상수 위원 등 3명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 유해화학물질 전략
2004.10. 1 (5차)	허상수 위원 등 4명	보건·건강분야 지속가능발전 전략
2004.10. 1 (6차)	허상수 위원 등 5명	일본의 순환형 사회
2004.11.18 (7차)	허상수 위원 등 5명	지속가능성 개념 그 의미와 실현가능성
2004.12. 9 (8차)	허상수 위원 등 4명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연구계획 논의
2004.12.23 (9차)	허상수 위원 등 4명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연구소위 운영안 2005년 추진 전략

<부처내 지속가능발전부서 연구소위>

일 시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5. 7	문태훈 위원 등 4명	부처내 지속가능발전부서 연구소위 제1차 회의
2004. 6.23	허상수 위원 등 5명	부처내 지속가능발전부서 연구소위 제2차 회의
2004. 7. 9	허상수 위원 등 3명	부처내 지속가능발전부서 연구소위 제3차 회의
2004. 7.16	허상수 위원 등 4명	부처내 지속가능발전부서 연구소위 제4차 회의
2004. 8.13	손혁재 위원 등 3명	부처내 지속가능발전부서 연구소위 제5차 회의
2004. 9. 2	손혁재 위원 등 3명	부처내 지속가능발전부서 연구소위 제6차 회의
2004. 9. 9	손혁재 위원 등 3명	부처내 지속가능발전부서 연구소위 제7차 회의

<지방의제21 연구팀,소위>

일 시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5.11	조명래 위원 등 4명	지방의제21 연구팀 제1차 회의
2004. 5.14	조명래 위원 등 6명	지방의제21 소위 제1차 회의
2004. 5.29	조명래 위원 등 8명	지방의제21 소위 및 연구팀 확대회의
2004. 6.19	조명래 위원 등 6명	지방의제21 연구팀 제2차 회의
2004. 7. 8	조명래 위원 등 7명	지방의제21 연구팀 제3차 회의
2004. 7.20	조명래 위원 등 6명	지방의제21 연구팀 제4차 회의
2004. 8. 3	조명래 위원 등 4명	지방의제21 연구팀 제5차 회의

일 시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8.27	조명래 위원 등 4명	지방의제21 연구팀 제6차 회의
2004. 9.11	조명래 위원 등 17명	지방의제21 지역간담회 제1차 회의
2004.10. 7	조명래 위원 등 22명	지방의제21 지역간담회 제2차 회의
2004.10. 7	조명래 위원 등 8명	지방의제21 소위 및 연구팀 확대회의 제2차 회의
2004.10.16	조명래 위원 등 13명	지방의제21 지역간담회 제3차 회의
2004.11. 4	조명래 위원 등 7명	지방의제21 연구팀 제7차 회의
2004.11. 4	조명래 위원 등 7명	지방의제21 소위 및 연구팀 확대회의 제3차 회의
2004.12. 4	조명래 위원 등 7명	지방의제21 연구팀 제8차 회의
2004.12.14	유문종 위원 등 7명	방의제21 소위원회 제2차 회의

<국제협력 및 교육 소위>

일 시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4.30	신혜수 위원 등 5명	국제협력소위원회 제1차 회의
2004. 6.17	이삼열 위원 등 8명	국제협력소위원회 제2차 회의
2004. 6.15	이삼열 위원 등 10명	교육소위원회 제1차 회의
2004. 7.16	이삼열 위원 등 7명	교육소위원회 제2차 회의
2004.10. 8	이삼열 위원 등 10명	교육소위원회 제3차 회의
2004.10.13	이삼열 위원 등 3명	국제협력소위원회 간사회의 제1차 회의
2004.10.21	신혜수 위원 등 7명	국제협력소위원회 제3차 회의
2004.11.10	신혜수 위원 등 7명	국제협력소위원회 제4차 회의
2004.11.12	이삼열 위원 등 6명	교육소위원회 제4차 회의
2004.12. 7	신혜수 위원 등 9명	국제협력소위원회 제5차 회의
2004.12.14	이삼열 위원 등 7명	교육소위원회 제5차 회의
2004.12.20	남상민 위원 등 4명	동아시아NCSD준비팀 제2차 회의
2004.12.22	신혜수 위원 등 8명	국제협력소위원회 제6차 회의

6.기타회의

일 시	참석자	주요토의내용
2004. 2. 4	허상수 위원 등 4명	총무단 회의(5개 전문위)
2004. 2.10	김승묵 위원 등 12명	국정과제회의 내부보고협의
2004. 6.25	권을 위원 등 4명	대외원조(ODA)정책 내부워크샵
2004. 9.11	조명래 위원 등 16명	지방의제21제도화방안연구를 위한 호남충청지역간담회

2005년도 회의개최 현황

<본위원회>

일시(장소)	참석자	주요 논의결과
'05.1.7 (대덕컨벤션타운)	고철환 위원장 등 위원 43명	-환경비상시국회의 등 주요 현안을 업무계획에 반영방향 논의 -동아시아 NCSD회의 개최계획 논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재 개발·보급 논의 등
'05.4.29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	고철환 위원장 등 위원 39명	-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정책과제 논의 및 토론
'05.10.12 (한국여성개발 원 국제회의장)	고철환 위원장 등 위원 32명	-제3기 활동 및 평가보고서 발간 계획보고 -전문위원회별 활동평가보고 -제3기 위원회 활동 및 차기 위원회에 대한 제언 등
'05.12.12 (서울그랜드 힐튼 호텔)	고철환 위원장 등 위원 33명	-제3기 활동 및 평가보고서 발간 보고 -4/4분기 대통령 서면보고 등 정책수립안 보고 -제3기 위원회 활동보고 등

<운영위원회>

일시(장소)	참석자	주요 논의결과
'05.5.18 (지속위회의실)	고철환 위원장 등 위원 6명	-지속가능발전 비전, 목표 , 정책과제(단기, 장기), 추진체계 토의
'05.8.19 (지속위회의실)	고철환 위원장 등 위원 10명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활동백서 발간계획(안) 논의 -2005년도 하반기 본회의 개최 계획(안)논의

<사회환경·건강전문위원회>

일시(장소)	참석자(내부)	주요 논의결과
2005.1.20 (지속가능발전 위원회회의실)	사회환경건강전문위 14명	- 조영숙, 권영근 위원 등이 사회저변층(소외계층) 에 대한 복지정책 자문안의 범주(주제)를 검토, 설정하여 제안하기로 함 - 지속위 전체차원에서 주요 국책사업 또는 현안 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대외협력교육전문위와 공동으로 환경정보센터 추진안에 대한 검토 필요함
2005.3.31 (지속가능발전 위원회회의실)	사회환경건강전문위 13명	- 9차회의시 논의된 사회저변층(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자문안에 대해 차기회의에서 여성, 노 동분야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영숙위원이 발제함

일시(장소)	참석자(내부)	주요 논의결과
2005.6.2 (지속가능발전 위원회회의실)	사회환경건강전문위 19명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소위검토결과가 최종보고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을 위한 연구소위를 한번 더 개최하여 소위의견을 보고기로 합의 - 연구소위에서는 4차례의 소위 회의를 통해 보고서를 집중검토하여 검토의견을 연구팀에 주었으며, 이에 소위활동을 종료하였으면 함.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은 2002년부터 수립계획중에 있었으며, 인수위보고서 및 참여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있음.
2005.6.14 (지속가능발전 위원회회의실)	사회환경건강전문위 19명	- 금일회의시 제시된 의견과 기재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주제별 분류로 작성된 양식에 따라 기획운영실에서 작성하여 위원님께 송부함. - 국가환경종합계획(안) 검토의견은 차기회의에서 전문위 검토의견으로 의결하기로 함.
2005.6.21 (지속가능발전 위원회회의실)	사회환경건강전문위 11명	- 국가환경종합계획(안) 검토의견을 의결함 - 운영위원회 및 본위원회 심의 후 환경부 통보 예정
2005.7.7~ 7.8 (지속가능발전 위원회회의실)	사회환경건강전문위 10명	- 지속가능위가 참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대화채널로써의 역할 수행해야 함 - 제3기 역할과 실적을 토론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제4기의 추진방향을 논의해야 하므로 운영위 차원에서 논의함 - 이행계획 수립과제 선정방안(안)에 대하여 추가토의 할 필요 있음. - 지속가능발전지표 연구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하고 보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일시(장소)	참석자(내부)	주요 논의결과
2005. 7.26 (지속가능발전 위원회회의실)	사회환경건강전문위13명	- 현재 진행중인 연구는 과거 10년간의 통계자료를 기본으로 변화추세를 분석하여 각 지표별로 상관관계를 연구 하는것임 - 부문별 전략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불명확하며, Paper Work을 통해 만든다 해도 연구자체로 끝나고 실행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이보다는 지속가능 발전 정착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센타, 지속가능발전이행 촉진법등이 우선되어야할 것임 - WSSD 이행계획을 기준하여 작성하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내용도 추가될 필요가 있음
2005.8.25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회의실)	사회환경건강전문위15명	- 이행계획 수립 시 수립지침(안)에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 - 부처 이행계획 수립 후 검토하기보다는 초안 작성과정에 참여하여 계획이 잘 수립될수록 자문 - 사회·환경·건강 전문위 건의로 운영위원회 의결한 토론회 개최는 활동 및 평가보고서 초안이 작성 된 후에 개최하는 것으로 운영위에 건의
'05. 9.23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회의실)	사회환경건강전문위14명	-전문위원회(16차) 회의결과 보고 -위원회 구조개혁방안 작성계획안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활동 및 평가 보고서 초안발표 및 검토
'05.10.21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회의실)	사회환경건강전문위13명	-전문위원회(17차) 회의결과 보고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추진현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직 및 운영 개선방안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현장적용가능성 연구
'05.11.25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회의실)	사회환경건강전문위11명	-전문위원회(18차) 회의결과 보고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현장적용가능성 연구 향 후 추진 방안 -국가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과업 지시서 보고

<물·국토·자연전문위원회>

일시(장소)	참석자	주요 논의결과
'05.1.13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회의실)	전문위원9명(내부)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등 업무계획 보고
'05.2.17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회의실)	전문위원11명(내부)	-도로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소위 구성하여 검토
'05.3.10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회의실)	전문위원 8명(내부)	-대중교통이용률제고방안, 사전환경성검토, 발전소온배수 대책 각각 지적
'05.3.31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회의실)	전문위원 7명(내부), 건교부	-본 회의 의견과 검토소위 의견을 종합하 여 지속위 공식의견으로 정리
'05.4.28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회의실)	전문위원18명(내부)	-이창희 위원 등 10명 전문위원 추가 위촉 -오성규 위원 협동총무 선출 -교통정책안, 국토정책안, 연안해양정책안
'05.5.26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회의실)	전문위원14명(내부)	-지속가능발전 비전 국정과제조정회의 상정 -오성규, 이재준 국가환경종합계획안 검토 -세계환경의날 비전선포 준비 만전 당부
'05.6.16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회의실)	전문위원13명(내부)	-물관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 요망 -기존 국토정책연구팀에서 면밀히 준비 -문제점 및 개선사항 중심으로 백서 수록
'05.7.14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회의실)	전문위원16명(내부)	-차기전문위원회에서 재논의 -온배수 및 하구둑의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연구팀 구성, 내용 수정 및 보완 후 의결
'05.11.17 (지속위 회의실)	전문위원12명(내부)	-제3기 물·국토·자연전문위원회 활동 및 평가 -'05년 국정과제 회의 추진결과 총괄보고 -'수도권정비계획' 검토소위 검토의견 심의의결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

일시(장소)	참석자	주요 논의결과
2005.2.25 (지속가능발전 위원회회의실)	이진간사등 11명	-구체적 연구범위 및 용어 관련사항은 조만간 구성예정인 연구팀에 위임하여 추진키로 함. -장기전원구성정책연구팀 연구결과는 다음 전문위에 재상정하여 논의키로 함
2005.5.13 (지속가능발전 위원회회의실)	이진간사등 15명	-기후변화대응정책(안) 및 장기전원구성 정책(안) 보고내용에 대한 토론
2005.9.2 (올림픽아호텔)	이진간사등 19명	-후속과제연구팀 연구결과에 대한 토론
2005.6.14 (프레스 센터)	183명	-교토의정서발효이후국내기업대응방안 세미나(정부정책 및 기업대응사례 발표)
'05.12. 9 (지속가능발전 위원회회의실)	전문위원 15명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참석결과 -제3차 전력수급계획 수립관련 자문팀 구성안 등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

일시(장소)	참석자	주요 논의결과
2005. 3. 12 (지속가능발전 위원회회의실)	위원10명, 행정팀 4명	- 갈등관리전문가 포럼 및 워크숍 계획 관련 명칭 변경 - 1차 포럼의 주제는 '참여적 의사결정'으로 하고 준비팀을 구성하여 준비
2005. 4. 15 (지속가능발전 위원회회의실)	위원10명 ,행정팀4명	- 갈등관리 포럼 개최 관련: 포럼의 명칭 주제 일정 등 확정 -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워크숍은 준비팀을 구성하여 추진 계획 수립하여 보고 방침
2005. 6. 3 (지속가능발전 위원회회의실)	위원8명, 행정팀3명	- 갈등관리 교재개발 및 전문가 워크숍은 준비위원회 (위원장 : 박재묵 위원)를 구성하여 세부 사항 준비 추진
2005 7. 18 (지속가능발전 위원회회의실)	위원9명, 행정팀3명	- 갈등관리교재개발 및 워크숍 계획 보고 - 갈등관리 교재개발 및 전문가 워크숍은 준비위원회 (위원장: 박재묵 위원)를 구성하여 세부 사항 준비 추진
2005.8. 23 (지속가능발전 위원회회의실)	위원9명, 행정팀3명	- 갈등관리교재개발 및 워크숍 준비 보고 - 지속위 제3기 활동백서 발간 준비
'05. 9.23 (지속가능발전 위원회회의실)	전문위원 8명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워크숍 결과 보고 -제3기 평가안 토의 -한탄강댐 내부평가TF팀 활동 중간보고 및 토의
'05.10.27 (지속가능발전 위원회회의실)	전문위원 8명	-갈등정책포럼 구성 운영방안 보고 -갈등사례분석모델 개발 연구용역 추진계획 보 고 및 토의 -한탄강댐 갈등조정 기록보관 매뉴얼 작성 및 기록보관작업계획 보고
'05.11.30 (지속가능발전 위원회회의실)	전문위원 11명	-갈등정책포럼 추진현황보고 -제2차 갈등관리 전문가양성 워크숍 개최결 과 및 평가 보고 -법·제도개선연구결과 보고 및 서면검토 의결

<대외협력 · 교육전문위원회>

일시	참석자	주요 논의결과
'05.1.20 (지속가능발전 위원회회의실)	위원 13명 (내부)	-향후 ODA관련 정부정책 및 예산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와 협의 전국적 지역 행사에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을 발표 -지속가능발전교육연구팀을 구성 연구(2월부터)
'05.2.23 (지속가능발전 위원회회의실)	위원 9명 (내부)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방지속가능발전전략 등에서의 '지방' 대신 '지역'이라는 문구를 사용 -지방의제21제도화를 위한 법령 개정부문에 애로사항 기대효과를 보완 -UN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의 중요성을 감안 교육소위와 연구팀을 기능적면에서 운영함
'05.4.1 (지속가능발전 위원회회의실)	위원12명 (내부) 연구팀3명 (내부)	-동아시아NCSD회의 준비팀 구성 -영국 지속가능발전위원회(SDC) 주최 국제 회의 후속조치 사항 -지방의제21제도화방안연구에서 제안된 사항을 계속 논의키로 함
'05.5.19 (지속가능발전 위원회회의실)	위원 16명 (내부)	-동아시아 NCSD에 대표성 있는 중국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함 -협동총무로 유성 위원을 선임함
'05.6.29 (지속가능발전 위원회회의실)	위원 17명 (내부)	-MDG+5 정상회의('05.9.14~15, 뉴욕) 대응을 위해 지속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단체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7.18)키로 함 -지속가능발전교육 정책안과 일본 ESD-J의 방문전은 계획대로 추진키로 함 -제7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는 지속위 공동 주최가 아닌 적극 '후원'으로 협력키로 함 -전문위 연구팀(2)은 해소하고 소위원회(3)은 소위별로 논의를 거쳐 결정함 -아시아NCSD워크숍 개최계획은 보고안대로 추진함

일시	참석자	주요 논의결과
'05.7.21 (지속가능발전 위원회회의실)	위원 15명 (내부)	-지속가능발전교육 정책(안) 보고는 9월말 완료토록 함 -아시아 NCSD워크숍은 시일을 감안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함 -지방의제21전국대회 후원은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키로 함 -MDG+5 관련 공식보고서외 홍보브로슈어 제작을 건의키로 함
'05.8.23(지속가 능발전 위원회회의실)	위원 14명 (내부)	-동아시아NCSD워크숍준비, 제60차 유엔총회 MDG+5보고서 작성 지원등 당면사업은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국제협력소위가 중심역할을 계속하기로 함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구결과는 향후 이행방안 수립이 관건이고, 이를 위해 금년 10월내 관계기관 등이 참가하는 워크숍을 개최함 -지방의제21전국대회 후원은 수용가능범위안에서 정책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함 -제3기 지속위 활동 및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해 그 초안을 수정, 8월말까지 사무국에 송부키로 함
'05. 9.29 (서면심의)	위원 20명 (내부)	-3기 활동 및 평가보고서 검토(ODA, 교육, 지방의제, 전문위원회 활동평가) -본위원회 보고내용 검토(전문위 평가 및 4기 제안)
'05. 12. 1 (지속가능발전 위원회회의실)	위원 16명 (내부)	-제3기 소위별 활동평가(국제협력소위, 지방의제21소위, 교육소위) -제3기 전문위원회 전체활동평가 -제4기 위원회에의 제안사항

2006년도 회의개최 현황

□ 본위원회

개최일자	참석자	안 건	비 고
7. 7. (1차)	18명 ○위원장 ○당연직 위원(6명) -환경부장관, 행자부2차관, 해수부차관, 산자부 산업 정책본부장, 건교부정책홍보 관리실장 ○위촉직 위원(11명) -이진 · 황희연 · 신창현 · 장재연 · 김재옥 · 박종식 · 이은희 · 김희은 · 박오순 · 박영숙 · 윤순진 위원	○심의안건 : 3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행정중심도시 건설기본계획(안) 검토의견 -개발과 보전의 통합적 국토 관리체계 구축방안 ○보고안건 : 4건 -200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5일제대비 교육과정 개정 시안 검토의견 -제3차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검토의견 -제1·2차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10.18 (2차)	17명 ○위원장 ○당연직 위원(7명) -환경부장관, 행자부2차관, 산자부 산업정책본부장, 건교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기획 예산처 재정운용실장 ○위촉직 위원(10명) -김희은 · 문국현 · 박영숙 · 박오순 · 손양훈 · 윤서성 · 윤순진·이진·이은희·장재연 위원	○심의안건 : 1건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안) ○보고안건 : 3건 -환경교육발전계획 지속가능성 검토의견 -제81회 국정과제회의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11.22 (3차)	12명 ○위원장 ○위촉직 위원(11명) -김재옥 · 박종식 · 신창현 · 윤순진 · 이민부 · 이은희 · 이진 · 윤순진 · 장재연 · 최형식 · 한경구 · 황희연 위원	○심의안건 : 1건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검토결과 ○보고안건 : 3건 -지방의 지속가능발전로드맵(안)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 국무회의 보고결과 -아·태지역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이행 UN회의 개최계획	위촉 위원만 참석 당연직 위원은 서면심의 (농림부, 산자부, 복지부, 환경부, 건교부, 해수부 에서 회신)

□ 운영위원회

개최일자	참석자	안 건	비 고
5. 11. (1차)	○위원장, 기획운영실장, ○장재연 · 신창현 · 손양훈 간사위원, 이창수 위원	○주요 논의내용 -본위원회 총무위원 지명 및 전문 위원 확정 -위원워크숍 일정 논의 -자문위원 위촉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14 (2차)	9명 ○위원장, 기획운영실장, ○장재연 · 신창현 · 황희연 · 오성규 · 정갑식 · 최승국 · 김택천 위원	○심의안건 : 1건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안) ○보고안건 : 3건 -환경교육발전계획 지속가능성 검토의견 -제81회 국정과제회의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8.17 (3차)	7명 ○위원장, 기획운영실장 황희연 · 신창현 · 오성규 · 최승국 · 김택천위원	○심의안건 : 3건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안) -지속가능발전법 마련을 위한 추진방향(안) -지속위 창립 6주년 기념행사 개최 계획(안) ○보고안건 : 1건 -지방지속가능발전 로드맵 수립 추진현황	
11.16 (4차)	5명 ○위원장, 기획운영실장, 황희연 · 신창현 · 최승국 위원	○검토안건 : 3건 -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검토결과(안) -지속가능한 터널 건설체계 마련(안) -지속가능한 하천 · 하구 관리방안(안) ○보고안건 : 5건 - 지방지속가능발전 로드맵 수립 추진현황 -아 · 태지역 지속가능발전 전략이행 UN회의 개최계획 -지속가능한 차수 국제심포지엄 개최계획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보고 결과 및 후속조치 -'06. 하반기 위원 워크숍 계획	

□ 자문위원회(위원수 30명)

개최일자	참석자	안 건	비 고
5. 23. (1차)	14명 ○ 김귀곤 · 김동한 · 김상열 · 김재범 · 노윤희 · 박영숙 · 박재일 · 이병철 · 이삼열 · 이상화 · 이선종 · 이정자 · 진원 · 최병모위원	○ 주요 논의내용 - 제4기 위원회 비전 및 활동방향 보고 - 주요핵심분야 지속가능발전 전략 과제 소개 - 위원회 발전방향 등에 대한 논의	
10.12 (2차)	9명 ○ 고철환 · 김귀곤 · 김동한 · 박재일 · 윤준하 · 이삼열 · 이정자 · 진원 · 최열위원	○ 주요 논의내용 : 2건 -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안) -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 체계 구축(안)	

□ 본위원(위촉위원), 운영위원 간담회

개최일자	참석자	안 건	비 고
10. 13. (1차)	11명 ○ 위원장 ○ 본위원 : 박종식 · 신창현 · 윤서성 · 이은희 · 장재연 · 황희연위원 ○ 운영위 : 오성규 · 정갑식 · 최승국위원	○ 주요 논의안건 -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안) -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 체계 구축(안)	

□ 위원(본위원, 전문위원) 합동워크숍

개최일자	참석자	안 건	비 고
5.27. (1차)	69명 ○ 위원장 ○ 본위원 : 13 ○ 전문위원 : 55명	○ 주요 내용 - 위원회 4기 비전 및 활동방향 논의 - 행정중심도시 건설기본계획(안) 특강 및 검토	

2007년도 회의개최 현황

□ 본위원회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안 건
'07.3.23 (4차)	지속위 (618호)	19명 참석 ○ 위원장 ○ 당연직 위원(5명) - 농림부(차관), 복지부(정책홍보관리실장), 환경부(환경정책실장), 해수부(해양정책본부장), 건교부(수자원기획관) ○ 위촉직 위원(13명) - 김재옥 · 박영숙 · 박종식 · 신창현 · 윤서성 · 윤순진 · 손양훈 · 이민부 · 이태훈 · 장재연 · 한경구 · 최형식 · 황희연위원	○ 심의안건 : 3건 - 지속가능한 하천 · 하구역 통합 관리체계 구축 - 대형국책사업의 추진에 따른 환경갈등 해소방안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추진 ○ 보고안건 : 3건 -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어린이건강 종합대책(안) - 지방지속가능발전 로드맵 수립 및 실행방안 - 아태지역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유엔회의 결과
'07.7.4 (5차)	지속위 (618호)	20명 참석 ○ 위원장 ○ 당연직 위원(7명) - 행자부(2차관), 산자부(기술표준원장), 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해수부(해양정책본부장), 건교부(광역교통기획관), 예산처(재정운용실장) ○ 위촉직 위원(12명) - 김재옥 · 김희은 · 박영숙 · 박종식 · 신창현 · 윤서성 · 이은희 · 이진 · 장재연 · 황희연 · 이태훈 · 이민부위원	○ 심의안건 : 3건 - 어린이 건강 대책(안) - 댐건설장기 수정계획(안) 검토 의견 -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안) 검토의견 ○ 보고안건 : 3건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추진현황 - 지방지속가능발전 로드맵 수립 및 추진계획 - 장항 갯벌매립사업 중단 및 정부 대안추진 경과보고

'07.9.19 (6차)	지속위 (618호)	20명 참석 ○ 위원장 ○ 당연직 위원(4명) - 환경부(환경정책실장), 건교부(광역교통기획관) - 서면의견 제출 :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 위촉직 위원(15명) - 김희은 · 박영숙 · 박종식 · 신창현 · 윤순진 · 이진 · 장재연 · 한경구 · 황희연 · 이태훈위원 - 위임장 제출 : 김정옥 · 최형식 · 이은희 · 이민부 · 허동수 위원	○ 심의안건 : 2건 -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 수정(안) 검토의견 -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 수정(안) 검토의견 ○ 보고안건 : 2건 - 제1회 지속가능발전주간 행사계획 - 어린이건강 대책 후속조치 계획
'07.11.21 (서면회의)		서면회의 ○ 정회성 위원 검토의견 제출	○ 심의안건 : 1건 - 제5차 산림기본계획(안) 검토의견
'07.12.14 (7차)	지속위 (618호)	19명 참석 ○ 위원장 ○ 당연직 위원(3명) - 환경부(차관), 복지부(정책홍보관리실장), 건교부(국토균형발전본부장) ○ 위촉직 위원(15명) - 김정옥 · 박종식 · 윤순진 · 이은희 · 장재연 · 한경구 · 황희연 · 이민부위원 - 위임장 제출 : 이태훈 · 정회성 · 김재옥 · 박영숙 · 김희은 · 신창현 · 허동수 위원	○ 심의안건 : 1건 -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대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건의 방안 ○ 보고안건 : 2건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안) -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표준(안)

□ 운영위원회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안 건
'07.6.14 (5차)	지속위 (618호)	7명 참석 ○위원장, 기획운영실장, ○장재연 · 이미영 · 신창현 · 김택천 · 김재경 위원	○심의안건 : 3건 -어린이 건강 현안대책 -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안) 검토의견 - 댐건설장기계획(안) 검토의견 ○보고안건 : 3건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추진 현황 -지방지속가능발전 로드맵 추진계획 -장항 갯벌매립사업 중단 및 정부 대안 추진 경과
'07.9.14 (6차)	지속위 (618호)	7명 참석 ○위원장, 기획운영실장, ○장재연 · 황희연 · 최승국 · 신창현 · 김재경 위원	○심의안건 : 2건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 수정(안) 검토의견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 수정(안) 검토의견 ○보고안건 : 3건 -제1회 지속가능발전주간 행사 계획 -지속가능발전주간 기념식 및 토론회 계획 -어린이건강 대책 후속조치 계획
'07.10.31 (서면회의)		서면회의	○심의안건 : 1건 -제5차 산림기본계획(안) 검토의견
'07.12.5 (7차)	지속위 (605호)	7명 참석 ○위원장, 기획운영실장, ○장재연 · 최승국 · 신창현 · 김택천 위원(김해룡 외대 교수) ○위임장 제출 : 김재경 위 원	○안건 : 2건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안” 관련 검토 -지속위 제4기 위원회 전체회의 준비

□ 자문위원회(위원수 30명)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안 건
'07.2.7	한정식당 (미당) (오찬간담회)	13명 참석 ○위원장 ○자문위원(12명) - 강문규 · 고철환 · 김동한 · 박영숙 · 박은경 · 손병두 · 송보경 · 신혜수 · 이병철 · 정진승 · 조건호 · 최병모위원	○주요 논의내용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

□ 본위원(위촉위원), 운영위원 간담회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안 건
'07.1.31 (본위원회)	그랜드 힐튼호텔 (오찬 간담회)	17명 참석 ○위원장 ○위촉직 위원(16명) -김재옥 · 김희은 · 박영숙 · 박종식 · 신창현 · 윤서성 · 윤순진 · 이진 · 이민부 · 이은희 · 이태훈 · 장재연 · 황희연 · 허동수 · 한경구 · 최형식 위원	○안건 : 1건 - 2007년 업무계획 보고

□ 위원(본위원, 자문위원, 갈등특위위원,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안 건
'07.12.10	은행회관 국제회의장	70명 참석 ○위원장 ○본위원(8명) -김재옥 · 김희은 · 박종식 · 이태훈 · 이민부 · 이은희 · 정희성 · 이진 위원 ○자문위원(5명) -김상희 · 김귀곤 · 윤준하 · 이병철 · 조건호 ○초청자문위원(3명) -염태영 · 김종천 · 박창석 위원 ○갈등조정특별위원(16명) -신창현 · 강태재 · 고숙희 · 박현근 · 김보금 · 박종근 · 박홍석 · 서상호 · 이영남 · 조송자 · 홍재웅 · 최현복 · 박동석 · 정용하 · 김태숙 · 이성근 위원 ○이행전문위원(14명) -김택천 · 김병완 · 박태윤 · 박형서 · 성정희 · 유문종 · 유미호 · 이형용 · 차명재 · 최석진 · 최진선 · 남미정 · 이정수 · 정선순 위원 ○에너지 · 산업전문위원(11명) -손양훈 · 허은녕 · 이병욱 · 김미화 · 김창섭 · 조성경 · 남기석 · 조근형 · 김종대 · 신철호 · 김수덕 위원 ○국토 · 자연전문위원(7명) -황희연 · 김홍상 · 이경기 · 이승일 · 이창희 · 정갑식 · 변병설 위원 ○사회 · 건강전문위원(5명) -장재연 · 여진구 · 이필원 · 임중한 · 허상수 위원	○회의내용 -정책보고서(지속가능발전의 확산) 보고 -위원회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박종식 위원) -전문위원별 분임토의 및 결과 발표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지속위의 역할 발표 및 종합토론

□ 갈등조정특별위원회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안 건
'07.3.23 (1차)	지속위 (618호)	26명 참석 ○위원장 ○특위위원 : 23 ○국정과제국장 등 2	○주요 내용 -갈등조정특위 예비과제 추진 경과 보고 -‘군사시설 이전 및 신설 갈등’ 연구과제는 ‘제주도 해군기지 설치 갈등’ 관련 4월중 국방부와 논의 후 추진방안을 결정기로 함 -‘에너지 가격정책 공론화 과제’ 발제 및 추진방향 논의
'07.7.4	지속위 (618호)	24명 참석 ○위원장 ○특위위원 : 20 ○기획운영실장 등 3	○주요 내용 -심의안건 : 심야전기제도 시 민배심원단 정책권고안 -보고안건 · 심야전기제도 시민배심원단회의 추진평가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보고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설명 -토의안건 : 하반기 과제선정 및 향후 갈등특위 운영방안
07.12.10 (3차)	은행회관 회의실	28명 참석 ○위원장 ○특위위원 : 23 ○기획운영실장 등 4	○주요 내용 -갈등특위 운영성과 - 갈등특위 활동방향 - 갈등특위 운영활성화

□ 기타 갈등관련 회의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안 건
'07.5.21	지속위 (618호)	20명 참석 ○ 특위위원 : 10 ○ 운영위원외 : 8 ○ 국정과제국장 등 2	○ 주요 내용 - 시민배심원제 소개 - 심야전력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 증인 증언 및 배심원 질의응답 - 시민배심원 의제 질문
'07.5.31 ~6.1	나이아가라 호텔	28명 참석 ○ 위원장 ○ 특위위원 : 15 ○ 증언패널외 : 10 ○ 국정과제국장 등 2	○ 주요 내용 - 신규중단요금인상측 증언청취 및 질의응답 - 배심원단 자체회의
'07.6.12 ~6.13	나이아가라 호텔	26명 참석 ○ 위원장 ○ 특위위원 : 13 ○ 증언패널외 : 11 ○ 국정과제국장 등 1	○ 주요 내용 - 현행유지측 증언청취(3명) - 증인에 대한 보충질문 및 토론 - 증인 상호 토론 - 시민배심원단 회의 및 최종의견 결정
'07.8.21	지속위 (605)	6명 참석 ○ 갈등관리정책팀장 등 6명	○ 주요 내용 - 갈등특위 향후 활동방향
'07.9.14	지속위 (605)	6명 참석 ○ 갈등관리정책팀장 등 6명	○ 주요 내용 - 갈등특위 하반기 선정과제 검토

□ 사회건강전문위원회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안 건
'07.9.12 (제6차)	지속위 605호	5명 장재연, 이필원, 강성구, 신용승, 허상수	○주요 내용 - 어린이건강 대책 추진현황 보고 - 중장기계획 사전검토팀 운영 계획 보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 보고 - '07년 지속가능발전 주간행사 계획 보고

□ 국토환경전문위원회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안 건
'07.6.22. (1차)	지속위 (618)	13명 참석 ○전문위원장 ○전문위원 : 6명 ○기획운영실 : 6명	○주요 내용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안 검토의견 심의 -댐건설 장기계획안 검토의견 심의 -'07하반기 예정 주요 중장기계획 검토방향 토의
'07.9.11. (2차)	지속위 (618)	12명 참석 ○전문위원장 ○전문위원 : 4명 ○기획운영실 : 6명	○주요 내용 -지속주간 행사계획안 및 기본법 시행령안 보고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심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심의
'07.10.24. (3차)	지속위 (618)	9명 참석 ○전문위원장 ○전문위원 : 2명 ○기획운영실 : 6명	○주요 내용 -지속주간 행사결과 및 기본법 시행령 제정 추진현황 보고 -사전검토가 필요한 중장기 행정 계획 선정안 보고 -산림기본계획 검토의견 심의

□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안 건
'07.2.28 (1차)	지속위 (618호)	8명 참석 ○ 위원장 ○ 전문위원 : 7명	○ 주요 내용 - '07년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 사업추진계획 보고 및 논의 - '사용후핵연료관리체계 및 공 론화방안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
'07.6.27 (2차)	지속위 (618호)	12명 참석 ○ 위원장 ○ 전문위원 : 11명	○ 주요 내용 - 기후변화 대응정책 검토와 제 언 보고 -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추진방 향 보고 - 국가 중장기계획 검토 추진 방 안 보고
'07.9.5 (3차)	지속위 (618호)	9명 참석 ○ 위원장 ○ 전문위원 : 8명	○ 주요 내용 - 에너지수요관리 방안, 에너지가격 체계 적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점검, 사용후핵연료 관리체계 및 공론화 과제 결과를 종합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과제(안) 보고 -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기후변화 대응방안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제안한 '기후변화 대응정책 검토와 제언' 보고

□ 지속발전이행전문위원회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안 건
'07.1.12. (1차)	지속위 (618호)	20명 참석 ○본위원(간사위원) : 1명 ○전문위원 : 19명	○주요 내용 -지속가능발전이행전문위원회 소 관 '07년 업무계획 전반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입법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UN 지속가능발전전략 회의 개 최 계획
'07.6.22. (2차)	지속위 (618호)	14명 참석 ○전문위원 : 14명	○주요 내용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추진 현황 -지방지속가능발전 로드맵 수립 및 추진계획 -제15차 UN지속가능발전위원회 특별부속회의 개최결과 -하반기 이행전문위 소관 업무 계획
'07.7.12. (3차)	지속위 (618호)	8명 참석 ○본위원(간사위원) : 1명 ○전문위원 : 7명	○주요 내용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적용평가 기준(안) 세부 검토 및 향후 추 진방향
'07.8.31. (4차)	지속위 (618호)	12명 참석 ○본위원(간사위원) : 1명 ○전문위원 : 11명	○주요 내용 -제1회 지속가능발전주간 행사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안)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적용평가 기준 -공적개발원조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토론회 개최계획
'07.11.7. (5차)	지속위 (618호)	11명 참석 ○본위원(간사위원) : 1명 ○전문위원 : 10명	○주요 내용 -제1회 지속가능발전주간 행사결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안) -검토대상 중장기행정계획(안)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시범평가 결과 및 보고계획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제안의견

□ 연구팀

<사회건강팀>

○ 국가차원 화학물질 관리방안 연구팀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안 건
'07.3.22	지속위 (605호)	5명	향후 정책보고서 정리 방안토론
'07.4.5	지속위 (605호)	5명	정책보고서 정리 및 역할에 따른 토의
'07.4.19	지속위 (605호)	3명	과제 토의
'07.5.4	지속위 (605호)	9명	연구팀원 보완, 보고서에서 논의할 조사범위 선정, 역할분담 및 최종보고서 작성방안 등
'07.5.21	지속위 (605호)	10명	연구과제 보고서 자료취합
'07.5.31	별관 (401호)	10명	자료취합 및 발제
'07.6.21	지속위 (605호)	3명	자료취합 및 토의
'07.7.2	아카데미 하우스 (우이동)	8명	워크샵- 브레인스토밍

○ 지속가능한 소비방안 연구팀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안 건
'07.1.17	소시모 회의실	2명	소비방안 보고서 정리

○ 어린이건강대책 연구팀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안 건
'07.1.23	지속위 (618호)	연구팀 12명	보고서 최종보고
'07.4.25	지속위 (605호)	연구팀 7명	어린이건강대책 외부전문가 회의

<국토팀>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안 건
'07.2.9	지속위 (605호)	13명 ○연구팀 : 8 ○기획운영실 : 5명	○주요 내용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운영방안 논의
'07.2.14	지속위 (605호)	8명 ○연구팀 : 6 ○기획운영실 : 2명	○주요 내용 -자원절감형 국토이용체계 구축 방안
'07.2.23	지속위 (603호)	5명 ○연구팀 : 3 ○기획운영실 : 2명	○주요 내용 -자원절감형 국토이용체계 구축 방안
'07.3.27	충북대	8명 ○연구팀 : 5 ○기획운영실 : 3명	○주요 내용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운영방안 논의
'07.4.11	지속위 (605호)	8명 ○연구팀 : 5 ○기획운영실 : 3명	○주요 내용 -자원절감형 국토이용체계 구축 방안
'07.4.25	지속위 (605호)	5명 ○연구팀 : 3 ○기획운영실 : 2명	○주요 내용 -보호지역 관리체계 개선방안
'07.5.2	지속위 (605호)	8명 ○연구팀 : 6 ○기획운영실 : 2명	○주요 내용 -국토관리측면에서 본 국가자 원절감방안
'07.5.10	지속위 (605호)	10명 ○시민단체 : 7 ○기획운영실 : 3명	○주요 내용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 시민 단체 간담회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안 건
'07.5.15	지속위 (605호)	6명 ○ 연구팀 : 4 ○ 기획운영실 : 2명	○ 주요 내용 -보호지역 관리체계 개선방안
'07.5.22	지속위 (605호)	5명 ○ 연구팀 : 3 ○ 기획운영실 : 2명	○ 주요 내용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검토 자문회의
'07.5.23	지속위 (605호)	8명 ○ 연구팀 : 6 ○ 기획운영실 : 2명	○ 주요 내용 -국토관리측면에서 본 국가자 원절감방안
'07.5.31	지속위 (605호)	5명 ○ 연구팀 : 3 ○ 기획운영실 : 2명	○ 주요 내용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검토 자문회의
'07.6.14	지속위 (605호)	5명 ○ 연구팀 : 3 ○ 기획운영실 : 2명	○ 주요 내용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 검토 자문회의
'07.7.24	지속위 (605호)	5명 ○ 연구팀 : 3 ○ 기획운영실 : 2명	○ 주요 내용 -주택종합계획 검토 자문회의
'07.7.25	지속위 (605호)	5명 ○ 연구팀 : 3 ○ 기획운영실 : 2명	○ 주요 내용 -보호지역 관리체계 개선방안
'07.8.31	지속위 (605호)	6명 ○ 연구팀 : 4 ○ 기획운영실 : 2명	○ 주요 내용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 검토 자문회의
'07.9.18	지속위 (605호)	5명 ○ 연구팀 : 3 ○ 기획운영실 : 2명	○ 주요 내용 -보호지역 관리체계 개선방안

<물자연팀>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안 건
'07.4.18	지속위 (605호)	6명 ○국토전문위원 : 1명 ○한국해양연구원 : 4명 ○관계공무원 : 1명	○주요 내용 -바다범람 사고관련 국내·외 실증사례 조사 -바다범람 사고관련 원인규명 및 대책수립 등

<에너지산업팀>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방안 연구팀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안 건
'07.1.12	지속위 (605호)	연구팀 : 7명	○ 해외 공론화사례 검토 등
'07.1.26	지속위 (605호)	연구팀 : 4명	○ 목차별 주요내용 정리
'07.3.21	지속위 (605호)	연구팀 : 4명	○ 보고서 작성 체제 및 요약본 작성방법 논의

○ 에너지가격체계 적정화 방안 연구팀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안 건
'07.1.3	지속위 (605호)	연구팀 : 3명	○ 중간보고회 자료 검토
'07.1.24	지속위 (605호)	연구팀 : 5명	○ Cambridge Working Paper 검 토내용 발표 및 토론
'07.2.7	지속위 (605호)	연구팀 : 3명	○ 장기과제와 현안과제 구분방안
'07.2.23	프레스센터	연구팀 : 3명	○ 최종보고서 작성방법 논의
'07.3.23	프레스센터	연구팀 : 3명	○ 최종보고서 정책과제 작성방안

○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산업정책 연구팀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안 건
'07.1.11	지속위 (605호)	연구팀 : 6명	○목차(안), 세부일정, 연구내용
'07.1.23	지속위 (605호)	연구팀 : 4명	○세부목차 확정 및 담당자지정
'07.2.13	지속위 (605호)	연구팀 : 3명	○국내현황 설명 및 초안 작성
'07.2.27	지속위 (605호)	연구팀 : 3명	○종합보고서(안)에 대한 의견 교환
'07.3.19	지속위 (605호)	연구팀 : 3명	○항목별 내용검토
'07.4.2	지속위 (605호)	연구팀 : 4명	○중간보고회 자료 작성방안
'07.4.10	지속위 (605호)	연구팀 : 4명	○보고서 세부내용 논의

○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연구팀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안 건
'07.5.2	지속위 (618호)	연구팀 : 4명	○수요관리 최종보고서(안) 검토

○ 신재생에너지 정책 평가 연구팀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안 건
'07.1.10	지속위 (605호)	연구팀 : 7명	○과업수행계획, 향후일정 협의
'07.1.22	지속위 (605호)	연구팀 : 7명	○세부목차, 해외자료 설명
'07.2.5	지속위 (605호)	연구팀 : 4명	○연구기조와 방향 논의
'07.2.26	지속위 (605호)	연구팀 : 6명	○보급목표 및 향후일정
'07.3.21	지속위 (605호)	연구팀 : 4명	○중간보고회 결과 토의 및 반영
'07.4.4	지속위 (605호)	연구팀 : 7명	○연구자별 연구내용 설명
'07.4.26	지속위 (618호)	연구팀 : 4명 자문위원 : 5명	○최종보고서 발표

<지속가능발전이행팀>

○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적용 평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안 건
'07.1.22. (1차)	지속위 (604호)	전문가 : 1명	○ 주요 내용 - 지속가능발전지표 적용평가 과제 자 문회의 추진방안
'07.2.15. (2차)	지속위 (605호)	전문가 : 4명	○ 주요 내용 - 지속가능발전지표 적용평가의 과제 범위 설정 및 추진방안 자문
'07.2.21. (3차)	지속위 (618호)	전문가 : 13명	○ 주요 내용 -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성격 규정 및 정책운용 방향 설정 - 환경, 경제, 사회 분야별 3개 검토 그룹 구성
'07.3.29. (4차)	지속위 (618호)	전문가 : 7명	○ 주요 내용 - 사회 분야 25개 지표 적용평가 기준 시안 검토 - 경제, 환경 분야 일부 지표 검토 -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핵심지표 후 보 선정
'07.4.19 (5차)	지속위 (618호)	전문가 : 8명	○ 주요 내용 - 경제, 환경 분야 지표 검토 - 핵심지표 후보 검토 -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와의 연관성 검토
'07.5.16. (6차)	지속위 (605호)	전문가 : 4명	○ 주요 내용 - 지표 정의 및 측정방법 문제항목 검토 - 핵심지표 선정 - 지표 평가결과 발표 및 커뮤니케이 션 모델 구성
'07.5.31. (7차)	지속위 (618호)	전문가 : 11명	○ 주요 내용 - 전체 지표 적용평가 기준(안) 재검토 - 지표의 정책적 운용방안 - 지표 평가 및 보고 추진방안
'07.7.3.	지속위 (605호)	전문가 : 1명	○ 주요 내용 - 환경 분야 지표 적용평가 기준(안) 상세 검토 - 환경분야 데이터 분석 및 시사점 평가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안 건
'07.10.26	지속위 (618호)	전문가 : 4명	○주요 내용 -경제, 환경, 사회 분야 지표 적용 평가기준 검토 -평가결과 보고 내용 및 양식 상 세검토 및 보고 추진 방안

○ ODA(공적개발원조)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안 건
'07.8.24. (1차)	지속위 (604호)	전문가 : 1명 (기획운영실:2명)	○주요 내용 -한국 ODA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 개최 기본구상
'07.9.6. (2차)	지속위 (604호)	전문가 : 2명 (기획운영실: 3명)	○주요 내용 -상기 토론회 개최 상세 내용 협의

○ 지속가능발전교육 자문회의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안 건
'07.2.22	지속위 (605호)	전문가 : 2명	○주요 내용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워크숍 개최 방안
'07.2.23. (2차)	지속위 (605호)	전문가 : 9명	○주요 내용 -지속가능발전교육 종합계획 수립 방안

<지방지원팀>

○ 지속가능발전 인식조사 결과보고서 작성회의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안 건
'07.5.9	지속위 (618호)	전문가 : 3명 연구팀 : 2명 정부 : 1명 (기획운영실: 10명)	○ 주요 내용 - 중간보고회 개최
'07.5.22. (1차)	지속위 (605호)	전문가 : 4명 (기획운영실: 2명)	○ 주요 내용 - 인식조사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정책보고서 작성에 대한 논의
'07.6.18. (2차)	지속위 (605호)	전문가 : 4명 (기획운영실: 2명)	○ 주요 내용 - 통계분석보고서와 정책보고서의 목차와 내용 논의
'07.6.28	지속위 (618호)	전문가 : 5명 연구팀 : 2명 (기획운영실: 14명)	○ 주요 내용 - 최종보고회 개최
'07.7.16. (3차)	지속위 (605호)	전문가 : 2명 (기획운영실: 2명)	○ 주요 내용 - 정책보고서 구성 내용 논의, 외 국사례참조와 비교분석
'07.7.26. (4차)	지속위 (605호)	전문가 : 2명 (기획운영실: 2명)	○ 주요 내용 - 정책보고서 초안 검토
'07.7.31. (5차)	지속위 (605호)	전문가 : 2명 (기획운영실: 3명)	○ 주요 내용 - 정책보고서 수정본 검토 및 보 완
'07.11.2. (6차)	지속위 (605호)	전문가 : 2명 (기획운영실: 3명)	○ 주요 내용 - 인식조사 종합 평가

○ 지속가능한 지역레저관광 자문회의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안 건
'07.5.17. (1차)	지속위 (605호)	전문가 : 3명 (기획운영실: 4명)	○주요 내용 -지속가능한 관광의 국내외 동향, 현황과 문제점, 향후 정부 정책 방향 의견수렴
'07.5.31 (2차)	지속위 (605호)	전문가·부처 : 6명 (기획운영실: 3명)	○주요 내용 -지속가능한 관광의 국내외 동향, 현황과 문제점, 향후 정부 정책 방향 의견수렴
'07.6.7 (3차)	지속위 (605호)	전문가 : 1명 (기획운영실: 3명)	○주요 내용 -지속가능한 관광의 현황과 문제 점, 로드맵 필요성 등에 대한 의 견수렴
'07.9.28	지속위 (618호)	연구팀 : 4명 전문가 : 4명 (기획운영실: 4명)	○주요 내용 -착수보고회 개최
'07.10.30 (4차)	지속위 (618호)	중앙부처 : 6명 전문가 : 4명 (기획운영실: 3명)	○주요 내용 -중앙부처의 지속가능한 관광정 책현황 및 개선과제, 의견수렴 등
'07.11.6 (5차)	서울대	관광업계 : 10명 전문가 : 5명 (기획운영실: 2명)	○주요 내용 -관광업계의 지속가능한 관광정 책현황 및 개선과제, 의견수렴 등
'07.11.23	지속위 (618호)	연구팀 : 4명 전문가 : 3명 (기획운영실: 5명)	○주요 내용 -중간보고회 개최
'07.12.13 (6차)	지속위 (618호)	지자체 : 6명 전문가 : 4명 (기획운영실: 4명)	○주요 내용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현황 및 개선과제, 의견수렴 등
'07.12.28	지속위 (618호)	연구팀 : 6명 전문가 : 3명 (기획운영실: 5명)	○주요 내용 -최종보고회 개최

○ 기본법 시행대비 시·도 정책기획관 회의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안 건
'07.8.28. (2차)	지속위 (618호)	시·도 : 25명 부처 : 1명, 전문가 : 1명 (기획운영실: 3명)	○주요 내용 -지방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구축 방안 등

○ 지속가능발전추진체계 자문회의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안 건
'07.9.27. (1차)	지속위 (602호)	전문가 : 1명 (기획운영실: 3명)	○주요 내용 -기본법 시행이후 지속위의 역할과 방향 등

○ 지방지속가능발전 진단 매뉴얼 및 기본계획 작성지침 자문회의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안 건
'07.4.19~20 (1차)	광주대	전문가 : 6명 (기획운영실: 2명)	○주요 내용 -진단지표 선정협의 등
'07.4.25~26 (2차)	광주대	전문가 : 6명 지자체 : 5명 (기획운영실: 2명)	○주요 내용 -진단지표, 기본계획 협의
'07.5.16 (3차)	지속위 (618호)	전문가 : 3명 정부, 단체 : 4명 연구팀 : 5명 (기획운영실: 5명)	○주요 내용 -최종보고회 개최
'07.8.17 (4차)	지속위 (618호)	전문가 : 5명 정부 : 1명 (기획운영실: 4명)	○주요 내용 -기본전략 및 진단매뉴얼 보완

○ 지방지속가능발전 진단 및 컨설팅 자문회의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안 건
'07.9.20	지속위 (618호)	전문가 : 5명 연구팀 : 4명 (기획운영실: 5명)	○ 주요 내용 - 착수보고회 개최
'07.11.6	지속위 (605호)	지자체 : 5명 전문가 : 1명 (기획운영실: 3명)	○ 주요 내용 - 지방 진단 추진방안 협의
'07.12.20	지속위 (618호)	전문가 : 3명 연구팀 : 4명 (기획운영실: 4명)	○ 주요 내용 - 중간보고회 개최

○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표준안 자문회의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안 건
'07.11.7. (1차)	지속위 (605호)	전문가 : 3명 (기획운영실: 5명)	○ 주요 내용 -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표준안 논의

○ 지방지속가능발전 지원단 자문회의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안 건
'07.11.7. (1차)	지속위 (605호)	전문가 : 8명 (기획운영실: 4명)	○ 주요 내용 - 지방지속가능발전지원단 구성·운영방안 - 제1회 시·도 공무원 워크숍
'07.12.6. (2차)	부산시 오션타워	전문가 : 8명 (기획운영실: 4명)	○ 주요 내용 - 지방지속가능발전위 업무편람 작성 등
'07.12.13. (간담회)	지속위 (605호)	전문가 : 8명 (기획운영실: 2명)	○ 주요 내용 - 시·도 지속가능발전 인식제고 방안 등
'07.12.20. (3차)	지속위 (618호)	전문가 : 9명 (기획운영실: 3명)	○ 주요 내용 - 제2차 시·도 공무원 워크숍 - 지방지속위 업무편람 등

□ 기타 회의(서면회의, 공청회, 세미나 등)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안 전
'07.1 (서면회의)	서면회의	3명 참석 ○ 최승국 · 정갑식 · 황희연 위원	○ '06 하반기 국정과제 로드맵 추진현황 평가
'07.3.12~ 16	COEX아셈홀	150명 (국외인사: 8개국 및 국제기구 대표 25명)	○ 아태지역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유엔회의 개최
'07.5.10	배재학술지 원센터 (공청회)	80명 참석 ○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 단체 등 참석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관련 공청회 개최
'07.7.24 (서면회의)	서면회의	3명 참석 ○ 정한경 · 정갑식 · 황희연 위원	○ '07 상반기 국정과제 로드맵 추진현황 평가
'07.7.25	지속위 (618호)	10명 참석 ○ 지속위 8명 ○ 평가위원 2명 - 최동진 · 김성진 위원	○ 연구용역과제(2개)에 대해 연구 필요성, 과업 적정성 등 평가 실시
'07.8.30	지속위 (618호)	7명 참석 ○ 이기우, 박성균 교수 등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안) 행정법 전문가 검토
'07.9.12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15명 참석 ○ 김정수 처장, 오수길 교 수 등	○ 지속가능한 국가전략과 사회협 약 포럼
'07.10.6 (2차)	지속위 (604호)	4명 참석 ○ 이기우, 박성균 교수 등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안) 행정법 전문가 검토
'07.10.4	명동 은행회관	130여명 참석 ○ 위원회 위원, 산업계, 지 자체, 민간단체, 학회 등 ○ 발제 및 토론자 : 장재연 · 신창현 · 황희연 · 문태훈 · 이창훈 · 유성 · 남준기 · 안병옥 · 김현진	○ 지속가능발전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07.10.5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강당	40명 (전문가 9명, 관련공무원 3명)	○ 한국 ODA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 개최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안 건
'07.10.5	삼성동 코엑스	130명 참석 ○ 산업계, 기후관련전문가, 정부, 시민단체 등	○ 기후변화 국가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07.10.25	지속위 (605호)	13명 ○ 지속위 10명 ○ 평가위원 3명 - 최동진 · 오성규 · 서태성 위원	○ 연구용역과제(2개)에 대해 연구 필요성, 과업 적정성 등 평가 실시
'07.10.25	전경련 회관	100명 (4개국 100여명)	○ 지속가능한 관광 국제워크숍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관광 인증, 그리고 새로운 도전
'07.12.6~7	부산시 오션타워	50명 참석 ○ 시·도 공무원 37명, 지원 단 10명, 지속위 4명 등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대비 시·도 공무원 워크숍
'07.12.18	지속위 (605호)	9명 참석 ○ 지속위 : 7명 ○ 집필위원 2명 - 박창석, 이상현 위원	○ 지속가능발전의 확산 정책보고 서 집필 회의
'07.12.18	지속위 (602호)	7명 참석 ○ 지속위 : 5명 ○ 집필위원 2명 - 박창석, 이상현 위원	○ 지속가능발전의 확산 정책보고 서 집필 회의

구분	발간자료	발간시기
1기	국가지속발전 전략수립을 위한 작업지침 작성	2001. 6.17
	주요정책 및 계획의 사전검토기준 및 방법에 관한연구	2002. 6.10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대응방안	2002. 9. 2
2기	WSSD 이행계획에 대한 국가대응전략 연구	2003. 6.22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 기본구상 연구	2003. 6.25
3기	갈등해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2003.12.26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2004. 1.22
	국가에너지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연구	2004. 2. 7
	갈등예방 및 해결프로세스 Mapping을 위한 연구	2004. 4.18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 안 작성을 위한 연구	2004. 5.21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홈페이지 개편	2004. 5. 3
	지속가능한 국가물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2004. 8. 3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연구	2005. 4.12
	다기준의사결정방법을 이용한 전원계획평가 연구	2005. 2. 4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 연구	2005. 2.24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을 위한 국가실행전략 개발연구	2005. 6. 9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 준비를 위한 연구	2005. 5.29
	한탄강댐 갈등조정 과정분석을 통한 공공갈등해결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2005. 5.17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2005.10.14

구분	발간자료	발간시기
4기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의제21 재작성 지침개발	2006. 2. 7
	환경관련 일자리 창출 방안	2006. 3. 7
	공공갈등 사례분석을 통한 표준 갈등사례분석 모델개발	2006. 3.22
	국가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2006. 4.22
	자원순환형 산업정책연구	2006. 5. 8
	어린이 건강과 지속가능한 사회	2006.11.10
	사용 후 핵연료 관리체계 및 공론화방안 연구	2007. 2.22
	에너지가격체계 적정화 방안 연구	2007. 4. 7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정책 현황점검과 개선방안 연구	2007. 4.21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 및 운영방안	2007. 5.19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진단 및 기본계획 수립지침 작성 연구	2007. 5.26
	삶의 질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무원의식 조사	2007. 7. 3
	삶의 질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전국민의식 조사	2007. 7. 3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연구	2008. 1. 4
	법령 및 중장기 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방안 연구	2008. 2.11
	지방 지속가능발전 진단과 컨설팅 및 시·도 공무원 역량강화 실시방안 연구	2008. 2.28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본 골프장 건설의 경제·사회적 영향분석 및 공급정책 방향 연구	2008. 5. 7

□ 소식지/뉴스레터

제 목	발행일
제6호 뉴스레터	2006. 10. 31
제7호 뉴스레터	2006. 11. 30
제8호 뉴스레터	2006. 12. 29
제9호 뉴스레터	2007. 1. 31
제10호 뉴스레터	2007. 2. 28
제11호 뉴스레터	2007. 3. 29
제12호 뉴스레터	2007. 4. 30
제13호 뉴스레터	2007. 5. 31
제14호 뉴스레터	2007. 7. 3
제15호 뉴스레터	2007. 8. 3
제16호 뉴스레터	2007. 9. 6
제17호 뉴스레터	2007. 10. 2
제18호 뉴스레터	2007. 11. 6
제19호 뉴스레터	2007. 12. 4
제20호 뉴스레터	2008. 1. 3

□ 브로셔

제 목	발행일
pcsd 브로셔(국문, 영문)	2005. 10. 14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함께합니다"(국문, 영문)	2006. 12

□ 홍보책자

제 목	발행일
"지속가능발전, 미래를 위한 현재의 약속입니다"(지속가능발전주간 안내)	2007. 9
"지속가능발전, 미래를 위한 현재의 약속입니다"(지속가능발전주간 전체 프로그램)	2007. 9
대통령과 함께한 지속가능발전	2007. 10. 4

□ 언론보도

제 목	발행일
지속가능발전위 확대 개편(대한매일)	2003. 10. 31
고철환 위원장, 환경타임즈 인터뷰	2003. 11. 26
고철환 위원장, 평화방송라디오 인터뷰	2003. 11. 19
개발-보전 갈등해결최선, 15일 문여는 지속가능발전위 고철환위원장 (문화일보)	2003. 12. 12
갯벌전문가 고철환 교수 지속가능발전위원장에(한국일보)	2003. 12. 15
지속가능발전위 출범(연합뉴스)	2003. 12. 13
노대통령 지속위 위원들 접견(연합뉴스 사진)	2003. 12. 15
지속가능발전위 고철환위원장-사회적 갈등해결책 찾겠다	2003. 12. 16
한탄강댐당사자회의(한겨레)	2003. 8. 26
원전 관련(동아일보)	2004. 8. 24
원전 관련(연합통신)	2004. 8. 23
미래를 위한 에너지 문화혁명:에너지산업팀장 기고문(서울신문)	
한탄강댐 갈등해결 이정표될까?(한겨레)	2004. 2. 3
한탄강댐시민배심원제도입(서울신문)	2004. 2. 17
주민등 4자참여로 갈등함수 해답(한겨레)	2004. 5. 20
한탄강댐 찬반논란 5년(동아일보)	2004. 6. 2
한탄강댐 건설여부 내달결론(세계일보)	2004. 8. 24
한탄강댐건설 내달말결정(한겨레)	2004. 8. 28

한탄강댐관련 강원도민일보 사설	2004. 8. 30
한탄강댐논란 합의 주민반응(강원일보)	2004. 8. 30
한탄강댐관련 청와대브리핑 338호	2004. 9. 3
환경타임즈 위원장님 특별 인터뷰	2003. 11. 26
‘환경시계’ 전시(연합뉴스)	2004. 2. 16
‘비만·아토피·천식 등 어린이 건강 토론회 열어’(쿠키뉴스)	2006. 5. 2
"국책 개발사업 사전 공론화"(연합뉴스)	2006. 5. 2
참여정부, 4기 지속가능발전위 출범(한빛일보)	2006. 5. 3
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경인일보)	2006. 5. 3
노 대통령“경제에 묻혔던 주제에 관심 돌릴 때”(데일리서프라이즈)	2006. 5. 3
“환경문제에 관심가질 것”(내일신문)	2006. 5. 3
어린이 교통안전 지역별 양극화(문화일보)	2006. 5. 3
“어린이 건강, 생태 예방의학 체계 마련해야”(참말로)	2006. 5. 4
‘제14차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개최(뉴스와이어)	2006. 5. 8
김상희 위원장 KTV ‘강지원의 정책데이트’출연	2006. 5. 4
김상희 위원장, 부산 mbc 라디오 ‘아침의 발견’ 인터뷰	2006. 5. 5
14차 UNCSD 회의 폐막(환경부보도자료)	2006. 5. 15
토지 모든 정보 한자리에 통합(중앙일보)	2006. 5. 22
토지용도별 통합정보시스템 2011년까지 구축(서울경제)	2006. 5. 22
토지·문화재 정보 한곳에(매일경제)	2006. 5. 22
국토통합정보시스템 2011년까지 구축(제일경제)	2006. 5. 22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이용정보 원스톱 제공키로(머니투데이)	2006. 5. 22
[김상희 위원장]“무분별한 연안매립·하구개발 막겠다”(한겨레)	2006. 6. 9

김상희 위원장, BBS 라디오,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2006. 6. 19
노대통령과 지속위 위원장(연합뉴스)	2006. 7. 13
국토개발·환경계획 수립시 부처 협의 의무화(머니투데이)	2006. 7. 13
노 대통령, 국토·환경 계획 조정기구 설치 지시(YTN)	2006. 7. 13
개발·환경 계획 사전협의해야(연합뉴스)	2006. 7. 13
국토 개발·보존 조정기구 신설(서울신문)	2006. 7. 14
김종천 국정과제 국장 KTV 인터뷰	2006. 7. 14
'개발과 보존의 국토관리체계 구축방안' (한국정책방송KTV)	2006. 7. 25
김종천 국정과제 국장 '강지원의 정책데이트' 출연(KTV)	2006. 8. 21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 80%까지'(뉴시스)	2006. 10. 31
대기오염 위험인구 절반으로 축소(연합뉴스)	2006. 10. 31
5년간 친환경 시장규모 5배로 늘린다(머니투데이)	2006. 10. 31
친환경제품 시장, 2010년에 16조원 규모로 커진다(이데일리)	2006. 10. 31
"친환경 시장규모 5년내 5배 키우겠다"(프레시안)	2006. 10. 31
국가 지속가능 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정책브리핑(한국정책방송)	2006. 10. 31
정부'지속가능발전 전략·이행계획'확정(문화일보)	2006. 10. 31
5세 이하10명 중 8명은 무상보육 혜택2010년까지(쿠키뉴스)	2006. 10. 31
지속가능발전 지표, 부처별 점수 매긴다(내일신문)	2006. 10. 31
5년간 친환경시장 5배 늘린다(서울경제)	2006. 10. 31
대기오염 노출인구 '확' 줄인다(세계일보)	2006. 10. 31
지속가능 발전 전략이 지속하려면(한겨레)	2006. 10. 31
5세이하 무상보육 31%서 80%로 확대(국민일보)	2006. 10. 31
대기질 개선 1조 4000억 투입(한겨레)	2006. 10. 31

만5세이하 무상보육 늘린다 (매일경제)	2006. 10. 31
“자연보호지역 국토11%로”(서울신문)	2006. 11. 1
2010년 경제10위·환경 24위·사회20위국가로(국정브리핑)	2006. 10. 31
경제·사회·환경 통합계획 첫 마련(국정브리핑)	2006. 10. 31
경제·사회·환경 정책 하나로 통합(한국정책방송)	2006. 10. 31
[녹색연합]<성명>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및 지속가능성 지표 마련을 환영한다 (연합뉴스)	2006. 11. 2
[환경운동연합] <논평> 지속가능발전 이젠 구호를 넘어 실천으로(연합뉴스)	2006. 11. 3
개발과 보전의 통합적 국토관리체계 구축방안<국민과 함께 읽는 대통령 보고서>(한국정책방송)	2006. 11. 6
[기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약속(내일신문)	2006. 11. 9
[기고] 국민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서울신문)	2006. 11. 10
[기고] 지속발전 가능한 국가가 되려면 …(중앙일보)	2006. 11. 14
[기고]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정표를(경향신문)	2006. 11. 14
[인터뷰]김상희 위원장 인터뷰(내일신문)	2006. 11. 23
김상희 위원장 '강지원의 정책데이트' 출연(KTV)	2006. 11. 27
'지속가능한 치수(治水)'국제 심포지엄(내일신문)	2006. 11. 28
지속가능위 '갈등조정특위' 공식 출범(뉴스1)	2006. 12. 1
盧대통령, 갈등조정특별위 위촉장 수여(머니투데이)	2006. 12. 1
노 대통령 "합의 커녕 표결도 안되는 사회"(뉴스1)	2006. 12. 1
“한국사회 대화와 타협 부족”노대통령(파이낸셜 뉴스)	2006. 12. 1
사회적 갈등 치유할 '갈등조정특위' 출범(mbn)	2006. 12. 1
노 대통령“대화·타협으로 결론내는 사회가 민주주의”(국정브리핑)	2006. 12. 1
盧대통령 "합의는커녕 표결도 안돼 문제"(머니투데이)	2006. 12. 1

노 대통령 "합의는 커녕 표결도 안되는 사회라서 문제"(데일리안)	2006. 12. 1
갈등조정특별위원회 공식 출범(강원일보)	2006. 12. 2
‘지속가능전략’ 유엔이 점수 매긴다(연합뉴스)	2006. 12. 17
아·태지역 지속가능발전 전략 나눈다(내일신문)	2006. 12. 18
폐광에 관광명소 만든 ‘에덴프로젝트’서 배운다(내일신문)	2007. 1. 2
[기고]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코리아 타임스)	2007. 1. 26
[기고]아동들은 다른 방식으로 사고(思考)해야한다. (The Independent News)	2007. 2. 2
[기고]세계가 주목하는 한국(파이낸셜뉴스)	2007. 2. 7
‘친환경’ 유엔회의 아태지역 첫 개최(연합뉴스)	2007. 3. 11
‘친환경’ 유엔회의 내일부터 닷새간 서울개최(매일경제)	2007. 3. 11
‘친환경’ 유엔회의 내일부터 닷새간 서울개최(매일경제TV)	2007. 3. 11
아태지역 첫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회의 12일 개최(쿠키뉴스)	2007. 3. 11
아태지역 첫 국가지속발전 전략회의(국민일보)	2007. 3. 11
아·태 지역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유엔회의(머니투데이)	2007. 3. 13
‘친환경 개발 유엔회의’ 닷새간 서울서(국정브리핑)	2007. 3. 13
개발·환경보존 가치 공존할 수 있다(한겨레)	2007. 3. 14
한국 지속가능, 아·태 모델로 우뚝(환경일보)	2007. 3. 14
지속발전 ‘중심국가’(한국정책방송 국정와이드)	2007. 3. 14
아,태 지역 최초‘지속가능발전전략회의’(한국정책방송 출발! 국정투데이)	2007. 3. 15
김은경 기획운영실장 강지원의 정책데이트 출연(한국정책방송)	2007. 4. 3
우리 지속가능발전전략 경험, 세계에 수출(연합뉴스)	2007. 5. 2
한국 지속가능발전 전략, 세계에 알린다(내일신문)	2007. 5. 3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공청회 개최(머니투데이)	2007. 5. 4
심야전기제도 존폐 '도마' 오른다(가스산업신문)	2007. 5. 29
사회적 갈등 과제 '시민배심원제'로 조정(한국방송)	2007. 5. 29
국가·지자체 '지속가능성' 2년마다 평가(매일경제)	2007. 6. 5
주요 개발때 지속가능성 평가 의무화(머니투데이)	2007. 6. 5
지속가능 발전전략 20년 단위로 수립(매일경제)	2007. 7. 4
지속 가능 발전 전략 20년 단위로 수립(한국방송)	2007. 7. 4
[지속가능경영원]<논평>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관련 (서울=뉴스와이어)	2007. 7. 4
상의'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환영(파이낸셜뉴스)	2007. 7. 4
[KBCSD]<의견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환영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성명서>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에 관한 성명서	
[시민·환경단체 의견서]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관한 시민·환경단체 의견서	
[기고]국가 패러다임 달라진다(한국일보)	2007. 7. 21
민간보육시설 실내공기도 정부가 규제(머니투데이)	2007. 9. 11
'인터넷 게임' 7세미만 등급 신설(연합뉴스)	2007. 9. 11
정부 '아토피 추방' 팔 걷어 부친다(노컷뉴스)	2007. 9. 11
인터넷게임 7살 미만 등급 신설(YTN)	2007. 9. 11
어린이 컴퓨터 게임중독 예방, 정부가 나선다(뉴시스)	2007. 9. 11
환경성질환 상담 콜센터 운영(서울경제)	2007. 9. 11
인터넷게임 7세미만 등급 추가(매일경제)	2007. 9. 11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7세미만 등급 신설키로(한국경제)	2007. 9. 11
"어린이 건강 위협하는 게임·패스트푸드 제한"(SBS)	2007. 9. 11

인터넷게임 7세미만 등급 생긴다,결제내역 부모에 제공(세계일보)	2007. 9. 11
아토피·천식 콜센터 정부가 운영(한국일보)	2007. 9. 11
게임사에 자녀 이용시간 제한 요구 가능해져(한겨레)	2007. 9. 11
서울 초등생 10명중 3명 아토피...소아비만을 18%...미국보다 높아(한겨레)	2007. 9. 11
인터넷게임 7세미만 등급 신설(디지털 타임스)	2007. 9. 11
게임물 7세 미만 등급 신설(전자신문)	2007. 9. 12
인터넷게임 이용단계별 어린이 보호조치 강화(환경부)	2007. 9. 12
인터넷게임 7세 미만 등급 신설(국정브리핑)	2007. 9. 12
어린이 건강 국가관리체계 세운다(내일신문)	2007. 9. 12
어린이 건강대책, 실효성 있게 관철해야(한겨레사설)	2007. 9. 12
[경기]'지방의제21 전국대회' 양평서 개최(데일리안)	2007. 10. 1
우리사회 삶의 질 만족, 10명 중 3명(파이낸셜뉴스)	2007. 10. 2
[지속위]우리나라 국민 5%만이 지속가능발전 개념 제대로 인식(연합뉴스)	2007. 10. 2
국민 100명 중 5명만""지속가능 발전'알고 있다"(한겨레)	2007. 10. 2
성인 53% "구매시 기업의 사회책임 고려" (머니투데이)	2007. 10. 2
"환경·경제 상생 노력할 것"(머니투데이)	2007. 10. 4
이규용 장관 "환경과 경제 상생방안 찾을 것" (아시아경제신문)	2007. 10. 4
"지속발전 가능성이 21세기 리더십 좌우"(머니투데이)	2007. 10. 4
"지속가능발전은 미래를 위한 약속"(머니투데이)	2007. 10. 4
환경친화적 관광 토론회 25일 개최(머니투데이)	2007. 10. 24

□ 5개 분야, 48개 이행과제, 229개 세부과제 현황

5개분야 48개 이행과제

분 야(5개)	과제번호	이행과제(48개)	소관부처	협조부처
I.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17개 이행과제)	이행 I -1	안전한 먹는물 공급 확대	환경부	건교부
	이행 I -2	수자원 통합관리 및 효율적 이용 체계 구축	건교부	환경부
	이행 I -3	수자원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건교부	환경부, 농림부, 산자부, 해수부, 기상청, 방재청
	이행 I -4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건교부, 환경부	지속위
	이행 I -5	연안·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지속위	해수부, 환경부
	이행 I -6	청정하고 활력있는 연안·해양 환경 조성	해수부	환경부
	이행 I -7	지속가능한 어업활동 달성	해수부	-
	이행 I -8	연안의 생물다양성 유지	해수부	환경부
	이행 I -9	해양오염방지 대응체계 구축	해수부	환경부
	이행 I -10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청	농림부, 환경부
	이행 I -11	지속가능한 자연재해 방지대책	방재청	건교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이행 I -12	개발과 보전의 통합성 강화	건교부, 환경부, 해수부, 농림부, 산림청	지속위
	이행 I -13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건교부	환경부, 산림청, 행자부, 농림부, 지속위
	이행 I -14	지속가능한 관광	문광부	환경부
	이행 I -15	생물자원의 다양성 확보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산자부, 해수부

분 야	과제번호	이행과제	소관부처	협조부처
	이행 I -16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계 보전을 위한 대책	환경부	통일부, 국방부
	이행 I -17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건교부	행자부, 법무부, 환경부, 교육부, 해수부, 중기청, 경찰청, 지속위
II. 사회통합과 국민 건강 증진 (10개 이행과제)	이행 II-1	여성경제활동 증진 및 정책의 성별영향 평가	여성부	노동부, 인사위, 과기부, 중기청
	이행 II-2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위한 사회 기반 구축	농림부	환경부, 건교부, 해수부, 산림청
	이행 II-3	도시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 지원 확대	건교부	재경부, 복지부
	이행 II-4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현	복지부	-
	이행 II-5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권리보호	노동부	법무부, 복지부, 여성부
	이행 II-6	국내 난민 보호를 위한 대안	법무부	복지부, 노동부
	이행 II-7	건강과 환경 연계성 평가	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이행 II-8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미세먼지 대책	환경부	복지부, 노동부
	이행 II-9	공공보건 의료 확충	복지부	-
	이행 II-10	갈등관리체계 구축	국조실, 지속위	-
III.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13개 이행과제)	이행 III-1	지속가능한 소비촉진을 위한 정보 제공 확대	환경부, 산자부	산자부, 관세청
	이행 III-2	지속가능한 소비체계 확대	환경부	산자부
	이행 III-3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확대	산자부	환경부
	이행 III-4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산자부	환경부, 노동부
	이행 III-5	친환경 농업의 활성화	농림부	환경부
	이행 III-6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	환경부	산자부, 과기부
	이행 III-7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체계 확립	산자부	과기부, 환경부
	이행 III-8	환경친화적인 조세체계 전환	재경부	환경부, 산자부

분 야	과제번호	이행과제	소관부처	협조부처
	이행Ⅲ-9	농산물 관련 시장개방과 가격안정화 방안	농림부	외통부, 해수부
	이행Ⅲ-10	제품 전과정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확대	산자부	환경부
	이행Ⅲ-11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환경부	산자부, 해수부
	이행Ⅲ-12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폐기물 안전 관리	환경부	산자부, 복지부, 해수부
	이행Ⅲ-13	유해위험정보 전달체계 확립	환경부, 노동부	농림부, 산자부, 해수부, 방재청
IV. 기후변화 대응과 지구환경 보전 (5개 이행과제)	이행Ⅳ-1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국조실	환경부, 산자부
	이행Ⅳ-2	오존층 보호를 위한 대응대책 강화	산자부	환경부
	이행Ⅳ-3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가간 협력체계 강화	산림청	농림부, 재경부
	이행Ⅳ-4	개발도상국 정보격차 해소 지원	정통부	외통부, 재경부
	이행Ⅳ-5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	외통부	재경부
V. 지속가능발전 이행 및 평가체계 구축 (3개 이행과제)	이행Ⅴ-1	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과 평가 시스템 구축	지속위	통계청
	이행Ⅴ-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반강화	지속위	건교부, 환경부
	이행Ⅴ-3	지속가능발전 교육실행 방안	지속위	교육부, 환경부

48개 이행과제별 229개 세부과제

이행과제(48개)		세부과제(229개)	
과제번호	과제명	과제번호	과제명
이행 I -1	안전한 먹는물 공급 확대	세부 I -1-1	음용수 수질기준의 강화
		세부 I -1-2	수도시설의 증설 및 개량
		세부 I -1-3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체계 효율화
		세부 I -1-4	취약지역의 먹는물 위생관리체계 강화
		세부 I -1-5	상수원 확보 및 대체수원 개발
이행 I -2	수자원 통합관리 및 효율적 이용 체계 구축	세부 I -2-1	수자원 개발 및 공급제도의 개선
		세부 I -2-2	수자원 통합관리
		세부 I -2-3	물 재이용 체계의 강화
		세부 I -2-4	수돗물 수요관리정책 강화
		세부 I -2-5	합리적 물 가격체계 마련
		세부 I -2-6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
이행 I -3	수자원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세부 I -3-1	국가유량측정망 구축
		세부 I -3-2	유량 및 수위 측정 확대
		세부 I -3-3	원격자동유량측정 등 수문조사 자동화
		세부 I -3-4	물관리 공동자료 확대 및 기능 개선
이행 I -4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세부 I -4-1	물수급 예측과 수자원 장기종합 계획의 보완
		세부 I -4-2	물수요관리 국가종합계획 수립
		세부 I -4-3	댐관리로 정책 전환

이행과제(48개)		세부과제(229개)	
과제번호	과제명	과제번호	과제명
		세부 I -4-4	선진적인 수질관리정책 정착
		세부 I -4-5	음용수 서비스 질 제고
		세부 I -4-6	지하수 공개념 도입
		세부 I -4-7	홍수총량관리 도입
이행 I -5	연안·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세부 I -5-1	자연해안·서식지 순손실 방지제 도입·시행
		세부 I -5-2	연안·해양보호구역 통합관리
		세부 I -5-3	하구 환경관리체계 구축
		세부 I -5-4	이원화된 연안해역 수질관리체계 개선
		세부 I -5-5	발전소 온배수 관리체계 확립
		세부 I -5-6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관리
		세부 I -5-7	서해접경연안 국제해양 평화공원 추진
		세부 I -5-8	정책통합과 참여의 해양 거버넌스 구축
이행 I -6	청정하고 활력있는 연안·해양 환경 조성	세부 I -6-1	연안·해양 통합관리체계 구축
		세부 I -6-2	연안·해양생태계의 과학적·체계적 관리
		세부 I -6-3	동아시아 해역의 지역협력 확대
이행 I -7	지속가능한 어업활동 달성	세부 I -7-1	수산자원의 회복 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세부 I -7-2	건강한 어장과 미래지향적 수산업 육성
		세부 I -7-3	선진화된 국제수준의 어업질서 정착
		세부 I -7-4	친환경 수산물과 복지어촌
이행 I -8	연안의 생물다양성 유지	세부 I -8-1	우리나라 연안별 해양생물다양성 모니터링
		세부 I -8-2	연안 해양생물의 종다양성 정보화 추진

이행과제(48개)		세부과제(229개)	
과제번호	과제명	과제번호	과제명
		세부 I -8-3	연안역 특정 해양생물종 관리체계 구축
		세부 I -8-4	해양생물다양성 국제협력 추진
이행 I -9	해양오염방지 대응체계 구축	세부 I -9-1	해양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
		세부 I -9-2	해양오염의 사전예방적 관리
		세부 I -9-3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
		세부 I -9-4	국제협력 강화
이행 I -10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세부 I -10-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구축
		세부 I -10-2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관리
		세부 I -10-3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육성
		세부 I -10-4	산림·휴양·문화공간 확충
		세부 I -10-5	도시숲 조성·관리 강화
		세부 I -10-6	기후변화협약 대응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
		세부 I -10-7	임업 연구개발 활성화
		세부 I -10-8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
이행 I -11	지속가능한 자연재해 방지대책	세부 I -11-1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시행
		세부 I -11-2	자연재해 저감기술 개발
		세부 I -11-3	자연재난 예·경보 기능 강화
		세부 I -11-4	국민 대피시스템 완비(E-30 계획)
		세부 I -11-5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세부 I -11-6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세부 I -11-7	풍수해보험제도 도입 추진

이행과제(48개)		세부과제(229개)	
과제번호	과제명	과제번호	과제명
		세부 I -11-8	체계적인 복구지원체계 도입 추진
이행 I -12	개발과 보전의 통합성 강화	세부 I -12-1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 강화
		세부 I -12-2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체계 확립
		세부 I -12-3	지속가능한 국토관리평가체계 구축
		세부 I -12-4	국토환경관리의 거버넌스 구축
이행 I -13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세부 I -13-1	각 부처별 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통한 국토통합정보 제공
		세부 I -13-2	환경부, 산림청 등의 보전용도 정보 체계 구축
		세부 I -13-3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이행 I -14	지속가능한 관광	세부 I -14-1	지속가능 관광가이드 육성 및 활용
		세부 I -14-2	지속가능 관광 추진주체 역량 강화
		세부 I -14-3	지속가능 관광지표 개발 및 평가 활성화
		세부 I -14-4	지속가능 관광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세부 I -14-5	지속가능 관광 인증제 도입
		세부 I -14-6	지속가능 관광목적지 지정·육성
이행 I -15	생물자원의 다양성 확보	세부 I -15-1	생물다양성 보전·연구 전문기관 설립
		세부 I -15-2	한반도 고유종 발굴 및 관리·강화
		세부 I -15-3	생물자원 주권확보 추진
		세부 I -15-4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복원
		세부 I -15-5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의 관리 강화
		세부 I -15-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위해성 평가체계 확립
		세부 I -15-7	생물다양성 관리 강화

이행과제(48개)		세부과제(229개)	
과제번호	과제명	과제번호	과제명
이행 I -16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계 보전을 위한 대책	세부 I -16-1	비무장지대 토지관리를 위한 경계 측량 및 지적복구 추진
		세부 I -16-2	비무장지대 내부 생태계 보전
		세부 I -16-3	DMZ 외부일원 생태계 보전대책 추진
		세부 I -16-4	남북공동 UNESCO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
		세부 I -16-5	남북해양접경해경 국제해양평화 공원 지정
		세부 I -16-6	DMZ 생태계에 대한 교육·홍보
이행 I -17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세부 I -17-1	도로·철도간 시설투자 형평성 제고
		세부 I -17-2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 활성화
		세부 I -17-3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세부 I -17-4	사고발생 최소화를 위한 교통안전 강화
이행 II-1	여성경제활동 증진 및 정책의 성별영향 평가	세부 II-1-1	성별영향평가
		세부 II-1-2	취업지원서비스
		세부 II-1-3	고급여성인력 양성
		세부 II-1-4	가정과 직장 양립 인프라 구축
이행 II-2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위한 사회 기반 구축	세부 II-2-1	농업 구조조정
		세부 II-2-2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세부 II-2-3	농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세부 II-2-4	산촌 개발·보전
		세부 II-2-5	임업기술 보급체계의 개선
		세부 II-2-6	임업인 육성 및 소득증대
이행 II-3	도시빈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 지원확대	세부 II-3-1	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

이행과제(48개)		세부과제(229개)	
과제번호	과제명	과제번호	과제명
		세부Ⅱ-3-2	장기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
		세부Ⅱ-3-3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이행Ⅱ-4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 실현	세부Ⅱ-4-1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세부Ⅱ-4-2	차상위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및 탈빈곤정책 강화
		세부Ⅱ-4-3	사회안전망 체계 개편
이행Ⅱ-5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권리보호	세부Ⅱ-5-1	산업연수제 폐지, 외국인 고용허가제로의 원활한 일원화 추진
		세부Ⅱ-5-2	외국인 고용질차 간소화 및 도입기간 단축
		세부Ⅱ-5-3	외국인 고용허가제하의 외국인 근로자 보호장치 내실화
		세부Ⅱ-5-4	불법 취업, 불법 고용 근절을 통한 합법적 고용관
		세부Ⅱ-5-5	외국인 근로자 사후관리 서비스 기능 강화
		세부Ⅱ-5-6	송출과정의 투명성 제고
이행Ⅱ-6	국내 난민 보호를 위한 대안	세부Ⅱ-6-1	인도적 지원 강화
		세부Ⅱ-6-2	난민 인정자에 대한 지원
		세부Ⅱ-6-3	난민시설 지원
이행Ⅱ-7	건강과 환경 연계성 평가	세부Ⅱ-7-1	건강과 환경 연계성 감시기반 구축
		세부Ⅱ-7-2	환경성 질환 실태조사 강화
		세부Ⅱ-7-3	환경오염 위험인구 최소화 방안 마련
이행Ⅱ-8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미세먼지 대책	세부Ⅱ-8-1	제작차 미세먼지 저감대책
		세부Ⅱ-8-2	운행차량 미세먼지 저감대책
		세부Ⅱ-8-3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세부Ⅱ-8-4	비산먼지 관리대책

이행과제(48개)		세부과제(229개)	
과제번호	과제명	과제번호	과제명
		세부Ⅱ-8-5	대기환경기준의 조정 등 기타 대책
이행Ⅱ-9	공공보건 의료 확충	세부Ⅱ-9-1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과 효율화
		세부Ⅱ-9-2	고령사회 대비 공공부문 역할 및 투자 확대
		세부Ⅱ-9-3	예방중심 국가질병관리 체계 구축
		세부Ⅱ-9-4	필수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이행Ⅱ-10	갈등관리체계 구축	세부Ⅱ-10-1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세부Ⅱ-10-2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 운영
		세부Ⅱ-10-3	공공개발관련 갈등예방방법을 정비
이행Ⅲ-1-가	지속가능한 소비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	세부Ⅲ-1-가-1	환경라벨링 대상 확대 및 정보화
		세부Ⅲ-1-가-2	환경라벨링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세부Ⅲ-1-가-3	국제협력활동 촉진
이행Ⅲ-1-나	지속가능한 소비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	세부Ⅲ-1-나-1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의 선진화 체계 구축
		세부Ⅲ-1-나-2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이행Ⅲ-2-가	지속가능한 소비체계 확대	세부Ⅲ-2-가-1	친환경상품 보급 및 구매 촉진
		세부Ⅲ-2-가-2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기반 강화
		세부Ⅲ-2-가-3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지원
		세부Ⅲ-2-가-4	민간분야의 녹색소비 확산
이행Ⅲ-2-나	지속가능한 소비체계 확대	세부Ⅲ-2-나-1	유통물류 신기술의 보급·확산
		세부Ⅲ-2-나-2	유통점포의 정보화 확산
		세부Ⅲ-2-나-3	유통모니터링 및 통계시스템 구축
		세부Ⅲ-2-나-4	유통합리화 자금 지원 활성화

이행과제(48개)		세부과제(229개)	
과제번호	과제명	과제번호	과제명
이행Ⅲ-3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확대	세부Ⅲ-3-1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세부Ⅲ-3-2	통합제품정책(IPP) 추진 및 정착
		세부Ⅲ-3-3	지속가능한 생산기술 개발 및 보급
		세부Ⅲ-3-4	전 산업계로의 환경경영 확산
		세부Ⅲ-3-5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생태산업단지 구축
		세부Ⅲ-3-6	자원순환형 재제조 및 재활용산업 활성화
		세부Ⅲ-3-7	Global 지속가능생산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이행Ⅲ-4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세부Ⅲ-4-1	지속가능경영 인식 제고
		세부Ⅲ-4-2	민간차원 지속가능경영 전담조직 구성
		세부Ⅲ-4-3	지속가능경영 민관 협의체 설립
		세부Ⅲ-4-4	지속가능경영 추진근거 마련
		세부Ⅲ-4-5	인센티브제도 도입
		세부Ⅲ-4-6	지속가능경영 표준화 대응
		세부Ⅲ-4-7	지속가능성 보고 확산
		세부Ⅲ-4-8	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 지원
이행Ⅲ-5	친환경 농업의 활성화	세부Ⅲ-5-1	핵심기술 개발·보급
		세부Ⅲ-5-2	직접지불제도 개선
		세부Ⅲ-5-3	자연순환형 농업기반 구축
		세부Ⅲ-5-4	농자재 지원체계 개편
		세부Ⅲ-5-5	지역환경용량을 고려한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세부Ⅲ-5-6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이행과제(48개)		세부과제(229개)	
과제번호	과제명	과제번호	과제명
이행Ⅲ-6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	세부Ⅲ-6-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발전기반 확대
		세부Ⅲ-6-2	환경산업 수요 지속 확충
		세부Ⅲ-6-3	유망 환경서비스업 발굴·지원
		세부Ⅲ-6-4	환경산업의 대외인지도 향상
		세부Ⅲ-6-5	해외시장 진입기반 강화
이행Ⅲ-7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체계 확립	세부Ⅲ-7-1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조성
		세부Ⅲ-7-2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 구축
		세부Ⅲ-7-3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체계 확충
		세부Ⅲ-7-4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추진
		세부Ⅲ-7-5	에너지 기술개발 시스템 고도화
이행Ⅲ-8	환경친화적인 조세체계 전환	세부Ⅲ-8-1	휘발유 대 경유 상대가격 조정
		세부Ⅲ-8-2	휘발유 대 LPG 상대가격 조정
		세부Ⅲ-8-3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재조정
이행Ⅲ-9	농산물 관련 시장개방과 가격 안정화 방안	세부Ⅲ-9-1	농수산물관련 시장개방 협상
		세부Ⅲ-9-2	공공비축제의 시행
		세부Ⅲ-9-3	쌀소득 보전 직불제의 시행
이행Ⅲ-10-가	제품 전과정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확대	세부Ⅲ-10-가-1	제품 전과정을 고려한 지속가능성 평가기법 개발 및 보급·확산
		세부Ⅲ-10-가-2	지속가능성 평가관련 DB구축 및 체계화
		세부Ⅲ-10-가-3	전과정 관리교육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세부Ⅲ-10-가-4	국제표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체제 구축
이행Ⅲ-10-나	제품전과정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확대	세부Ⅲ-10-나-1	국가 LCI DB 구축

이행과제(48개)		세부과제(229개)	
과제번호	과제명	과제번호	과제명
		세부Ⅲ-10-나-2	전과정평가 응용기법 개발·보급
		세부Ⅲ-10-나-3	전과정평가 전문인력 양성
		세부Ⅲ-10-나-4	환경성적 표지제도 활성화
		세부Ⅲ-10-나-5	에코디자인 개발 및 보급
		세부Ⅲ-10-나-6	환경정책수단과의 연계성 강화
		세부Ⅲ-10-나-7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교류 강화
이행Ⅲ-11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세부Ⅲ-11-1	폐기물 최소화 정책 강화
		세부Ⅲ-11-2	폐기물 자원화 정책 강화
		세부Ⅲ-11-3	폐기물 관리 선진화
		세부Ⅲ-11-4	폐기물 안전 관리
		세부Ⅲ-11-5	폐기물분야 국제적 동향 능동적 대응
이행Ⅲ-12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폐기물 안전관리	세부Ⅲ-12-1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선진화 추진
		세부Ⅲ-12-2	국제적 유해성평가 능력배양 및 국제협력 체계 구축
		세부Ⅲ-12-3	미량유해물질 실태조사와 관리 강화
		세부Ⅲ-12-4	화학물질사고 대응체계 강화
		세부Ⅲ-12-5	폐기물의 분류체계 개선
		세부Ⅲ-12-6	취급제한물질 제도의 단계적 강화
		세부Ⅲ-12-7	유해화학물질의 배출, 유통실태 파악 강화
이행Ⅲ-13	유해위험정보 전달체계 확립	세부Ⅲ-13-1	GHS의 체계적 분석 및 산업체 홍보
		세부Ⅲ-13-2	GHS 국내 도입
		세부Ⅲ-13-3	산업체 GHS 이행지원 및 국제적 조화

이행과제(48개)		세부과제(229개)	
과제번호	과제명	과제번호	과제명
이행 IV-1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세부 IV-1-1	협약 이행기반 구축
		세부 IV-1-2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세부 IV-1-3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사업
이행 IV-2	오존층 보호를 위한 대응대책 강화	세부 IV-2-1	오존층 파괴물질 수출입 Quota 허가제도 강화
		세부 IV-2-2	대체물질 이용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 강화
		세부 IV-2-3	오존층 파괴물질 파괴기준 마련
		세부 IV-2-4	HCFC 생산량 및 소비량 감축방안 마련
이행 IV-3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가간 협력 체계 강화	세부 IV-3-1	동북아 사막화방지 협력체계 구축
		세부 IV-3-2	양자간 협력을 통한 지원사업 추진
		세부 IV-3-3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세부 IV-3-4	북한 산림복구에 적극 노력
이행 IV-4	개발도상국 정보격차 해소 지원	세부 IV-4-1	대상국가 및 기구별 차별화된 사업 수행(On-Demand)
		세부 IV-4-2	협력 파트너십의 구축 (Partnership)
		세부 IV-4-3	사업 모니터링 및 역량 강화 (Capacity)
		세부 IV-4-4	조직체계 개편 및 홍보 확대 (Organization & PR)
이행 IV-5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	세부 IV-5-1	한국형 원조 모델 정립
		세부 IV-5-2	공적개발원조 추진 시스템
		세부 IV-5-3	개도국 원조 효율성 제고
		세부 IV-5-4	개도국 원조 인프라 구축
		세부 IV-5-5	개도국 원조 국민참여 확대
이행 V-1	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과 평가 시스템 구축	세부 V-1-1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체계 확정

이행과제(48개)		세부과제(229개)	
과제번호	과제명	과제번호	과제명
		세부 V-1-2	국가 지속가능발전 평가시스템 구축 및 시행
이행 V-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반강화	세부 V-2-1	지속가능발전 법제도적 기반 구축
		세부 V-2-2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증진
		세부 V-2-3	지방 지속가능발전 추진역량 강화
		세부 V-2-4	지방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확립
		세부 V-2-5	지방 지속가능발전 평가
이행 V-3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방안	세부 V-3-1	지속가능발전교육 기반 구축
		세부 V-3-2	지속가능발전 인식 확산
		세부 V-3-3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협력 강화

6대 로드맵 과제	세부과제	추진 상황	추진내용
①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①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안 마련	완료	○ 서면보고('04.9)후 국무조정실로 이관('04.10) ○ 갈등기본법안 국회제출(국조실, '05.5), 제정 무산('06.12)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정(대통령령, '07.2)
	② 갈등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	완료	○ 서면보고('06.4) ○ 관계부처 시달('06.5)
	③ 갈등관리교육훈련 및 포럼운영	완료	○ '05년 2회 포럼 실시('05.9, 11) ○ '06.워크숍 실시('06.7)
② 대안적 갈등 관리 프로 세스 적용	④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 지원	완료	○ 갈등기본법안에 포함 국회제출(국조실, '05.5), 제정 무산('06.12) ○ 갈등관리연구기관을 지정('07.9.5) · 운영(국조실)
	⑤ 한탄강댐관련 갈등관리 프로 세스의 개발·적용	완료	○ 국조실('05.5)에 이관하여 추진중 ○ 국무조정실에서 최종대안확정('06.8)
③ 지속가능한 에너지 및 산업정책 수립	⑥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수립	완료	○ 국정과제회의('03.12, '04.6) ○ ‘에너지수요관리’과제는 국정과제 조정회의 보고('05.6) ○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과제 서면보고('08.1)
	⑦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구축	완료	○ 국정과제조정회의보고('05.6.1) ○ ‘국가지속가능발전이행 계획중에 ‘기후변화 대응체제 구축’을 추가하여 국무회의 보고('06.10)
	⑧ 지속가능한 산업정책 수립	완료	○ '06.연구용역 및 연구팀 검토 추진 ○ ‘지속가능한 자원정책’ 과제 및 향후 방안 보고('08.1.15)

6대 로드맵 과제	세부과제	추진 상황	추진내용
④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 수립	⑨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 수립	완료	○국정과제회의보고('05.10) - 7대 정책과제 제시 ○국조실('05.10)에 이관하여 후속조치 추진
⑤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연 관리체계 구축	⑩ 국토의 계획적 개발 및 보전 정책 수립	완료	○국정과제회의 보고('06.7.13) ○관계부처에서 후속조치 추진(38개 단위과제)
	⑪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수립	완료	○국정과제회의보고('05.11.2) ○부처에서 후속조치중
	⑫ 지속가능한 연안개발 및 해 양관리 정책 수립	완료	○국정과제회의보고('05.6.22) ○부처에서 후속조치중
⑥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⑬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완료	○국정과제조정회의보고('05.6.1)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국무회의 보고('06.10.31)
	⑭ 지속가능발전지표 현장 적용가 능성 평가	완료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에 포함
	⑮ 지방의제21 활성화 방안 수립	완료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에 포함
	⑯ 지속가능발전 교육정책 수립	완료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에 포함

지시사항	지시일자	추진상황
1. 갈등문제 해결 제도	'03.8.12	○ 갈등관리정책연구팀 구성(03.10. 4) ○ 갈등관리시스템구축방안 연구결과 관계기관회의(04.1.28) ○ 제38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연구결과 보고(04.2.12) ○ 갈등관리기본법 시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께 서면보고(04.9.24) ○ 국무조정실에 관련자료 이관(04.10.2)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정(대통령령, '07.2.12)
2. 장기적 에너지 정책	'03.9.29	○ 에너지정책연구팀 구성('03.10.23) 및 5회 회의 개최하여 보고서 작성 ○ 제33회 국정과제회의('03.12.24)에 중간보고 ○ 제48회 국정과제회의('04.6.24)에 최종보고 - 수요관리(2015년 1차에너지의 10% 절감)와 신재생에너지(2011년 총 에너지의 5% 공급) 목표 설정
3. 지속가능위의 에너지정책검토 비공개로 하고 사전 보고할 것	'03.12.1	○ 에너지정책연구팀 보고서 작성('03.12.9) ○ 제33회 국정과제회의('03.12.24)에 사전보고 - 주요정책과제와 논의구조 개선방안 제시

지시사항	지시일자	추진상황
4. 한탄강댐 관련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프로세스	'03.12.19	○ 한탄강댐 갈등관리 추진계획 제38회 국정과제회의 보고('04.2.12) ○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 22차례 회의 개최('04.5~'04.11) ○ 「한탄강댐문제조정을위한관련당사자회의」 16차례 회의 개최 ('04.6~'04.9) - 관련당사자가 조정소위원회에 최종결정권을 위임하기로 합의('04.8.27) ○ 댐갈등조정소위원회 임진강유역 홍수피해방지대안 검토 및 결정발표('04.11.2~3) - 홍수피해방지를 위한 5개 대안의 홍수조절효과,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 사회적수용성 검토 - '천변저류와 홍수조절용댐안을 대안으로 결정 발표 ○ 제5회 국정과제조정회의에서 조정결과 보고('04.11.3) - 「임진강유역홍수피해방지를위한공동협의회 운영소위원회」 발족('04.11.30) ○ 대통령 서면보고 후 한탄강댐 갈등관리 업무 국조실 이관('05.5.24)
5. 에너지 등 부처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 사전 점검하여 자문할 것	'03.12.24	○ 정책연구팀을 구성·운영('04.2.9~6.16, 17차례회의개최)하여 보고서 작성 ○ 제48차 국정과제회의(2004.6.24)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보고 - 수요관리 : 2015년 기준 1차 에너지의 10% 절감목표설정 및 추진 - 신재생에너지 : 2011년 총에너지의 5% 목표설정
6. 갈등과제 조정시스템에 대해서 지속가능위에서 연구개발하고 필요시 갈등조정 업무 추진	'03.12.29	○ 갈등관리정책연구팀 구성('03.10.4) ○ 갈등관리시스템구축방안 연구결과 관계기관 회의('04.1.28) ○ 제38회 국정과제회의('04.2.12)에서 연구결과 보고 ○ 갈등관리기본법 시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께 서면보고('04.9.24) ○ 국무조정실에 관련자료 이관 ('04.10.2)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정(대통령령, '07.2.12)

지시사항	지시일자	추진상황
7. “갈등해결구축시스템구축방안” 명칭 조정할 것	‘04.2.9	○ 제38회 국정과제회의(04.2.12)부터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으로 명칭을 변경 ※ ‘갈등해결’→‘갈등관리’
8. 갈등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추진	‘04.2.12	○ 부처에 갈등교육 협조 요청 및 관련전문가(강사) 인력풀 제공(04.5) ○ 갈등관리분야 전문가 초청 「갈등관리세미나」 개최(04.7) ○ 사회갈등해결을 위한 정책심포지움 공동 개최 (04.11, 지속위 및 중공교) ○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중앙부처에 대한 위원장 강의·특강 11회 (04.3~12) ○ 갈등관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공무원교육 기관 등에 보급(‘05.2) ○ 갈등관리 교육교재 개발 연구 추진(‘05.6~11월)
9. 정치적 갈등 등 연구대상을 확대 할 것	‘04.2.12	○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갈등 관리포럼 개최(‘04.6.22) ○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정책 워크숍 개최 (‘04.7.28) ○ 갈등관리 교육교재 개발 연구 추진(‘05.6~11월)
10. 갈등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검토	‘04.2.12	○ 갈등관리기본법 시안에 갈등영향분석제도 도입 반영, 대통령께 서면보고(‘04.9.24)
11. 갈등관리지원센터 구성	‘04.2.12	○ 갈등관리지원센터설립안 연구용역 완료(04.5.21) ○ 연구용역 결과를 갈등관리기본법 시안에 반영 하여 대통령께 서면보고(04.9.24) ○ 국무조정실에 관련자료 이관(04.10.2) ○ 갈등관리법 제정 무산(‘06.12)으로 갈등 관리지원센터 설립대신 갈등관련연구기관 지정(‘07.9.5,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운영(국조실)

지시사항	지시일자	추진상황
12.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04.2.12	○ 갈등관리기본법 시안 마련(04.3~6), 시민단체·전문가 의견수렴 보완(04.7) ○ 시민사회수석실, 부처, 국무총리 협의·보완(04.7~9) ○ 최종안 대통령께 서면보고(04.9.24) ○ 국무조정실에 관련자료 이관(04.10.2) ○ 국조실에서 정부입법안을 마련 국회에 법안 상정하였으나 입법 지연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정(대통령령, '07.2.12)
13. 갈등관리시스템 적용할 것	'04.2.12	○ 4번의 한탄강댐 건설 추진 관련 조정프로세스 적용과 동일
14.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추진방안	'04.6.24	○ 에너지수요관리정책, 장기전원구성정책, 기후변화대응정책, 에너지정책 공론화 프로세스 디자인 등 4개 후속과제 연구팀을 구성하여 총 52차례 회의개최(04.8~05.1) ○ 지속가능 에너지정책 보고서(안) 수정·보완('07.10) - 주요 정책별(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가격 개편) 개선방안 보완 ○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과제 서면 보고('08.1)
15. 에너지기본법(안) 보강하여 추진	'04.9.15	○ 에너지기본법 검토팀 구성하여 회의개최(3회 '04.9~10) - 지속위 내부전문가 및 시민단체 참여 ○ 산자부와 4차례 협의회의(04.8~11)를 통해 합의안 도출('04.11.16)

지시사항	지시일자	추진상황
16. “갈등관리기본법 및 갈등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경과 및 계획	‘04.9.24	<갈등관리기본법> ○ 갈등관리기본법 최종안 대통령께 서면보고 (04.9.24) ○ 국무조정실에 관련자료 이관(04.10.2) ○ 국조실에서 정부입법안을 마련 국회에 법안 상정하였으나 입법 지연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정(대통령령, ‘07.2.12) <법·제도 정비> ○ ‘공공분쟁관련 법제도개선지침’ 마련 (‘04.8) ○ 연구팀 구성(‘05.1), 개선 필요과제 발굴, 정비방안 마련 서면보고(‘06.4) ○ 관계부처에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시달(‘06.5)
17. “골프장 건설문제”와 관련한 규제정리 및 전국토 토지이용 계획 DB화	‘04.12.30	○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안 검토 보고 (‘05.4.1) ○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방안 보고 (‘06.5.9)
18. 지속위의 역할 확대에 따른 실무 인력 강화방안 연구	‘04.12.30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개선(안)을 마련하여 제3차 본위원회에 보고(‘05.1.7) - 전문위원회 활성화 전담 및 공론화 전담 인원 증원 ○ 지속위 기획운영실 실무인력을 23명(‘04.12)에서 26명(‘05.7)으로 증원 - 실무직원 구성(26명) : 공무원파견(10명), 전문계약직(6명), 민간기관 파견(6명), 사무보조(4명)
19. 환경갈등 등 국가지속발전비전 집대성 필요	‘05.2.21	○ ‘05.6.4 제10회 환경의 날 기념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식 - 대통령께서 ‘경제, 사회, 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를 비전으로 선언 - 경제발전·사회통합·환경보전의 세가지 축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비전 제시

지시사항	지시일자	추진상황
20. “수력이 국부, 물을 잡아라 (경향 6면, 3.22)” 정책상황 점검 필요	‘05.3.24	○ 경제정책수석 주관 회의(‘05.5.18)에서 환경부로 주관부서를 조정 - 환경부에서 ‘수도산업 육성방안’을 검토하여 제시기로 함
21. “골프장건설규제 개선안 검토 및 정책방향” 보완	‘05.4.2	○ 총리실과 후속조치 보완 및 협의완료(‘05.4.14) - 총리실에서 각 부처에 철저히 시행하도록 조치 - 국무조정실 규제점검기획단에서 이행 과정에 대한 점검 및 관리토록 함 - 부처의 세부정책추진시 지속가능발전위와 협의기로 함
22. “연안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회의준비 철저	‘05.6.1	○ 연안해양정책 연구팀 17차 회의(‘05.6. 21) 개최 및 정책실 협의를 거쳐 제62회 국정과제회의 개최(‘05.6.22)
23. 보존과 개발기준을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	‘05.6.1	○ 연구팀 구성 및 부처 협의(‘05.6~‘06.6) ○ 기준 마련하여 국정과제회의에 보고(‘06.7.13) ○ 부처별 과제 이행중(‘06.9~)
24. 연안,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의견대로 처리	‘05.6.1	○ 의견대로 처리(‘05.6.1 종료) ○ 연안·해양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대한 부처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 - 해양부(‘06.3), 환경부(‘06.4), 산자부(‘06.3), 농림부(‘06.4) · 4개부처 13개 세부과제
25. 지속가능발전 핵심이행과제는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를 토론을 거쳐 마련	‘05.6.1	○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및 국무회의 보고(‘06.10.31) - 22개 부처가 참여하여 2006-2010년까지 추진할 48개 과제, 223개 세부과제 마련

지시사항	지시일자	추진상황
26. 발전소 온배수 배출규제,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 등 중장기 과제 부처와 협의 구체화	'05.6.22	○ 합리적인 온배수 배출기준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05.3~'08.1) ○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부과금 부과, 배출기준, 이용방안을 정책으로 도입 추진 예정('08) ※ 지속위 주관으로 관계부처(산자부, 해수부, 농림부 등) 이해관계 조정 필요
27. 국무총리 소속으로 물관리체계를 전담할 '물관리위원회' 신설을 추진할 것	'05.10.19	○ 물관리기본법안 국회제출('06.10.27) ○ 환노위 법안소위원회 주관 공청회 개최('07.2.15) ○ 1차 환노위 법안소위 심의('07.2.26) ○ 2차 환노위 법안소위 심의('07.4.17, 6.19) ※ 의원들간 이견으로 현재 국회 심사 보류중
28.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방안	'06.2.28	○ 연구팀 구성('05.2) ○ 부처협의('05.9) ○ 구축방안 서면보고('06.5.9) ○ 부처별 과제 이행중('06.5~)
29.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할 것	'06.7.13	○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완료) - 법률시안 마련('07.3) - 관계부처 협의('07.3.28~4.26) - 입법예고('07.4.13~5.3), 공청회(5.10) - 법제처 심사('07.5.4~5.29) - 국무회의 심의·국회제출('07.6.5)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결('07.6.21) - 본회의 의결('07.7.3) - 기본법 제정·공포('07.8.3)

지시사항	지시일자	추진상황
30. 국토종합계획 심의전 지속위의 대통령자문 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검토를 할 것	'06.7.13	○ 대통령자문 체계 마련을 위한 지속 가능발전기본법 제정(완료) - 법률시안 마련('07.3) - 관계부처 협의('07.3.28~4.26) - 입법예고('07.4.13~5.3), 공청회(5.10) - 법제처 심사('07.5.4~5.29) - 국무회의 심의·국회제출('07.6.5)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결('07.6.21) - 본회의 의결('07.7.3) - 기본법 제정·공포('07.8.3)
31. 개발과 보전의 통합적 국토관리 체계 구축방안의 추진	'06.7.13	○ 관련전문가로 연구팀 구성, 약 30여회 발제 및 토론, 부처협의를 거쳐 보고서 마련('06.6) ○ 국정과제회의시 보고('06.7.13) ○ 해당부처에서 과제별 제도개선 추진 ('06.7~)
32. 지속가능 정책차원의 연안관리 방안을 연구하도록 할 것	'07.8.31	○ 검토 TF 구성 및 사전연구작업 착수 ('07.11) - KMI, KEI, KDI 등 관련 전문가 참여 ○ '08년에 연구용역사업을 발주하여 사업추진 - 연안디자인 시범사례 추진

